

주요국의 조세제도

- 영국편 -

2009. 10.

박 정 수

서 언

영국 조세제도는 중앙정부(통합국세청 Her Majesty's Revenue and Customs)와 지방정부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중앙정부 수입은 기본적으로 소득세, 국민연금, 부가가치세, 법인세와 연료세 등으로 구성되고 지방정부 수입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교부금,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사업세(business rates), 카운슬세 및 부담금 등으로 구성된다. 2008~2009년 기준으로 정부의 수입은 GDP의 39.2%를 차지하며 순조세와 국민연금기여금은 GDP의 36.9%, 대략적으로 6,067억파운드 수준이다.

소득세의 비중은 전체 조세수입 중 29%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크다. 다음은 국민연금기여금, 부가가치세, 법인세의 순서를 나타낸다. 과세연도는 4월 6일부터 다음 해 4월 5일까지로서, 예를 들어 2008~2009년 과세연도라고 하면 2008년 4월 6일부터 2009년 4월 5일까지이다. 이러한 조금은 이상한 과세연도 계산은 18세기 중반의 사건에 기인하고 있다고 한다. 영국의 지대 징수의 관습은 중세 이후 지속적으로 1년에 4회로 나뉘어 시행되어 왔다. 조세징수 역시 과세연도의 말은 3월 25일인 'Lady Day'를 기준으로 계산되었다. 영국에서 1752년 9월 율리어스 시저 율력(Julian calendar)이 그레고리안 율력으로 대체되면서 11일이 사라지게 되었고 이 기간 동안의 세수손실을 입지 않기 위해 과세연도의 새로운 시작이 처음에는 4월 5일, 1800년에는 4월 6일로 바뀌었다. 과세연도는 회계연도로도 불리는데 일반적으로 법인세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4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이며 2008 회계연도라고 하면 2008년 4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영국과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를 비교해 보면 세목의 종류면에서는 상당한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지만 다른 점도 많다. 자본이득세, 즉 우리의 양도소득세를 보아도 우리는 주로 부동산에만 한정되어 부과되는 데 반해 영국에서는 포괄적인 과세범위를 갖고 있다. 한편 영국의 간접세는 명목세율이 쉽게 변하지 않는 영구세인 데 반해, 직접세

의 경우 매년 세율이 Finance Act에 의해 개정되는 연간세라는 점이 가장 특징적이다. 특히 소득세의 경우 2006년부터 전통적인 스케줄 시스템이 폐지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포괄적인 세제로 전환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영국의 조세체계가 세목 면에서는 미국과 상당히 유사하지만 개인이나 법인이 납세 신고서를 작성할 때부터 최종적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은 매우 상이한데 이는 오랜 역사와 전통에 영향을 받아 복잡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겠다. 예컨대 미국의 신고방식은 개인 스스로 과세대상소득을 모두 열거한 뒤 합산과 공제단계를 거쳐 세액을 계산하여 보고하는 형식인 반면, 영국의 경우 매우 복잡한 세액계산방식 때문에 개인들은 누락하기 쉬운 소득들을 열거해 놓은 신고서에 단순히 공란을 메우는 정도의 노력으로 신고를 끝내고 이러한 정보에 기초하여 국세청은 최종세액을 계산하여 개인에게 부과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납세자의 신고내용은 언제든지 국세청의 실사를 받게 될 수 있으며, 만약 고의적인 허위신고가 사후에 발각되면 당장의 법적 책임 이외에 평생 동안 블랙 리스트에 올라 관리를 받게 되며 이러한 이유로 성실신고의 수준은 매우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영국 소득세제 운영과 관련하여 눈여겨 볼 사안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의 틀을 매년 바꾸는 것이 아니라 Finance Act라는 재정법체계를 연간세법 형식으로 운영하면서 필요한 과표의 현실화, 세율의 미세조정, 공제범위의 조정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형식이다. 국세청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 그리고 납세자와 과세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극복하고 납세순응을 지원하기 위한 세법 다시 쓰기 운동 등도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영국의 개별소비세제도는 석유세, 담배세, 자동차세, 주세를 제외하면 최근 환경을 감안하여 신설된 제도들이 많이 눈에 띈다. 실제 세수효과보다도 환경에 대한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려는 소위 피구세(pigovian tax)적인 요소가 많다. 영국의 지방세제도의 운영이 지방재정조정제도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점도 우리로서는 배울 바가 많다. 지방재정의 양대 축은 지방세와 교부금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들 두 제도 간에 연계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효율적인 지방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진다. 그리고 지방세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평 문제에 대해 교부금제도를 통하여 교정해 나가는 접근도 우리가 보다 깊이 연구해 볼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이화여자대학교의 박정수 교수가 집필하였다. 특히 2004년 출간 이후 급변 개정작업을 통해 각 국가들과의 용이한 비교를 위해 가능한 한 표준체계를 유지하고자 애를 썼으며 내용면에서도 최근화 및 충실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저자는 한국 조세연구원의 김진수 박사, 홍범교 박사께 감사를 표하고 있으며 함께 자료정리 작업에 참여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 홍희정 조교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아울러 검토 과정에서 귀중한 지적을 해 준 삼일회계법인과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 관계자들에게도 감사를 표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미흡한 점은 저자의 책임임을 밝힌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세법 다시 쓰기, 조세체계 단순화, 환경세의 도입 및 지방세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연계 등 영국이 시행하였거나 시행하고 있는 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있다. 국제적인 조세조화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환경변화에 적절히 적응하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와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양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는 영국의 조세제도에 대한 본 보고서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있음을 밝혀 둔다.

2009년 10월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원 윤 희

목 차

제1편 총론	21
I. 영국의 경제 및 사회 환경	21
1. 영국의 경제	21
II. 조세체계	24
1. 조세체계의 이해	24
2. 재정법(Finance Act): 연간세법	26
III. 세수입의 규모 및 구성	29
1. 거주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	30
2. 소득세	30
3. 투자공제액	33
4. 자본이득세	34
5. 과세연도	34
6. 역사	35
7. 국민연금보험	36
8. 부가가치세	37
9. 법인세	37
10. 소비세	37
11. 인지세	38
12. 상속세	38
13. 자동차세	39

14. 사업세	39
IV. 최근의 조세개혁 동향 및 향후 전망	40
1. EC법	41
2. 세법	41
3.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	43
4. 판례법	43
5. 국세행정관행	44
제2편 소득세제	45
I. 소득세	45
1. 서론	45
2. 납세의무자	47
가. 거주자와 비거주자	47
3. 과세소득	49
가. 소득의 종류	50
나. 과세표준의 계산 사례	54
다. 사업소득세(business taxation)	56
4. 인적공제, 비용공제, 세액공제 등	62
5. 세율	73
가. 비저축소득	73
나. 저축소득	73
다. 배당소득	74
6. 소득세 행정	77
가. 신고 및 납부	77
나.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처리	80
다. 이중과세방지제도	84

7. 원천징수제도	84
8. 사회보장기여금 또는 국민연금(NIC)	86
가. 기여의 종류	88
나. 관련 법령	90
9. 기타	97
II. 법인세	102
1. 서론	102
2. 납세의무자	102
가. 비법인 사업자	103
나. 파트너십(partnerships) 과세	104
다. 법인	106
3. 과세소득	107
가. 과세될 회계기간 결정	107
나. 회계기간에 대한 수익 분배	108
4. 비용공제, 세액공제 등	110
5. 손실	114
6. 세율	116
7. 법인세 행정	119
8. 연결납세제도	122
III. 국제조세	126
1. 영국의 국제조세정책의 기초	126
가. 경쟁(Competition)	127
나. 협력(Cooperation)	128
다. 지배권(Constitution)	128
라. 공개성과 투명성	129
2. 국제조세업무	129

가. 이중과세방지(Relief for Double Taxation)	130
나. 이중과세협약(Double Taxation Agreements)	131
다. 국제 - 상호협약절차(International - Mutual Agreement Procedure)	140
라. 이전가격세제	140
IV. 자본이득세	144
1. 서론	144
2. 납세의무자	145
3. 과세소득	145
가. 과세기간	145
나. 과세대상자산	145
다. 자본이득계산 구조	146
라. 특별규정	150
4. 법인의 자본이득과세 구조	152
가. 개요	152
나. 과세대상자산	153
다. 비과세자산	154
라. 과세이연	154
마. 신고납부	155
5. 주택양도과세	155
가. 개요	155
나. 거주기간 요건	156
6. 주식 및 증권양도과세	157
가. 개요	157
나. 주식재편	158
다. 기업구조조정 및 합병	159
7. 공제	160

제3편 소비세제	167
I. 부가가치세(일반소비세)	167
1. 서론	167
2. 납세의무자	168
가. 납세의무자	168
3. 과세거래	173
가. 과세대상품목	173
나. 매입과 매출세액	174
다. 과세금액	174
라. 수입품	175
4. 과세표준	176
5. 세율과 세액의 계산	176
가. 저세율 품목	178
나. 매입세액공제 제도	178
6. 영세율과 면세제도(과세품목과 면세품목)	181
가. 면세품목	181
나. 영세율 품목	183
7. 거래시기(공급시기) 및 거래장소	185
8. 부가가치세 행정	186
가. 부가가치세 신고	186
나. 세금계산서	187
다. 사업자 등록과 미등록	190
9. 기타	192
II. 개별소비세	194
1. 주세	194
2. 담배세	195

3. 유류세	195
4. 기타 소비세	196
가. 쓰레기매립세	196
나. 콘크리트 제조용 골재채취세	197

제4편 재산세제 199

I. 상속세 및 증여세 199

1. 서론	199
2. 상속에 대한 정의 및 과세대상	200
가. 면세되는 이전	201
나. 잠재적 면세 이전	203
다. 생애이전에 대한 과세	204
라. 재산의 평가	205
마. 변화하는 재산의 분배	207
바. 무이자 대출	207
3. 과세표준, 공제 및 감면	208
4. 세율	214
가. 과세의 원칙	214
나. 빠른 상속공제(세대생략상속)	230
다. 생존자권 조항	231
5. 상속·증여세 행정	231
가. 신고납부절차	231
나. 사망시점	232
다. 납부기한, 초과지급 되었거나 납부기한이 넘은 세금에 대한 이자·벌금	235
라. 세금납부	236
마. 보험의 활용	237

II. 인지세	238
1. 서론	238
2. 납세의무자	238
3. 과세대상	239
4. 세율	239
III. 기타(지방세 등)	251
1. 카운슬세(Council tax)	251
가. 서론	251
나. 과세대상	253
다. 납세의무자	253
라. 비과세·감면	255
마. 과세표준 및 세율	260
바. 세무 행정	266
사. 카운슬세의 성격 및 문제점	269
아. 정책시사점	272
2. 사업 레이트(Non-domestic Rate)	274
가. 서론	274
나. 납세의무자	275
다. 세율 및 과세표준	276
라. 과세평가	277
마. 비과세·감면 대상	278
바. 이의신청	281
사. 최근 동향 및 정책시사점	281
제5편 조세절차법	282
1. 서론	282

2. 조세의 부과	283
가. 소득세와 법인세	283
나. 부가가치세	284
3. 조세의 징수	284
4. 세무조사	285
가. 기술적 검토(Technical Review)	285
나. 사찰(Investigation)	286
다. 조사(Audit)	286
라. 부가가치세 조사	286
5. 가산세	287
가. 개인	287
나. 법인	288
6. 환급가산금	288
가. 소득세와 자본이득세, 국민연금 기여금	289
나. 법인세	289
다. 상속세	289
7. 조세범처벌	290
가. 소득세	290
나. 부가가치세	291
다. 요약	292
8. 조세불복	293
참고문헌	294
부 록	295

표목차

제2편

〈표 I - 1〉 과세소득분류체계	52
〈표 I - 2〉 근로 및 자녀세액 공제율과 구간	65
〈표 I - 3〉 근로세액공제(2009~2010년)	65
〈표 I - 4〉 근로세액공제(2005~2006년)	66
〈표 I - 5〉 최대 감소 비율(2005~2006년)	66
〈표 I - 6〉 근로세액 공제(2004~2005년)	67
〈표 I - 7〉 최대 감소 비율(2004~2005년)	67
〈표 I - 8〉 자녀세액공제(2005~2006년)	68
〈표 I - 9〉 국가급부공제	69
〈표 I -10〉 비과세 공제들	72
〈표 I -11〉 비저축 과세소득에 대한 세율	73
〈표 I -12〉 소득세 청구 기한	79
〈표 I -13〉 인적공제	83
〈표 I -14〉 기초(근로자) 기여(2004~2005년)	91
〈표 I -15〉 기초(근로자) 기여(2003~2004년)	92
〈표 I -16〉 기초(근로자) 기여(2002~2003년)	93
〈표 I -17〉 이차(고용주) 기여(2005~2006년)	93
〈표 I -18〉 이차(고용주) 기여(2004~2005년)	94
〈표 I -19〉 이차(고용주) 기여(2003~2004년)	94
〈표 I -20〉 이차(고용주) 기여(2002~2003년)	95
〈표 I -21〉 세율과 SEE 한도	95
〈표 I -22〉 세율과 소득요인	96

〈표 I-23〉 세율과 소득한도	96
〈표 I-24〉 Class 1과 1A 신고기한	97
〈표 I-25〉 자동차 CO ₂ 배출량에 따른 기여	98
〈표 I-26〉 대체연료와 기술로 작동되는 차량에 대한 감세	99
〈표 I-27〉 연료복지혜택에 대한 기여 - 휘발유(액화석유가스 포함)	100
〈표 I-28〉 연료복지혜택에 대한 기여 - 디젤	101
〈표 II- 1〉 법인세율	117
〈표 II- 2〉 유효한계 세율	118
〈표 II- 3〉 신고납부기한	123
〈표 II- 4〉 소명/청구기한	121
〈표 III- 1〉 이중과세공제 매뉴얼 (Double Taxation Relief Manual -DTCONT)의 주요 내용	130
〈표 III- 2〉 영국과 협약을 맺은 국가 리스트	132
〈표 III- 3〉 미국의 이중과세협약의 관련조항	135
〈표 III- 4〉 영국과 한국의 이중과세협약	137
〈표 III- 5〉 영국과 요르단의 이중과세협약	138
〈표 IV- 1〉 세율, 연간공제, 은퇴공제, 동산공제	160
〈표 IV- 2〉 신청기한	162
〈표 IV- 3〉 비사업자산 이득(1998~1999년 이후)	164
〈표 IV- 4〉 사업자산 이득(2002~2003년 이후)	164
〈표 IV- 5〉 사업자산 이득(2000~2001년과 2001~2002년)	164
〈표 IV- 6〉 사업자산 이득(1998~1999년과 1999~2000년)	165
〈표 IV- 7〉 연금공제 단계(1999년 4월 6일부터)	166

제3편

〈표 I - 1〉 과세대상(Taxable supplies)	169
〈표 I - 2〉 EU 타국으로부터의 공급- 원격 판매	169
〈표 I - 3〉 타국으로부터의 취득(Acquisitions from other member states)	170
〈표 I - 4〉 과세대상(Taxable supplies)	170
〈표 I - 5〉 타국으로부터의 공급(Supplies from other member states)	171
〈표 I - 6〉 타국으로부터의 취득(Acquisitions from other member states)	171
〈표 I - 7〉 현금회계기준(Cash accounting: admission to the scheme)	172
〈표 I - 8〉 연간회계기준(Annual accounting: admission to the scheme) ..	173
〈표 I - 9〉 단일세율제도(Flat-rate scheme: admission to the scheme)	173
〈표 I -10〉 VAT 세율	177
〈표 II - 1〉 주세율	194
〈표 II - 2〉 쓰레기매립세 세율	197
〈표 II - 3〉 콘크리트 제조용 골재채취세 세율	197

제4편

〈표 I - 1〉 공제(Reliefs)	209
〈표 I - 2〉 체감 공제(Taper relief)	210
〈표 I - 3〉 빠른 상속 공제(Quick succession relief)	210
〈표 I - 4〉 연간/작은 증여 공제(Annual and small gift exemption)	211
〈표 I - 5〉 빠른 상속에 대한 공제 백분율	230
〈표 I - 6〉 정상세율액에 대한 백분율	234
〈표 I - 7〉 상속세 납부기한	235
〈표 II - 1〉 유가증권과 주식의 판매에 대한 양도나 이전	239
〈표 II - 2〉 재산의 이전(2005년 3월 17일부서의 세율)	240
〈표 II - 3〉 새로운 리스 - 월세에 대한 세금	241

〈표 II-4〉 재산의 거래(2003년 12월 1일부터의 세율)	242
〈표 II-5〉 다른 재산 거래세	243
〈표 III-1〉 주택의 평가등급(잉글랜드)	261
〈표 III-2〉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에 대한 카운슬세 가격대	262
〈표 III-3〉 D구간의 레이트(잉글랜드)	264

제5편

〈표 I-1〉 조세범의 유형과 제재	292
---------------------------	-----

그림 목차

제1편

[그림 I-1] 영국의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추이	22
[그림 III-1] 영국의 조세수입(2008~2009년)	29
[그림 III-2] 영국의 소득세와 국민연금기여금(2008~2009년)	31
[그림 III-3] 영국의 소득세와 국민연금기여금 비중(2008~2009년)	32
[그림 III-4] 영국의 중앙정부 세출구조(2008~2009년)	32

제2편

[그림 III-1] 이중과세협약서의 일반적 체계	133
----------------------------------	-----

제4편

[그림 III-1] 카운슬세와 주민부담금의 구조비교(조세감면·혜택 포함)	271
--	-----

제1편 총론

I. 영국의 경제 및 사회 환경

1. 영국의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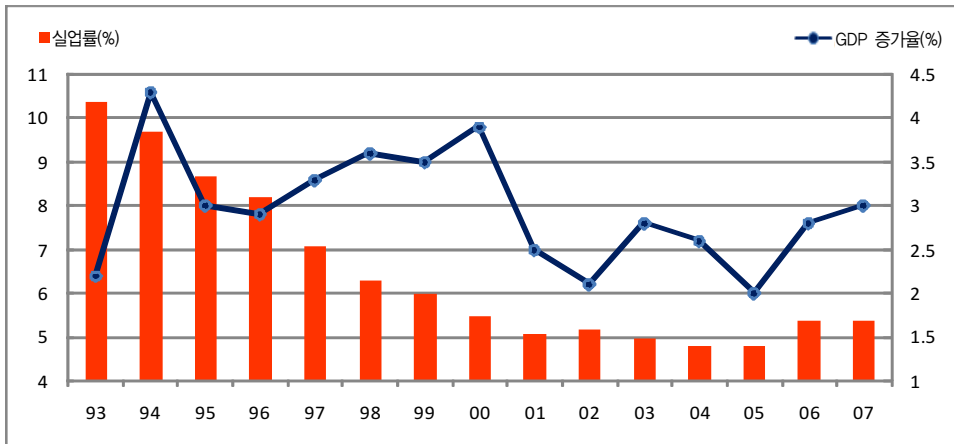
영국은 외국인 거주자를 포함하여 6천만명의 인구를 가진 나라로서 인구 밀도가 높으며 인구 분포는 매우 편차가 심하다. 단일형 국가(unitary state)이며 입헌군주제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의회 형태는 양원제이다.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와 수많은 섬들이 영토에 포함되며 면적은 24만 2천km²이다.

근대에는 다른 여러 나라에 앞서 산업혁명을 이룩하여 오랫동안 세계경제 위에 군림해 왔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유럽 대륙과 북아메리카에서 공업이 급속도로 발달하여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에 있어서의 지위는 점차 저하되었다. 해외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경제의 안정을 꾀했으나 제2차 세계대전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재편성되기에 이르렀다. 그것은 기간산업의 국유화를 비롯한 계획경제의 도입으로 국제수지를 개선하고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여 복지국가의 실현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경제체제이다. 그러나 높은 고용수준을 유지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국제수지의 악화, 대내적으로는 코스트 인플레이션에 의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영국은 1961년부터 유럽경제공동체(EEC) 가입을 신청했으나 프랑스의 거부로 실현을 이루지 못하다가 1971년 6월 마침내 수출입 정책 및 파운드화(貨) 문제에 매듭을 짓고 영·불 양국 간의 최종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1973년 1월부터 정식 가입(경과기간 5년을 계산하면 실질적인 가입은 1978년부터가 됨)하게 되었다.

세계 5위 경제대국인 영국은 금융서비스 산업의 호조에 힘입어 지난 15년간(1993~2007) 호황을 구가해 왔다. 1993~2007년에 영국은 G7에 속한 유럽 경제대국

중 가장 높은 연평균 3% 성장을 시현했다. 캐나다(3.3%), 미국(3.1%)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유럽국가인 프랑스(2%), 독일(1.5%), 이탈리아(1.4%), 그리고 일본(1.3%)보다 훌륭한 성적을 거둔 것이다. 1993년에 10.4%에 이르던 실업률도 지속적인 경제호황에 힘입어 2005년에는 4.8%까지 하락했다.

[그림 1-1] 영국의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추이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B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2008년 중반 이후 금융부실이 확대되고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재정악화와 파운드화 가치하락 등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영국경제는 금융기관의 부실과 정부재정의 악화라는 두 가지 불안 요인을 안고 있는 것이다.

2009년 1월 현재 영국은행의 총부채규모는 7조 9천억파운드로 영국 GDP의 5.5배에 달하며, 외채는 4조 7천억파운드에 이를 정도로 은행의 재무구조가 취약하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버블 붕괴에 따른 국내 부실자산의 증가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상품의 부실에 따른 해외투자 손실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금융불안과 실물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대규모 구제금융 지원, 세수감소 및 200억파운드의 경기부양책 시행 등으로 정부재정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재정적자는 2007년 GDP 대비 2.8%에서 2008년에는 4.6%로 증가하였고, 6천억파운드 이상의 자금이 은행국유화 등 구제금융에 투입됨으로써 정부부채도 2009년

1월 현재 GDP 대비 47.8%로 급증하였다. 금융부실 심화로 인해 구제금융 투입이 추가로 예상되고 있어 재정적자는 GDP 대비 9% 이상으로, 정부부채는 5년 후에 GDP 대비 60~70%로 증가하는 등 재정악화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2009년 영국경제는 전후(戰後) 최저수준의 성장률이 예상되며, 2010년에도 거의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요 예측기관들은 2009년 영국의 경제 성장률이 -3%대 후반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민간소비 위축 등으로 지속적인 내수부진이 예상되는데 2010년 이후에도 회복세는 매우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II. 조세체계

1. 조세체계의 이해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많은 공공부문의 변화와 함께 영국의 국세청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1996년, 1997년에 자진신고 납세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 제도는 납세자가 자신의 과세 수익을 계산하게 하고 자신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계산하도록 한 것이다.

1) 원천징수제도

영국의 과세제도의 중요한 특징은 원천과세되는 소득의 범위이다. 예를 들어, 개인 납세자가 은행에 저축해 놓은 예금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세금은 이 자지불 이전에 이미 공제된다. 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없는 사람들은 대개 국세청에서 이러한 원천징수를 활용한다. 원천징수된 세액은 납세자의 개인적 상황과는 무관하다. 근로자인 납세자는 PAYE(pay as you earn) 시스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다. 비록 이 세금도 원천징수되지만, 징수되는 세액이 납세자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른 원천징수와는 차이가 있다. 소득세 자진신고 납세제도는 일반적인 원천징수의 대체수단인 직접세의 한 예이다.

2) 소득세와 법인세

1965년까지 개인과 회사(법인)는 동일한 법체계에 따라 과세되었다. 1965년에 법인세가 도입되었지만, 개인과 법인에 대한 과세제도 간에는 여전히 많은 유사점이 남아 있다. 소득은 Schedules와 Cases에 따라 과세되어진다. 예를 들어, 연금을 포함한 근로소득은 Schedule E에 따라 과세된다. 전문직 또는 사업수익은 Schedule D Case I

에 따라 과세된다. 납세자가 받는 각각의 소득은 스케줄에 따라 과세된다. 각각의 Schedule은 언제 세금이 납부되어야 하고, 무슨 공제가 이루어지며, 얼마의 세금을 부과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고유의 규칙을 가지고 있다. 법인소득도 개인소득세처럼 같은 Schedule과 Case에 따라 과세된다. 중요한 차이는 법인의 세금은 회계기간 말 이후 9개월 이내에 납부하거나, 한 해동안 네 번에 나눠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세 신고는 매년 9월 30일 기한으로 이루어지며 법인도 법인세 대상이 아니면 소득세 신고납부의 대상이 된다.

소득세는 매년 법개정이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면 2006~2007년 소득세 규정은 2006년 Finance Act에 명시된다. 1803년 재정법에서부터 소득세는 스케줄이 제정되어 분류과세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2003년 재정법에서 스케줄 E가 폐지되고 2005년 재정법에서 스케줄 A, D, F가 폐지되어 2006년 4월 6일부로 더 이상 스케줄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

3) 직접세와 간접세

영국에 있어서 직접세와 간접세의 구분은 이론적인 담세자와 실제 납세자의 일치 여부보다는 과세관청의 차이가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주로 담세자와 납세자가 일치하는 직접세의 경우는 내국세입청(Inland Revenue)에서, 담세자와 납세자가 다른 간접세의 경우는 관세소비세청(Customs and Excise)에서 세무행정을 담당했다가 지금은 직접세, 관세, 간접세 모두 국세청(HM Revenue & Customs)에서 담당한다. 소득세와 법인세, 자본이득세 등이 직접세의 예이며 부가가치세(VAT)는 간접세의 대표적 예로서, 소매상이 판매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지만, 그 물건을 판매한 제조업체에 의해 세금이 징수/납부된다는 점은 우리와 동일하다.

4) 현재의 과세 법령

오늘날 영국에는 수많은 세법이 분화되어 존재한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1988년의 소득세와 법인세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고, 자본공제는 2001년의 자본공제법에 규정되

어 있으며, 자본이득세는 1992년의 자본이득과세법에 의해 과세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1994년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위의 각각의 경우 그 법의 내용은 매년의 재정법(Finance Act)에 따라 바뀔 수 있다. 1970년의 조세행정법(Tax Management Act)은 조세관련 절차의 원형(prototype)을 다루고 있다. 영국의 세법은 이러한 기본적인 세법에 근간을 두지만 대부분의 개정사항은 매년 개정되는 재정법(Finance Act)에서 다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2. 재정법(Finance Act): 연간세법

영국의 조세는 영구세(permanent tax)와 연간세(annual tax)로 구분할 수 있다. 간접세는 대부분 영구세이며 세율이 매년 변화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반면에 소득세·법인세 등은 연간세이며, 경제 여건이나 조세정책에 따라서 세율과 구간, 감면한도 등이 매년 바뀌게 된다. 그러나 연간세라고 하여도 그 세율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법의 형태를 가져야만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연간재정법(Finance Act)을 통해서 정해진다.

연간재정법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은 11월에 발표되는 세입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다. 세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1월에 연간재정법안으로 발표된다. 1994년부터는 연간재정법안을 발표하는 날이 되면 재무성은 일반대중과 국회의원들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충설명자료인 세법해설집(notes on clauses)을 발행하고 있다. 이는 세법의 목표와 각 조항의 내용을 평이한 언어로 알기 쉽게 설명하여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은 보통 1월의 둘째 주 정도에 2차 수정안(second reading)이 작성되어 의회의 소위원회에 의해서 각 조항이 세밀히 검토된다.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는 의회의 최종의결 단계로 넘어가서 5월 초까지는 법이 통과된다.

조세입법에 있어서 기타 입법과정과 다른 특이한 점 중의 하나는 연간세법이 통과되기 전부터 예산안에서 발표된 내용이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예산에 대해서 승인하는 것만으로도 예산안에 있는 조세조항들을 연간세법으로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처럼 예산이 통과되면 세제도 변화할 수 있는 근거는

1968년에 제정된 잠정조세징수법(Provisional Collection of Taxes Act of 1968)에서 찾을 수 있다.

연간세법이 의회에 통과되는 절차는 다른 법이 통과되는 과정과 유사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다. 연간세법은 예산심의회가 끝나는 시점과 2차 수정안이 작성되는 시점의 중간에 발생한다. 법안에 대한 2차 수정안이 작성된 후에는 의회의 분과위원회에서 검토된다. 이 과정은 국회의원들이 법안 수정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 1967년까지는 법안에 대한 논의가 전체위원회(Committee of the Whole House)에서 이루어졌으나, 이러한 과정이 점차 부담스러워져 현재는 대부분이 소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논의되고 일부 필요한 조항만이 전체위원회에 의해서 검토된다. 최근에는 세법 조항의 4개항만이 전체위원회에 보내졌고, 나머지 조항은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되었다. 어떠한 조항이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되어야 하고 어떠한 조항이 전체위원회에 넘겨져야 하는지는 정부와 야당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¹⁾.

위원회에서의 검토가 끝나면, 법안은 의견서와 함께 3차 수정안을 위해 전체 하원에 보내지며 하원에서 작성된 3차 수정안은 상원으로 보내진다. 1909년에는 상원에서 법안을 기각한 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1911년 의회법(Parliamentary Act of 1911)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세법은 상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하원에서 상원으로 발송한 지 한 달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국왕의 동의를 받고 법으로서 인정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산안에 제안된 조세제도 개정이 효력을 발휘하는 시점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소득세의 세율과 과세구간 등에 대한 조항은 보통 회계연도의 시작인 4월 6일부터 효력을 가지지만, 간접세의 인상 시점은 다양하게 정해진다. 1977년에 흔히 Rooker-Wise Amendment라고 불리는 연간세법에 대한 개정이 있었다. 이는 의회가 소득세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세법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 구간과 소득공제액은 매년 전년도 12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률(consumers' price index: CPI)을 기준으로 하여 자동적으로 인상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지수화에 대한 조항은 1980년에 더욱 정교화되었으며, 1993년의 재정법에서는 지수화를 위한 기준월을 9월로 변경하였다.

1) 영국은 내각책임제 형태로 정부가 곧 여당이므로 정부와 여당과 협의는 불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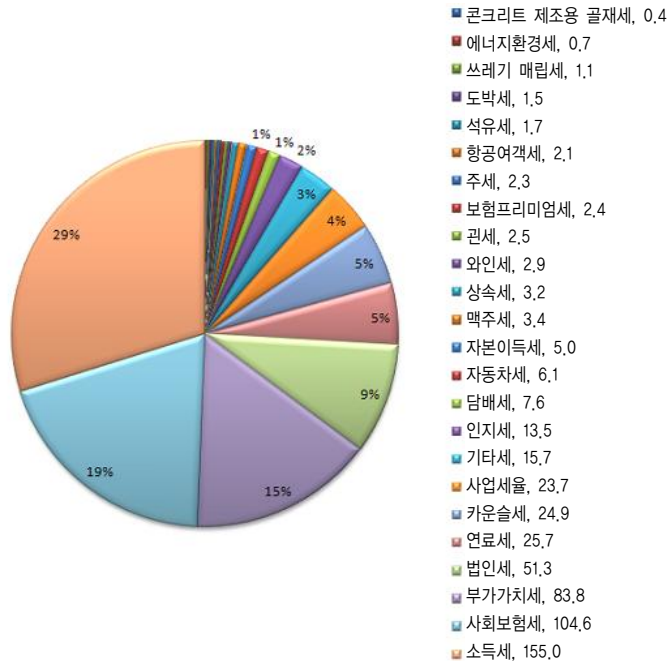
지수화는 주요 소득세 개인소득공제와 과표구간의 조정, 개인과 신탁의 자본이득세의 면세한계점, 상속세의 과표구간 등에 적용된다. 이러한 내용은 지수화 시행령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하지만 새로운 연간세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법의 규정이 시행령의 효력을 대체하게 된다.

Ⅲ. 세수입의 규모 및 구성

영국의 조세는 두 가지 다른 계층(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부 세금을 포함하고 있다. 중앙정부 수입은 주로 소득세(income tax), 국민연금보험(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법인세(corporation tax)와 연료세(fuel duty)로부터 온다. 지방정부 수입은 중앙정부 교부금의 형태로 보조되며, 잉글랜드와 웨일즈는 사업세, 카운슬세(Council tax) 등 조세수입과 수수료와 노상주차요금과 같은 세외수입으로부터 나온다. 2007~2008 회계연도에 정부 조세수입의 총합은(순세금과 국민보험이 GDP의 36.9%를 나타냈을 때) GDP의 39.2%에 달한다.

[그림 III-1] 영국의 조세수입(2008~2009년)

(단위: 십억파운드)



1. 거주지와 (주민등록상의)주소

영국의 모든 소득은 시민권의 유무, 거주 여부, 회사 주소등록지 여부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영국에 주소도 없고 거주도 하지 않는 소득세 납부 의무자는 영국에서 번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에 있어 제한을 받는다. 또한 영국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무역이나 전문경력을 통해 획득한 수입과 영국에 있는 부동산으로부터 취득한 임대수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영국에 거주하고 주소도 있는 사람들은 추가적으로 타국에서 획득한 수입에 대해서도 세금납부의 의무를 진다. 영국에 거주하지만 법적인 주소가 없는 사람들은 (non-dom) 역사적으로 외국에서 번 수입 중 영국으로 송금된 수입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2008년 4월 6일부터, 송금 원칙을 유지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매년 3만파운드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거주지(domicile)는 여기서 기술적인 용어로서, 간단히 말해서 영국에 있는 계속 거주하는 집을 의미한다.

만약 영국 상사법인이거나 중요 기관(본부)이 영국에 있다면(후자의 경우 비록 회사가 다른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관할에 주소지를 두었더라도) 그 회사는 영국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본다.

소득과 수입의 이중과세는 적절한 이중과세 조약에 의해서 조정될 수 있다. 영국은 가장 큰 조약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2. 소득세

소득세는 정부수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사람들은 각각 소득세와 관련하여 다양한 공제혜택을 받는다. 그리고 각 공제한도까지의 수입은 모두에게 면제된다. 2008~2009년도의 65세 이하에 대한 세금공제는 6,035파운드이다.

과세구간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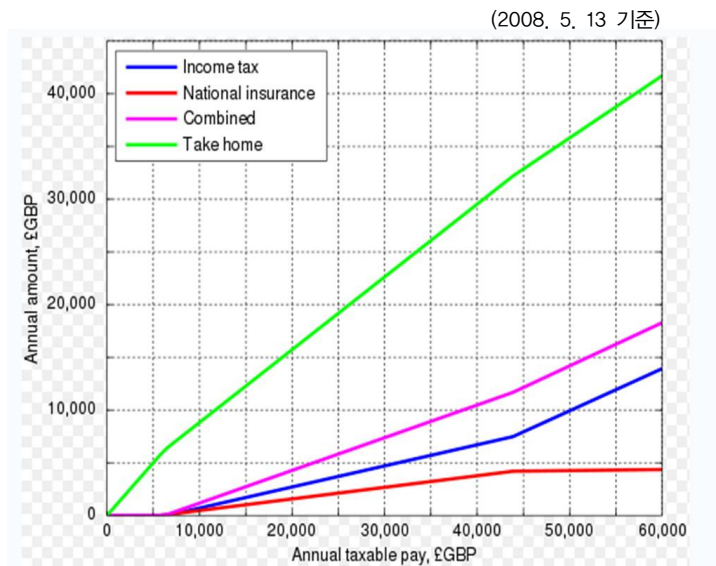
(단위: %, 파운드)

세율 (2008~2009)	배당소득	저축소득	기타소득 (자영업자소득 포함)	구간 (개인공제 이상)
기본 세율	10	20	20	0~34,800
높은 세율	32.5	40	40	34,800 이상

이 표는 2008년부터 개인소득세의 기본세율(Basic rate)을 현행 22%에서 20%로 2%포인트 인하하고, 현행 10%인 최저세율(starting rate) 구간을 폐지한 것을 반영하였다. 재무장관(Chancellor of the Exchequer)인 Alistair Darling은 2009년 예산(2009년 4월 22일)을 발표하면서 15만파운드보다 더 많은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소득세율을 2010년 4월부터 50%로 올릴 것을 예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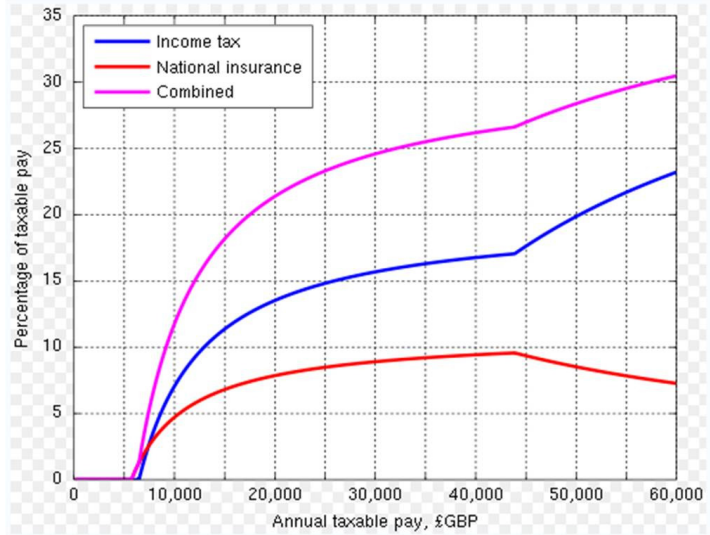
납세자의 소득은 규정된 순서에 따라 평가되는데, 가장 먼저 근로수입에 세금이 부과되고 다음으로 저축소득(이자나 다른 방식으로 벌어들인)과 배당금의 순으로 평가된다.

[그림 III-2] 영국의 소득세 및 국민연금기여금(2008~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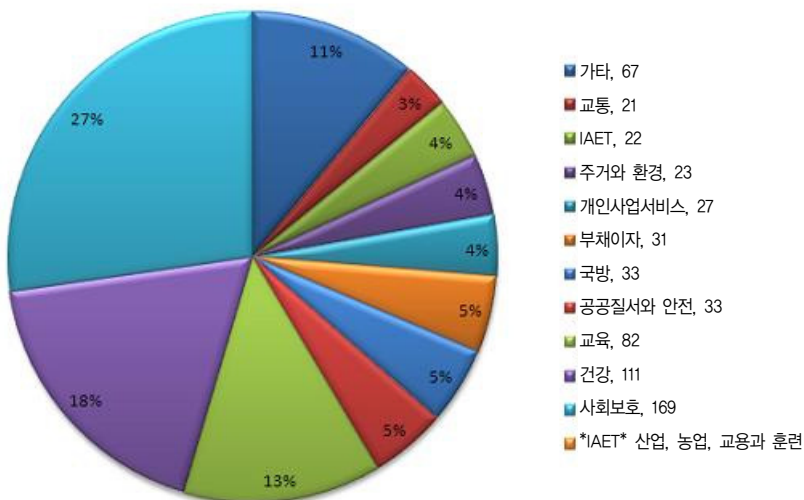
[그림 III-3] 영국의 소득세 및 국민연금기여금 비중(2008~2009년)

(2008. 5. 13 기준)



[그림 III-4] 영국의 중앙정부 지출구조(2008~2009년)

(단위: 십억파운드)



3. 투자 공제액

특정 투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진다.

- 영국 국채(Gilts)

모든 수입이 과세대상이지만,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은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 국가저축계좌

정부가 소유한 은행에 대한 특정 투자에 대해서는(발행당 최대 1만 5천파운드까지) 세금우대혜택을 받으며 증권과 프리미엄 본드(개인 보유 최대 3만파운드까지)는 이자도 과세되지 않는다.

- 개인저축계좌

7,200파운드를 한도로 공제혜택이 주어진다(최대한 3,600파운드를 현금 기금, 그리고 뮤추얼펀드(단위 위탁 그리고 OEIC)나 개인이 보유한 저축이 균형적으로 할당되어야 한다).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10%의 세금을 부과하지만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다.

- 연금기금

이것은 개인저축계좌와 동일하게 세금우대가 주어진다. 전체 공제는 개인의 한계기여율에 따라 정해지며, 고용주 기여분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취급되고 노동자에게 현물복지 형태로 세금의 부과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기금의 25%가 세금면제 대상이며 나머지 혜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다.

- 벤처투자신탁

작은 회사나 최소 5년 넘은 회사의 소유지분에 대해 기금에서 투자한 것이다. 이것은 과세대상이 아니고 개인 소득에서 30%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 기업투자계획

작은 회사의 주식에 대한 3년 이상의 비과세 투자는 20% 세금감면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개인이 자본수익 부채를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이러한 수익은 연간 자본수익 세금공제를 사용해 해결할 수 있다).

○ 보험채권

보험채권은 국외와 국내 투자채권(보험회사에 의해 발행된)을 포함하고 있다. 두 가지의 주요 차이점은 국내 법인세는 수익이 기본 세율로 처리된 것을 의미한다. 각 투자 만료기간의 5%까지의 소득은 세금 부담 없이 설계되어진다. 이것을 기초로 투자자들은 수입의 흐름을 계획할 수 있다.

4. 자본이득세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18%(개인) 또는 법인세율(회사)이 각각 적용된다.

기본 원칙은 개인이나 회사가 동일하다. 이 세금은 오직 자본자산 처분시만 적용되고 그 이득은 처분가와 기본원가(취득원가와 부대비용의 합)의 차이이다. 그러나 2008년 4월 6일부터 부과되는 세율과 감면 규모는 개인과 회사 간에 다르다. 회사의 경우 이익이 물가인상을 감안하여 계산되며 '소매물가지수'에 따라 증가되어, 기본원가에 물가연동 감면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개인은 물가연동 감면 없이 18%로 균일하게 과세된다.

5. 과세연도

영국의 소득세나 기타 세금 과세연도는 4월 6일부터 다음해 4월 5일까지다. 따라서 2008~2009과세연도는 2008년 4월 6일부터 2009년 4월 5일이다.

4월 6일이라는 과세연도의 시작일은 18세기 중반의 사건 때문이다. 영국의 분기일은 전통적으로 지대 납부날이었다. 영국 세제는 Lady Day(3월 25일)로 끝나는 과세연도에 바탕을 두고 있다. 1752년 9월에 영국에서 그레고리력이 율리우스력 대신에 채

택되었을 때, 11일이 빠져나가게 되었다. 세금 당국은 11일간 세수가 감소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었기에 과세연도를 첫해는 4월 5일, 1800년부터는 4월 6일로 옮긴다.

과세연도는 회계연도라고 불리기도 한다. 법인세 부과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3월 31일이다. 2008회계연도는 2008년 4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이며,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회계연도를 정하고 있다.

6. 역사

소득세는 나폴레옹 전쟁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1798년 12월 영국 윌리엄 피트(William Pitt)에 의해 처음 시행되었다. 피트에 의해 새로 시행된 소득세는 60파운드 이상 수입에 0.8333%를 부과하며 200파운드 이상 소득에 대하여는 최고 10%까지 부과하였다. 피트는 소득세로 1천만파운드가 징수되기를 기대했으나, 600만파운드에 그쳤다.

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5종류로 부과된다.

- Schedule A (영국 토지로부터 얻는 임대소득세)
- Schedule B (사업용 토지 소득세)
- Schedule C (국공채로부터 얻는 소득세)
- Schedule D (무역소득, 전문직 및 사업소득, 이자, 해외소득, 기타 소득세)
- Schedule E (근로소득세)

배당소득과 관련한 Schedule F가 추가되었다.

피트의 소득세는 1799년부터 1802년, 앙리 에딩턴에 의해 폐지되었을 때까지 부과되었다. 에딩턴은 1801년 피트의 사임 후 국무총리로서 그 자리를 차지했다. 소득세는 1803년 다시 시행되었다가 반발이 일자 1816년 다시 폐지되었다. 워털루 전쟁 1년 후 영국 소득세는 Sir Robert Peel에 의해 1842년 소득세법(Income Tax Act)에 의해 다시 시행된다. 보수당은 1841년 투표에서 소득세 시행을 반대했지만, 증가하는 적자재정에 따라 새로운 재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에딩턴 모델에 기반한 새 소득세는 150파

운드 이상의 소득에 부과한다.

영국 소득세는 시간에 따라 변화했다. 처음에는 그 소득의 수익자와 관계없이 과세 하였지만, 지금은 오직 수익자에게만 부과한다. 대부분 회사는 법인세가 시행된 1965년에 소득세 법망을 빠져나갔다. Schedule 역시 변화하였다. Schedule B가 1988년에 폐지되었고, Schedule C가 1996년에, Schedule E가 2003년에 폐지되었다. 남은 스케줄도 소득세에 의해 대체되었다. Schedule A와 Schedule D는 법인세를 위해 아직 존재한다. 가장 높은 세율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99.25%였고, 1970년대까지 약 95%로 유지되었다.

1974년에 전쟁 이후로 83%의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되었다. 2만파운드 이상 소득에 적용하고, 미수수익 15% 특별과세를 포함하면 98%의 한계세율이 부과될 수 있었다. 1974년에 75만명이 이 최고세율 대상자였다. 간접세 지지자인 마가렛 대처(Margaret Thatcher)는 1980년대 개인소득세율을 낮추었다. 1979년 선거에서 승리 후 첫 예산에서 최고 세율을 83%에서 60%로 인하하였고, 기본 세율도 33%에서 30%로 낮추었다. 기본 세율을 3개년도 연속 줄여나갔는데 29%, 1987년 27%, 1988년 25%, 1988년의 최고세율은 40%이다.

재정법(Finance Act) 2004는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사전보유자산세(pre-owned asset tax)로 알려진 소득세제로 정비했다.

7. 국민연금보험

정부 수입의 두 번째로 큰 재원은 종업원, 고용주, 자영업자가 납부하는 국민연금보험금이다. 소득세와 달리 Class 1(근로자)는 주당 105파운드와 770파운드 사이(상한과 하한 사이)에서 소득금액에 따라 부과된다. 주당 90파운드(하한)와 105파운드(부과대상 하한) 구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보험납부 편익을 감안해 0% 세율이 적용된다. 보험료는 11%가 부과되지만 연금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1.6%가 감면된다. 최근 상한(upper threshold) 이상 소득에 대해 1%가 추가 부과되었다. 고용주는 주당 105파운드 이상 소득에 대해 12.8% 세율로 추가적으로 부과되며, 상한규정이 없어 총소득에 대해 종업원당 12.8%가 부과된다. 여기에 더해 고용주는 현물복지혜택에 대해 Class

1A(12.8%)가 그리고 PAYE조정협약에 따라 지불되는 세금과 복지혜택에 대해서도 Class 1B(12.8%)를 납부해야 한다.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Class 2의 정액세율과 Class 4가 부과되고, 기혼여성·자원봉사 노동자들에게는 별도의 체계가 적용된다.

8. 부가가치세

정부 수입의 세 번째로 큰 재원은 부가가치세로서 재화와 용역에 대해 표준세율 17.5%(2008년 12월에서 2009년 12월 사이에는 일시적으로 15%)를 부과한다. 이것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의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문서에 정부는 18.5%의 부가가치세를 계획중이지만 재무성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항이라고 말하고 있다.

일부 재화와 용역은 세금이 면제되고, 그리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5%(국산연료와 같은)나 0%(영세율, 대부분의 음식과 어린이들의 옷)로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사치재에는 일반 세율을 부과하는 것과는 달리 필수재에는 세금 부과를 줄이기 위하여 면세가 된다. 그러나 이들 품목의 명확한 구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례로 2001년까지 여성 생리대는 사치재나 비필수제로 생각하고 일반세율을 부과하였다.

9. 법인세

정부 수입의 네 번째로 큰 재원은 법인세로서, 회사의 이익에 대해 부과하며 150만 파운드 이상 과세소득에 대해 28%의 세율로 부과한다. 2008~2009년에는 150만파운드 이하에 대해 0~19%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이 구간 사이에 한계공제가 주어졌다. 2006년 4월 1일부터 0% 초기세율은 폐지되었다.

북해에서 유전개발에 종사하고 있는 회사에는 추가 부과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6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이익에 대해 20%를 부과한다(이전에는 세율이 10%였다).

10. 소비세

소비세는 유류(motor fuel), 주류(alcohol), 담배(tobacco) 등에 부과한다.

11. 인지세

인지세는 주식과 유가증권 양도시 0.5% 세율로 부과한다. 현재 인지세는 부동산 거래세(stamp duty land tax)와 주식거래세(stamp duty reserve tax)로 발전하였는데, 부동산증서 양도와 주식과 유가증권 양도 각각에 대해 4%까지와 0.5%로 각각 부과 하고 있다.

12. 상속세

상속세는 '가치의 양도'에 대해 부과한다. 즉,

1. 사망한 자의 재산
2. 사망 후 7년내 이루어진 증여
3. '생애이전(lifetime chargeable transfers)', 이것은 신탁의 종류를 의미한다.
2006년 예산에서 법률제정을 발표했었으나 아직 이 범위는 이전 신탁들보다 더 확장되어 제정되지 않았다.

첫째 구간('nil rate band'로 알려진)은 비과세이다. 이 구간(threshold)은 현재 31만 2천파운드(2008~2009과세연도)로 정해져 있다. 비록 이 구간이 한도가 매년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세가 부과되는 과세소득 범위에 600만파운드가 포함되어 있어 주택 가격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는 데 실패하였다. 이 구간 이상은 세율이 40%이고, 모든 상속세는 유언이 집행되기 전 유언 집행자나 부동산 관리자가 세금을 내야 한다.

영국에 거주하는 배우자 간의 증여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최근의 변화는 배우자간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를 활용하여 세부담을 감소시키고 있다. 사망 7년 전에 한 증여는 비과세이다. 사망 3~7년 사이라면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이 조치에 있어서 중요한 예외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편익원칙의 보전(reservation of benefit rule)'으로 만약 증여 후 증여한 재산으로부터 증여자가 이익을 얻는다면(예를 들어 집을 줬지만 계속해서 증여자가 거주하는 경우) 증여에 대한 상속세 부과는 적절하지 않다.

13.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연료세(fuel duty), 차량소비세(vehicle excise duty)를 포함한다. 다른 요금과 수수료는 런던 혼잡세, 다양한 수수료 법령에 포함된 강제적 차량 검사와 차량 등록, 그리고 노상주차 영역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14. 사업세

사업세는 대개 비주거용 레이트로 불리며, 영국 레이트나 비주거용 재산 소유에 대한 세금이다. 사업세는 1990년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의해 도입되었다. 1601년 엘리자베스 빈곤법(Elizabethan Poor law)의 세율 시스템이 현대화된 것이다. 따라서 사업세율은 이전의 많은 특징들을 유지했고, 오래된 형태의 세율을 취하고 있다.

사업세율은 지방정부의 재원이며 그들에 의해서 징수되었지만, 수령한 것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재원을 모아서, 다시 재분배하는 방식을 취한다. 2005~2006년에 사업세는 199억파운드가 징수되었고, 전체 영국 세수의 4.35%를 차지했다.

사업세는 재산세이며, 비주거용 자산에 과세할 수 있는 가치가 파운드로 평가된 것이다. 과세할 수 있는 과표는 기본적으로 연간 자산임대 비용이 일련의 가정에 따라 특정시점의 가치화되도록 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에 의해서 실제 정해진 승수를 활용하여 세금이 부과되고 공제가 지원된다.

IV. 최근의 조세개혁 동향 및 향후 전망

영국의 세법체계는 대륙법계와는 상이한 형식을 취하는 영미법 계통으로 판례를 통해, 그리고 매년 제정되는 세입예산법(Finance Act or Bill)을 통해 세제가 운용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은 의회에 주어져 있다. 권리장전(Bill of Rights)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세금부과의 배타적인 권리가 국회에게 주어진다. UK의회는 웨스트민스터에 있지만 스코틀랜드의 의회는 에딘버러에 위치하며 스코틀랜드에 적용되는 조정(tax variation)의 권한이 주어진다. UK로 지칭되는 영국은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를 포함한다.

상위법체계로 EC는 세금을 부과하는 권한을 가진다. EC는 1975년부터 농업세(agricultural levies), 관세(customs duties)와 부가가치세의 일정부분(1.4%)의 수입을 징수한다. 아울러 2000년 10월 2일 발효된 시민권리법(Human Right Act 1988)의 제정으로 시민권리에 대한 유럽협약에 따른 과세권 제한이 영향을 받고 있다.

영국은 군주제 국가인 만큼 법적으로 국왕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입법부의 불가분의 구성 부분이며 사법부의 총수이다. 영국 헌정의 중심은 의회제도이며, 영국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하 양원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을 때에는 하원의 의사가 우선되는 입법상의 하원 우위원칙이 확립되어 있다.

영국의 입법절차는 정부 우선이며 정부 중심적이다. 정부제출 법률안은 약간의 수정이 있어도 원안의 실질적 내용은 거의 변경되지 않고 의회를 통과한다. 영국에서는 13세기 말경부터 법원에서 판결하는 경우 선례를 인용하는 관행이 생겼으며 15, 16세기에 와서는 어떤 법적 문제에 관하여 같은 취지의 선례가 있으면 법원은 이를 따르는 관례가 성립되었다. 18세기에 와서는 단 하나의 선례가 있더라도 그것에 따라야 한다는 선례 구속의 원칙이 확립되었다.

2008년 11월, 영국 재무성이 발표한 Pre-Budget Report 2008에서 경기대책 이외에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일시적인 재정운영 준칙(fiscal rule)을 도입했다. 지금까지

지의 재정준칙(golden rule²⁾, sustainability rule³⁾)을 정지키는 대신 2015년 경기조정 경상재정수지를 균형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재정운용 목표로 설정하고,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는 2010년 이후 매년 경상재정수지를 GDP 대비 0.5%포인트 이상 개선한다는 일시적인 재정운영준칙을 도입하였다. 또한 일시적인 재정운영준칙 달성을 위한 재정건전화 계획도 마련되었다. 2010년 4월부터 15만파운드 이상의 소득구간에는 50%의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이 신설되며, 2011년 4월부터는 고소득자 연금에 대한 세금 경감이 감축되고, 주류 및 담배 관련세금의 2%포인트 인상, 연료세(fuel duty), 쓰레기매립세(landfill tax), 자동차소비세(vehicle excise duty) 인상이 예정되고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보험료를 역시 2011년 4월부터 인상될 예정이다.

1. EC법

EC협정은 회원국의 의회가 지닌 과세권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 물론 이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는 회원국가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부분이며 조세조화를 위해서 필요최소한으로 운영된다. 90조에서 93조의 내용이 조세관련이며 90조에는 수입품의 국내제품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91조에서는 수출품에 대한 환급 수준이 수입품목에 대한 과세 수준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2조에서는 EC지역내 부가가치세의 공통 적용을 위한 조세조화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94조는 일반적으로 유럽의회가 각국 정부로 하여금 유럽이 공동시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EC 법원에서 판례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원칙은 차별금지 원칙이며 다음으로는 자본이동의 자유가 강조되고 있다.

2. 세법

영국의 세법은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다. 자주 개정되는 바람에 누더

2) 경기순환에 걸쳐 공적부문 차입을 투자 목적으로 한정하여 투자지출 이외의 경상적 지출은 조세수입 등의 경상적 세입으로 조달하도록 함.

3) 매년 공공부문 순채무의 GDP 대비 비율을 안정적인 수준(40%)으로 유지해야 함.

기 세법 내지는 비틀거림이라는 비난도 받지만 원래 법규정과 함께 수정법규 내용이 병행해서 유지되기도 하고 대체하기도 한다. 개별세법 규정의 경우는 여러 해에 걸친 세입법의 내용이 통합되어 형성되기도 한다. 소득세의 경우 1918년, 1952년, 1970년, 1988년, 법인세의 경우 1970년과 1988년, 자본이득세는 1979년, 1992년, 자본이득에 대한 법인세는 1970년, 1992년, 부가가치세는 1983년, 1994년, 상속세는 1984년이 포함된다.

하지만 최근에는 세법다시쓰기위원회(Tax Law Rewrite Committee)의 활동을 통해 상대적으로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산물로 두 종류의 소득세법 즉, Income Tax(Earnings and Pensions) Act 2003과 Income Tax(Trading and Other Income) Act 2005가 만들어졌다. 소득세는 매년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세입법에 따라 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영국의 주요한 세법 제정현황은 다음과 같다.

- 1970년 조세관리법
- 1970년 관세와 소비세법
- 1988년 소득세와 법인세법
- 1992년 자본이득세법
- 1992년 사회보장운영법
- 1994년 부가가치세법
- 2001년 자본공제법
- 2003년 소득세법
- 2005년 소득세법
- 그 밖의 주요 개정사항들은 매년 재정법(Finance Act) 제정을 통해 다루어진다.

영국의 세법은 영구세(permanent tax)와 연간세(annual tax)로 구분할 수 있다. 간접세는 대부분 영구세의 형태이고, 세율이 매년 변화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반면, 소득세와 법인세 등은 연간세이며, 경제여건이나 조세정책에 따라 세율과 구간, 감면한도 등이 매년 바뀌게 된다. 연간세의 경우에도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거쳐 법의 형태를 취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재정법을 통해서 정해

진다.

재정법에 대한 구상은 11월에 발표되는 세입예산안에 포함되며 세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1월에 재정법안으로 발표된다. 재정법안을 발표하는 날에 재무성에서는 일반대중과 국회의원들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보충설명자료인 세법해설집((notes on clauses)을 발행하고 있다. 재정법안은 보통 1월 둘째 주에 2차 수정안이 작성되어 의회의 소위원회에서 각 조항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 의회의 최종 의결단계로 넘어가서 5월 초에는 법이 통과된다. 재정법이 통과되기 전부터 예산안에서 발표된 내용이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조세법이 기타 입법과정과 다른 점이다. 예산에 대해서 승인하는 것만으로도 예산안에 있는 조세조항들을 연간세법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 예산이 통과되면 세제도 변화할 수 있다는 근거는 1968년에 제정된 잠정조세징수법(Provisional Collection of Taxes Act of 1968)에서 찾을 수 있다. 소득세의 세율과 과세구간 등에 대한 조항은 보통 회계연도의 시작인 4월부터 효력을 가지지만, 간접세의 인상 시점은 다양하게 정해진다.

3.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

영국의 세법은 영국의 영토에 모두 적용되며 세 개의 분리된 법체계에 따라 집행되는데 첫째가 잉글랜드와 웨일즈, 둘째가 스코틀랜드, 셋째가 북아일랜드이다. 모든 지역의 주민에게 동일하게 세법이 적용되지만 그 법이 적용되는 체계는 상이할 수 있다. 스코틀랜드의 형법이 스코틀랜드 주민의 탈세에 적용되며 이러한 내용은 북아일랜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4. 판례법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는 법원 체계가 다르지만 국세청의 결정이 반복되는 경우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나 법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영국에서는 판례가 세법을 보충하는 권한을 지닌다.

5. 국세행정 관행

법은 아니지만 국세청(HMRC)의 관행에 대한 명백한 표명은 실제 세법을 집행하는데 중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최근의 주요한 정책 변화는 국세청이 이러한 정보공개를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법에는 나와 있지 아니한 것을 다루며 이를 공개한다는 것, 사전해석(advance ruling)이라는 점, 1998년 4월부터는 사후해석(post-transaction ruling)도 가능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국세청 직원의 매뉴얼이 대중에게 공개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제2편 소득세제

I. 소득세

1. 서론

소득세는 나폴레옹 전쟁의 전비 조달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이후 점차 영구적으로 정착된 영국의 기간세목이다. 개인의 소득에 대한 정확한 정보파악이 필수적인 소득세의 특성으로 인한 시행시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소득을 몇 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이들에 대하여 과세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저축소득, 비저축소득, 배당소득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동일범주 내의 소득을 먼저 파악한 뒤 이들에 대해 각각 누진과세하고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통해 최종세액을 구하는 일종의 분리과세체계를 취하고 있다.

2003/2004 재정회계연도 예산 기준으로 개인소득세는 단일세목으로 세수 비중(28.5%)이 가장 높으며 소득세의 과세기반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넓어 현금소득뿐만 아니라 현물소득(benefit in kind)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회사가 제공하는 차량 및 연료비, 회사가 제공하는 저울 또는 무이자 대부, 무상주택에 따른 혜택 또한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2002/2003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간 공제액 7,700파운드를 초과하는 순자본이득(자본이득에서 자본손실을 차감한 규모) 또한 과세대상이 된다. 예컨대 단기매매에 따른 주식양도차익은 자본이득으로 과세대상 소득이 된다.

한편 영국의 경우 국제간 인적자원의 이동이 빈번하여 납세의무자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누어 과세하고 있다.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영국에 거주하거나 4년 연속 영국 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정기적으로 영국을 방문하는 경우 거주자로 간주한다.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취득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세의무가 있으며 비거주자는 영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

영국에서 개인은 회계연도(fiscal year) 동안 발생한 그들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한다. 회계연도는 4월 6일에서 다음해 4월 5일까지이다. 법령 규정에 따라 각각의 소득에 대해 특별한 규칙을 부여하기 위해 구분과세(Schedular) 시스템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소득은 근로임금, 자영업 소득, 임대료, 이자, 그리고 배당금 등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영국 거주민들은 모든 소득에 대해 출처의 소재와 상관없이 납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영국에 주소지를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영국에 거주하는 개인은 대부분의 경우 해외로부터의 소득에 대해 그것이 영국으로 송금되는 한에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비거주자들은 일반적으로 영국 내에서의 소득에 대해서만 영국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다. 근로소득의 경우 그 소득이 영국 내에서의 근로에 의한 것인 한 영국정부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세금을 늦게 내거나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자와 벌금이 부과된다. 기혼자들은 세금의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다루어진다. 개인은 그들의 일생 동안에 이루어진 증여나 그들이 죽었을 때의 유산의 가치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과세방법은 분류된 이들 소득을 기본적으로 종류별로 분류 후 합산하여 세율을 곱함으로써 총세액을 산출하지만 각종 소득에 대해 공제가 존재하며 또한 일정 한도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경우가 있어 모든 소득을 일대일로 합산과세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자본이득의 경우 소득으로 보지 않는 시각이 강해서 1962년 이후에서야 자본이득세를 도입하였고 1988년 이후 종합과세를 실시하였으나, 다시 1999년부터 7,100파운드(현재는 7,700파운드) 이상의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고 있다.

소득세 징수시점은 소득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는데 Schedule E 항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보통 PAYE(pay as you earn)제도를 적용하여 소득이 발생할 당시 원천징수하고 소득세 신고납부시 사후 정산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자 납세액을 개인이 직접 계산하지 않고 단지 다양한 소득을 보고하는 수준으로 신고의무를 종결한다.

영국에 소득세가 처음 시행된 것은 앞서서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1798년 12월 윌리엄 피트(William Pitt) 수상에 의해서이다. 피트 수상의 새로운 누진소득세제는 60파

운드 (2007: 4만 8,700파운드) 이상의 소득에 2펜스의 세율(0.8333%)로 시작된다. 최고세율은 200파운드 이상 소득에 대해 2실링의 세율(10%)을 적용했다. 피트 수상은 새로운 소득세 도입을 통해 1천만파운드의 수입을 기대했으나 1799년 수입은 600만파운드에 그쳤다. 소득세는 스케줄 5로 구분과세되었다.

영국의 소득세는 시간을 두고 변화했다. 초기에는 수혜자가 누구든 소득이 발생하면 부과하였으나 현재는 소득자에게만 부과된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1965년 법인세가 도입되면서 소득세체계에서 제외되게 되었다. 또한 스케줄 체계도 변화를 거듭해 스케줄 B(상업용 토지임대 소득)는 1988년, C(증권소득)는 1996년, E(근로소득)는 2003년에 각각 폐지되었다. 소득세 목적의 나머지 스케줄들은 2005년 소득세법에 의해 대체되었으며 스케줄 F(배당소득) 역시 폐지되었다. 법인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스케줄 A(토지임대소득)와 D(사업소득)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최고세율은 한때 99.25%를 기록하였고 1970년대 후반까지 95% 수준을 유지했다.

1974년 최고 세율이 다시 83%까지 높아졌는데 이는 2만파운드 이상 소득의 경우 여기에 15%의 투자와 배당에 대한 비근로소득가산금을 포함하면 개인소득세의 한계세율이 98%에 달했다. 실제 단지 75만명의 사람들이 최고세율 적용 대상이었다. 대처수상은 간접세를 선호하여 1980년대에 소득세율을 인하했다. 1979년 취임 이후 최고 세율을 83%에서 60%로, 기본세율은 33%에서 30%로 각각 인하였고 1988년에는 최고 세율은 40%, 기본세율은 25%로 각각 낮췄다.

2. 납세의무자

가. 거주자와 비거주자

개인인 납세의무자는 ‘거주자’ (resident)와 ‘비거주자’ (non-resident)로 구분되며, 거주자는 다시 ‘통상적인 거주자’ (ordinary resident)와 ‘비통상적인 거주자’ (non-ordinary resident)로 구분된다. 또한 ‘주소’ (domicile) 및 ‘영국 국민’ (British subject)이라는 개념이 중요시 된다.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되며, 비거주자는 영국이 원천인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지만, 통상의 거

주자인가 아닌가, 영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영국의 국민인가 아닌가에 따라 과세소득의 범위가 다르게 되며 극히 복잡하게 된다. 이하 거주자, 주소, 통상거주자, 영국국민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

다음의 경우 영국의 거주자로 간주한다.

- 실제로 영국에서 1년에 183일 또는 그 이상을 거주한 자
- 영국을 매년 방문하고 적어도 4년 연속 1년의 방문일수가 평균 91일 또는 그 이상인 자

가) 통상의 거주자

단순한 거주자와 통상의 거주자와의 구분이 판례에서 나타나고 있다. 통상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거주기간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니며, 오히려 생활의식이 어떠한가가 문제가 된다. 그러나 어떤 과세연도에 영국에 살고 있지 않았더라도 그 부존재가 그 사람의 통상적인 생활의식에 있어 예외에 불과한 것이면 그는 통상의 거주자가 된다. 또한 영국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거주자로 된 경우에는 통상의 거주자로 되지 않으나, 그 왕래가 규칙적이며, 매년 영국에서 상당한 정도의 기간을 보내는 것이 그 사람의 통상 생활양식이 되어 있는 사람은 통상의 거주자로 본다.

나) 주소

주소는 세법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영국의 일반법의 개념이며, 국적, 거주자 또는 통상거주자와 구별된다. 한 개인의 주소는 일반적으로, 그가 그의 영구적인 조국이라고 주장하는 장소이다. 즉, 그의 현 주소가 어디이든 관계없이, 그가 결국 돌아오고자 하는 장소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한 개인이 더 이상 돌아오고자 하는 의도가 없는 경우에도 주소지가 계속해서 그를 따라다닐 수도 있다.

다) 영국 국민

영국 국민의 정의는 1948년 국적법에서 정하고 있다. 국적법 일반규정 제1조에 의하면 영국 국민이란 UK, 북아일랜드, 영연방제국 또는 식민지에서 출생한 자, 그리고 여기에 귀화한 자를 말한다. 영국 국민인가 아닌가는 과세소득의 범위 및 인적공제의 청구에 있어 중요한 것이며 또한 통상의 거주자가 영국 국민인 경우에는 국외에 일반적인 주거 목적만으로 영국을 떠난 경우에도 통상의 거주자로 취급되게 된다.

3. 과세소득

소득의 종류는 크게 6개 항목으로 분류하며 이를 A부터 F까지 구분한다⁴⁾. A항목은 토지와 건물로부터 얻는 임대소득, B항목은 사업성 산림소득, C항목은 영국정부나 외국정부가 발행한 국공채로부터 얻는 소득을 포함한다. D항목은 자영업자소득과 사업소득을 포괄하여 6개 종류로 분류한다. E항목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포함하며 F항목은 배당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다시 말해서 영국에서 소득은 구분과세 시스템(Schedular system)에 분류된 것에 따라 과세되어 왔다. 과세소득의 범위는 Schedule A의 영국 내의 토지와 건물의 임대료부터 시작해서 Schedule F의 영국에 본사 주소로 둔 회사의 배당소득에까지 이른다. Schedule B 와 C는 폐지된 상태이고, Schedule D의 6가지 형태에는 사업소득(trade profits), 전문직 및 사업소득(profits of a profession or a vocation), 이자 또는 연금소득(interest, annuities and other annual payments), 해외 유가증권 수익(foreign securities), 기타 해외재산소득(income from foreign possessions), 그리고 다른 Schedule하에서 과세할 수 없는 기타소득이 있다. 그리고 Schedule E에는 과세대상(거주자, 비거주자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가 있다. 마지막으로 배당소득인 Schedule F에는 영국 소재 기업으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이 포함된다. 회계연도는 매년 4월 6일에서 다음해 4월 5일까지이다.

4) 물론 2006년부터는 법인세법에서는 여전히 스케줄이 유효하지만 소득세에서는 스케줄이 폐지되었다.

가. 소득의 종류

1) 근로소득(Schedule E)

근로소득은 Schedule E 에 의해 일반적으로 개인이 근로소득을 얻은 해에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Schedule E는 3 종류로 나뉜다.

- 1종은 소득원천이 무엇이든 간에 영국의 거주자와 통상 거주자의 소득에 적용된다(ICTA 1988s19(1)).
- 2종은 영국의 비거주자거나, 통상 거주자가 아닌 자의 소득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적용된다(ICTA 1988s19(1)).
- 3종은 영국 영토 밖에서 소득을 얻은 영국 거주인의 소득, 영국으로 송금되는 소득, 그리고 1종과 2종에 속하지 않는 이들의 소득에 대해 적용된다(ICTA 1988s19(1~4)).

외국에서 365일 이상 머무는 과정에서 근로를 하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 근로소득은 영국의 세금에서 전액 공제된다. 비록 영국의 거주자이고 통상 거주자이지만 영국에 주소지가 없는 고용인인 경우, 외국에서 영국 비거주의 고용주와의 고용계약하에서 근로를 한다면, 그의 근로소득은 그 소득이 영국으로 송금되어 들어오는 한도 내에서만 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들의 연금 또한 Schedule E하에서 과세된다.

세금은 대개 Pay As You Earn(PAYE)사업계획인 E항하에서의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의 원천에서 고용주에 의해 원천징수된다. 모든 추가적인 납세의무 또는 환급 요구는 연말 이후에 정산된다. 고용주에 의해 직접적으로 피고용인에게 지급되거나, 제3자에 의해 지급되는 부가급부(부대비용에 대한 보상금)는 근로자의 봉급으로서 E항 하에서 과세된다. 매우 한정적이지만, 일정한 부가급부는 납세의무에서 제외된다. 자동차 그리고 고용주에 의해 제공되는 편의 제공(fringe benefit) 같은 이익의 경우가 그러한 경우이다.

2) 사업소득(Schedule D)

영국에 거주하는 이들은 영국 내에서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한 상업이나 전문직 또는 자영업으로부터의 이익에 근거한 D항의 1종 또는 2종에 의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영국 거주자가 영국 밖에서의 상업이나, 전문직 또는 자영업을 영위함으로써 산출한 이익은 D항의 5종에 의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영국 밖에서 영국의 주소지를 가진 사람이 아닌 영국의 거주자에 의해 수행된 상업이나, 전문직 또는 개인사업(자영업)으로부터 나온 이익이 영국으로 송금되는 한도 내에서는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영국 거주자가 아닌 사람도 영국 내에서 자영업 또는 전문직을 수행하여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부동산 소득(Schedule A)

영국의 토지와 부동산으로부터의 모든 소득은 Schedule A에 의해 과세된다. 여기에는 가구가 갖추어진 임대주택, 임대 트레일러, 그리고 숙박시설이 있는 보트도 포함된다. 개인은 영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국의 토지와 부동산으로부터 1년의 회계연도 동안에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 대해 과세 의무를 진다. 과세이익은 토지와 부동산으로부터의 총소득에서 공제 가능한 모든 지출을 공제함으로써 산출된다. 과세표준은 회계연도 동안에 발생한다. 과세표준은 대개 단기 임대차계약 수익에 근거하기 보다는 모든 항목들에 근거해서 발생한다. 즉, 사업에서의 소득과 지출을 계산하는 것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공제 가능한 지출을 결정하는 규칙은 거래소득에 과세하는 데 사용되는 Schedule D의 Case I 에서와 같다. 즉, 현금표준이 사용될 수 있을 때, 부동산으로부터의 소득이 아주 낮지 않다면 증가액(이자, 연체료) 표준이 사용된다. 일정한 경우, 영국에 있는 부동산의 수입은 상업으로 인한 수입처럼 취급된다. 이 경우 그 부동산 수입에 대해서 D항의 1종에 의해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영국에 있는 부동산의 수입에 대해서는 A항에 의해서 세금이 부과될 것이다. A항하에서는 거주자, 통상 거주자 또는 영국에 주소지를 가진 사람이라는 수납인의 지위에 관계없이 세금을 납부하

여야 할 의무가 있다.

영국 밖의 영국 거주자에 의한 부동산 수입은 D항의 5종에 의해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만약 그 사람이 영국의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수입이 영국으로 송금 되는 경우에만 세금이 부과된다. 재산소득의 경우 1995년에 개정되어 오늘에 이른다.

4) 이자와 배당소득(Schedule F)

영국에서건 외국에서건, 기본세율(Basic rate) 납세자의 경우 이자와 배당금은 10%의 기초세율(Starting rate)에 의해 세금이 부과된다. 기초세율로 부과된 세금은 일반적으로 영국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서 공제된다. 영국의 배당금과 세액공제를 운영하는 전가(imputation) 제도는 기초세율의 납세의무를 면제한다. 높은 세율(high rate) 납세자는 배당금이나 이자 수입에 대해 40%의 비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영국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이익에 대한 비영국거주자들의 소득세 납부의무는 소득의 원천에서 감면되는 세금이나 세금공제에 의해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세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와 같은 수입에 대해 비거주자들은 높은 세율의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소득의 원천에서 공제되는 소득세는 납세액 총액을 초과한다면 환급된다. 그러나 배당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반환되지 않는다.

5) 연금소득(Schedule E, D)

영국 연금은 E항에 의해서 세금이 부과된다. 외국연금은 10%가 공제된 후에 D항의 5종에 의해서 세금이 부과된다. 종신연금으로부터의 연간 부담금은 자본수익의 한 부분으로서 다루어진다. 그러한 범위에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표 1-1〉 과세소득 분류체계¹⁾

Schedule	소득의 종류	과세의 표준
Schedule A	영국 내 땅과 건물의 임대료	과세연도동안의 임대료 - 공제할 수 있는 지출
Schedule D		
Case I	상업 수익	대개 현 과세연도가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순이익이 된다.
Case II	전문직 또는 사업 수익	
Case III	영국의 이자 또는 연금	과세연도에 받은 소득 지출에 대한 공제는 없음.
Case IV	외국 유가증권 소득	납세자가 영국의 거주자이지만 통상적인 거주자는 아닌 경우, 또는 영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가 아닌 경우에 그 납세자가 과세연도 동안에 받은 연금으로부터의 소득에서 백분을 공제에 의해 공제된 소득
Case V	외국 재산 소득	
Case VI	다른 스케줄하에서 과세할 수 없는 소득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 - 승인된 (appropriate) 지출
Schedule E		
Case I	영국의 거주자이고 통상의 거주자인 노동자	영국 또는 외국에서 수행된 직무인 경우의 과세연도에 발생한 모든 소득
Case II	영국의 거주자가 아닌 노동자 또는 거주자이지만 통상의 거주자가 아닌 노동자	영국에서의 직무에 대한 소득
Case III	영국의 거주자이고 통상의 거주자인 자가 완전히 외국에서 벌어들인 '외국봉급' 영국의 거주자이지만 통상의 거주자가 아닌 자의 외국에서의 소득	과세연도에 영국에 송금한 금액
Schedule F	영국-거주회사에 대한 배당액	과세연도의 배당액 + 수반되는 세금감면권

나. 과세표준의 계산 사례

예를 들어 설명을 하는 것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스미스씨는 영국에 주소를 둔 거주자이다. 그는 기혼자이고 영국 회사에 고용되어 있다. 2007년 4월 5일 현재 1년 동안의 소득과 자본이득은 다음과 같다.

		(단위: 파운드)
봉급		75,000
Benefits in kind:		
회사 차	7,000	
사회보장기여금	500	
club 기금	750	
		8,250
은행이자 소득		1,500
배당 소득		250
Capital gains		7,500

스미스씨가 지불한 1년 동안의 연금기금은 3,750파운드이다.

스미스씨의 1년 동안의 과세표준과 과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단위: 파운드)
봉급		75,000
Benefits in kind		8,250
		83,250
공제: 연금 기금		(3,750)
		79,500
은행이자		1,500
배당		250
		81,250
공제: 개인 소득		3,765
과세표준		77,485

과세액	(단위: 파운드)
소득에 대한 과세: 저세율 - 3,900파운드 at 20%	780
기본세율 - 21,600파운드 at 24%	5,184
고세율 - 51,985파운드 at 40%	<u>20,794</u>
	26,758
less : 기혼자 소득 1,790파운드 at 15%	<u>(268)</u>
	26,490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	
1년 동안의	7,500
공제 : allowance	<u>(6,300)</u>
	<u>1,200</u>
tax thereon at 40%	<u>480</u>
총 과세액	<u>26,970</u>

1) 과세대상 소득의 계산

총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 항목의 금액을 차감함으로써 계산한다.

- 손실
- 외국납부세액
- 개인연금지출
- 대출금 이자 지급
- 이혼자의 생계부양비
- 주기적 기부금 및 지원금(deeds of covenant and gift aid payments)
- 인적공제
- 연령 관련공제
- 맹인공제
- 임시수당(transitional allowance)

2) 비과세소득

다음에 열거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 화폐 또는 화폐적 가치로 환원될 수 없는 것
- 국민저축채권의 이자(다만 한도액이 있음) 및 이자감면부로 발행된 재무성증권의 이자
- 납세준비증서의 이자
- 일정저축은행의 예금이자(다만 한도액이 있음)
- 상해 및 불구자 은급, 전시하사금, 병사하사금 및 은급금
- 교육시설로서 전일제의 교육을 받은 자가 받는 장학금
- 국민보험제도에 의거하는 생업, 건강, 출산, 생명보험금

다. 사업소득세(business taxation)

비법인 사업은 세금을 목적으로 따로 다루어지지 않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데 구분과세 시스템(Schedular system)이 사용된다. 사업소득세를 산정하는 데 있어, 과세소득은 Schedule D의 Case I (1종), Case II (2종)에 의해 계산된다. 사업소득은 기본적으로 Schedule D의 Case I에 의해 과세되고, 자영업이나 전문직으로부터 얻은 소득은 Schedule D의 Case II에 의해 과세된다.

영국에서는 노동력의 13%인 대략 350만명의 사람들에게 Schedule D의 Case I (1종), Case II (2종)에 의해 세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사업자 중 몇몇은 큰 사업을 운영하는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사업을 한다.

Schedule D의 Case I (1종)하에서 과세액을 계산하기 이전에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 사업활동

법령에는 사업활동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실제로 사업활동이 일어났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판례법을 보아야만 한다. The Royal Commission on the Taxation of Profits and Income은 1995년에 거래가 사업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6가지의 식별기준을 제시했다. 만약 사업활동이 발생한다면, 하나 이상의 식별기준에 해당될 것이다. 그러나 식별기준 중 어떤 것도 사업활동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결정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가) 사업의 식별기준

(1) 거래의 실체

거래의 실체를 형성하는 재산이 소유주에게 직접적인 소득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 거래는 사업으로 간주되기 쉬울 것이다.

(2) 유사한 거래의 횟수

단 한 번의 거래도 사업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같은 실체물을 반복해서 거래하는 것은 더욱 그러하다.

(3) 현금화해야 할 경우

위급시에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재산이 처분되었을 경우 사업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4) 재산을 현금화하는 것과 관련된 보충적인 기준

법원은 이익을 얻기 위한 계획된 노력이 있다면 과세소득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그러한 노력이 없을 때에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5) 거래의 동기

거래를 착수한 목적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사업활동이 발생한 증거가 된다. 그러나 이익을 내기 위한 동기가 없었을지라도 거래가 사업이 발생한 것으로 간

주될 수도 있다. 그것은 거래의 실체물이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6) 소유의 기간

소유 기간이 짧은 거래물의 거래일수록 사업활동으로 간주되기 쉽다.

나) 수익의 조정

일정한 상업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과세수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과세수익은 과세 기간 동안의 매출 수령액과 공제 가능한 지출 사이의 차액이다. 과세수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가 정해져야 한다.

- 재정회계연도 동안에 과세표준을 형성할 회계기간의 결정
- 기준이 되는 기간과 관련된 과세소득과 공제 가능한 지출의 확인

(1) 소득과 지출의 인식

어느 기간에 소득과 지출이 인식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세법에는 이러한 것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납세자들은 국세청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소득과 지출을 인식하는 시점을 정하는 방법에는 다음의 세 종류가 있다.

- 권리 발생시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
- 현금 흐름의 발생시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
- 계산서를 수령하거나 계산서가 발행된 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권리 발생시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일단 하나의 기준에 동의를 하면, 그 기준은 납세자가 다른 기준을 선택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사용된다. 만약 납세자가 기준을 바꾸기 원한다면 우선 국세청의 승인을 얻어야만 한다.

(2) 사업 매출액

서비스나 재화에 대한 지불은 모두 사업 매출액이다. 납세자의 개인 자원에 의해 이루어진 지불이라면, 그것은 사업 매출액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사업 매출액이 되기 위해서는 수령액은 자본이 아니라 소득이어야만 한다. 수령액이 소득인지 자본인지는 수행되는 사업의 유형에 달려 있다.

(3) 공제할 수 있는 지출

지출이 소득으로부터 공제 가능한 지출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우선 수익 품목이어야 하고, 다음으로 사업이나 전문직을 목적으로 전체적 또는 독점적으로 발생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법에 의해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특별하게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

다음 사항들은 Schedule D의 Case I(1종), Case II(2종)에 해당되는 수익을 계산할 때, 특별하게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 사업, 전문직 또는 자영업 목적으로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지출
- 사업의 유지를 위한 지출
-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빌린 것에 대한 집세
- 건물의 수리나 개조에 소비된 지출액의 초과분
- 사업, 전문직 또는 자영업과 관련되지 않은 손실
- 사업, 전문직 또는 자영업을 목적으로 점거된 건물의 개선에 사용된 자본
- 심각한 채무가 아닌 모든 채무
- 보험 혹은 보상 조약으로 인해 되찾을 수 있는 금액
- 사업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사적인 목적으로 발생한 지출
- 영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불되는 모든 이자
- 특허의 사용에 대해 지불되는 금액
- 접대에 사용된 대부분의 지출
- 50파운드를 넘는 선물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

등은 일반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가) 부담금(Charges)과 이자

지불된 부담금은 개인소득세 계산에서 공제되었기 때문에 Schedule D의 Case I의 계산에서는 공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부담금인 장기간의 대부에 대해 지불된 이자는 공제되지 않는다.

(나) 벌금

벌금과 과태료 같은 것은 공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고용인이 업무중에 고용주의 차를 공원에 주차한 것으로 인해 벌금을 낼 경우 등은 공제된다.

(다) 전문적인 부담금

법적이고 전문적인 부담금이 공제 가능한지를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관련된 품목의 상태를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자본 자산과 비상업 품목에 대해 발생하는 부담금은 공제되지 않는다.

(라) 고용인에 대한 지불

고용주들이 사업을 위하여 제공한 고용인에 대한 지불은 대개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직원이 일을 하기 위해 이동할 때 발생한 이동 경비는 공제되지 않지만, 업무중에 발생한 이동 경비는 고용주의 수익으로부터 공제될 수 있다.

(마) 전체적이고 독점적인 규칙

지출이 전체적으로 그리고 독점적으로 사업의 목적을 위한 것일 때 공제가 가능하다. 이러한 요구를 벗어나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 하나는 지불이 늦어져서 사업으로부터 너무 동떨어지게 되어 사업의 목적을 위해 전체적이고 독점적으로 될 수 없을 때이다. 다른 하나는 지출이 사업적인 목적과 개인적인 목적의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출이 수익으로부터 공제되지 않는다.

(바) 사업과 개인적인 사용

거래의 목적을 사업과 개인적인 목적으로 분산시키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르지만,

지불과 공제할 수 있는 지출로서의 사업부분으로 분리하는 것은 가능하다.

(사) 건물 임대

납세자가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의 일부분은 공제가 된다.

(아) 사업 이전에 발생한 지출

사업을 위한 사업 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지출의 경우에만 사업소득으로부터 공제되는 지출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업 개시일에 앞서 7년 동안 발생한 지출도 개시연도에 발생한 손실로서 처리될 수 있다.

2) 사업소득의 과세표준

회계연도(4월 6일에서 다음해 4월 5일까지) 동안 개인이 벌어들인 사업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한다. 이것은 '과세연도' 라고 불린다. 근로자에게 있어 이러한 기간에 근로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간단하다. 그러나 자영업자에게 있어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의 소득은 그들의 기장된 장부(계산서)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계산서는 대개 12개월의 기간 내에 제공된다. 이 기간은 재정회계연도와 비교했을 때 1년 동안 다른 시점에서 시작하고 끝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세금연도에 분배하는 규칙을 알 필요가 있다.

가) 현 연도 기준

현 연도의 제도하에서의 일반적인 규칙은 세금연도에 발생하는 수익은 세금연도에 과세된다는 것이다.

나) 사업 종결연도의 과세

현 연도의 규칙하에서 상업을 그만두는 사업의 과세표준은 마지막 회계기간이다.

다) 이중 수익에 대한 공제

어떤 수익은 한 번 이상 과세되기 때문에 국세청은 이중 공제의 방법으로 공제를 한다. 이중 공제가 주장될 수 있는 상황은 다음의 두 가지 경우가 있다. 하나는 기업이 회계기간을 12개월 이상으로 바꿀 때 재정회계연도 동안 이중 공제가 주장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기업이 사업을 중단할 때 재정회계연도 동안 주장될 수 있다.

라) 회계기간의 변화

회계기간은 12개월인 것이 보통이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고 언제든지 기업은 국세청에 보고하고 회계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회계기간 변경의 결과는 회계기간이 12개월보다 적거나 회계기간이 12개월보다 많거나 회계연도에 어떠한 회계기간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각각 달리 영향을 미친다.

4. 인적공제, 비용공제, 세액공제 등

2007회계연도에 맹인공제, 부부공제, 노령자공제 등은 모두 물가연동 상한을 적용하고 소득세율의 변화는 없다.

1) 공제의 종류

가) 기본 공제

근로의 의무를 수행할 때 전적이고, 배타적이며 필수불가결하게 발생하는 그러한 비용들만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계산되는 소득의 양에서 공제될 수 있다고 주장된다. 이러한 기준들은 국세청에 의해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결과적으로 공제하기에 적절한 비용은 극히 제한된다. 일정한 환경하에서는 공제가 제한된 한도 내에서 재배치 비용으로 이용 가능하다. 또한 어떤 제한된 한도 내에서 연금 기여에 대한 특별한 공

제가 있다. 2007년도에 발표된 대로 개인소득공제는 5,035파운드로 동결하고 노령자(65~74세)의 경우 7,280파운드로 인상하고 75세 이상의 경우는 법적 연동을 통해 140파운드를 추가하여 7,420파운드를 적용하였다. 맹인 등 장애자의 경우 1,660파운드의 추가공제가 적용된다.

나) 사업소득에 대한 공제

사업의 목적을 위해 전적으로 그리고 배타적으로 발생된 비용은 납세의무가 있는 이익을 계산할 때 공제될 수 있다. 근로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비교했을 때 '필요성'의 결여는 더 넓은 범위의 비용이 공제될 수 있다.

공제는 자본적 성격의 소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쓸모없지만, 공장과 기계, 산업 건물, 농업건물과 부속시설, 금과 석유 등의 자본공제의 소비에 대해서는 쓸모가 있다. 공제의 차액이나 부채는 그와 같은 자산의 처분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 근로소득에 따라, 제한된 한계 내에서 연금기여에 대한 특별한 공제가 있다.

다) 부동산 수입에 대한 공제

이자를 포함한 관련된 비용은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부가가치 향상, 증축 또는 개량과 같은 비용에 대해서는 비록 자본공제가 사업소득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넓게 이용된다고 할지라도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라) 이자

파트너십에 대해 자금을 공급하거나, 특정 회사들에 자금을 빌려주는 것과 같은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돈을 빌린 것에 대한 이자수입 공제가 있다. 채무자 또는 주거지의 이득을 용자하기 위해 취득된 대부금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는 제한된 공제가 있다.

마) 세액공제 제도

영국 비거주자 또는 영주권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주요한 면세는 소득세의 다른 분야에 나와 있다. 많은 원천소득이 특별하게 세금으로부터 면제되거나 일정량에 이르기까지 면제된다. 이것들은 대부분 승인된 정부의 구제수단이다. 주목할 만한 하나의 면세는 고용의 상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최초의 8,500파운드의 범위에서 면세된다.

25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의 경우는 PAYE 등을 전자신고에 의해 처리한다. 총소득에서 소득공제항목의 금액을 차감함으로써 1차세액을 구한 뒤 다음의 조정을 거친다.

- 최고소득 세액공제(top slicing relief)
- 벤처기업투자조합
- 대출금이자
- 부부
- 배우자 잉여 이전분
- 근로
- 자녀

〈표 1-2〉 근로 및 자녀세액공제율과 구간(2009~2010년)

(단위: 파운드)

항목	연간 한도
근로세액공제	
- 기본 요소	1,890
- 부부 요소	1,860
- 30시간 요소	775
- 장애근로자 요소	2,530
- 추가장애근로자 요소	1,075
- 자녀보육 요소(최고액, 2자녀 이상)	300/1주
자녀세액공제	
- 가족 요소	545
- 자녀 요소	2,235
- 장애자녀추가 요소	2,670
- 추가장애자녀 요소	1,075
공통특성	
- 첫째 소득구간	6,420
- 둘째 소득구간	50,000

자료: HM Treasury, Budget report, 2007

〈표 1-3〉 근로세액공제(2009~2010년)

(단위: 파운드)

요소	연간 한도
근로세액공제	
- 기본 요소	1,890
- 장애 요소	2,530
- 30시간 요소	775
- 부부인 경우	1,860
- 한 부모 요소	1,860
- 중증 장애 요소	1,075
- 50시간 추가 요소	
(a) 주당 최소 16시간 초과 30시간 미만	1,300
(b) 주당 최소 30시간 초과	1,935
아동육아 요소	(a), (b)의 80%
	(a) 아이가 하나인 가족은 주당 175파운드까지 비용을 지원받음.
	(b) 아이가 하나 이상인 가족은 주당 300파운드까지 지원받음.

〈표 1-4〉 근로세액 공제(2005~2006년)

EDIT - 한도 2005~2006

(단위: 파운드)

요소	연간 한도
근로세액공제	
- 기본 요소	1,620
- 장애 요소	2,165
- 30시간 요소	660
- 부부요소	1,595
- 한부모 요소	1,595
- 중증 장애 요소	920
- 50시간 추가 요소	
(a) 주당 최소 16시간 초과 30시간 미만	1,110
(b) 주당 최소 30시간 초과	1,660
아동 육아 요소	(a), (b)의 70%
	(a) 아이가 하나인 가족은 주당 175파운드까지 비용을 지원받음.
	(b) 아이가 하나 이상인 가족은 주당 300파운드까지 지원받음.

〈표 1-5〉 최대 감소 비율(2005~2006년)

감소	적용
소득의 37%가 5,220파운드를 넘는다면 ¹⁾	1. 자녀세액공제를 제외한 근로세액공제(WTC)의 모든 값의 합 2. WTC의 육아 3. 자녀세액공제(CTC)의 개인 요소 4. CTC ²⁾³⁾ 의 가족 요소, 그러나 6.67/37을 곱하여 조정함.

주: 1) 만약 CTC만 신청한다면, 최대값은 13,910파운드가 됨.

2) 만약 소득이 5만파운드 이하라면 가족 요소는 감소하지 않음.

3) 매년 공제가 26파운드 미만일 경우, 공제는 없음.

〈표 1-6〉 근로세액 공제(2004~2005년)

- 한도 2004~2005

(단위: 파운드)

요소	연간 한도
근로세액공제	
- 기본 요소	1,570
- 장애 요소	2,100
- 30시간 요소	640
- 부부 요소	1,545
- 한부모 요소	1,545
- 중증 장애 요소	890
- 50시간 추가 요소	
(a) 주당 최소 16시간 초과 30시간 미만	1,075
(b) 주당 최소 30시간 초과	1,610
아동 육아 요소	70%
	(a) 아이가 하나인 가족은 주당 135파운드 까지 비용을 지원받음
	(b) 아이가 하나 이상인 가족은 주당 200파운드까지 지원 받음

〈표 1-7〉 최대 감소 비율(2004~2005년)

감소	적용
소득의 37%가 5,060파운드를 넘는다면 ¹⁾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녀세액공제를 제외한 근로세액공제(WTC)의 모든 값의 합 2. WTC의 육아 3. 자녀세액공제(CTC)의 개인 요소 4. CTC²⁾³⁾의 가족 요소, 그러나 6.67/37을 곱하여 조정함

주: 1) 만약 CTC만 신청한다면, 최대값은 13,480파운드가 됨.

2) 만약 소득이 5만파운드 이하라면 가족 요소는 감소하지 않음.

3) 매년 공제가 26파운드 미만일 경우, 공제는 없음.

〈표 1-8〉 자녀세액 공제(2005~2006년)

- 한도 2005~2006

(단위: 파운드)

요소	연간 한도
개인적 요소	
- 각 자녀당	1,690
- 각 장애 자녀당	3,975
- 각 중증장애 자녀당	4,895
가족 요소	
- 1살 미만 자녀	1,090
- 기타	545

〈표 1-9〉 국가급부 공제

공제항목 (ICTA 1988, s. 617):

(단위: 파운드)

항목	주당 비율		
	2003. 4. 7	2004. 4. 12	2005. 4. 11
산업재해사망 공제:			
미망인 연금			
영구비율 - 높은 비율	77.45	79.60	82.05
- 낮은 비율	23.24	23.88	24.62
환자 돌봄공제			
표준비율	43.15	44.35	45.70
장기 장애 급여			
비율	72.15	74.15	76.45
연령에 따라 증가:			
높은 비율	15.15	15.55	16.05
낮은 비율	7.60	7.80	8.05
단기 장애 급여			
높은 비율:			
연금수급연령 미만 ¹⁾	64.35	66.15	68.20
연금수급연령 이상 ¹⁾	72.15	74.15	76.45
비기여			
퇴직연금			
표준비율	46.35	47.65	49.15
연령가산 (80세 이상)	0.25	0.25	0.25
퇴직연금			
표준비율	77.45	79.60	82.05
연령가산 (80세 이상)	0.25	0.25	0.25
미망인 공제 ²⁾			
연금(표준비율) ³⁾	77.45	79.60	82.05
홀로된 부모 공제 ⁴⁾			
기본 비율	77.45	79.60	82.05
부양 성인			
퇴직연금	46.35	47.65	49.15
환자돌봄 공제	25.80	26.50	27.30
의료비 공제			
20% 비율	15.50	15.90	16.40
38% 비율	29.45	30.25	tba

주: 1) 남성은 65세, 여성은 60세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2020년 4월 6일부터 여성의 연금 수령 연령은 65세로 남성과 같아질 것이다. 2020년 65세를 기점으로 2010년부터 여성의 연금 수령은 점차 증가할 것이다.

2) 유족수당(중도금)은 1,000파운드이며, 비과세이다.

3) 2001년 4월 9일부터 미망인 연금은 유족수당으로 대체되고, 현재 수령하고 있는 미망인 연금은 기한이 될 때까지 계속 수령할 수 있다.

4) 2001년 4월 9일부터 새로운 요구에 의해서 유족모 수당은 유족부모 수당으로 대체된다. 현재 수령하고 있는 유족모 수당은 기한이 될 때까지 계속 수령할 수 있다.

바) 비과세 공제(Non-taxable state benefits)

다음의 복지편익은 비과세 대상이다.

- 출근 수당
- 직장복귀 수당
- 아동 수당
- 아동양육 보너스
- 크리스마스 보너스
- 지속적인 보호 수당
- 지역사회부담 급여(council tax benefit)
- 지방세 감면 급여의 연장제도(council tax benefit extended payment)
- 범죄 피해 보상위원회(Criminal injuries compensation)
- 장애 생계 수당(Disability living allowance)
- 교육 복지 보장(Education welfare benefits)
- 고용 재활 수당(Employment rehabilitation allowance)
- 아동보호자 수당(Guardian's allowance)
- 주택 수당(Housing benefit)
- 주택 수당 급여 연장제도(Housing benefit extended payment)
- 장애 수당(단기-낮은 세율)((Incapacity benefit)(short-term-lower rate))
- 생계 보조 (Income support)
- 산업재해 장애 급여(Industrial injuries disablement benefit)
- 구직자 수당(Jobseeker's allowance, amounts above personal or couple rate)
- 한 부모를 위한 추가 소득 보조(Lone parent's benefit run-on)
- 출산 수당(Maternity allowance)
- 유럽경제구역내 의료비용
- 진폐증, 면폐증 등 질병 수당(Pneumoconiosis, byssinosis and misc. disease scheme benefits)

- 감소 수입 수당(Reduced earnings allowance)
- 법적 실직 급여(Statutory redundancy payments)
- 퇴직 수당(산업 재해)
- 중증 장애 수당(Severe disablement allowance)
- 겨울 급여, 지역돌봄, 위기 대부, 장례급부, 산모급부, 연료급부 등 사회기금 급부
- 전쟁 장애 연금(War disablement pension)
- 전쟁 사별 보조금(War pensioner's mobility supplement)
- 전쟁 미망인 연금(War widow's pension)
- 미망인 일시금(Widow's payment)
- 산재보험(보상금)

〈표 1-10〉 비과세 공제

(단위: 파운드)

편 의	2003. 4. 7	2004. 4. 12	2005. 4. 11
출근 수당			
높은 비율(주야)	57.20	58.80	60.60
낮은 비율(주야)	38.30	39.35	40.55
아동 수당			
대상 아동 중 첫째	16.05	16.50	17.00
혼자된 부모	17.55	17.55	17.55
추가 자녀	10.75	11.05	11.40
크리스마스 보너스			
연간 한번	10.00	10.00	10.00
지속적인 출근 수당			
제외된 비율	93.60	96.20	99.20
기본비율	70.20	72.15	74.40
일반 최대 비율	46.80	48.10	49.60
임신 수당			
낮은 비율			
높은 비율			
표준 비율	100.00	102.80	106.00
보호자 수당 ¹⁾			
첫 자녀	-	-	-
다른 자녀 각각	11.35	11.35	12.20
장애 생활 수당(care component)			
높은 비율	57.20	58.80	60.60
중간 비율	38.30	39.35	40.55
낮은 비율	15.15	15.55	16.05
장애 생활 수당 (Mobility component)			
높은 비율	39.95	41.05	42.30
낮은 비율	15.15	15.55	16.05
중증 장애 수당 ⁴⁾			
기본 비율	43.60	44.80	46.20
일할 수 없는 나이에 따라 초과 부과되는 수당 존재			
40 이하	15.15	15.55	16.05
50 이하	9.70	10.00	10.30
60 이하	4.85	5.00	5.15
무능력 공제 (단기) ²⁾			
낮은 비율:			
연금 수혜 연령 이하 ³⁾	54.40	55.90	57.65
연금 수혜 연령 이상 ³⁾	69.20	71.15	73.35

주: 1) 아동특별 수당과 아동 의존성은 퇴직 수당, 과부 공제, 단기 무능력 공제의 높은 수준과 같이 증가한다. 또한 장기간의 무능력 공제, 중증 장애 수당, 높은 비율의 사망 공제, 실업수당, 수혜자가 연금 수혜 연령 이상일 경우 단기간의 무능력 수당도 함께 증가한다.

2) 무능력 공제는 취업불능 공제와 1995년 4월 6일로부터 질병 공제를 대신한다. ITEPA 2003의 소득 제공에 근거해서 세금 부과가 가능하다. 단 낮은 비율에 단기 세금 공제는 예외이다.

3) 연금 수혜 연령은 여성의 경우 60세, 남성의 경우 66세이다. 2020년 4월 6일부터 여성의 연령도 남성과 똑같이 65세로 변경된다. 2010년부터 단계별로 65세로 변경될 것이다.

4) 2001년 4월 6일 이후로 더 이상 새로운 실업수당 청구자는 불가하다. 200년 4월 6일 이전의 20 이하 실업수당 청구자들은 2002년 4월 5일부터 장기 비율의 무능력 공제로 전환되었다.

5. 세율

영국의 경우 개인의 소득을 배당소득, 저축소득, 비저축소득으로 나눈 후 소득의 종류별로 서로 다른 누진세율체계를 적용한다. 세율의 종류로는 저율세율(starting rate), 기본세율(basic rate), 고율세율(higher rate)의 세 가지가 있다.

가. 비저축소득

특정소득에 부과되는 세율을 정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한 세 가지 유형에는 저축, 비저축, 그리고 배당소득이 있다. FY2008-09 비저축 과세소득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인의 대표적인 소득인 비저축소득의 경우 매년 개정된 세율 또는 과세구간에 따라 과세되는 것이 특징이다.

〈표 1-11〉 비저축 과세소득에 대한 세율

(단위: 파운드, %)

Tax Band	소득금액	세율
Starting rate	0~2,230	20
Basic rate	2,230~34,800	20
Higher rate	34,800 이상	40

자료: HM Treasury, Budget report 2008.

나. 저축소득

저축소득은 초기세율구간(starting rate band)에 속한 소득은 10%, 기본세율구간(basic rate band)은 20%, 그리고 고세율구간(higher rate band)에 속한 소득은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저축소득은 다음을 포함한다.

- 은행 이자
- 주택조합(building society) 이자
- 재무부증권(gilt edged securities) 이자
- 회사채(debenture) 이자
- 연금소득

20% 세율은 낮은 세율(lower rate)로 불린다.

다. 배당소득

배당소득은 초기 또는 기본세율구간 모두 10%, 고세율구간에 속한 소득에 대해서는 32.5%가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다른 유형의 소득이 있는 경우 계산의 순서에 따라 분명하게 내야 할 세금의 금액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언제나 비저축소득을 가장 먼저 포함하고 그 다음에 저축소득,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당소득을 포함해 계산하여야 한다. 즉, 배당소득은 맨 위의 부분(top slice)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비용과 인적 공제는 비저축소득의 총액에서 먼저 빼고, 그리고도 여유가 있는 경우 다음으로 저축소득, 그리고 배당소득의 순으로 공제한다. 영국 거주인과 비거주인 사이의 세율은 다르지 않다.

- 소득세율

2008~2009년

(단위: 파운드, %)

과세구간	과세율 ¹⁾	구간별 최대 과세
0~2,320	10	232
2,321~34,800	20	6,496
34,801 이상	40	

주: 1) 배당소득은 기본세율 한계의 10%를 초과하고, 그 이상은 32.5%를 초과함.

2007~2008년

(단위: 파운드, %)

과세구간	과세율 ¹⁾	구간별 최대 과세
0~2,230	10	232
2,231~34,600	22	6,496
34,601 이상	40	

주: 1) 배당소득을 제외한 이자(저축)소득은 최저세율 한계의 10%까지 부과하고, 최저세율을 초과 기본세율 이내는 20%, 그 이상은 40%로 함. 배당소득은 기본세율 한계의 10%를 부과하며, 그 이상은 32.5%를 부과함.

2005~2006년

(단위: 파운드, %)

과세구간	과세율 ¹⁾	구간별 최대 과세
0~2,090	10	209
2,091~32,400	22	6,668
32,401 이상	40	

주: 1) 배당소득을 제외한 이자(저축)소득은 최저세율 한계의 10%까지 부과하고, 최저세율을 초과 기본세율 이내는 20%, 그 이상은 40%로 함. 영국 배당소득은 기본세율 한계의 10%를 부과하며, 그 이상은 32.5%를 부과함.

2004~2005년

(단위: 파운드, %)

과세구간	과세율 ¹⁾	구간별 최대 과세
0~2,020	10	202
2,021~31,400	22	6,463
31,401 이상	40	

주: 1) 배당소득을 제외한 이자(저축)소득은 최저세율 한계의 10%까지 부과하고, 최저세율을 초과 기본세율 이내는 20%, 그 이상은 40%로 함. 영국 배당소득은 기본세율 한계의 10%를 부과하며, 그 이상은 32.5%를 부과함.

2003~2004년

(단위: 파운드, %)

과세구간	과세율 ¹⁾	구간별 최대 과세
0~1,960	10	196
1,961~30,500	22	6,278
30,501 이상	40	

주: 1) 배당소득을 제외한 이자(저축)소득은 최저세율 한계의 10%까지 부과하고, 최저세율을 초과 기본세율 이내는 20%, 그 이상은 40%로 함. 영국 배당소득은 기본세율 한계의 10%를 부과하며, 그 이상은 32.5%를 부과함.

2002~2003년

(단위: 파운드, %)

과세구간	과세율 ¹⁾	구간별 최대 과세
0~1,920	10	192
1,921~29,900	22	6,155
29,901 이상	40	

주: 1) 배당소득을 제외한 이자(저축)소득은 최저세율 한계의 10%까지 부과하고, 최저세율을 초과 기본세율 이내는 20%, 그 이상은 40%로 함, 영국 배당소득은 기본세율 한계의 10%를 부과하며, 그 이상은 32.5%를 부과함.

2001~2002년

(단위: 파운드, %)

과세구간	과세율 ¹⁾	구간별 최대 과세
0~1,880	10	188
1,881~29,400	22	6,054
29,401 이상	40	

주: 1) 1999~2000년까지 배당소득을 제외한 이자(저축)소득은 10%, 20%, 40%로 과세함, 영국 배당소득은 기본세율 한계의 10%를 부과하며, 그 이상은 32.5%를 부과함.

2000~2001년

(단위: 파운드, %)

과세구간	과세율 ¹⁾	구간별 최대 과세
0~1,520	10	152
1,521~28,400	22	5,913
28,401 이상	40	

1999~2000년

(단위: 파운드, %)

과세구간	과세율 ¹⁾	구간별 최대 과세
0~1,500	10	150
1,501~28,000	23	6,095
28,001 이상	40	

1998~1999년

(단위: 파운드, %)

과세구간	과세율 ¹⁾	구간별 최대 과세
0~4,300	20	860
4,301~27,100	23	5,244
27,101 이상	40	
신탁에 적용되는 세율 (누적유지신탁과 자유재량 신탁)	34	-

1993년 4월 6일부터 적용되는 배당금에 대한 의무

: 주주는 과세에 대한 책임이 없거나 제외되며, 가장 낮은 세율과 유사한 배당소득 세액공제를 받게 됨. 개인 주주는 가장 낮은 세금을 지불하거나, 세액공제 각 수준에서 결정되는 기본 세율의 20%를 부담하게 됨. 최상위층 세금 납부자는 20%의 추가 세금이나 세액공제의 20%를 부담하게 됨.

주: 1) 1998~1999, 기본세율에 해당되는 납세자의 이자(저축)소득은 일반적으로 20%로 과세됨.

6. 소득세 행정

가. 신고 및 납부

영국의 과세연도는 4월 6일에 시작하여 익년 4월 5일에 종료되지만 조사관은 각 연도의 4월 6일에 법정소득이 있다고 인정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신고서를 송부한다(법정소득이 있는 자는 과세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조사관에게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 납세의무자는 신고서의 송부기일(통상은 4월 6일)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영국에서는 신고납부제도가 도입된 후에도 부과과세제도가 보완적으로 취해지고 있으므로 이 신고서는 부과에 있어 하나의 참고자료로서의 의미밖에 갖지 못하지만, 무신고 등에 대해서는 벌칙이 적용된다.

부과는 스케줄 D 제1종 및 제2종 등 전년도주의에 의거 과세연도 내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지만, 스케줄 A, B 등 당년도주의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연도 종료 후에 소급하여 과세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 스케줄 D 제1종 및 제2종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연도의 1월 1일과 익년도의 7월 1일에 반액씩 부과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으며, 기타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연도의 1월 1일과 과세서상의 익일 중 어느 날이나 뒤에 오는 날짜까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 소득세 마감시한 (ICTA 1988, s. 5)

〈2005~2006년〉

1997~98년 이후 세금은 양도소득세와 소득세를 합산하여 다가오는 과세연도 1월 31일에 납부된다. 또한 소득세에 대한 중간 납입이 요구된다. 만약 전년도에 500파운드 또는 전체 세액의 20%가 납부된다면 중간 납입은 요구되지 않는다. 이것은 보통 전년도 순납부세액 총액의 절반이지만, 현재 연도의 세액의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 2005~2006년의 지불일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중간 납입 : 2006년 1월 31일

두 번째 중간 납입 : 2006년 7월 31일

마지막 잔고 납입 : 2007년 1월 31일

○ 청구 기한

반대되는 조항의 부재에서 소득세를 목적으로 한 과세액 자기평가에서, 청구는 보통 다가오는 다음 과세연도 1월 31일부터 5년 이내에, 관련 부과 기간의 끝으로부터 6년 이전에 이루어진다.

〈표 1-12〉 소득세 청구 기한

사안	기한	규정
사업 2차연도와 3차연도 산출의 실제 기초	2차 과세연도 말로부터 7년	ICTA 1988, s. 62(2)
사업 5차연도와 6차연도 파트너십 산출의 실제 기초	5차 과세연도 말로부터 7년	ICTA 1988, s. 62(4)
스케줄 D, Case III-V 원천의 3차연도 산출의 실제기초(또는 소득이 4월 6일 처음 발생한 경우 2차연도)	과세연도 말로부터 6년	ICTA 1988, s. 66(1)(c)
농업 이익의 평균	2차년도말 다음 1월 31일로부터 12개월	ICTA 1988, s. 96(8)
비용이나 시가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평가된 청산에 따른 주식의 양도	청산으로 인한 과세기간종료 후 2년	ICTA 1988, s. 100(1C)
소득이나 이득에 대한 청산 이후 비용청구	과세연도 이후 1월 31일로부터 12개월	ICTA 1988, s. 109A
결혼한 부부의 공제 양도청구	일반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첫 과세연도, 결혼한 연도말 이전	ICTA 1988, s. 257BA(4),(5)
결혼한 부부의 공제초과분 아내에게 양도	1996~1997부터 관계된 과세연도 다음 1월 31일부터 5년	ICTA 1988, s. 257BB(5)

〈표 1-12〉의 계속

사안	기한	규정
투자소득의 분할 청구	유효일로부터 60일 이내 국세청 통지	ICTA 1988, s. 282B(3)
사업손실의 금년도와 전년도 구분	1996~1997부터 관계된 과세연도 다음 1월 31일부터 12개월	ICTA 1988, s. 380; FA 1991, s. 72
사업 첫 해 손실의 3년 소급	1996~1997부터 관계된 과세연도 다음 1월 31일부터 12개월	ICTA 1988, s. 381(1)
사업손실의 이월	1996~1997부터 관계된 과세연도 다음 1월 31일부터 5년	ICTA 1988, s. 385(1)
분기손실의 소급	1996~1997부터 관계된 과세연도 다음 1월 31일부터 5년	ICTA 1988, s. 388(1)
비상장회사의 주식처분손실을 소득으로 상계	1996~1997부터 관계된 과세연도 다음 1월 31일부터 12개월	ICTA 1988, s. 574(1)
퇴직부담금 프리미엄의 소급	1996~1997부터 지불된 과세연도 다음 1월 31일	ICTA 1988, s. 619(4)
개인연금 기여의 소급	1996~1997부터 2000~01까지 지불된 과세연도 다음 1월 31일	ICTA 1988, s. 641(1), (4)
개인연금 기여를 전 과세연도에 지불된 것으로 취급	지불이 이루어지기 전 또는 과세연도 1월 31일 이전	ICTA 1988, s. 641A(1)
특정 공장과 기계를 단기자산('short life' assets)으로 취급	1996~1997년부터 자본지출의 과세연도 이후 1월 31일로부터 12개월	CAA 2001, s. 85
자본공제를 위해 특정자산의 양수도	판매일로부터 2년	CAA 2001, s. 570(5)

나.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처리

1) 과세소득의 범위

전술한 바와 같이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영국 원천으로부터의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가) 급여소득

급여소득은 영국에서의 노무 제공에서 생긴 것에 한해서 과세된다. 다만 비거주자인 피용자가 영국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고 또한 비거주자로 되어 있는 경우, 영국 국내에서 행해진 노무에 대한 보상일지라도 과세되지 않는다.

나) 자유직업소득

영국에서 현실적으로 수행되는 노무에 귀속하는 범위 내에서 과세된다.

다) 사업소득

(1) 사업의 범위

비거주자의 사업소득은 영국 국내의 지점을 통하는 등의 사업경영에서 생긴 것에 한해서만 과세된다. 영국 국내에서의 사업경영이 되기 위해서는 영리활동의 적어도 일부가 계속적으로 영국 국내에서 행해지고 있을 것을 요한다. 구체적으로 비거주자가 영국 국내에 사업을 행하는 일정장소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경영하고 있다고 본다.

(2) 소득액의 결정

소득액의 결정은 거주자의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행해진다. 이외에 비거주자의 영국 지점 등이 영국 국내 및 국외의 쌍방에서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영국 지점 등의 이윤 중 영국 국내에서 사업경영에 합리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이 과세소득으로 분류된다. 또한 사업이 영국 국외에서 제조되고 국내에서 판매되는 쌍방으로 구성되고 있는 경우에는 제조이윤 부분은 제외되고 판매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3) 기타 소득

이자, 연금, 로열티 등

2) 인적공제

전술한 바와 같이 비거주자는 일반적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영국 국민, 아일랜드공화국 시민 등에 대해서는 그의 영국원천소득이 전 세계 소득에 점하는 비율을 한도로 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표 1-13〉 인적공제

(단위: 파운드)

공제유형	2008~2009	2007~2008	2005~2006	2004~2005	2003~2004	2002~2003
개인(소득)공제						
65세 미만	6,035	5,225	4,895	4,745	4,615	4,615
65~74세	9,030	7,550	7,090	6,830	6,610	6,100
75세 이상	9,180	7,690	7,220	6,950	6,720	6,370
기혼자 공제 ¹⁾²⁾						
65세 미만	-	-	-	-	-	-
1935년 4월 6일 이전 출생자	6,535	6,285	5,905	5,725	5,565	5,465
65~74세						
75세 이상	6,625	6,365	5,975	5,795	5,635	5,535
기혼자 최소공제액	2,540	2,440	2,280	2,210	2,150	2,110
65세 이상 납세자를 위한 공제 대상자에 있어 최대 소득 공제 소득 한계	21,800	20,900	19,500	18,900	18,300	17,900
Personal						
-65~74세	23,890	23,070	23,890	23,070	22,290	20,870
-75세 이상	24,150	23,220	24,150	23,220	22,510	21,410
Married						
-65~74세	31,140	30,100	31,140	30,100	29,120	27,580
-75세 이상	31,540	30,390	31,540	30,390	29,480	28,260
자녀세액공제 ³⁾⁴⁾						
-main rate						5,290
-baby rate						10,490
미망인 공제 ¹⁾	-	-	-	-	-	-
맹인 공제	1,800	1,730	1,610	1,560	1,510	1,480
생명보험 공제 (1984년 3월 14일 이전 발효 정책)	12.5% of premiums	12.5% of premiums	12.5% of premiums	12.5% of premiums	12.5% of premiums	12.5% of premiums
입대 Limit	4,250	4,250	4,250	4,250	4,250	4,250

주: 1) 2000년 4월 6일부터 1935년 4월 6일 이전 출생자가 아닌 기혼자 공제는 축소됨. 자녀 추가 공제도 2000년 4월 6일부터 축소되었음. 미망인 공제는 남편이 2000년 4월 5일 이후 사망한 경우 축소되었음.

2) 1999~2000 기혼자 공제와 이와 연관된 공제는 10% 제한됨.

3) 자녀 세액공제는 최대 10%이며, 신청 소득이 세율 변경 구간의 최대수치를 초과하는 경우 매 3파운드에서 2파운드로 축소됨.

4) 2003~2004년도에는 근로소득세액과 아동세액으로 교체됨.

3) 부과 및 징수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즉 비거주자가 받는 이자, 연금, 로열티 등은 원천과세된다. 원천과세되지 않는 소득에 대해서는 비거주자에 대해 직접과세되거나 또는 대리인의 이름으로 부과된다. 통지서의 발송에 관계없이 납부가 되지 않는 경우, 영국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 또는 채권으로부터 징수된다. 또한 대리인이란 '비거주자의 정규 대리인으로 활동할 것을 인정한' 영국 국내의 지점, 관리인 등을 말하며, 대리인은 거주자의 경우와 같이 신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이중과세방지제도

수익자가 외국에 세금을 지불한 외국에서의 수입이나 취득(원천세를 지불한 경우도 포함)에 대해 영국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 외국에 세금을 지불한 부분에 대해 영국에서의 세금 의무에 있어서 감면이 일반적으로 주어진다. 그러나 감면은 외국에서의 수입 증가에 대한 영국 세금의 증가분을 벗어나지 못한다. 허용되는 최대 조세감면을 계산하는 데 있어 각각의 외국에서의 수입은 개별적으로 계산된다. 이중과세 조약이 영국과 외국 나라들 사이에 존재한다고 해도 그 처리가 다를 수도 있다. 유사하게, 영국의 상속세가 증여나 다른 사건, 그리고 같은 사건에 관해 지불되는 상속세의 성격과 유사한 외국에서의 세금이 부과될 경우, 이중과세로부터의 공제가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7. 원천징수제도

1) 개인 근로소득

일반적으로, 영국에서의 노무에 대해 지불받은 영국의 비거주자의 보수에 대해 원천징수가 적용된다. 영국의 비거주자는 영국 내에서 수행된 근로의 의무에 관하여는 스케줄 E항의 2종에 의해 세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만약 상업이나, 전문직 또는 자영

업을 영국에서 경영했다면 스케줄 D항의 1종이나 2종에 의해 세금이 부과된다. 만약 개인이 스케줄 E항에 근거하여 납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그의 고용주가 영국에 있다면, 그 고용주는 PAYE라는 세금 공제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특별한 원천징수가 영국에서 활동하는 영국의 거주민이 아닌 연예인과 운동선수의 보수에 대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규칙들은 보수가 PAYE 사업계획에 의한 세금 공제 후에 주어진다면 적용할 수 없다. 특별한 규칙하에서는 납세자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에 대한 보수로부터 기본비율인 22%의 세율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원천징수된 보수는 나중에 다시 실질적으로 계산되고 부과된다. 납세자에 의해 원천공제된 세금의 대체적인 계산에는 지불인, 연예인 또는 운동선수, 그리고 국세청의 서면으로 된 동의가 요구된다.

2) 건축사업에서의 도급계약인에 대한 보수

납세자가 건축사업을 포함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는 영국에서 건축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국외의 시설에 관하여 도급계약인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만약 납세의무자가 도급계약인의 국세청으로부터의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거래의 가격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납세자는 22%의 소득의 기본세율로 매출액으로부터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규칙은 비록 건설회사 그 자체의 사업에는 아니지만, 건설회사에 상당한 지출을 초래하는 모든 회사에 적용된다.

3) 이자소득

개인에게 이자를 지불하는 은행이나 회사의 모임들은 만약 이자의 수납인이 그가 통상의 영국 거주민이 아니거나, 비과세대상이거나, 저축액이 면제받은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소득에서 초기세율(Starting rate)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그렇게 원천징수된 세액은 1년 초과세액에 대하여 감면으로 이용되고, 초과분은 환급된다.

4) 지대

지대가 비거주인에게 지불되었을 때, 소득에서 22%의 기본세율로 원천징수되어야 한다. 그리고 분기별로 국세청에 납입해야 한다.

8. 사회보장기여금 또는 국민연금(NIC)

피고용자와 경영주는 소득세에 추가하여, 국민연금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민연금은 주민들에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위험에 대비하는 개념으로 1948년에 처음으로 국민연금기금(National Insurance Fund)이 조성되었다. 조성된 기금은 예산과 구분되어 적립되며 급여도 역시 기금으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 초창기에는 국가보험기금(National Insurance Reserve)과 산업재해기금(Industrial Injuries Fund)이 분리 운영되다가 1975년에 국민연금기금에 흡수 통합되었다.

기금의 2006~2007년 수입과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파운드)

수입	금액
전기이월 잔고	33,390
기여금	87,842
통합기금	1,411
국가 프리미엄	137
투자수입	1,556
재무부 보조금	nil
기타수입	37
계	124,373

(단위: 백만파운드)

지출	금액
급여	61,851
건강보험서비스 배분	18,764
북아일랜드로 진출	630
운영비	1,458
SSP and SMP 보상	1,438
개인연금 계약 리베이트	2,659
가외성 기금(Redundancy fund) 지출	245
차기이월	37,328
계	124,373

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주요 수입원은 기여금이다. 2003~2004년부터 보다 많은 부분이 건강보험서비스로 배분되고 있는바 이는 2003년 4월부터 추가적으로 1% 부과에 따른 모든 수입은 건강보험에 배분되며 기금에 유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주요 기업수입은 1종 기여로부터 형성된다.

(단위: 백만파운드)

기여금	금액
1종-기초	33,702
1종-이차	50,071
계	83,773
1종 A와 1종 B	1,088
2종	263
3종	90
4종	2,628
계	87,842

예측하는 바대로 주요 지출은 기금으로부터 기여에 따른 급여금이다.

(단위: 백만파운드)

지출	금액
퇴직연금	53,561
미망인 급여	774
실업자 급여	496
장애 급여	6,729
산모 급여	163
보호자 급여	2
연금수급자에 대한 크리스마스 보너스	126
계	61,851

기여시스템은 보험 원칙에 따르지 않는다. 즉, 기여와 미래의 지불 의무와 연계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신 국민연금기금은 매년 기여수입에 지출을 연계시키는 'pay as you go'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 1990년대 초 경기침체로 급여 대비 수입이 부족하게 되자 재무성의 보조금으로 균형을 맞추기도 하였는데 한때는 6분의 1의 급여를 보조금으로 충당하기도 했다. 1993년에 제정된 국민연금법은 1994~1995년 급여에 충당하기 위해 20%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나 2006~2007년도의 경우는 1997~1998년부터 일관되게 보조금이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가. 기여의 종류

기여는 6개의 종류(classes)로 구분된다.

1) 제1종

직장급여소득자에 해당되는 경우로 다음의 두 가지로 세분된다.

가) 기초기여

PAYE 체계하에 공제가 이루어지는 형태로서 피고용자로부터 징수된다. 2003년 4월 6일부터 일정 수준(threshold) 이상의 모든 급여소득에 부과되나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1%만이 부과된다.

나) 이차기여

이는 고용주 또는 정부, 공공기관이 부담하는 부분으로 일정수준(secondary earnings threshold)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부과된다.

2) 제1종 A

고용주가 부담하는 기여분으로 피고용인에게 제공되는 복지혜택(benefits in kind)에 대해 부과된다. 제1종 이차기여분과 동일한 세율로 부과되며 고위직 피고용자에게 제공되는 복지혜택의 금액에 따라 부과된다. 제1종 A 기여분에 따른 피고용자에 대한 급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3) 제1종 B

PAYE 청산계약에 따른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연간 기여분이다. 마찬가지로 제1종 이차기여분과 동일한 세율로 부과되며 기여분에 따른 피고용자에 대한 급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4) 제2종

자영업자에게 부과되는 단일세율의 낮은 세부담이다. 장애, 출산, 퇴직연금 및 사별 급부 등 장기급여를 위한 것이다.

5) 제3종

퇴직연금 및 사별급부 등 장기급여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이다.

6) 제4종

낮은 문턱을 넘어서는 사업이윤에 대해 부과되는 기여분이며 높은 문턱 이상에 대해서는 1%로 부과된다. 대부분이 자영업자로 제2종 기여분에 병행해서 부과된다. 사업이윤은 소득세 부과징수와 동일하게 확정되는바 자진신고납부로 이루어진다.

나. 관련 법령

기여의무와 관련된 기본적인 법규는 사회보장기여와 급부법 1992(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and Benefits)와 사회보장행정법(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Act 1992)이다.

피고용자의 소득이 최소 기준(일주일에 79파운드, 2004년, 2005년)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연금부담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다. 일주일에 최대 610파운드에 이르는 수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부담금으로 11% 또는 12%가 부과된다. 고용주 역시 처음의 매주 94파운드까지에 대해서는 부담 의무가 0%이나, 94파운드 이상의 경우 12.8%에 달하는 부담금을 지불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영국 국민연금기여금은 사회보장을 위한 것으로 기여금의 수준이 상당히 높고 재분배 성격이 강하다. 기여금의 소득 대비 비중이 피고용자와 사용자에 대해 각각 구분되어 정의되어 있는데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버는 근로자에게 기여율이 높으며 특정 구간에 대해서만 개인이 직접 부담하는 것이 특징이다.

〈표 1-14〉 기초(근로자) 기여(2004~2005년)

Class 1 기여

(단위: 파운드, %)

Class 1 기초 (근로자) 기여 2004~2005 ¹⁾	
Lower earnings limit(LEL) 최저소득한도	주간 79 월간 343 연간 4,108
Primary threshold 기본 문턱	주간 91 월간 395 연간 4,732
기본문턱까지의 요율	0
기본문턱과 상한(UEL)까지 요율(비 위탁)	11
기본문턱과 상한(UEL)까지 요율(위탁)	9.4
초과분 요율	1
감면 요율	4.85
상한(UEL)	주간 610 월간 2,643 연간 31,720

주: 1) Class 1 기여는 소득과 연계. 근로자는 기초 Class 1 기여분으로 소득이 1차문턱(LEL)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1%로 기여하고 2차문턱(UEL)을 초과하는 부분은 1%로 부과

〈표 1-15〉 기초(근로자) 기여(2003~2004년)

Class 1 기여

(단위: 파운드, %)

Class 1 기초(근로자) 기여 2003~2004	
Lower earnings limit(LEL) 최저소득한도	주간 77 월간 334 연간 4,004
Primary threshold 기본 문턱	주간 89 월간 385 연간 4,628
기본문턱까지의 요율	0
기본문턱과 상한(UEL)까지 요율(비위탁)	11
기본문턱과 상한(UEL)까지 요율(위탁)	9.4
초과분 요율	1
감면 요율	4.85
상한(UEL)	주간 595 월간 2,579 연간 30,940

〈표 1-16〉 기초(근로자) 기여(2002~2003년)

Class 1 기여

(단위: 파운드, %)

Class 1 기초(근로자) 기여 2002~2003	
Lower earnings limit(LEL) 최저소득한도	주간 75 월간 325 연간 3,900
Primary threshold 기본 문턱	주간 89 월간 385 연간 4,615
기본문턱까지의 요율	0
기본문턱과 상한(UEL)까지 요율(비위탁)	10
기본문턱과 상한(UEL)까지 요율(위탁)	8.4
초과분 요율	3.85
감면 요율	주간 585 월간 2,535 연간 30,420

〈표 1-17〉 이차(고용주) 기여(2005~2006년)

(단위: 파운드, %)

Class 1 이차(고용주) 기여 2005~2006	
소득/2차 문턱	주간 94 월간 407 연간 4,888
세율(비위탁)	문턱 이상 12.8
세율(위탁)	월급관련 9.3%, 현금 구매 시책 관련 11.8% (최저소득한도에서 소득의 할인분인 3.5%와 1% 포함하여), 그리고 UEL 이상에 12.8%

〈표 1-18〉 이차(고용주) 기여(2004~2005년)

(단위: 파운드, %)

Class 1 이차(고용주) 기여 2004~2005	
소득/2차 문턱	주간 91 월간 395 연간 4,732
세율(비위탁)	문턱 이상 12.8
세율(위탁)	월급관련 9.3%, 현금 구매 시책 관련 11.8% (최저소득한도에서 소득의 할인분인 3.5%와 1% 포함하여), 그리고 UEL 이상에 12.8%

〈표 1-19〉 이차 (고용주) 기여(2003~2004년)

(단위: 파운드, %)

Class 1 이차(고용주) 기여 2003~2004	
소득/2차 문턱	주간 89 월간 385 연간 4,615
세율(비위탁)	문턱 이상 12.8
세율(위탁)	월급관련 9.3%, 현금 구매 시책 관련 11.8% (최저소득한도에서 소득의 할인분인 3.5% 와 1% 포함하여), 그리고 UEL 이상에 12.8%

〈표 1-20〉 이차(고용주) 기여(2002~2003년)

(단위: 파운드, %)

Class 1 이차(고용주) 기여 2002~2003	
소득/2차 문턱	주간 89 월간 385 연간 4,615
세율(비위탁)	문턱 이상 11.8
세율(위탁)	월급관련 8.3%, 현금구매 시책관련 10.8% (최저소득한도에서 소득의 할인분인 3.5% 와 1% 포함하여), 그리고 UEL 이상에 11.8%.

Class 2 기여

〈표 1-21〉 세율과 SEE 한도

(단위: 파운드, %)

과세연도	주당 기여율			Small earnings exceptional limit
	세율	Share fishermen	Volunteer development workers	
2005~2006	2.10	2.75	4.10	4,345
2004~2005	2.05	2.70	3.95	4,215
2003~2004	2.00	2.65	3.85	4,095
2002~2003	2.00	2.65	3.75	4,025
2001~2002	2.00	2.65	3.60	3,955
2000~2001	2.00	2.65	3.35	3,825
1999~2000	6.55	7.20	3.30	3,770
1998~1999	6.35	7.00	3.20	3,590
1997~1998	6.15	6.80	3.10	3,480

Class 3 기여

〈표 1-22〉 세율과 소득요인

(단위: 파운드, %)

과세연도	주당 기여율	Earnings factor for each contribution in col. 2
2005~2006	7.35	TBA
2004~2005	7.15	TBA
2003~2004	6.95	77.00
2002~2003	6.85	75.00
2001~2002	6.75	72.00
2000~2001	6.55	67.00
1999~2000	6.45	66.00
1998~1999	6.25	64.00
1997~1998	6.05	62.00

Class 4 기여

〈표 1-23〉 세율과 소득한도

(단위: 파운드, %)

과세연도	세율	Annual lower earnings limit	Annual upper earnings limit	Maximum contribution
2005~2006	8	4,895	32,760	
2004~2005	8	4,745	31,720	
2003~2004	8	4,615	30,940	
2002~2003	7	4,615	30,420	1,806.35
2001~2002	7	4,535	29,900	1,775.55
2000~2001	7	4,385	27,820	1,640.45
1999~2000	6	7,530	26,000	1,108.20
1998~1999	6	7,310	25,220	1,074.60
1997~1998	6	7,010	24,180	1,030.20

주: 1) 기여는 UEL 초과분에 대해 1%

〈표 1-24〉 Class 1과 1A 신고기한

형식	기한	가산세 규정
End-of-year returns P14, P35, P38 and P38A	과세연도 이후 5월 19일	TMA 1970, s. 98A
P11D	과세연도 이후 7월 6일	SI 2001/1004, reg. 81(2)

9. 기타

〈자동차와 연료 복지혜택〉

2002년 4월 6일부터 업무용 차량 세금은 CO₂ 배출과 차의 가격에 따라 누진된다.

2003~2004년부터 2006~2007년까지 자동차 복지혜택에 대해서는 자동차에 승인된 CO₂ 배출량에 따라 기여금을 청구한다. 이 기여는 그 자동차의 CO₂ 배출의 레벨에 합당한 자동차의 가격대의 비율에 의해 산정된다. 만약 CO₂ 배출량이 0 또는 5로 끝나지 않는다면, 거의 5g/km로 절사한다. 여기에는 디젤 차량에 대한 3% 추가징수와 대체 연료와 기술을 사용한 자동차에 대한 감세가 포함되어 있다.

〈표 1-25〉 자동차 CO₂ 배출량에 따른 기여

(단위: 파운드, %)

CO ₂ 배출량(g/km)			과세대상이 되는 차량가격의 비중
2003~2004	2004~2005	2005~2006	
155	145	140	15
160	150	145	16
165	155	150	17
170	160	155	18
175	165	160	19
180	170	165	20
185	175	170	21
190	180	175	22
195	185	180	23
200	190	185	24
205	195	190	25
210	200	195	26
215	205	200	27
220	210	205	28
225	215	210	29
230	220	215	30
235	225	220	31
240	230	225	32
245	235	230	33
250	240	235	34
255	245	240	35

〈표 1-26〉 대체연료와 기술로 작동되는 차량에 대한 감세

차종	감면
전기 배터리 자동차	정가의 15%, 정가의 5~6% 미만 감세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	정가의 적당한 비율, 2% 미만의 감세와 CO ₂ 배출량이 연간 최소 부과액의 자격 내에서 20g/km당 1%의 감세
LPG 가스 또는 CNG 가스 사용 자동차	정가의 적당한 비율, 1% 미만의 감세와 CO ₂ 배출량이 연간 최소 부과액의 자격 내에서 20g/km당 1% 감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i-fuel cars(both gas and petrol) ○ Bi-연료 자동차 	자동차가 처음 등록되거나 2000년 1월 1일 이후 등록이고, 휘발유와 가스로 작동되는 것이 승인된 경우 : CO ₂ 배출량이 연간 최소 부과액의 자격 내를 적용하여 정가의 적당한 비율 차가 2000년 1월 1일 전에 등록되고, 휘발유 차가 retro-fitted: 휘발유 배출을 적용받아 정가의 합리적 비율, 1% 미만의 감세

주: 1. CO₂ 배출량을 승인받지 못한 자동차에 대한 부과

2. 기본적으로 자동차기여금 부과는 차의 연식과 엔진 사이즈에 의해 증가된다.

〈표 1-27〉 연료복지혜택에 대한 기여 : 휘발유(액화석유가스 포함)

(단위: 파운드)

과세연도		금액
2002~2003	배기량	
	1,400cc 이하	2,240
	1,401~2,000cc	2,850
	2,000cc 이상	4,200
	장부가격, 배기량 정보가 없는 경우 모든 차종	4,200
2001~2002	배기량	
	1,400cc 이하	1,930
	1,401~2,000cc	2,460
	2,000cc 이상	3,620
	장부가격, 배기량 정보가 없는 경우 모든 차종	3,620
2000~2001	배기량	
	1,400cc 이하	1,700
	1,401~2,000cc	2,170
	2,000cc 이상	3,200
	장부가격, 배기량 정보가 없는 경우 모든 차종	3,200
1999~2000	배기량	
	1,400cc 이하	1,210
	1,401~2,000cc	1,540
	2,000cc 이상	2,270
	장부가격, 배기량 정보가 없는 경우 모든 차종	2,270
1998~1999	배기량	
	1,400cc 이하	1,010
	1,401~2,000cc	1,280
	2,000cc 이상	1,890
	장부가격, 배기량 정보가 없는 경우 모든 차종	1,890

〈표 1-28〉 연료복지혜택에 대한 기여 : 디젤

(단위: 파운드)

과세연도		금액
2002~2003	배기량 2,000cc 이하	2,850
	2,000cc 이상	4,200
2001~2002	배기량 2,000cc 이하	2,460
	2,000cc 이상	3,620
2000~2001	배기량 2,000cc 이하	2,170
	2,000cc 이상	3,200
1999~2000	배기량 2,000cc 이하	1,540
	2,000cc 이상	2,270
1998~1999	배기량 2,000cc 이하	1,280
	2,000cc 이상	1,890

○ 소득 상한선(Earnings cap)

연금기여금(소득 상한선)으로 결정된 최대 소득은 물가지수와 연계하여(The index-linked amount) 다음과 같다.

개인연금기여(PPCs) 소득상한 (ICTA 1988, s. 640A, 646A)

(단위: 파운드)

과세연도	최고 개인 소득
2005~2006	105,600
2004~2005	102,000
2003~2004	99,000
2002~2003	97,200
2001~2002	95,400
2000~2001	91,800
1999~2000	90,600
1998~1999	87,600

II. 법인세

1. 서론

영국의 법인세제도는 개인사업, 동업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와 법인 형태인 경우로 나누어 관리된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제도에 대비되는 영국의 기업과세제도는 회사의 수익에 대해 부과되고, 매 회계연도마다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이 적용된다. 1965년까지 회사들은 소득세법하에서 과세되었다. 법인세법은 1965년 세제개혁에서 도입되었는데 1973년부터는 이윤규모가 작은 소규모 법인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한편 법인세율은 1965년 도입 이후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990년대 들어 여러 차례의 세율조정이 있었으며 최근에는 기본세율을 33%에서 30%로 인하하였다.

영국에는 2007년 현재 4만개의 공공유한회사(공기업), 93만 6천개의 민간주식회사가 있으며 5만 4천개의 회원제 클럽이 운영되고 있다. 일반적인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이다.

과세소득 1만파운드 이하의 법인에 대해서 10% 세율이 적용되던 것이 2002년부터는 새로 0%의 초기(starting) 세율이 적용되고 19%까지의 점증세율(sliding scale)이 적용되고 30만파운드까지는 19%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다시 30만파운드부터 150만파운드까지는 19~30%의 점증세율이 적용된다. 주지하듯이 법인세로 회사 이익이 과세될 때, 소득세로 과세되는 개인 사업이나 동업과 비교하여 많은 유사점이 있다.

2. 납세의무자

사업을 시작하거나 어떻게 운영을 할지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을 때의 대안으로는 개인사업자가 되거나, 다른 사람과 동업을 하거나,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개인사업자 또는 동업자는 사업의 채무에 대해 그들의 개인적인 모든 자산의 범위에서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파산선언을 할 수도 있다. 유한회사의 형태의 회사 주주의 의무는 일반적으로 지불되지 않은 주식 가치에 한정된다. 개인자산의 보호는 대개 회사를 통해 사업을 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또 하나의 요인은 회사의 수익이 35만파운드 이하이면 회계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가. 비법인 사업자

개인사업자 또는 동업자는 2만 7,100파운드를 초과하는 모든 수입의 40%를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아내와 남편의 동업에도 적용된다. 주주의 경우 얼마나 많은 수익을 배당금으로 남기고, 법인세율로 부과될 세금을 얼마나 남길지를 결정할 수 있다(중요한 것은 수입이 회사의 수익으로 처리되기보다는 개인의 수익으로 처리될 때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이다). 수익이 30만파운드 이하일 경우의 법인세율은 21%이고, 이것은 소득세율보다 1%포인트 낮은 세율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기여금 구조(position)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개인사업자나 동업자는 클래스 2 국가보험과 클래스 4 국가보험을 모두 지불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간 수익이 2만 5,220파운드인 사람의 보험료를 모두 합치면 1년에 1,075파운드 정도를 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것은 남편과 아내의 동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회사의 피고용인과 고용주가 함께 지불하는 1년의 국가보험료는 연간 수익이 2만 5,220파운드인 사람을 기준으로 4,778파운드이고, 고용주가 지불하는 보험료를 공제하고 계산하더라도 2,843파운드가 된다.

전반적인 부담구조(tax position)은 또한 수익이 봉급수익인지 배당수익인지에 따라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 왜냐하면 배당을 지불하는 것은 국민연금기여금을 절약하고, 배당에 대해 회사가 지불하는 세금의 20%는 세액공제로서 주주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1) 수익에 대한 세금 지불

과세되는 경영자의 봉급과 국가보험료는 PAYE 사업에 따라 즉각적으로 지불되거나 회계기간 말 이후 9개월 내에 지불하여야 하는 회사의 다른 수익에 대한 법인세와 함께 경영자의 회계장부의 대변(credit)에 기입된다.

2) 손실

새로운 사업이 초년에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되면, 각기 다른 손실 공제가 개인과 회사에 적용되게 된다.

나. 파트너십(partnerships) 과세

1) 과세소득의 결정

2006, 2007년까지는 파트너십의 사업수익에 대한 과세는 동업자 개개인이 아닌 동업의 사업수익 그 자체에 부과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동업자 개개인이 분리되어 그들 개인별의 수입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 때 동업자 개개인은 사업자로 취급되어 사업과세에 의해 과세된다. 현재의 기준에 의하면, 동업자들은 그들의 모든 수입에 대해 개인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개별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고 국세청은 동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고 하여 다른 동업자들에게 부과할 수 없다. 그러나 동업자들은 그들의 동료 동업자들의 태만하고 부정적인 행위에 영향을 받는다. 즉, 과세에 대한 통상적인 제한기간이 종료되었을지라도 그들은 배당이익에서의 모든 결과적인 소득에 대해 과세된다.

2) 손실

파트너십 손실에 대한 공제도 비법인 사업손실과 같이 취급된다. 손실은 다음 해로

이연되고 이후 발생하는 수익에서 공제된다. 손실은 시간제한 없이 미래로 이연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사업에서 생기는 수익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 즉, 어떤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러한 손실은 미래에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이전되어 발생한 수익에서 공제되는 것이다.

부채는 어떠한 목적으로 발생하였는가와 관계없이 납세자의 모든 수익에서 공제된다. Section 387에서는 부채를 사업 부채와 비사업 부채로 나누고 있다. 비사업 부채가 우선적으로 수익으로부터 공제된다. 이때 부채가 수익보다 많은 경우, 공제하지 못한 만큼의 부채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공제될 수 없다. 만약 비사업 부채를 공제하고도 수익이 남는다면, 그 다음으로 사업 부채를 공제한다.

3) 총수입에서 사업손실 공제

사업 손실은 납세자의 법정 총수입에서 공제될 수 있다. 기준연도의 손실은 회계연도의 손실이다. 중복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 손실은 회계연도의 전년도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380은 납세자에게 유연성을 제공한다. 납세자는 손실이 발생한 해에 그 손실을 손실로 사용할 수 있고, 또는 앞선 회계연도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납세자가 각 연도에 주장할 수 있는 공제의 양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손실은 충분한 법정 총수익이 있다면 모두 공제되어야 한다. 자본이득에 대한 연간 공제의 한계는 매년 7,700파운드이다.

4) 사업이 회사로 이전될 때의 손실에 대한 공제

개인사업체가 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그리고 전환 이후에도 여전히 같은 사업이 수행되고 있는 경우, 공제는 Section 386하에서 요구될 수 있다. 공제는 비법인 사업의 구제받지 못한 사업 손실에 대해 적용될 수 있다. 손실은 회사로부터의 배당금, 이자수익과 함께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회사의 수익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5) 최종적인 손실 공제

사업이 중단될 때 최종의 손실 공제가 활용된다. 첫째로, 손실은 모든 이용 가능한 공제수단을 사용하여 공제된다. 그래도 공제되지 않은 손실은 전기로 이전되어 사업을 중단하는 해의 앞선 3년의 재정연도의 총수익에서 공제될 수 있다.

다. 법인

법인세는 회사나 회원제 클럽(member's clubs)과 같은 동업(partnerships)이 아닌 법인 형태 기업의 이익에 부과된다. 여기서 '이익'이란 모든 수입원을 포함하며 자본이득 또한 포함한다. 법인세는 영국 거주 회사들의 전 세계로부터의 수입에 부과된다. 지사나 대리점을 통해 영국에서 무역을 수행하는 영국 비거주 회사들은 지사나 대리점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에 법인세가 부과되고, 무역을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사나 대리점에 사용되는 영국에서의 자산의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부과된다.

회사법에 의해서 설립된 회사, 법인격 없는 단체, 신탁재산(unit trust), 외국기업의 지점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며 파트너십은 개인으로 취급된다. 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는 다음의 세 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 주주는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를 이행하는 데 그치고 회사채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주식회사
- 주주가 회사 해산시 받는 금액을 한도로 회사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 주식회사
- 주주가 회사의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주식회사

1)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방지(imputation)제도

법인세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고전적인 이중과세방지제도가 사용되었다. 고전적인 제도하에서는 세금의 계산에 있어 회사와 그 회사의 주주들 사이의 관계가 고려되

지 않았다. 회사는 그들의 배당에 관한 정책과 관계없이 그들의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한다. 즉, 그 회사의 주주들은 회사에 의해 미리 납부된 세금에 대한 아무런 공제 없이 배당을 받고, 받은 배당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간단하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분배된 수익이 두 번 과세된다는 결점을 안고 있다. 한번은 회사의 차원에서 과세되고 그 후에 주주의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과세되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을 포함한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회사 수익이 과세되는 방법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법인세 폐지 논의가 일고 있기도 한다.

1973년 영국에서 분배된 수익에 대한 이러한 이중과세의 문제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부분조정 제도(partial imputation system)로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부분조정제도는 일단 법인단계에서는 배당분과 유보분을 구별하지 않고 과세하는 대신 개인단계에서는 수취배당액의 25%를 가산한 금액을 과세소득에 산입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수취배당액의 25%를 공제하고 과세하는 제도이다. 즉 주주가 회사에 의해 이미 납부된 법인세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권을 받는 제도이다. 법인에 대한 각종 특별조치 때문에 실제로는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중과세 조정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에 대한 배당을 지불할 때에 세율의 25%로 예납법인세(advanced corporation tax)를 납부하고 예납법인세만큼은 본래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었으나 이 제도는 1999년 4월부터 폐지되었다.

3. 과세소득

가. 과세될 회계기간 결정

법인세는 회사의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수익에서 가능한 비용공제를 뺀 후의 순수익에 대해 과세된다. 법인세 납부를 목적으로 한 회사의 회계기간은 다음의 경우 시작된다.

- 회사가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개 사업의 개시를 의미한다.

- 회사의 중단 없이 회사의 이전 회계기간을 종료했을 때

법인세를 목적으로 한 회사의 회계기간은 다음의 경우에 종료된다.

- 회계기간의 시작 이후 12개월이 지났을 때
- 회사의 회계 일자 또는 회사가 회계기간을 채우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그러한 기간의 종료일
- 폐업 시
- 회사가 영국의 거주자가 되는 것을 포기한 날짜
- 회사가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없어지는 날짜

주의해야 할 것은 세금을 목적으로 한 회계기간(accounting periods)과 회계를 목적으로 한 회사의 기록기간인 사업기간(period of account)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두 기간이 종종 같을지라도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세금을 목적으로 한 회계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어서 사업기간이 12개월보다 긴 경우 그 기간은 세금 계산을 위해서 하나 이상의 회계기간으로 분할되어야 한다. 회계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그 기간이 과세기간이 된다. 이것이 개인사업 및 동업과 회사 사이의 매우 중요한 차이 중의 하나이다.

나. 회계기간에 대한 수익 분배

만약 15개월의 사업기간이 세금을 목적으로 두 개의 회계기간으로 분할된다면 첫 번째 회계기간은 12개월이 될 것이고 두 번째 회계기간은 3개월이 될 것이다. 이러한 분할이 있는 경우 두 기간 사이의 수익의 분할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루어진다.

- Schedule D Case I, III과 IV 수입은 자본 공제 이전에 시간에 기초해서 분배된다. 즉 수익의 15분의 12는 첫 번째 회계기간에 포함되고, 수익의 15분의 3은 두 번째 회계기간에 포함된다.
- 균형공제와 부채를 포함한 자본 공제는 각각의 회계기간에 계산된다. 점차 줄어드는(tapering) 공제는 또한 짧은 회계기간 동안에는 줄어든다. 회사에 의해 소

유된 자산의 사적인 사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자본 공제도 할 수 없다.

- 다른 수익은 대개 그 수익들이 관계된 기간에 근거하여 분배된다. 예를 들면, 임대수익은 임대료가 지불되는 기간에 분배된다. 그러나 은행이자(은행이자의 발생시에 기초하여) 분배된다.
- 부채는 그것들이 지불되는 시기에 기초하여 분배된다.
- 과세이익은 이익을 얻는 기간에 분배된다.

2006년 9월 30일자 회계기간 종료 시의 법인세 과세 수익

	파운드
Schedule D Case I (사업 수익 - 자본 공제)	3,000
Schedule D Case III (영국의 이자 또는 연금)	1,000
Schedule D Case V (외국 재산으로부터의 수입)	500
Schedule D Case VI (잡다한 수입)	300
Schedule A (영국 내 땅과 건물의 임대료)	200
과세된 수익(증가)	300
과세이익	700
총수익	6,000
- 수익에 대한 부채	(1,000)
법인세 과세 수익(PCTCT)	5,000

법인세는 회사의 이익, 즉 소득과 자본이익에서 일정한 경비와 공제가 가능한 항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과세되며 과세대상 소득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영국 내 사업이익
- 자유직업소득
- 이자, 연금, 로열티 및 기타 연차지불금
- 외국의 저당 증권, 채권 등에 의한 소득
- 외국소재 재산으로부터의 소득
- 기타소득

- 영국에 있는 부동산에서의 임대료 수입 및 프리미엄
- 국채 또는 지방채의 수익
- 급여소득
- 영국거주법인으로부터의 배당 등

4. 비용공제, 세액공제 등

자본지출에 대한 세금 공제는 자본공제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세금을 목적으로 한 자본자산의 일관된 처리를 확보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은 또한 특별한 자산을 특별하게 과세 처리하도록 한다. 자본공제는 사업상의 자본지출에 대해 적용될 수 있다. 자본공제는 세금을 목적으로 한 지출에 이용 가능하다. 자본공제는 또한 회사의 수익을 계산할 때 이용 가능한 공제이다. 자본공제는 과세연도 동안에 주어진다. 이것은 사업의 회계연도와 일치한다. 회계연도의 기간이 12개월이 아닐 때에는 이용 가능한 자본공제는 회계연도의 기간에 맞게 줄어들거나 늘어나게 된다.

1) 공장과 기계

2001년의 CAA(Capital Allowance Act)에는 설비와 기계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것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판례법을 살펴보아야 한다.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설비와 기계의 정의로부터 배제되는 자산의 유형

- 사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지 않은 자산
- 수명이 2년 이하인 자산
- 사업이 수행되는 장소의 일부를 형성하는 자산

□ 자동적으로 설비와 기계로 간주되는 지출

- 사업자에 의해 점유된 건물에 대한 소방관련 규제(fire regulations)를 따르기

위한 장비에 대한 지출

- 산업용 건물의 열 차단 장치 구비를 위한 지출
- 운동장에 대한 법정 안정성 요구를 따르기 위한 지출
-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출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이 자본공제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목적으로 한 기계나 공장설비에 대한 자본지출이어야 한다. 매년 과세기간 동안의 공제 가능한 공제액은 가격에서 처분비용을 제외한 가액의 25%이다.

2) 초년도 공제

초년도 공제는 임대, 자동차, 배, 그리고 철도자산과 같은 설비와 기계에 대한 지출에는 적용될 수 없다. 일반적인 공제와 달리 초년도 공제는 회계기간에 관계없이 자산 가격의 40%로 요구된다.

3) 자본공제의 공식화

(단위: 파운드)

	Pool	공제
Written down value b/f	100,000	
+ not qualifying for a FYA	10,000	
	110,000	
처분	20,000	
	90,000	
감가상각 공제(90,000 × 25%)	(22,500)	22,500
	67,500	
+ qualifying for a FYA		
설비 10,000		
초년도 공제율 40% (4,000)	6,000	4,000
Written down value c/f	73,500	
과세연도의 공제		26,500

4) 100% 초년도 공제

100% 초년도 공제는 소규모의 사업을 하는 자가 정보나 통신 기술에 투자를 할 때 적용할 수 있다(중간 규모나 큰 규모의 사업은 제외된다). 정보통신 기술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그리고 인터넷이 가능한 전화가 포함된다. 100% 초년도 공제는 자본구매의 비용의 전부가 그것을 구매한 연도에 세금공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5) 내구성 자산

2006년도 예산은 25년 이상의 수명을 가진 설비와 기계에 대한 지출에 대해 감가상각 공제를 25%에서 6%로 줄이기 위한 제안을 담고 있었다. 이러한 자산들은 내구성 자산이라고 불린다. 이 줄어든 시스템은 2006년 11월 26일 이후에 발생한 지출에 적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규칙은 내구성 자산에 대하여 매년 10만파운드 이상의 지출을 하는 사업에만 적용된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자산들은 비록 내구성 자산이지만, 계속해서 25%의 감가상각 공제가 적용된다.

- 거주하는 집, 소매 가게, 전시실, 호텔 또는 사무실로서 주로 사용되는 건물에 있는 기계나 설비
- 2010년 말 이전에 구입했던 배와 철도 자산

6) 자산의 사적인 사용

설비나 기계가 부분적으로만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자본공제는 A/B의 분수에 의해 줄어든다. 여기서 A는 자산이 사업 목적으로 사용된 기간이고 B는 자산 소유의 총기간이다.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자산은 자본공제와 구별되어 계산된다. 오직 사업을 목적으로 사용된 기간만큼의 자산만 자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7) 소모성 자산

납세자는 자산이 처분될 때 균형 있는 공제를 요구하기 위해서 단명 자산으로 취급될 수 있는 특정한 기계와 설비를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은 유용한 특권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납세자가 자산의 단지 25%의 공제만을 받아들이는 대신 자산에 대한 full 공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소모성 자산으로 취급되지 않는 자산은 다음과 같다.

- 배
- 자동차
- 임대로 제공되는 기계 또는 설비

8) 산업건물

산업건물은 다음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이나 건조물이다.

- 제조공장, 공장 또는 다른 부동산에서 수행되는 사업
- 수송, 정박, 하수도, 전력발전 또는 수력발전 사업
- 터널, 교량 또는 도로 등을 만드는 사업
- 공장 또는 상품이나 재료의 저장고를 포함하는 사업
- 광석, 석유 또는 다른 자원과 관련된 사업이나 경작 또는 어업을 목적으로 한 사업

이러한 사업들을 수행하는 사람에 의해 제공된 건물은 산업건물로 간주하며, 건물들이 사용되기 시작하면 4%의 감가상각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

9) 연구와 개발공제

연구개발 지출은 과세대상 사업 수익으로부터 공제될 수 있다. 1962년 이래로 과학 연구 지출은 100%의 자본공제를 받아 왔다. 2006년도 예산에서는 중소기업의 사업자들이 더 많은 연구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이 법을 조정하였다. 즉 중소기업의 사업자

들이 연구개발비로 지출을 할 경우 150%의 자본공제를 해주기로 한 것이다. 예를 들면, 100파운드를 연구개발비로 사용하였다면, 150파운드의 공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2002년 예산에서는 큰 규모의 회사에까지 이러한 법을 확대시켰는데, 큰 기업들은 연구개발비의 지출에 대해 125%의 자본공제를 받게 된다.

10) 농업건물

농가, 농장 건물, 시골집, 울타리 등에 대한 자본 지출은 자본공제를 받는 것이 적합하다. 매년 4%의 감가상각 공제는 지출이 발생한 해부터 이용 가능하다. 이러한 공제는 산업건물에서와 마찬가지로 농업건물에도 주어진다. 감가상각 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농업건물이 처분될 때에는 자본공제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시간에 따라 분배된다. 예를 들어 만약 판매자의 회계기간이 반이 지난 상태에서 판매가 발생한다면, 판매자는 연 공제액의 반만을 공제받게 된다.

5. 손실

비용으로 공제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비용이 발생하였을 때 비록 개인에게 과세하는 것과 회사에 과세하는 것 사이에는 약간의 유사한 면이 있지만, 서로 완전히 분리해서 다루는 것이 이해하기가 쉽다. 손실은 다양하게 발생하고, 그러한 손실을 공제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사업 결손(trade loss) : 사업 손실은 같은 회계연도의 수입에서 공제될 수 있고, 전기로 이전되어 이전 회계연도의 수입에서 공제될 수도 있으며, 다음 해로 이월되어 다음해의 사업수익으로부터 공제될 수도 있다.
- 비사업 손실 : 비사업 손실은 사업 손실에 대한 예외로서 비사업 수익에서 공제된다.
- 자본 손실 : 자본 손실은 현재 또는 미래연도의 자본이득에서 공제될 수 있다. 즉 수익에서 공제해서는 안되고, 자본이득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Schedule A(영국 내 땅과 건물의 임대료) 손실 : Schedule A 손실은 회사의 같

은 해의 non-Schedule A 수익과 이득에서 공제된다. 이때 손실이 남는 경우 이러한 손실은 앞으로 Schedule A 사업이 운영되어 생기는 모든 유형의 미래의 수입에서 공제된다.

- Schedule D Case IV(외국 유가증권 소득, 외국 재산 소득) : 현재 또는 미래의 Schedule D Case IV의 수익에서만 공제될 수 있다.

□ 미래 사업수익에서의 손실 공제

사업을 하던 회사가 그러한 사업에서 같은 회계연도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회사는 그 손실을 법인세 감면을 목적으로, 미래의 회계기간 동안의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사업수익에서 공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단 회사의 경영자가 바뀌거나, 수행되는 사업의 구조나 성격이 현저하게 바뀌는 경우,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발생한 손실은 미래로 이월될 수 없다.

가) 비용(charges)

회계기간 동안 지불된 비용이 수익을 초과할 경우, 비용은 수익에서 공제되고도 남게 되는데, 그러한 공제되지 않은 사업 비용은 미래의 사업 손실에 추가된다. 단, 비사업 비용은 section 393(1)하에서는 공제될 수 없다. 대신 비사업 비용이 지불되는 해에 사업 손실을 공제하고도 수익이 남는 경우 비사업 비용이 사업 비용에 앞서 공제될 수 있다.

나) 총수익에서의 손실 공제

회사가 손실을 발생시키는 경우, 비용에 앞서 손실이 발생하는 회계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수익으로부터 공제를 요구할 수 있고, 손실이 발생한 후 이전 12개월 동안에 발생한 모든 수익에 대해서 비사업 비용에 앞서 공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 소유의 변화

손실이 발생한 시기와 그러한 손실을 공제할 수 있는 수익이 발생한 시기 사이에 소유주가 바뀌게 되는 경우 상업손실 공제는 적용될 수 없다. 즉 section 393A(1)에 따

른 손실의 전기 이연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section 393(1)에 따른 손실의 미래로의 이월도 되지 않는다.

6. 세율

법인세율은 2006~2007년의 경우 0~30% 구간에서 수익의 규모에 따라 정해진다.

- 회사의 이익이 1만파운드 이하이면 초기세율(Starting rate)의 법인세율을 적용 받는다.
- 회사의 이익이 1만 1파운드 이상이고 5만파운드 이하이면 소기업세율의 적용받는 대신 한계공제(Marginal relief)가 이루어진다.
- 회사의 이익이 5만 1파운드 이상이고 30만파운드 이하이면 소기업의 법인세율을 적용 받는다.
- 회사의 이익이 30만 1파운드 이상이고 150만파운드 이하이면 주 세율(Main rate)의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대신 한계공제(Marginal relief)가 이루어진다.
- 회사의 이익이 150만 1파운드 이상이면 주 세율(Main rate)의 법인세율을 적용 받는다.

1980년대 중반만 해도 법인세율(main rate)은 52%에 달했으나 공장과 기계설비에 대한 초기연도 공제가 사라지면서 35%로 낮아졌다. 최근 구체적으로 1998년 재정법(Finance Act)에서 31%로 낮추었고 1999년에는 30%, 2008년에 28%로 낮추어 오늘에 이르렀다.

〈표 II-1〉 법인세율

(단위: %, 파운드)

회계연도	세율	소기업 세율	소기업에 대한 이윤제한 (하한)	소기업에 대한 이윤제한 (상한)	소기업에 대한 한계공제 산식	초기세율	초기세율에 대한 이윤제한 (하한)	초기세율에 대한 이윤제한 (상한)	초기세율에 대한 한계공제 산식
2009	28	21	300,000	1,500,000	7/400				
2008	28	21	300,000	1,500,000	7/400				
2007	30	20	300,000	1,500,000	1/40				
2005	30	19	300,000	1,500,000	11/400	0	10,000	50,000	19/400
2004	30	19	300,000	1,500,000	11/400	0	10,000	50,000	19/400
2003	30	19	300,000	1,500,000	11/400	0	10,000	50,000	19/400
2002	30	19	300,000	1,500,000	11/400	0	10,000	50,000	19/400
2001	30	20	300,000	1,500,000	1/40	10	10,000	50,000	1/40
2000	30	20	300,000	1,500,000	1/40	10	10,000	50,000	1/40
1999	30	20	300,000	1,500,000	1/40	-	-	-	-
1998	31	31	300,000	1,500,000	1/40	-	-	-	-

주: 1. 초기세율에 대한 하·상한과 유사하게 소기업에 대한 하·상한과 한계공제는 비례하여 감소됨.

○ 회계기간 12개월 미만

2. 폐쇄형 투자지주회사는 소기업이나 최초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고, 이윤 수준에 관계없이 정상 세율 적용

한계공제(Marginal relief) (ICTA 1988, s. 13)

〈표 II-2〉 유효한계 세율

(단위: %)

회계연도	한계 소기업 세율	한계 초기 세율
2005	32.75	23.75
2004	32.75	23.75
2003	32.75	23.75
2002	32.75	23.75
2001	32.5	22.5
2000	32.5	22.5
1999	32.5	-

$$\text{공제} = (\text{상한} - \text{이윤}) \times \frac{\text{기초 이윤}}{\text{이윤}} \times \text{한계공제 계수(산식)}$$

$$\text{Deduction} = (\text{Upper Limit} - \text{Profits}) \times \frac{\text{Basic profits}}{\text{Profits}} \times \text{Marginal Relief Fraction}$$

‘이윤’이란 최종적으로 계산된 법인 과세목적과 동일 그룹 회사들의 산재된 투자 수익을 제외한 투자수익과 해외 수입의 합(1999년 4월 5일 이후)

‘기초 이윤’이란 최종적으로 계산된 법인 과세목적(법인세에 대한 이윤 과세로 알려짐)

2000년 4월 1일부터 초기세율에 대한 한계공제를 적용함.

7. 법인세 행정

가) 1999년 7월 이전

1993년 9월 30일부터 1999년 7월까지 법인세는 회계기간의 종료일 이후 9개월 동안 납부할 수 있었다. 회사들은 심지어 의무화된 날짜까지 정확한 과세액이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부과된 법인세를 납부해야 했다. 그런 후에 회사는 완전한 평가와 계산 그리고 수익을 계산하고, 모든 법인세는 회계기간 종료일 이후 12개월 뒤에 나타나는 보고서에 표기된다. 이러한 제도는 'pay and file' 이라 불렸다. 세액이 늦게 납부되거나 또는 납부된 세액이 적은 경우 회사는 이자를 납부하거나 벌금(가산금)을 납부하거나 아니면 둘 모두를 납부하여야 했다.

나) 1999년 7월 이후

1999년 7월 이후 회사의 회계기간 종료에 대한 새로운 신고납부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self-assessment for companies' 라고 불린다. 이 제도가 이전의 제도와 다른 점은 어떠한 과세를 위한 평가나 부과가 국세청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회사는 자사의 세금 계산을 스스로 수행하고 그 계산에 따라 납부의무가 있는 날에 납부를 하면 되는 것이다. 이 때 회사들은 그들의 세금 계산에 사용한 모든 정보의 기록을 과세기간 종료 이후 6년 동안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다) 납기일

대부분의 회사들은 자회사의 회계기간 종료 이후 9개월 내에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1999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다. 즉, 자사의 법인세 의무를 4번으로 분할해서 납부하는 것이다.

라) 원천징수된 세금

순수익이 들어올 때, 그 소득은 세금을 낸 수익으로 취급되거나, 명확하지 않은 투자 수익으로 취급된다. 명확하지 않은 수입의 증가는 회사의 법인세 과세수익에 포함되고, 이미 세금이 지급된 수익은 법인세 납부의무에서 공제된다.

〈표 II-3〉 신고납부기한

납세의무	기한
법인세 Mainstream tax(ICTA 1988, s. 10)	회계기간 경과 후 9개월 1일
분납 법인세 Mainstream tax in instalments (SI 1998/3175)(1)	
- 분납	회계기간 경과 12개월 후 7, 10, 13, 16개월 차의 14일
- 분납 후 잔액	회계기간 경과 후 9개월 1일
이자와 연납에 대한 소득세	신고기간 경과 후 14일
조직원의 대출금에 대한 과세 (ICTA 1988, s. 419)	기대출 후 회계연도 경과 후 9월 1일

- 주: 1. 재정법(1999)은 대기업에 대한 분납 법인세 규정
 2. 대기업 세금납부에 있어 최초년도는 60%, 2년차 72%, 3년차 88%로 조정
 3. 만약 법인세 부담이 10,000파운드 미만인 경우 분할로 납부할 수 없고(2000년 6월 30일 이후 회계연도, 이전에는 한도가 5,000파운드였다), 그룹인 경우 그룹단위로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다.

○ 청구 및 소명 기한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일반적인 청구 및 소명의 기한은 6년이다. 특정한 경우 위원회에서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표 II-4〉 소명/청구기한

사유	기한	법규
사업장 폐쇄에 따른 주식양도	2년	ICTA 1988, s. 100(1C)
ACT 포기(단 1999년 4월6일 이전 회계연도 개시의 경우)	6년	ICTA 1988, s. 240(1), (6)
사업손실의 이연	자동	ICTA 1988, s. 393(1)
사업손실의 동기 또는 이전 수익으로 상계	2년	ICTA 1988, s. 393A(1),(10)
그룹공제 ○ 자진신고납부 ○ 납부/신고(pay and file)	그룹공제에 대한 청구기한: (1) 신고기한 경과 후 12개월 이내 (2) 조사종료 부과고지 후 30일 이내 (3) 국세청의 수정고지 후 30일 이내 (4) 국세청의 수정고지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확정고지 후 30일 이내 6년	FA 1998, Sch. 18, para. 74 ICTA 1988, s. 412, Sch. 17A, para. 2
투자회사 수익에 대해 비상장 회사 주식의 처분에 따른 손실 상계	2년	ICTA 1988, s. 573(2)
그룹내 법인세 환급 포기	회사양도에 따른 환급 이전	FA 1989, s. 102(2)
단기 자산으로 취급되는 공장과 기계	2년	CAA 2001, s. 85
특정리스에 따른 자본공제의 상계	2년	CAA 2001, s. 260(3), (6)
자본공제자산의 연계 기업간 양수	2년	CAA 2001, s. 569(1)
금융관련 비사업 적자에 대한 공제	2년	FA 1996, s. 83((6), (7)(and as applied to exchange losses by FA 1993, s. 130(2))
자진신고제도하에서 자본공제에 대한 일반청구	청구기한: (1) 신고 후 12개월 (2) 조사종료 부과고지 후 30일 (3) 국세청의 수정고지 후 30일 이내	FA 1998, Sch. 18, para. 82
제3자에게 양도 이전 상대방에게 자본자산양도 청구	2년	ICTA 1992, s. 171A

8. 연결납세제도⁵⁾

영국의 연결납세제도는 기업집단에 대한 과세특례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룹 공제(group relief)라는 특별조치가 그 대표적인 제도이다. 기업그룹의 계열사는 배당금과 부과금 등 기업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독립법인과 차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영국은 1967년 그룹공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일관되게 손실이전모델(loss transfer model)을 사용하여 왔다.

그룹공제는 기업집단 내의 청구회사(claimant company)가 그룹 내의 다른 대체회사(surrendering company)의 당기에 발생한 사업손실 등을 이전받아 자사의 과세소득과 상계하는 제도를 말한다.

1) 적용기업

그룹공제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75% 그룹회사와 컨소시엄회사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일방이 다른 타방의 75% 자회사인 경우 또는 쌍방이 함께 공동 모회사의 75% 자회사인 경우로 영국 거주법인에 적용된다. 보통 주식자본의 75% 이상이 단독 또는 복수의 다른 내국법인에 의하여 보유되고, 또한 지분이 각각 5% 이상인 컨소시엄회사는 청구회사 또는 대체회사가 되어 다음 중 한 회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컨소시엄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 회사는 특정 구성원인 다음 회사의 75% 자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 컨소시엄그룹에 의해 소유되고 있는 사업회사
- 컨소시엄그룹에 의해 소유되고 있는 지주회사의 90% 자회사인 사업회사
- 컨소시엄그룹에 의해 소유되고 있는 지주회사

5) 이 부분은 김진수·이준규(2002)를 주로 참고하였음.

2) 이전대상

그룹공제는 대체회사의 당해연도 이익과 상계되지 않은 사업손실, 투자회사의 관리비, 감가상각비(자본공제) 및 특정비용 등 4개 항목이 그 대상이 된다.

가) 사업 손실(trading loss)

대체회사의 사업 손실은 그에 상응하는 사업연도, 즉 그룹공제를 청구할 수 있는 손실이 발생한 대체회사의 사업회계연도와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사업회계연도 기간 동안의 청구회사의 총이익에 대해 공제할 수 있다.

나) 세무상 감가상각비(capital allowance)

대체회사는 당기 세무상 감가상각비 중 당기의 과세소득금액의 계산상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청구회사의 상응기간에 대하여 대체할 수 있다. 다만 대체는 당기에 발생한 금액에 한하고 공제 부족액의 전기로부터의 이월분은 대체될 수 없다. 대체될 수 있는 감가상각비의 한도는 당해 과세연도 공제와 관련된 소득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이다.

다) 관리비

투자회사의 당기 관리비 중 당기 총소득금액으로부터 공제되지 않는 금액은 청구회사의 상응기간에 대해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공제 부족액의 전기로부터의 이월분은 이전되지 않는다. 다른 사업회계연도에서 발생한 투자회사의 관리비, 사업손실 및 감가상각비는 모두 대체회사의 이익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 특정비용(charges on income)

대체회사가 제출한 당기의 특정비용이 당기의 총소득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청구회사의 상응기간에 대해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공제 부족액의 전기로부터의 이월분은 이전되지 않는다.

3) 이전공제의 계산

이전대상이 되는 사업 손실 등은 이전회사의 당기소득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에 한한다. 청구회사에서의 그룹공제 대상이 되는 소득은 자사의 당기 사업 손실이나 이월 사업 손실을 공제하고 특히 당기에 지불된 특정비용 등을 공제한 후의 소득이다. 그룹공제 적용회사들의 사업연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룹공제 한도액은 공통기간 동안의 청구회사의 이익과 대체회사의 손실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대부분의 경우 사업 손실은 순수한 인수 또는 합병에 따른 소유권 변경에 따라 아무런 제한없이 이전된다. 사업 손실의 경우에는 소유권이 변경된 후 3년 이내에 사업의 본질이나 사업활동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한 때에는 이월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 사업 손익을 계산할 때에는 감가상각비가 포함된다. 따라서 기업의 이전에 따른 별도의 미사용 감가상각비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미사용된 자본 손실은 그대로 유지되며 그 기업의 모든 미래 수익에 대해 상계할 수 있게 된다.

4) 적용 제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룹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그룹공제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 국외사업에서 발생한 결손 또는 이익획득을 의도하지 않는 비상업사업에서 발생한 결손
- 이중거주투자회사의 사업 결손

5) 그룹멤버의 가입과 탈퇴

연결그룹에 대한 신규 가입을 규율하는 특별한 규정이나 그 가입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검사절차도 없으며 그룹공제 목적의 연결그룹을 이탈하는 것에 대해서도 특별한 조건이나 검사과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업회계연도가 종료하기 이전에 새로운 기업이 그룹에 가입하거나 기존 가입기업이 그룹을 탈퇴하는 경

우 그 시점에서 가입회사와 탈퇴회사의 기존 사업회계연도는 종료되며 새로운 사업회계연도가 시작된다. 청구회사와 대체회사는 대체회사의 사업연도와 청구회사의 상응하는 기간에 동일한 그룹의 구성원이어야 한다.

Ⅲ. 국제조세

영국의 국제조세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 방식은 경쟁(competition), 협력(cooperation), 지배권(constitution)으로 요약될 수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경쟁을 촉진시키는 조세정책의 틀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호협력의 문화를 장려하면서도 조세시스템에 대한 국가지배권(sovareignty)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견고하게 하는 주요 가치는 공개성과 투명성이다.

국제조세정책이라고 해서 국내 조세정책과 별개의 가치체계를 갖는 것은 아니다. 가능한 한 세부담을 낮추면서 노동, 저축과 투자를 권장하고 재정에 충당할 세수를 징수하는 것이야말로 국제조세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규범이다. 영국의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투자 유치, 법인세율의 조화, 그리고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의 원칙 적용을 통해 조세로 인한 시장의 왜곡과 실패를 줄이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넓은 규제와 제한을 가능한 한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1. 영국의 국제조세정책의 기초

영국의 국제조세정책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조세정책의 틀 안에 존재하는 것이다. 정부는 조세정책의 주요한 목적을 조세부담을 최대한 줄이면서 공공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수입을 거두는 것에 두고 있다. 조세정책은 명확한 원칙에 근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원칙이라 함은 근로, 저축, 투자를 장려하는 것이다. 모든 이해관계자 사이의 공평성이 바람직하지 못한 부작용을 회피하고 순응 비용을 줄이기 위해 중요하다.

따라서 국제적인 경쟁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가능한 한 투자를 많이 유치하며 기업에게 낮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과세시스템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 최근 개혁의 핵심은 경쟁 왜곡과 시장실패를 감소시키고,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고, 조세회

피를 막을 수 있는 낮은 세율의 광범위한 기본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다.

가. 경쟁(Competition)

21세기의 국제화된 경제의 초점은 경쟁을 포함한 세계 조세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다. 또한 국제화와 자본시장 민영화는 개인과 기업의 자본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나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와 다르게 국가들 간의 독점성은 비효율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영국은 공정한 조세경쟁, 반경쟁적 조세관행을 개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불공정한 국가보조금, 불공정한 규제를 철폐하고 이웃을 궁핍하게 하는 결과(beggar thy neighbour consequences)를 가져오는 경쟁 왜곡적 시장규제를 줄여가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세계화와 자본시장 자유화는 개인과 기업의 이동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이로 인한 시장 확대 및 개선이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위협으로도 다가온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

한 국가가 기업 유치를 위하여 다른 나라의 부담으로 다가올 감면 등을 통한 위해한 조세경쟁을 하는 경우 공정한 경쟁구조를 왜곡하게 된다. 외국기업을 제약하는 조치를 통해 기업을 유치하려는 경우 자유롭고 열린 시장경제 원칙에 반한다. 이미 영국에서는 OECD에서 권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해한 조세경쟁(predatory harmful tax competition)을 제한하는 법규(anti-avoidance legislation)를 제정하였다. 단일시장의 왜곡을 초래하고 다른 나라의 조치로 자국의 재정주권이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나라도 먼저 이러한 공정한 경쟁구조를 위한 위해한 조세조항을 고치려 하지 않을 것이므로 패키지로써 OECD 회원국 전체의 공동 보조가 중요하다. 조세피난처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영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표준에 기초하여 적정 수준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나. 협력(Cooperation)

국제화의 기본적인 결론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 협력할 때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의 힘은 연대를 구축할 수 있는 힘에 달려 있다. 그래서 협력은 경쟁과 함께 영국의 국제조세정책의 주요한 기반 중의 하나인 것이다.

OECD 모델 조세협약과 지침은 국제적으로 모든 나라들의 양자 수준, 다자 수준 협력에 기여하고 있다. 영국은 이전가격제도의 완비를 비롯하여 가장 많은 나라들과 조세협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세귀착의 예를 들어보자. 세계는 국제 이중과세 방지에 대해 나름대로 입장을 정하고 있다. 각국은 주권국가로서 과세권한을 가지지만 납세자의 입장에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정(arbitrage) 이슈가 중요하다. 모든 납세자들에게 공정한 중재 기회 제공을 통해 적극적으로 각국의 조세 시스템 차이를 악용하는 시장 왜곡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보다 구조화된 이전가격문제, 배당의 영세율 원천징수연장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다.

또한 탈세에 대한 공조체계의 구축도 중요한 이슈다. 정보공유와 공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탈세를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국가 경계를 초월하여 자동적으로 정보교환 및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전자상거래와 국제 조세 문제는 부가가치세와 관련되어 있는바 디지털 상품의 무차별적인 취급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조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다. 지배권(Constitution)

영국 국제조세정책의 주요 특징은 자신의 과세시스템에 대한 국가지배권의 중요성이다. 모든 국가는 국가조세정책에 주도권을 쥐고자 하는 선호를 가지고 있다. 모든 국가는 공공서비스(보건, 교육, 교통 등) 제공, 그리고 그러한 서비스의 자금을 지원하는 세금(법인세, 개인소득세, 직접세, 간접세, 소비세 등)의 속성, 수준, 균형과 관련된 다른 요건과 선호를 가지고 있다. 현재 영국은 국가생산물 특히 조세업무에 관해 지배권을 방어하는 데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다.

영국은 조세정책과 관련하여 자국의 재정주권 수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제화,

공조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자국의 다양한 선호 및 수요를 반영하여 조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라. 공개성과 투명성

공개성과 투명성은 영국 국제조세정책의 핵심이다. 더 나아가 21세기의 조세시스템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세계는 급속한 개혁을 겪고 있으며 자본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는 세계경제의 안정성과 성장에 대한 좋은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는 많은 기회가 있는 동시에 위험도 존재하고 있는데 투명성과 공개성은 이러한 위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세계는 빠른 혁신과 자본시장의 빠른 변화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공개와 투명성을 더욱 강조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조세당국에게는 기회와 위협의 양면을 함께 제공한다. 정보공유의 필요성과 투명성의 제고야말로 국제조세정책의 핵심이다.

2. 국제조세업무

현재 가브리엘 매크로프(Gabriel Makhlouf)가 이끄는 국제조세팀이 담당하는 구체적인 분야는 다음과 같다.

- 영국민의 외국소득 및 국제거래를 통한 수익에 대한 과세
- 외국민에 의해 영국에서 수취된 소득에 대한 과세
- 북해석유 및 가스 수익에 대한 과세
- 해운업계의 수익에 대한 톤세과세
- 유럽연합(EU)에 있어서 영국 이해의 보호 및 증진과 유럽연합과의 조세조화
- 다른 나라와의 직접세 관련 협력 및 영국의 이해 증진 및 보호

구체적으로 조세분야에 관한 OECD, EU 및 국제협력의 장에 있어서 영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영국이 이를 주도할 수 있도록 국제파트너와의 관계를 유지한다. 이중과세

방지협약에 대한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발전시킨다.

가. 이중과세방지(Relief for Double Taxation)

이중과세는 소득이 발생한 국가와 납세자의 거주국가가 상이한 경우 이 두 국가에 의해 모두 소득이 과세될 때 문제가 된다. 이중과세공제(double taxation relief)는 해외투자시 이러한 이중과세로 인한 경제성장 저해 등 역인센티브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한 것이다. 영국은 1999/2000회계연도 동안 이러한 이중과세공제 규모가 소득세(income tax)와 법인세(corporation tax)에서 55억파운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과세(underlying tax)와 관련하여 수많은 이중과세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기업들이 배당금을 지불한 것 중에서 이윤에 대해 자기기업(子企業; subsidiary companies)에 의해 지불된 세금이다.

2000년과 2001년 재정법 개정을 통해 영국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기업에게 이중과세공제를 해주는 방식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영국 국세청이 변화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서를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이러한 지침서의 기록들은 이중과세매뉴얼(Double Taxation Manual)에 구체화되며 정기적으로 갱신된다. 지침서 기록은 영국에 지불된 배당금을 다루는 DT995에서 DT1100 조항에서 잘 나타나 있다.

〈표 III-1〉 이중과세공제매뉴얼(Double Taxation Relief Manual - DTCONT)의 주요 내용

-
- 최근 변화 (Recent Changes to this Manual)
 - DT1700 + 영국에서 발생하는 비거주자의 소득(income arising in the United Kingdom to non-residents)
 - DT2100 + 특별협약 - 승인할 수 있는 것과 승인할 수 없는 세금(particular agreements - admissible and inadmissible taxes)
-

나. 이중과세협약(Double Taxation Agreements)

이중과세협약(double taxation agreement)은 양국간에 동일 소득에 이중과세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국경을 통과하는 거래에 대한 처리의 확실성을 보장하고 영국 기업의 이해가 해외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중과세협약은 영국정부의 과세권을 보호하는 한편 영국의 탈세 및 조세회피 방지 목적도 함께 가진다. 아울러 당사국과 조세관련 정보교환을 위한 조항도 포함한다. 영국은 100여개국과 폭넓은 조세협약을 맺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는 1,300여개의 이중과세협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협약은 크게 두 가지로 현재까지 발효중인 협약과 서명을 했으나 발효가 안된 협약이 있다. 현재 영국과 협약을 체결하여 발효중인 국가로는 쿠웨이트, 요르단, 리투아니아, 남아프리카, 대만, 미국 등이 있다. 서명을 했으나 발효가 안된 조세협약국은 호주, 캐나다, 칠레, 프랑스, 모리셔스, 뉴질랜드가 있다. 이러한 조약은 법률형식을 취한다.

1) 이중과세협약서(Double Taxation Agreements)

이중과세조약은 두 국가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장하기 위한 협약이다.

- 동일한 소득이 두 국가에서 과세될 수 있는 이중과세의 위험에 대한 대처
- 국가간 무역거래의 확실성을 제공
- 해외의 영국기업이익에 대한 조세차별의 방지

이중과세조약은 영국정부의 조세권을 보호하고 영국 국민의 조세의무(liability)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또한 이중과세조약에는 국가의 조세당국간 정보교환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세계 각국과 1,300여개 이중과세협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영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110개 국가 이상이 포함된 가장 큰 이중과세 방지협약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영국은 국가간의 경제활동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를 장려하고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국제무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OECD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참고적으로 영국과 협약한

국가들의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표 III-2〉 영국과 협약을 맺은 국가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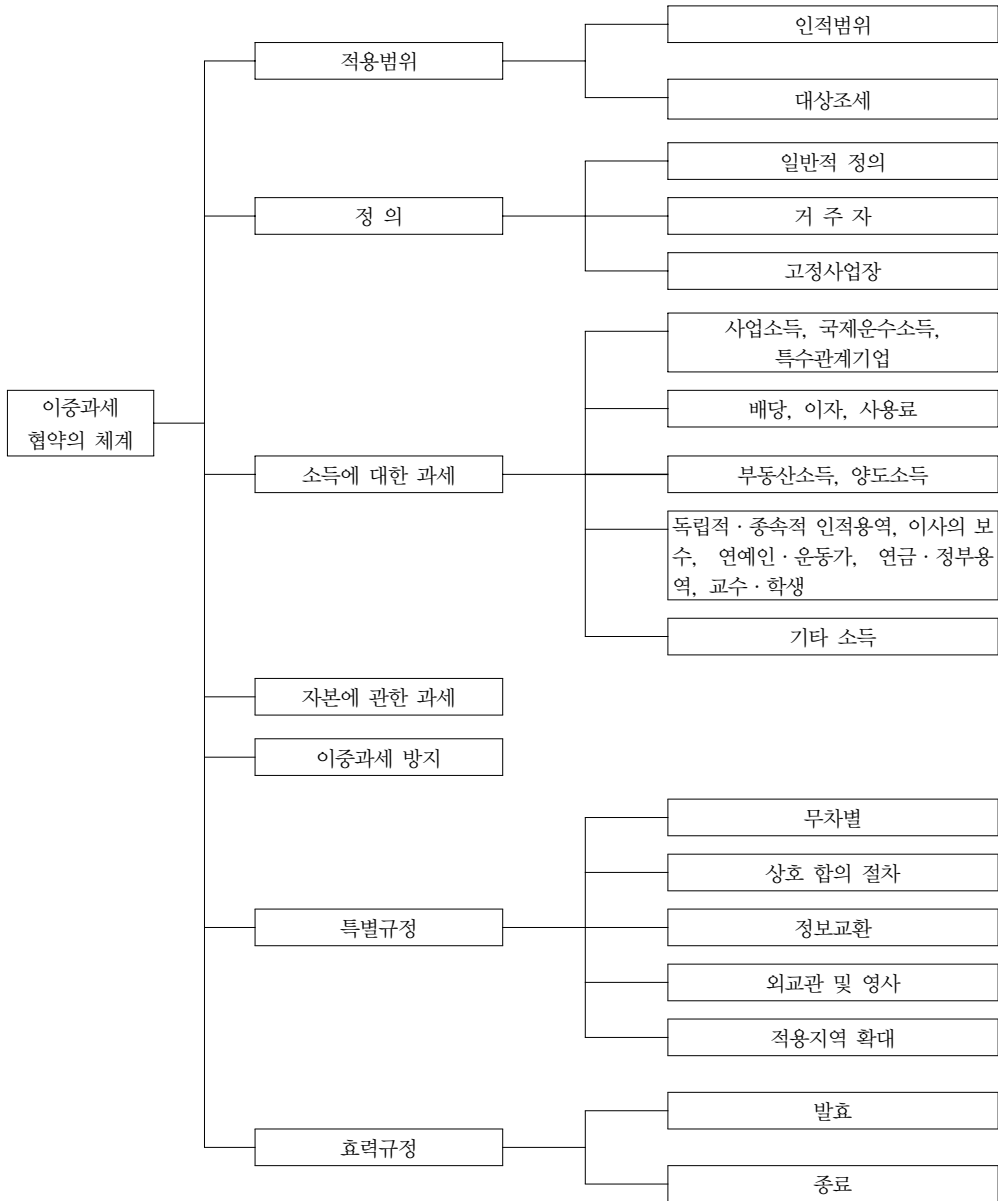
국 가
Antigua and Barbuda, Argentina, Australia, Austria, Azerbaijan, Bangladesh, Barbados, Belarus, Belgium, Belize, Bolivia, Botswana, Brunei, Bulgaria, Canada, China, Croatia, Cyprus, Czech Republic, Denmark, Egypt, Estonia, Falkland Islands, Fiji, Finland, France, Gambia, Germany, Ghana, Greece, Grenada, Guernsey, Guyana, Hungary, Iceland, India, Indonesia, Ireland (Republic of), Isle of Man, Israel, Italy, Ivory Coast (Cote d'Ivoire), Jamaica, Japan, Jersey, Kazakhstan, Kenya, Kiribati, Korea (Republic of), Kuwait, Latvia, Lesotho, Luxembourg, Macedonia, Malawi, Malaysia, Malta, Mauritius, Mexico, Mongolia, Montserrat, Morocco, Myanmar (Burma), Namibia, Netherlands, New Zealand, Nigeria, Norway, Oman, Pakistan, Papua New Guinea, Philippines, Poland, Portugal, Romania, Russian Federation, St Kitts and Nevis, Sierra Leone, Singapore, Slovak Republic (Slovakia), Slovenia, Solomon Islands, South Africa, Spain, Sri Lanka, Sudan, Swaziland, Sweden, Switzerland, Thailand, Trinidad and Tobago, Tunisia, Turkey, Tuvalu, Uganda, Ukraine, United States of America, Uzbekistan, Venezuela, Vietnam, Yugoslavia (Federal Republic), Zambia, Zimbabwe etc.

2) 이중과세협약서의 체계

이중과세협약서의 일반적인 체계는 적용 범위, 정의, 소득세에 대한 과세, 자본에 대한 과세, 이중과세 방지, 특별규정, 효력규정으로 크게 나누어진다(<http://www.thenaeun.net/tax/joyaig.htm>). 이러한 협약을 체결한 국가 중 영국과 가장 큰 규모로 무역거래를 행하는 국가인 미국⁶⁾과 우리나라, 요르단, EU국가인 노르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6) 2002년도 영국의 총수출 25%, 총수입의 18%를 차지함(영국 통계청).

[그림 III-1] 이중과세협약서의 일반적 체계



가) 영국과 미국의 이중과세협약

영국과 미국의 이중과세협약(UK/USA Double Taxation Convention)은 2001년 7월 24일에 서명되었고 수정된 협약(amending protocol)은 2002년 7월 19일에 서명되었다. 영국에서는 2003년 4월 1일부터 법인세, 2003년 4월 6일부터 소득세, 자본이득세, 2003년 5월 1일부터 원천징수세(taxes withheld at source), 2004년 1월부터 석유수입세가 각각 발효가 되었다. 미국의 경우 2003년 5월 1일부터 원천징수세, 2004년 1월 1일부터 기타 모든 미국과세가 각각 발효가 되었다.

미국의 이중과세협약의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II-3〉 미국의 이중과세협약의 관련조항

영국과 미국의 이중과세 협약	제1조 : 일반적 범위(general scope)	
	제2조 : 대상 과세(taxes covered)	미국 : 연방소득세, 연방부가가치세 영국 : 소득세, 자본양도소득세, 법인세, 석유수입세
	제3조 : 일반 정의(general definitions)	
	제4조 : 거주자(residence)	
	제5조 : 고정사업장 (permanent establishment)	a. 관리장소 b. 지점 c. 사무소 d. 공장 e. 작업장 f. 광산·유전·가스정·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제6조 : 부동산 소득 (income from real property)	
	제7조 : 사업 이익(business profit)	
	제8조 : 해운 및 항공 운수 (shipping and air transport)	
	제9조 : 특수관계기업 (associated enterprises)	
	제10조 : 배당금	
	제11조 : 이자	
	제12조 : 사용료(royalties)	
	제13조 : 이득(gains)	
	제14조 : 고용으로부터의 소득 (income from employment)	
	제15조 : 임원의 보수(director's fees)	

〈표 III-3〉의 계속

영국과 미국의 이중과세 협약	제16조 : 예능인 및 체육인 (entertainers and sportsmen)	
	제17조 : 연금, 사회보장, 부양, 어린이 지원 (pensions, social security, annuities, alimony, and child support)	
	제18조 : 연금 체계(pension schemes)	
	제19조 : 정부 서비스(government service)	
	제20조 : 학생(students)	
	제 21조 : 국외탐사와 개발행위(offshore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activities)	
	제22조 : 기타 소득(other income)	
	제23조 : 이익 제한(limitation on benefits)	
	제24조 : 이중과세공제 (relief from double taxation)	
	제25조 : 무차별(non-discrimination)	
	제26조 : 상호협약절차 (mutual agreement procedure)	
	제27조 : 정보교환과 행정지원(exchange of information and administrative assistance)	
	제28조 : 외교·상주사절 및 영사관 구성원 (diplomatic agents and consular officers)	
제29조 : 발효(entry into force)		
제30조 : 종결(termination)		

나) 영국과 우리나라의 이중과세협약

우리나라와 영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은 1996년 10월 25일에 서명되었고 1996년 12월 29일부터 발효되었다.

〈표 III-4〉 영국과 한국의 이중과세협약

영국과 한국의 이중과세 협약	제1조 : 인적범위	
	제2조 : 대상조세	가. 한국의 경우 (1) 소득세 (2) 법인세 (3) 주민세 및 (4) 농어촌 특별세 나. 영국의 경우 (1) 소득세 (2) 법인세 및 (3) 자본양도소득세
	제3조 : 일반적 정의	
	제4조 : 거 주 자	
	제5조 : 고정사업장	a. 관리장소 b. 지점 c. 사무소 d. 공장 e. 작업장 f. 광산·유전·가스정·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제6조 : 부동산 소득	
	제7조 : 사업 이윤	
	제8조 : 해운 및 항공 운수	
	제9조 : 특수관계기업	
	제10조 : 배 당	
	제11조 : 이 자	
	제12조 : 사 용 료	
	제13조 : 양도 소득	
	제14조 : 독립적 인적용역	
	제15조 : 종속적 인적용역	
	제16조 : 임원의 보수	
	제17조 : 예능인 및 체육인	
	제18조 : 연 금	
	제19조 : 정부용역	
	제20조 : 교 사	
	제21조 : 학생과 견습생	
	제22조 : 기타 소득	
	제23조 : 이중과세의 회피	
	제24조 : 경감의 제한	
	제25조 : 무 차 별	
	제26조 : 상호합의 절차	
	제27조 : 정보교환	
	제28조 : 외교·상주사절 및 영사관 구성원	
	제29조 : 발 효	
	제30조 : 종 료	

다) 영국과 요르단의 이중과세협약

2001년 7월 22일에 서명되었고 2002년 4월 24일부터 발효되었다.

영국에서는 2003년 4월 1일부터 법인세가 발효되었으며, 2003년 4월 6일부터는 소득세와 자본양도소득세가 발효되었다. 요르단에서는 2003년 1월 1일부터 발효됐다.

〈표 III-5〉 영국과 요르단의 이중과세협약

영국과 요르단의 이중과세 협약	제1조 : 인적 범위	
	제2조 : 대상과세	요르단 : 소득세, 배분세, 사회서비스세 영국 : 소득세, 법인세, 자본양도소득세
	제3조 : 일반 정의	
	제4조 : 거주자	
	제5조 : 고정사업장	a. 관리장소 b. 지점 c. 사무소 d. 공장 e. 작업장 f. 광산·유전·가스정·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제6조 : 움직일 수 없는 재산으로부터의 소득(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제7조 : 사업 이익	
	제8조 : 해운 및 항공 운수	
	제9조 : 특수관계기업	
	제10조 : 배당금	
	제11조 : 이자	
	제12조 : 사용료(royalties)	
	제13조 : 자본이득(capital gains)	

〈표 III-5〉의 계속

영국과 요르단의 이중과세 협약	제14조 : 독립적 인적용역	
	제15조 : 종속적 인적용역	
	제16조 : 임원의 보수	
	제17조 : 예술가와 스포츠 운동가	
	제18조 : 연금	
	제19조 : 정부서비스	
	제20조 : 교사와 연구원	
	제21조 : 학생과 훈련생	
	제22조 : 기타소득	
	제23조 : 이중과세 배제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제24조 : 무차별	
	제25조 : 상호협약절차	
	제26조 : 정보교환	
	제27조 : 외교·상주사절 및 영사관 구성원	
제28조 : 발효		
제29조 : 종결		

라) 새로운 UK/노르웨이 이중과세협약 : 국외활동과 관련된 변화(제23조)

(1) 국외 고용주를 위한 정보(Information for Offshore Employers)

새로운 포괄적인 이중과세협약은 노르웨이와 협상하여 2001년 12월 21일부터 발효되었다. 협약에 관한 규정은 2001년 4월 6일부터 소득세(income tax)와 관련하여 영국에 적용된다.

(2) 종업원의 과세 : 고용주의 행동(Taxation of Employee: Action by Employers)
 해외활동에 관한 협약 제23조에 일부 변화가 있으며, 이것은 2001년 4월 6일부터 노르웨이에 있는 영국 종업원의 소득(earnings)의 처리방법에 영향을 준다.

노르웨이에서 일하는 영국 종업원의 소득은 이전 협약에 의하면 영국 세금으로부터 면제를 받았다. 노르웨이에서 일하자마자 영국 종업원은 원천과세가 중지되며 노르웨이 세금을 공제하기 시작한다. 종업원이 영국으로 돌아올 경우 절차는 바뀌게 된다.

새로운 협약하에서 노르웨이에서 일하는 영국 종업원은 여전히 노르웨이에서 세금을 부담해야 하고 지금은 노르웨이 세금으로 통용되는 신용대부(credit)로 영국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고용주는 노르웨이에서 일할 때 노르웨이 과세를 공제해야 할 뿐만 아니라 4월 6일부터 종업원에게 원천과세를 행하여야만 한다. 과세고용주(tax employers)가 이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노르웨이에서의 수입에서 과세공제의 원천과세기법 네트워크를 운영해야만 한다.

다. 국제 - 상호협약절차(International - Mutual Agreement Procedure)

영국의 이중과세협약의 대부분은 상호협약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상호협약절차가 준수되어야 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 이중과세협약과 일치하지 않는 일반적인 과세근거 중의 하나는 한 국가 이상이 동일한 이윤에 과세를 하는 이전가격평가조정(transfer pricing adjustment)이다. 예를 들어 이전가격 평가감사 이후에 국가는 영국 관련기업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 조정된 수익에는 이미 영국 과세수익과 이중과세 성과에 포함된다. 영국 기업은 불만을 시정하기 위해 소관관청에 상호협약절차에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라. 이전가격세제

영국의 이전가격세제는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을 지배하거나 양 당사자가 동등의 지배하에 있고 이러한 특수관계자들 간에 하나의 거래 또는 일련의 거래에 의한 계약조건이 성립된 경우 적용된다. 영국의 이전가격세제는 1988년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스

케줄 28AA에 규정되어 있다. 2004년 법 개정으로 영국의 이전가격세제는 거래 당사자 중 한 쪽이 외국법인인 거래뿐만 아니라 거래 당사자 모두가 내국법인인 거래에도 적용하게 되었는데, 국내거래를 하는 중소기업에 중대한 행정적인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이전가격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1) 적용대상자

영국의 이전가격세제는 개인과 법인에 적용되기 때문에 회사나 파트너십뿐만 아니라 회사나 파트너십과 관련있는 개인 및 신탁에도 적용될 수 있다. 회사와 주주간의 거래는 이전가격세제를 적용할 수 있지만, 배우자간의 거래 또는 개인과 신탁간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전가격세제는 특수관계자인 회사의 지점에도 적용된다.

2) 특수관계자

이전가격규정이 적용되려면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은 상대방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상대방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회사에 대한 지배권은 주식 또는 의결권을 보유하거나 정관 또는 회사를 규율하는 다른 문서상에서 어떠한 권한을 부여받는 형식으로 발생하며 회사의 업무가 지배권을 가진 자의 의도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를 말한다. 파트너십에 대한 지배권은 자산이나 파트너십 소득의 50% 이상의 지분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특수관계를 판단할 때 지배권 여부는 A회사가 B회사를 지배하거나, A, B 두 회사가 동일한 지배권하에 있는 경우에는 A, B 두 회사는 특수관계자이다. 50%를 초과하는 의결권을 확보하는 경우에 지배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며, 간접소유도 허용한다.

3) 대상거래

영국의 이전가격세제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정상 이익이 발생하는 모든 거래 또는 공급을 대상으로 한다. 재화나 용역의 제공뿐만 아니라 자금조달, 유형·무형자산의

이전을 포함하며, 물적 재산이나 인적 재산의 사용에 따른 간접적인 이익도 포함된다. 하지만 주식 발행이나 배당 지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거래는 하나의 거래뿐만 아니라 일련의 거래가 포함될 수 있다. 거래는 준비, 합의, 이행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영국 국세청은 이러한 과정을 고려해 대가의 정함이 없는 거래를 판단하게 된다.

4) 이전가격세제 적용 여부

이전가격세제는 지점과 계열회사간의 거래에 적용되는데 지점은 독립적인 법적 실체가 아니라 한 회사의 구성부분에 불과하지만, 한 회사의 지점과 그 회사의 계열회사간의 거래에 대해서 이전가격을 적용할 경우 해당 지점은 회사의 구성 부분이 아닌 독립된 실체로 간주한다. 한 회사의 본점과 지점 사이 또는 동일 회사의 다른 지점들 사이의 거래는 독립한 실체 사이의 거래로 보지 않아 이전가격세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와 외국 계열회사의 국내지점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이전가격세제를 적용한다.

영국은 본·지점 거래에 대해서 지점을 본점과 동일한 실체로 보기 때문에 본점과 지점이 장소적으로 국내·국외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이전가격세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지점과 계열회사간의 거래에서 일방이 국내이고 타방이 국외에 실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지점을 본점과 독립된 실체로 판단하여 이전가격세제를 적용한다. 지점과 계열회사 모두 국외에 존재하는 경우 본·지점 거래의 일반기준을 적용하여 본점과 동일한 실체로 보아 이전가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5) 이전가격조정과 대응조정

영국의 이전가격세제에서 일차조정은 오직 과세소득을 증가시키거나 세수 손실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만 가능하다.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차거래로 간주하여 대여금이나 출자로 처리하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영국은 2차조정을 하지 않는다. 이전가격조정이 이루어지고 난 후 정상가격으로 거래되었을 때의 현금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초과분 지급액 대신에 세

무상 불리한 당사자는 세무상 유리한 자의 세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국제거래에 있어서 외국 세무당국이 이전가격조정을 한 결과 발생한 이중과세는 상호합의에 따라 대응조정을 하게 된다. 국제거래에 대해 이전가격세제가 적용될 경우 당사국간의 이중과세방지조약에 따라 이중과세가 조정되지만, 국내거래는 조약의 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국내법에서 이중과세를 제거하는 제도, 즉 보상조정을 두고 있다. 보상조정은 세무상 불리한 자에게만 허용되는데, 세무상 유리한 자의 소득을 정상가격으로 거래했을 때를 기준으로 증가시키는 조정을 하면 이에 상응하여 세무상 불리한 자의 세액을 계산할 때 같은 기준으로 보상조정을 하게 된다.

요컨대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과 동 법인의 국내 자회사간에 이전가격세제가 적용되어 영국 국세청에서 1차조정을 하게 되면 2차조정은 없으며 거래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초과분 지급방식이나 초과분에 대한 세금을 대신 지급하는 방식을 따른다. 또한 이러한 거래는 국내거래이기 때문에 국세청의 조정이 있기 전에 거래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세무신고시에 보상조정방식을 따를 수 있다.

IV. 자본이득세

1. 서론

개인의 자본이득에 대하여는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CGT)가 과세된다. 영국의 경우 자본이득세법에서 개인의 자본이득 과세문제를 별도로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자산의 양도에는 당해 자산의 수익적인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는 매매, 증여, 교환 등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자산의 증여를 유상처분으로 의제하여 증여 당시 시가에 의해 과세한다. 자본이득은 양도대가에서 자산의 취득원가를 공제한 금액을 의미한다. 개량지출이나 양도경비, 취득부대비용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자산의 무상이전, 고의적인 자산의 저가 양도 또는 저가 매입,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거래 등은 실질거래가액 대신 시가를 이용하여 자본이득을 계산한다. 자본이득세법에는 여러 가지 감면규정이 존재하는바 대표적인 것으로 개인의 주된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규정(private residence relief)이다.

한편 자산양도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 자본이득에서 먼저 공제하고 손실이 당해 연도 자본이득보다 큰 경우에는 이월하여 이후 연도의 자본이득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월공제 연한에는 제한이 없으며 1982년 3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1982년 3월 31일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본다.

개인의 경우 자본이득세율은 18% 단일세율 체제로 전환되었다. 자본이득 이외 다른 개인의 소득은 합산하여 누진과세하고 있다. 개인의 경우 연간 9,600파운드(2008~2009회계연도)까지 자본이득과세가 면제되며, 물가인상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공제 한도가 조정된다.

2. 납세의무자

개인의 경우에는 거주자 또는 통상적인 거주자에 해당하면 전 세계 자산의 양도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법인의 경우 국내법인이면 해당 자산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 또는 일부 양도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외국법인이면 영국 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영국 내의 고정사업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고정사업장의 소득에 대해서는 이중과세협약에 따라 영국에서 과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특히, 영국 국내에서 지점 또는 대리인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던 외국법인으로 1989년 3월 14일 이후 영국 내의 사업을 중단하였거나 해당 자산을 영국에서 이동시킨 경우에는 영국 국내 소재 자산의 미실현 자본이득부분이 과세된다.

3. 과세소득

가. 과세기간

개인의 경우 4월 6일부터 익년 4월 5일까지의 기간이, 법인의 경우는 법인의 회계기간이 자본이득 과세기간이다.

나. 과세대상 자산

비과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자선단체, 노년퇴직기금, 지방정부, 노동조합, 공제조합, 과학연구단체, 외교상의 특권을 부여받은 자)을 제외하고는 모든 종류의 자산(개인의 경우 무형자산 포함)이 과세대상이다. 가장 일반적인 자산의 종류에는 주식, 증권, 토지상의 권리, 자산에 대한 옵션, 파운드화 이외의 통화, 자가창설자산 등이 있다.

비과세대상 자산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자가용
- 보유기간 내내 거주한 개인의 주된 거주주택
- 6,000파운드 이하의 일상용품
- 50년 이하의 기대 수명을 가진 살림도구
- 급여 등의 정기적인 적립저축제도 계약, 국민저축증서, 할증채권, 영국정부채권, 적격회사채
- 개인자산계획, 개인저축계좌 및 기업투자제도 등에 따른 특정 투자
- 개인상해보험 보상금
- 도박, 복권, 노름상금 등

다. 자본이득 계산구조

개인이 자산의 양도에서 소득을 얻은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과세가 이루어진다.

양도가액	...실지거래가액(특정 경우는 시가)
-	
양도경비	...수수료, 중개료, 양도경비, 광고비, 자산평가비용 등
-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특정 경우는 시가), 1982년 3월 31일 이전 취득의 경우는 1982년 3월 31일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의제
-	
취득부대비용	...수수료, 중개료, 이전비용 등
-	
개량지출	...개량의 효과가 양도시점까지 지속되는 경우
↓	
과세대상 자본이득	
-	
당기 공제가능손실	...특정 경우에는 자본손실 공제에 제한이 있음.

↓

조정 후 양도차익	
-	
연간 면제금액	…9,600파운드(2008~2009년도), 매년 물가인상 반영 금액조정
-	
이월결손금	…조정 후 양도차익에서 연간면제금액 차감 후 잔액이 0보다 큰 경우에만 이월결손금 공제가능
-	
사업공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에서 얻은 자본이득 중 최초 100만파운드(생애한도)의 유효세율 10%가 될 수 있게 양도차익 중 일부 공제

↓

CGT 과세표준	…개인의 소득 중 자본이득만을 분리과세
×	
세율	…18% 단일세율

↓

CGT 산출세액

1) 양도가액

일반적인 경우에는 판매 또는 처분에서 얻은 실제 대가를 양도가액으로 본다. 양도 대가에는 현재 또는 미래에 받게 될 현금 또는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것, 양도자산과의 교환으로 받게 될 자산의 가치, 또는 양도시점에는 지급받게 될 금액이 얼마가 될 지 모르지만 미래에 해당 금액을 받게 될 권리의 가치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액 대신 시가를 이용하여 자본이득 계산이 이뤄져야 한다.

- 자산의 무상 이전
- 고의적인 자산의 저가 양도
-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 때 시가라고 함은 공개시장에서 형성되는 합리적인 자산의 가치를 의미한다.

2) 양도경비 및 취득부대비용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양도경비 또는 취득부대비용에는 수수료, 중개료, 전문가 자문에 대한 수수료, 자산이전 또는 양도경비, 광고비, 자산평가비용 등이 있다.

3) 취득가액

외부구입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을, 자가제작 자산의 경우에는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대신 시가를 이용하여 자본이득 계산이 이뤄져야 한다.

-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 고의적인 자산의 저가 매입
-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4) 개량원가

개량의 효과가 양도시점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개량지출 역시 양도가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5) 당기 공제가능손실 및 이월공제손실

당해연도 중 여러 개의 자산을 처분하여 양도자산별로 자본이득 및 결손금이 각각 발생한 경우 자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더해 전체 자본이득에서 차감한다. 한편 결손금이 당해연도의 자본이득보다 크면 이월하여 이후 연도의 자본이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공제 연한에는 제한이 없다. 한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자와의 다른 양도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그 자와의 다른 양도거래에서

생긴 자본이득과만 상계가 가능하다. 살림도구 등의 처분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6,000파운드 이상의 대가를 받고 처분하였다고 가정하고 공제가능손실을 계산해야 한다. 자산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 기존에 공제받은 감가상각금액까지 손실공제가 가능하다.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순서는 먼저 양도차익에서 당기 결손금을 공제한 후, 연간 면제금액, 이월결손금의 순서로 공제해야 한다.

6) 연간 면제금액

2008~2009년도의 경우 최초 9,600파운드에 대해 자본이득과세가 면제된다. 매년 물가인상 등을 반영하여 금액이 조정되는바, 의회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매가격지수 상승에 연동하여 변동된다.

7) 사업공제

사업공제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에서 얻은 자본이득 중 최초 100만파운드의 유효세율이 10%가 될 수 있도록 양도차익 중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이 때 100만파운드란 개인이 일생 동안 적용되는 한도금액이다. 체감공제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사업공제규정이 도입되었으나, 두 규정의 적용요건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에 있어 실질적 양도의 요건은 양도자가 양도 직전 1년 동안 해당 사업을 소유해야 한다. 회사 주식이나 증권양도의 경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첫째, 당해 회사가 양도자의 인적회사이거나 상업회사 또는 상업그룹의 지주회사이거나 양도자가 당해 회사 또는 당해 그룹 계열회사 임직원에 해당해야 한다. 둘째, 양도직전 3년 내에 당해 회사가 상업회사 또는 상업그룹의 계열회사에서 제외되었다면 제외일로부터 직전 1년 동안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라. 특별규정

1) 사업용 자산의 과세이연(roll over relief)

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고 신규 자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규 자산의 양도시점까지 기존 자산의 자본이득과세를 연기받을 수 있다. 한편 양도대상 자산이 감가상각대상 자산이면 다음 중 가장 빠른 날에 과세된다.

- 신규 자산을 양도하는 때
- 신규 자산을 사업에 이용하는 것을 중단하는 때
- 신규 자산 취득 후 10년이 되는 때

이 때 신규 자산이란 기존 자산의 양도 직전 12개월부터 양도 직후 36개월 사이에 취득한 자산을 말한다. 그러나 이 기간 내에 신규 자산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투자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잠정적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자산을 처분하고 받은 대가를 전부 신규 자산 취득에 이용하였다면 자본이득 전부를 과세이연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가게를 5만파운드에 처분하고, 자본이득 1만 파운드가 발생한 경우 새 가게를 7만 5,000파운드에 구입하였다면 새 가게를 처분하는 시점까지 전체 자본이득 1만파운드를 과세이연받을 수 있다. 대신 과세이연되는 자본이득만큼 새 가게의 원가를 줄여줘야 하는데, 새 가게의 원가는 6만 5,000파운드가 되므로 2년 후 새 가게를 10만파운드에 처분하였다면 3만 5,000파운드가 과세대상 자본이득이 된다.

한편 기존 자산을 처분하고 받은 대가 중 일부만을 신규 자산취득에 이용하는 경우 자본이득 중 일부만을 과세이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게를 7만 5,000파운드에 처분하고 자본이득 1만 5,000파운드가 발생하였다고 가정하자. 새 가게를 7만파운드에 구입했고 전체 자본이득 중 1만파운드가 새 가게 취득에 이용되었다면 자본이득 5,000파운드에 대해서는 즉시 세금이 과세된다.

2) 증여재산 이월과세

자산의 무상 이전이든 저가 양도이든 관계없이 자산이 시가로 처분되었다고 보고 자본이득과세가 이뤄진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수자가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시점까지 자본이득과세를 연기받을 수 있다.

- 사업용 자산
- 비상장 상업회사 주식
- 농지
- 즉시 상속세가 과세되는 증여재산
- 상속세가 면제되는 특정 유형의 증여재산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게 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주체가 변경되며, 과세시점 역시 증여시점에서 수증자의 양도시점으로 늦춰지는 효과가 있다. 한편 자산을 이전하고 일부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월과세되는 금액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즉 자산을 양도하고 받은 실제 대가가 취득원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시가와 양도가액과의 차액만큼을 이월할 수 있다.

3) 부부간의 자산이전

당해 과세기간 동안 함께 산 적이 있는 부부에게 자산을 매각하였거나 증여하는 경우에는 자본이득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가액으로 자산이 이전되었다고 본다. 이 경우 실제 받은 대가는 고려하지 않는다. 즉, 부부간에 자산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이전받은 배우자가 그 자산을 매각하는 시점까지 자본이득과세가 연기되는 효과가 있다.

4)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자산을 매입하였거나 양도하였다면 실지거래가액 대신 시

가를 이용하여 자본이득 계산이 이뤄진다. 만약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자산양도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그 자와의 다른 양도거래에서 얻은 자본이득하고만 상계가 가능하다. 이 때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에는 다음과 같은 자가 포함된다.

- 자신의 배우자
- 형제자매 및 이들의 배우자
-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
- 사업상의 파트너 및 그들의 배우자, 친족
- 자신과 위의 사람들이 공동지배하는 회사

5) 사업합병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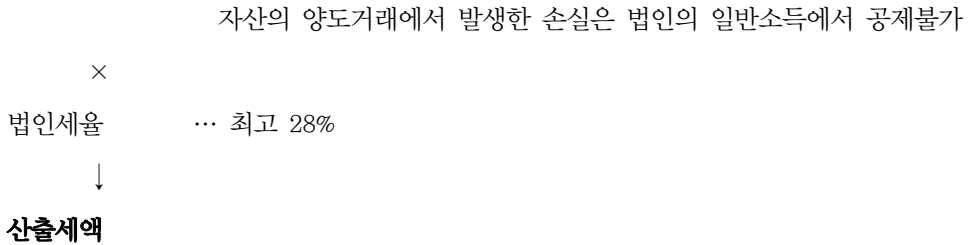
사업 또는 사업용 자산 전부를 신규 또는 기존 회사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처분 시점까지 기존 자산의 자본이득과세를 연기받을 수 있다.

4. 법인의 자본이득과세 구조

가. 개요

법인의 자본이득에는 자본이득세가 아니라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자본이득과세가 이뤄진다.

자본이득	… 자본이득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
+	
일반소득	… 자본이득 외에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 법인세법 규정 적용
↓	
과세표준	… 자본이득 및 법인이 벌어들인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



위와 같이 법인의 경우 자본이득만을 따로 분리하여 계산하지만, 결국에는 이를 법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동일한 법인세율로 과세한다.

나. 과세대상 자산

비과세자산 외의 자산을 양도하고 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자본이득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채무를 양도하고 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자본이득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회사의 유동자산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자본이득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는 처분, 교환, 증여 등의 행위로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를 거래가 이루어진 시기로 인식한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는 실제 처분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이득과세 목적에서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예를 들면 보험금의 수령이나 자산의 소멸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편 정상가격 외의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히 시가로 자산을 취득 또는 처분한 것으로 간주한다.

법인의 자본이득계산에는 자본이득세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내용들이 개인과 동일하지만, 일부 내용에서는 차이가 난다. 자본이득이란 양도대가에서 자산의 취득원가 및 개량지출, 양도경비를 뺀 금액을 말한다. 해당 자산이 50년 이하의 수명을 가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걸쳐 자산이 소모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 당시 잔액을 양도대가에서 공제한다. 그러나 해당자산이 감가상각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산의 양도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일 연도의 자본이득에서 먼저 상계한다. 그러나 상계 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없이 이월하여 이후 연도의 자본이

득에서 상계가 가능하다. 결손금을 소급하여 이전 연도의 자본이득에서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법인의 일반소득에서 공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 비과세 자산

모든 유형의 자산 및 권리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만 다음의 예외가 존재한다.

- 법인의 일반소득으로 과세되는 자본이득
- 6,000파운드 이하의 일상용품 처분
-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
- 특정 국제 및 요건을 충족하는 전환 불가능한 파운드화 회사채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적격 회사채의 양도에서 발생한 손실을 공제받을 수 있다.

- 1989년 3월 15일 이후 발행한 회사채
- 해당 채권의 가치가 무시해도 좋을 만큼 작다거나 상환일이 지난 경우
- 상환일 이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상환 불가능한 것으로 입증된 경우

한편 2002년부터 주요 주주면제 규정이 신설되었다. 2002년 4월 1일 이후 법인 주주가 12개월 내내 1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던 적격회사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본이득과세가 면제된다.

라. 과세이연

특정 요건을 갖추면 자산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이연받을 수 있다.

- 자본구조 개편, 감축, 구조조정, 합병 또는 인수 과정에서 주식교환으로 보통주 25% 이상을 갖게 되는 경우 또는 의결권의 대부분을 갖게 된 경우

- 구조조정 목적에서 국내법인간에 사업이 이전되는 경우로서 사업을 양도하는 법인이 사업 이전의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
- 국내법인이 해외지점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주식교환으로 외국법인에게 이전하는 경우로서 보통주를 25% 이상 갖게 된 경우
-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직전 1년 이내 또는 양도 직후 3년 내에 동일한 또는 다른 사업에 이용되는 유사 자산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한 다국적그룹에 속한 국내법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 EU 회원국에 거주하는 A가 영국 국내에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다른 EU 회원국에 거주하는 B에게 이전하고 전부 주식이나 증권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마. 신고납부

영국에는 예정신고납부제도가 없다. 즉 과세연도기간 동안 자산양도거래에서 얻은 자본이득 또는 손실을 모두 합산하여 1년에 한 번 신고가 이뤄진다. 개인의 경우는 1996~1997회계연도부터, 법인은 1999년 7월 1일 이후 종료하는 회계연도부터 자진신고납부방식으로 자본이득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납부에 적용되는 규정들이 자본이득신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과세연도 종료 직후(즉, 4월 6일) 국세청이 자본이득 신고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모든 개인에게 신고안내 통지서를 발송한다. 이러한 통지서의 도착시기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에 조금씩 차이가 난다.

5. 주택양도과세

가. 개요

개인이 주된 거주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0.5ha 이하의 정원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

에는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다. 반면 법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비과세 혜택이 없다. 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해당 주택이 1주택 또는 주된 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오직 하나의 주택만이 비과세된다.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두 번째 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 내에 주된 주택을 신고해야 한다.

둘째, 해당 주택에 보유기간 내내 거주해야 한다. 다만 해당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이 양도 직전 36개월, 허용부재기간, 직장관련 숙소에 거주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셋째, 해당 주택의 일부가 보유기간중에 사업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보유기간중에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 또는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부 제한이 있다.

넷째, 주택과 그에 부속되는 정원의 면적이 허용면적 이내여야 한다. 건물에 부속되는 정원의 면적이 0.5ha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자본이득 전체를 비과세받는다.

위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자본이득 전체가 비과세된다. 이 경우 다른 과세대상 자본이득이나 자산의 양도가 없는 경우라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일부만을 충족하여 부분적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서상에 「자본이득요약」란을 작성해야 한다.

한편 주택의 양도이익이 발생했을 때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주택양도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당해 손실을 다른 자본이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나. 거주기간 요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에 보유기간 내내 거주해야 한다. 이 때 보유기간이란 주택의 최초 취득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 기간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이 일부 있더라도 자본이득 전부를 비과

세받는다.

첫째,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이 양도 직전 36개월 이내이고 그 기간중 해당 주택이 1주택 또는 주된 주택에 해당되었던 적이 있는 경우

둘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택 또는 주된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일부 있더라도 이를 실제 거주기간으로 본다.

- 기존 주택을 팔 수 없거나 개조가 필요해서 구입 즉시 새 집에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최초 12개월)
- 땅을 사서 그 위에 집을 짓느라고 구입 즉시 새 집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최초 12개월)
- 부재기간 동안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다른 주택을 갖지 않은 경우로서 부재기간 전과 후에 모두 해당 주택이 1주택 또는 주된 주택에 해당했던 적이 있는 경우
- 해외근무 목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 직장과 집의 거리가 너무 멀어 집에 사는 것이 힘든 경우(4년)
- 고용주가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집에서 나와 일하기를 요구하는 경우(4년)
- 기타(3년)

6. 주식 및 증권 양도과세

가. 개요

상장 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든 주식의 양도가 과세대상이다. 모든 주식이 과세대상이지만 조세정책 목적에서 필요한 경우는 비과세하고 있다.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자본이득과세가 면제 또는 이연되는 주식에는 국채, 적격 회사채, 기업 구조조정이나 합병으로 받은 주식 등이 있다.

개인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의 전날까지 취득한 동일 회사의 동종 주식을 모두 합해 하나의 풀(pool)을 형성하고 그 풀을 단일자산으로 취급한다. 예를 들어 A가 B사의 보통주를 2005년 3월에 5,000파운드에 4천주, 2006년 9월에 2만 6,000파운드에 6천주 취득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자. 이 경우 A가 1만주(취득원가 3만 1,000파

운드)의 제104조 보유를 가졌다고 본다. A가 2008년 6월에 이 중 4천주를 매각하고, 양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B사 보통주를 추가 취득하지 않았다면 1만 2,400파운드를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차익계산이 이뤄진다.

2006년 4월 6일 이후 개인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와 취득을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배치해야 한다.

- 양도일에 취득한 주식
- 양도일로부터 30일 내로 취득한 주식
- 양도일의 전날까지 취득한 주식

나. 주식 재편

주식 재편에는 증자, 감자, 주식에 부속되는 권리의 변경 등이 포함된다. 가장 흔한 사례가 바로 무상증자 및 유상증자인데 두 경우 모두 기존 주주에게 신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배정된다. 공개입찰 등과 같은 기타 거래 역시 주식 재편으로 볼 수 있다. 주식의 발행과 관계없는 주식 재편 사례로는 주식병합, 주식분할, 권리변경 등이 있다.

주식 재편으로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이를 주식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며 주식 재편으로 인한 기존 주식의 소멸이나 변경 역시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주식 재편으로 신주를 받은 경우에는 자신이 받은 신주를 기존의 동종 주식에 합산해야 한다.

주식배당이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주주에게 현금 대신 주식의 형태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식배당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먼저 소득세 과세 목적에서 주주가 주식의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을 받았다고 보고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다음으로 자본이득 과세 목적에서 주주가 신주를 취득하기 위해 주식의 시가만큼 현금을 지급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추후에 당해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서 배당으로 받은 주식의 시가만큼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 기업 구조조정 및 합병

1) 분할

분할회사 주주에게 분할대가로서 분할신설회사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주식 재편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주주가 모회사와 자회사의 주식을 모두 갖게 되는데, 서로 다른 종류의 주식을 분배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기존 주식의 원가를 두 개 부분으로 배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2) 합병

A회사가 B회사를 합병하고, B회사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A회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이를 주식 재편으로 볼 수 있다. 합병대가에는 현금, 주식, 증권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각각의 조합별로 과세상의 취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자.

먼저, 합병대가로 모두 주식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이 갖고 있는 소멸회사 주식과 같은 때에 같은 가격으로 신주를 취득하였다고 본다. 소멸회사 주주가 이미 합병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신주와 구주를 통합하는 것도 가능하다.

둘째, 합병대가로 일부 금전을 받은 때에는 금전으로 받은 대가부분에는 세금이 과세된다. 다만 금전의 가치가 합병 직전 갖고 있던 소멸회사 주식의 가치와 비교했을 때 소액이면 자본이득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⁷⁾. 소멸회사 주식의 원가가 금전의 가치보다 큰 경우에는 금전의 가치만큼 합병으로 교부받은 신주의 원가를 줄여줘야 한다. 금전의 가치만큼 신주의 원가를 줄여주면 결국 신주를 처분하는 시점에 자본이득과세가 이뤄지게 된다. 반면 금전의 가치가 소멸회사 주식의 원가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즉시 과세한다. 한편 금전의 가치가 소액이 아니라면 다음의 산식을 이용하여 소멸회사 주식의 원가를 금전에 귀속되는 부분과 주식에 귀속되는 부분으로 나뉘어야 한다.

7) 합병대가로 받은 금전가치가 3,000파운드 이하거나 합병 직전 갖고 있던 소멸회사 주식가치의 5% 이하면 소액으로 본다.

금전귀속부분 = 소멸회사주식의 취득가액 × {금전가치/(합병신주가치+금전가치)}

7. 공제

〈표 IV-1〉 세율, 연간공제, 은퇴공제, 동산공제

(단위: 파운드, %)

과세연도	연간 공제액		동산공제 (Chattel exemption)	세율	
	개인, 상속대리인, 정신지체장애인을 위한 신탁	기타 신탁		개인	피신탁인과 상속대리인
2005~2006	8,500	4,250	6,000	10/20/40	40
2004~2005	8,200	4,100	6,000	10/20/40	40
2003~2004	7,900	3,950	6,000	10/20/40	34
2002~2003	7,700	3,850	6,000	10/20/40	34
2001~2002	7,500	3,750	6,000	10/20/40	34
2000~2001	7,200	3,600	6,000	10/20/40	34
1999~2000	7,100	3,550	6,000	20/40	34
1998~1999	6,800	3,400	6,000	20/23/40	34
1997~1998	6,500	3,250	6,000	20/23/40	23

- 주: 1. 공제한도를 초과한 처분수익은 초과분의 5/3가량의 비용인정, 손실이 6,000파운드 미만일 경우 6,000파운드로 간주함.
2. 망자의 상속대리인인 경우 사망연도와 다음 2년까지
3. 동일 설정권자에 의해 복합 신탁이 창설됨: 각자는 신탁의 수로 나눈 비율의 공제인정
4. 2000~2001년 이후 자본이득세율은 초기 세율 제한 미만일 경우 총수입의 10%, 기본세율 제한 미만일 경우 20%, 기본세율 제한을 초과할 경우 40%를 과세함.
5. 임의 신탁의 피신탁자에 대한 세율은 1996~1997년에서 2003~2004년도까지는 34%의 고정세율 적용
6. 1998~1999년에서 2003~2004년도는 피신탁자와 망자의 상속대리인이 획득한 이자에 대하여 34%의 고정세율 적용

○ 청구 및 신청기한 (Time-limits for elections and claim)

- 1996~1997년과 그 이후연도 : 자본이득 획득 후 1월 31일 이후
- 1980~1981년부터 1995~1996년까지 자본이득 획득 후 12월 1일 이후 혹은 과세 후 30일 이후 (TMA 1970, s. 86)
- 1970~1980년 및 그 이전 : 자본이득 획득 후 7월 5일 이후 혹은 과세후 30일 이후

○ 청구 및 신청 기한

반대 규정이 없는 경우, 해당과세연도 1월 31일부터 5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한 일반 규칙에 따라 자발적 신청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으면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6년 까지이다(TMA 1970, s. 43(1)).

〈표 IV-2〉 신청 기한

규정	기한	법규
휴업 이후 비용 이득에서 차감	비용 지출한 과세연도 이후 1월 31일부터 12개월	ICTA 1988, s. 109A
사업손실 이득에서 차감	손실이 발생한 과세연도 이후 1월 31일부터 12개월	ICTA 1988, s. 380; FA 1991, s. 72
미미한 자산가치	처분/획득이 있었던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회사일 경우 회계기한)	TCGA 1992, s. 24(2)
1982년 3월 31일 모든 자산의 재평가	처분이 있었던 과세연도 이후 1월 31일부터 12개월(회사일 경우 처분 회계연도 말일부터 2년)	TCGA 1992, s. 35(6)
1982년 3월 31일 이전 이득에 대한 연기된 부과금의 50% 공제	처분이 있었던 과세연도 이후 1월 31일부터 12개월(회사일 경우 처분 회계연도 말일부터 2년)	TCGA 1992, s. 36 and Sch. 4, para. 9(1)
CGT 영향 없는 사후 2년내 변화	변동이 있는 날부터 6개월	TCGA 1992, s. 62(7) and the Finance Act 2002
사업자산 대체(연동 공제)	과세연도 이후 1월 31일부터 5년(기업의 경우 회계연도 말일부터 6년)	TCGA 1992, s. 152(1)
회사에의 자산처분과 재투자(1993년 11월 30일 이전의 경우 주식과 채권을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 재투자공제)	과세연도 이후 1월 31일부터 5년	TCGA 1992, s. 164A(2)
사업 자산의 증여로부터 획득한 이득의 유지	과세연도 이후 1월 31일부터 5년	TCGA 1992, s. 165(1)
주 소재지의 결정	2차 부동산 취득으로부터 2년(ESC D21)	TCGA 1992, s. 222(5)
회수불능 대출	과세연도 말일로부터 2년(기업의 경우 회계연도 말일부터)(ESC D38, SP 8/90)	TCGA 1992, s. 253(3)
퇴직 공제 : 질병 사유	처분이 있는 평가연도 이후 1월 31일부터 12개월.	TCGA 1992, Sch. 6, para. 5(2)
1992년 TCGA 기업공제의 비적용 1992, s. 162	기업양도 한 과세연도 이후 1월 31일부터 2년	Finance Act 2002
동일 날짜 주식 취득을 최초 처분으로 취급	최초 처분일	Finance Act 2002

- 장기보유공제 (개인, 피신탁자, 상속대리인은 적용하나 기업은 적용 배제)
(TCGA 1992, s. 2A and Sch. A1)

1998년 4월 6일 이후 실현이득

과세대상 이윤은 1998년 4월 5일 이후 자산의 보유 기간에 따라 감소된다. 2000년 4월 5일 이전 처분분은 1998년 3월 17일 이전 취득한 모든 자산에 대해 1998년 4월 5일 이후까지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1년이 추가된다. 2000년 4월 6일 이후 처분의 경우, 단지 비사업용 자산만 추가 연도가 허용된다.

장기보유공제(taper)는 동일 과세연도의 손실공제 후 순과세대상 이익에 적용되고, 손실은 이전 연도로부터 이월되며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공제가 주어진다.

- 자산은 사업 목적으로 사용
- 자산은 사업장 활용 목적으로 보유
- 유자격회사의 유자격 주식 보유

2000년 4월 5일 이전, 유자격회사는 상장 회사(그룹내의 회사), 그리고 유자격 주식은 개인 소유 주식이며 다음의 권한이 최소 확보된 경우를 말한다.

- 5% 선거권과 전일 근로자
- 25% 선거권

2000년 4월 6일 이후, 유자격 회사의 정의는 비상장 회사(비상장 그룹의 보유 회사)까지 포함하여 확장하였다.

일반적으로, 자격 주식은 다음과 같다.

- 비등록된 기업의 모든 주식
- 등록된 기업 주식으로 기업 중의 대리인이 아니면서 적어도 5%의 의결권 행사
- 등록 기업의 주식으로 종업원 지분: 비등록 기업 주식으로 종업원 지분으로 직접 · 간접으로 10% 이내 이해관계

사업공제와 비사업공제에 해당되는 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2000년 4월 6일부터 유자격 할당이 이뤄져야 한다.

〈표 IV-3〉 비사업자산 이득(1998~1999년 이후)

(단위: 년, %)

비사업자산 이득		
1998년 5월 4일 이후 자산보유기간	부과대상비율	세율
0	100	40/20/10
1	100	40/20/10
2	100	40/20/10
3	95	38/19/9.5
4	90	36/18/9
5	85	34/17/8.5
6	80	32/16/8
7	75	30/15/7.5
8	70	28/14/7
9	65	26/13/6.5
10	60	24/12/6

〈표 IV-4〉 사업자산 이득(2002~2003년 이후)

(단위: 년, %)

사업자산이득		
1998년 5월 4일 이후 자산보유기간	부과대상비율	세율
0	100	40/20/10
1	50	20/10/5
2년 이상	25	10/5/2.5

〈표 IV-5〉 사업자산 이득(2000~2001년과 2001~2002년)

(단위: 년, %)

사업자산이득		
1998년 5월 4일 이후 자산보유기간	부과대상비율	세율
0	100	40/20/10
1	87.5	35/17.5/8.75
2	75	30/15/7.5
3	50	20/10/5
4년 이상	25	10/5/2.5

〈표 IV-6〉 사업자산 이득(1998~1999년과 1999~2000년)

(단위: 년, %)

사업자산이득	
1998년 5월 4일 이후 자산보유기간	부과대상비율
0	100
1	92.5
2	85
3	77.5

연금공제(Retirement relief)

50세 이상의 나이거나 비록 50세 이하의 나이지만, 병으로 은퇴를 하게 되는 개인은 그의 사업 자산을 처분할 때 자본이득세에 대해 공제를 받는다. 1999년 4월 6일부터 점진적으로 줄어들어 2003년 4월 6일부터는 폐지되었다. 매년 단계는 다음과 같다.

〈표 IV-7〉 연금공제 단계(1999년 4월 6일부터)

(단위: 파운드)

연도	100% 공제한도	50% 공제구간
1993~1994 (to 1993. 11. 28)	150,000	150,000~600,000
1993~1994 (from 1993. 11. 29)	250,000	250,000~1,000,000
1994~1995 to 1998~1999	250,000	250,001~1,000,000
1999~2000	200,000	200,001~800,000
2000~2001	150,000	150,001~600,000
2001~2002	100,000	100,001~400,000
2002~2003	50,000	50,001~200,000
2003~2004	none	none

제3편 소비세제

I. 부가가치세(일반소비세)

1. 서론

부가가치세는 1973년에 도입된 이후 영국 정부의 소득의 원천으로서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영국 재무성은 2002년, 2003년에 부가가치세로 639억파운드를 징수 하였는바, 영국 정부에 있어서 분명히 소득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영국의 부가가치세는 영국 내에서 창출되는 재화, 용역의 공급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주요 간접세로 관세·소비세청(HM Customs and Excise)에서 담당한다. 유아용품, 식품, 급여, 지방세, 기부금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의 부가가치세율(VAT rate)은 17.5%이다. 현재 EU내 수출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원산지국(Country of Origin) 부과방식을 따르고 있고, 수입국은 수입물품에 대해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영국이 유럽연합에 가입하면서 1973년 4월에 부분적으로 도입되었다. 그것은 구매세(purchase tax)와 선별적 고용세(Selective Employment Tax)를 대체하는 것으로, 도입 당시의 세율은 10%였으나 여러 차례의 등락을 거친 후 1991년부터는 현재의 표준세율인 17.5%가 적용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와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그리고 일부 재화와 서비스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표준세율이 17.5%라고 하였으나 최근 경기 침체를 반영하여 2008년 12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15%가 적용되고 별도의 고지가 없는 경우 2010년 1월 1일부터는 다시 17.5%로 회복된다. 이외에 영세율과 낮은 세율인 5%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부가가치세율의 변화는 예산을 통해 공표

된다.

부가가치세의 법률상의 근거는 부가가치세법(VAT Act 1994)과 재정법(Finance Act)에서 담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광범위한 집행력을 가지고 있는 영국 관세·소비세청에서 집행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의 관리를 포함하는 법률은 1979년의 관세소비관리법(Customs and Excise Management Act 1979)에서 담고 있다. 관세·소비세청장은 재무성 외청 형식 혹은 국왕에 의해 임명되었으나 최근 국세청과 통합되었다. 청장은 징수와 회계의 책임, 관세·소비세청의 세입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영국 정부는 소기업과 새로 영업을 시작하는 기업의 VAT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현금흐름을 개선하며 VAT시스템으로의 정착을 돕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펴고 있다.

- 물가상승을 감안해 등록최저한을 68,000파운드로 인상
- 부가가치세 flat rate 적용대상⁸⁾을 매출액 15만파운드로 인상
- 부가가치세 매년 회계체계에 즉각 등록되는 매출액 한도도 새롭게 15만파운드로 인상

2. 납세의무자

주지하듯이 부가가치세는 간접세 또는 최종 소비자에 의해 부담되는 소비세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영업중에 역시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할 때마다 부과된다. 매출액에 입각한 과세이며, 직접세와 같은 다른 조세처럼 이익에 입각한 과세는 아니다.

가.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는 과세공급자 또는 과세공급을 의도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하여 등록하거나 등록이 요구되는 자이다. 즉 사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의도하는 자로서 개인과 기업, 법인격 없는 단체, 법인, 기타의 단체를 포괄한다. 사업자는 총매출액이

8) 매출에 일정 비율을 곱해 VAT를 단순하게 계산하도록 하는 특례로서 일단 이 대상이 되면 매출이 22만 5,000파운드가 될 때까지 잔류 가능

연간 등록한도(2008, 2009년 : 67,000파운드)에 도달하였을 때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에 등록되지만, 일정한 영역의 사업자는 매출액의 수준에 상관없이 등록할 수도 있다. 세액산정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을 따른다.

〈표 1-1〉 과세대상(Taxable supplies)

(단위: 파운드)

적용 기간	1년	전년도 매출액 (차년도 매출액 한도) ¹⁾	미래 매출액 ¹⁾ 30일 ²⁾
2008. 4. 1~	67,000		
2007. 4. 1~2008. 3. 31	64,000		
2006. 4. 1~2007. 3. 31	61,000		
2005. 4. 1~2006. 3. 31	60,000	58,000	60,000
2004. 4. 1~2005. 3. 31	58,000	56,000	58,000
2003. 4. 10~2004. 3. 31	56,000	54,000	56,000
2002. 4. 25~2003. 4. 9	55,000	53,000	55,000
2001. 4. 1~2002. 4. 24	54,000	52,000	54,000
2000. 4. 1~2001. 3. 31	52,000	50,000	52,000
1999. 4. 1~2000. 3. 31	51,000	49,000	51,000
1998. 4. 1~1999. 3. 31	50,000	48,000	50,000
1997. 12. 1~1998. 3. 31	49,000	47,000	49,000
1996. 11. 27~1997. 11. 30	48,000	46,000	48,000

주: 1) 세율은 영세율과 모든 세율을 포함한다.

2) 납입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만약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의 공급세율은 30일을 납입기한을 초과하여 낼 수 있다.

〈표 1-2〉 EU 타국으로부터의 공급 - 원격 판매

(Supplies from other member states—distance selling)

(단위: 파운드)

적용기간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연도 특정일까지의 누적 공급
1993. 1. 1~	70,000 이상

주: UK에서 소비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UK에서 과세

자료: VATA 1994, Sch. 2; Leaflet 700/1A

〈표 1-3〉 타국으로부터의 취득(Acquisitions from other member states)

(단위: 파운드)

적용기간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연도 특정달의 마지막 날까지의 누적 취득
2008. 4. 1~	67,000
2007. 4. 1~2008. 3. 31	64,000
2006. 4. 1~2007. 3. 31	61,000
2005. 4. 1~2006. 3. 31	60,000
2004. 4. 1~2005. 3. 31	58,000
2003. 10. 4~2004. 3. 31	56,000
2002. 4. 25~2003. 4. 9	55,000
2001. 4. 1~2002. 4. 24	54,000
2000. 4. 1~2001. 3. 31	52,000
1999. 4. 1~2000. 3. 31	51,000
1998. 4. 1~1999. 3. 31	50,000
1998. 1. 1~1998. 3. 31	49,000

○ 등록취소 기준 (De-registration limits)

〈표 1-4〉 과세대상(Taxable supplies)

(단위: 파운드)

적용기간	미래매출액
2008. 4. 1~	65,000
2007. 4. 1~2008. 3. 31	62,000
2006. 4. 1~2007. 3. 31	59,000
2005. 4. 1~2006. 3. 31	58,000
2004. 4. 1~2005. 3. 31	56,000
2003. 4. 10~2004. 3. 31	54,000
2002. 4. 25~2003. 4. 9	53,000
2001. 4. 1~2002. 4. 24	52,000
2000. 4. 1~2001. 3. 31	50,000
1999. 4. 1~2000. 3. 31	49,000
1998. 4. 1~1999. 3. 31	48,000

〈표 1-5〉 타국으로부터의 공급(Supplies from other member states)

(단위: 파운드)

적용기간	작년 12월 31일까지의 과거 공급	다음 해 12월 31일까지의 미래 공급
1993. 1. 1~	70,000	70,000

〈표 1-6〉 타국으로부터의 취득(Acquisitions from other member states)

(단위: 파운드)

적용기간	작년 12월 31일까지의 과거 취득	다음해 12월 31일까지의 미래 취득
2005. 4. 1~	60,000	60,000
2004. 4. 1~2005. 3. 31	58,000	58,000
2002. 4. 10~2004. 3. 31	56,000	56,000
2002. 4. 25~2003. 4. 9	55,000	55,000
2001. 4. 1~2002. 4. 24	54,000	54,000
2000. 4. 1~2001. 3. 31	52,000	52,000
1999. 4. 1~2000. 3. 31	51,000	51,000
1998. 4. 1~1999. 3. 31	50,000	50,000
1998. 1. 1~1998. 3. 31	49,000	49,000

표준적인 부가가치세 회계는 일반적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재화용역거래 품목별로 계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비즈니스 형태에 따라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는 간편한 회계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공하고 있다. 연간회계를 사용하는 경우 3/4분기를 통해 과거의 납부실적을 감안한 중간 예납 시스템을 활용한다. 연간회계는 1년에 한 번만 신고납부하면 되므로 분기별 신고의 부담을 덜 수 있고 현금흐름 관리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 경우 환급도 연간 기준으로 이루어져 주기적인 환급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적당하지 않다. 매출이 감소하는 경우 역시 예납부담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면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반대로 현금회계기준을 사용하는 경우 고객이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다. 매출채권 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 고객이 빚을 갚은 경우에만 납부의무가 발생하므로 현금회계의 장점이 돋보인다. 현금회계기준도 주기적으로 환급을 청구하거나 외상거래가 많은 경우는 적절하지 않다.

단일세율시스템도 소규모 기업이 VAT 회계에 지불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되었다. 단일세율시스템 해당사업자는 매번 거래마다 VAT를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매출에 단일세율을 곱해 납부할 세금 규모를 결정한다. 장부기장의 시간과 비용을 크게 덜어줄 수 있는 특례인 것이다.

세율도 표준세율보다 낮는데 매입부분에 대한 공제 청구를 하지 않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업종에 따라 단일세율의 범위가 달라진다. 관리부담을 덜어주는 장점이 있지만 매입세액공제를 청구하지 못하는 점 때문에 영세율 또는 면세품목 매입이 많아지면 오히려 VAT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표 1-7〉 현금 회계기준(Cash accounting: admission to the scheme)

(단위: 파운드)

적용기간	연간 매출액 기준
2004. 4. 1~	660,000
2001. 4. 1~2004. 3. 31	600,000
1993. 4. 1~2001. 3. 31	350,000
1990. 10. 1~1993. 3. 31	300,000
1987. 10. 1~1990. 9. 30	250,000

- 주: 1. 과거 사업에 공여된 자본자산을 제외하고 영세율기준 적용분을 포함한 연간 매출액규모를 의미하며 면세품목은 제외한다. 82만 5,000파운드가 넘는 사업자는 현금회계를 활용할 수 없다(2004년 4월 1일부터) (Value Added Tax Regulations 1995 (SI 1995/2518), Pt VIII).
2. 연간 매출액기준은 영기준세율 적용분을 포함한 연간 매출액규모를 의미하며 면세품목은 제외한다. 82만 5,000파운드가 넘는 사업자는 연간회계를 활용할 수 없다(2004년 4월 1일부터) (Value Added Tax Regulations 1995 (SI 1995/2518), Pt VII).

〈표 1-8〉 연간회계(Annual accounting: admission to the scheme)

(단위: 파운드)

적용기간	연간 매출액 기준
2004. 4. 1~	660,000
2001. 4. 1~2004. 3. 31	600,000
1991. 4. 9~2001. 3. 31	300,000

〈표 1-9〉 단일세율제도(Flat-rate scheme: admission to the scheme)

(단위: 파운드)

적용기간	연간 과세대상매출액 기준 ¹⁾	연간 총 매출액기준 ²⁾
2003. 4. 10. 이후 신고분	150,000	187,500
2002. 4. 25. 이후 신고분	100,000	125,000

- 주: 1.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영세율 적용분을 포함 매출규모, 면세는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액을 뺀 과세대상과 비과세대상을 포함한 총매출액 규모.
 3. 순부가가치세액은 총매출액에 단일세율을 곱한 규모. 단일세율은 품목에 따라 달리 정해진다(Notice 733).

3. 과세거래

가. 과세대상 품목

과세대상 품목은 대가를 창출하는 모든 형태의 사업 품목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다음의 이전이 과세대상 품목이 된다.

- 소유물의 이전을 재화의 공급이라 하고, 점유자산 또는 공유자산의 이전이 용역의 공급이라 한다. 점유재화가 재화의 판매를 통해서 이전되거나, 소유물은 또한 미래에 언젠가 양도될 것이 명백한 계약을 통해 이전될 때, 그 후에 지분이 완전히 이루어지면 그것이 재화의 공급이다.
- 대가가 있든 없든 등록된 사업자에게의 이전을 포함하는 고정자산 또는 유동자산

- 과세대상이 되는 영업활동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활동이다. 그 전환이나 양도가 증여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상품의 증여 또는 증여자가 50파운드 미만의 원가로 한 기업촉진증여가 아니거나 또는 한 형태에서 산업기준에 따른 기업의 실제 또는 잠재적인 소비자에 대한 증여가 대중에 대한 판매를 위해 보통 이용되지 않을 때이다.
-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업이 소유한 상품, 개인이 사용하거나 사용된 상품, 또는 등록된 사업자를 포함하는 어떠한 사람에게 유용함을 제공하는 재화.
- 외부기업의 누군가에게 빌려주거나, 누군가에게 빌린 재화는 과세대상 품목이다.

나. 매입과 매출세액

과세대상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제한 것이 부가가치세액이다.

- 어떠한 재화 또는 용역을 사람들에게 공급하였을 때
-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재화를 취득하였을 때
- EU 회원국 이외로부터 재화를 수입하였을 때 지불했거나 지불해야 한다.

공급되었거나 공급될 예정인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대상에 의해 경영되는 회사의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 과세대상의 매출세액은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재화를 취득하거나 그들이 제조하는 생산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이다. 과세대상의 매입세액과 매출세액간의 차이가 정부에 지불하는 총액이다.

다. 과세금액

상품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면, 그 보상은 부가가치세 포함가격으로, 재화와 용역의 가격에 상관없이 추가된다. 금전적 대가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이상으로 받아진다면 대가의 귀착은 당연히 그것을 소유하는 과세품목으로 간주된다. 재화와 서비스의 완전시장가격은 판매자와 구매자의 상호관련이 없는 사람에 의해 지불되는 금액으로 간주된다.

라. 수입품

수입은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 또는 회원국으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는데, 수입에 대한 과세처리는 재화의 공급자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세금은 관세율에 따라 부과되며, 세율은 등록된 사업자에 의해 내부 시장에 공급되는 재화에 적용되는 세율과 같다. EU 회원국 외의 국가로부터 재화를 수입하는 사람은 EU 관세차입금(customs debt)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될 재화가 사업자의 매입세액으로 신고되었을 때, 등록된 사업자는 그 재화에 대한 부과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등록된 사업자는 납부를 연기하기 위해 관세율규정(1976)의 승인을 얻기 위해 신청하면, 관세·소비세청장은 지불날짜까지 관세의 납부연기를 허가한다. 납부날짜의 개시 기간은 그 달의 16일이며 그 다음 달 15일에 끝난다.

용역이 해외(EU 회원국이거나 그 외의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에 의해 영국에 거주하는 등록사업자에게 공급된다면, 수신인 지불 시스템이 적용된다. 관련 용역은 다음과 같다.

- 저작권, 특허권, 인가서, 등록상표와 유사권리의 양도 및 이전
- 광고서비스
- 컨설팅트, 기사, 법률가, 회계사 및 유사 용역 : 자료처리와 정보제공
- 은행업, 금융 및 재보험을 포함한 보험서비스

2003년 7월부터는 영국의 비등록 수령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EU 비회원국의 공급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취지에 맞는 그룹으로 등록된 다국적 회사가 부가가치세의 회계가 없는 해외로부터 서비스를 획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수신인 지불 시스템만이 기업의 과세품목에 대한 매입세액인 부과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면세품목에 대한 부과금과 관련한 수신인 지불은 환급받을 수 없다.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로부터 영국 기업에 공급되는 전자통신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납부의 의무가 있다.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로부터의 예술품, 골동품, 수집가의 작품

의 수입은 2.5%의 저세율로 부가가치세를 적용받는다.

4.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등록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 즉, 매출총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면세대상인 무가(free) 견본품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거래매출이 과세표준이 된다.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재화와 용역은 보험(보험프리미엄세가 대신 부과된다), 의료서비스, 교육훈련서비스 등이며 부가가치세가 부분적으로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이 외에도 영국의 부가가치세 범위를 벗어나는 재화와 용역거래의 경우도 과세대상이 아니다. EU 지역 이외에서 거래한 물품, 취미 등의 목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자선 기부, 교통혼잡통행료 등 정부의 수수료 등이 이에 해당된다.

5. 세율과 세액의 계산

최근의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은 17.5%이며, 총지불비율(total consideration)은 $17.5/(100+17.5)=7/47$ 이다. 이 비율을 부가가치세 비율(VAT fraction)이라 부르며, 이 비율을 통해 전체 구매가격 중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세액 부분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

〈표 1-10〉 VAT 세율

(단위: %)

적용 기간	표준세율 VAT 비율	높은 세율 VAT 비율	낮은 세율 VAT 비율	높은 세율 VAT 비율	낮은 세율 VAT 비율	
1994. 4. 1~	$17\frac{1}{2}$	$\frac{7}{47}$	N/A	N/A	5	$\frac{1}{21}$
1991. 4. 1~1994. 3. 31	$17\frac{1}{2}$	$\frac{7}{47}$	N/A	N/A	N/A	N/A
1979. 6. 18~1991. 3. 31	15	$\frac{3}{23}$	N/A	N/A	N/A	N/A
1976. 4. 12~1979. 6. 17	8	$\frac{7}{27}$	$12\frac{1}{2}$	$\frac{1}{9}$	N/A	N/A
1975. 5. 1~1976. 4. 11	8	$\frac{7}{27}$	25 ²⁾	$\frac{1}{5}$	N/A	N/A

주: 1) 국내, 주거용, 자산사업 목적의 연료와 전기 공급은 1997년 9월 1일부터 낮은 세율인 5%로 부과(8%, 1994년 4월 1일부터 1997년 8월 31일까지)

에너지절약제품은 정부보조체계에 따라 5%로 부과

여성위생보호제품은 2001년 1월 1일부터 5% 적용

아동의 자동차좌석은 2001년 5월 12일부터 5% 적용

2001년 5월 12일부터 낮은 부가가치세율 5% 적용:

- 3년 이상 빈집의 개조
- 주거용자산의 다주택 전환(e.g. 주택을 아파트로)
- 비주거용자산을 주거용으로 전환하거나 다주택 전환
- 주택을 복지시설로 전환하거나 다가구주택으로 전환

2002년 6월 1일부터 낮은 부가가치세율 5% 적용:

- 비주거용자산을 복지시설로 전환
- 비주거용자산을 다가구주택으로 전환
- 3년 이상 빈집을 복지시설로 전환
- 3년 이상 빈집을 다가구주택으로 전환
- 건물을 주차장으로 전환

기압식열펌프와 마이크로 열/동력장치는 2005년 4월 7일부터 낮은 부가가치세율 5% 적용

2) Re: 석유, 전기, 사치품

1999년 7월 27일부터 수입예술품, 골동품 5% 적용

가. 저세율 품목

소수의 품목이 보통 표준세율의 범주로 분류되며, 몇몇 특별한 예외는 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다음과 같다.

- 국산(domestic)연료 또는 전력(또는 자선단체에서 사용하는 연료나 전력)
- 가정 또는 자선단체의 소유물 중 에너지 절약기구의 설비
- 가정용 중앙난방시스템의 수리 및 보수
- 연금 수령자 가정에 설비된 보안재화
- 여성 위생용품
- 아기용 좌석

나. 매입세액공제제도

1) 자본지출(capital expenditure)

자본지출은 부가가치세의 취지에 맞는 세입의 지출과 구별되지 않으며, 따라서 모든 매입세액은 완전히 환급된다. 다만 자동차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만 예외로 적용되는데, 일반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없다. 그와 동시에, 등록된 사업자들은 이익을 얻고 팔지 않는 한 매출세액을 회계할 필요가 없으며, 그때의 매출세액은 이득이라는 요소에 대해 부과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규칙에는 얼마간의 예외가 있다. 부가가치세는 다음의 경우 자동차에 대해서 환급받을 수 있다.

- 새로 취득하고 팔릴 예정일 때(자동차 판매상의 경우)
- 임대할 예정이거나 택시 업무로 사용할 때, 임대하여 손수 운전하거나 운전학원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 주로 임대라는, 완전히 영업 목적으로 1995년 8월 1일 이후 구입한 자동차. 만약 개인적 모니터링의 용도로 자동차를 사용한다면 매입부가가치세는 50%만 되찾을 수 있다.

자동차에 대한 매입부가가치세를 되찾을 수 있을 경우, 매출부가가치세는 자동차가 최종적으로 어떠한 용도로 배분되는지에 따라 계산된다.

2) 회수불능의 부채

어떤 사람이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하고 상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상품에 대한 대가의 일부나 전체가 그 사람의 회수불능의 부채로 간주 되면, 지불기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 그 사람은 미결제액에 부과되어야 할 세액의 상환에 대한 권리가 있다. 상품의 가격이 공개시장가격보다 적거나 같을 때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화의 경우에 있어서, 재화에 대한 권리는 사업자로부터 다른 구매자 또는 권리를 얻어낸 사람에게로 양도된다. 채무자가 다음에 모두 또는 부채의 일부를 상환한다면 부가가치세에 상응하는 몫의 상환은 관세·소비세청에 상환해야 한다.

재무장관은 1996년 11월 예산에서 새로운 법안을 도입하였는데, 그 법안은 회수불능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국세청에 재량을 부여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연차회계체계를 사용하고 따라서 1년에 한 번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이행하는 등록된 사업자는 매출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같은 신고서에서 회수불능의 부채경감에 대해 요구할 수 있다.

3) 비환급 매입세액

등록된 사업자일지라도 다음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의 환급을 요구할 수 없다.

- 소득세나 법인세의 취지에 무방한 지출
- 관리자를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지출
- 비거래 품목은 영업보고서에 기록된다. 과세품목이 부분적으로 영업 목적과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된 것이라면, 등록된 사업자는 모든 매입세액을 환급받고 사적 목적으로 취득한 품목의 가격에 매출세액을 회계하거나, 영업소의 매입세액만 환급받을 수 있다. 만약 과세품목이 용역이라면, 두 번째 방법

만 사용할 수 있다.

4) 혼합된 매출

매입세액은 등록사업자가 사업자에 의해 생산된 과세품목인 상품에 대한 값을 지불하였을 때만 환급받을 수 있다. 만약 사업자의 생산품이 면세품목과 과세품목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기본적인 원칙은 과세해야 할 생산품과 관련한 매입세액만 환급받을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사업자는 ‘부분적 면세자’로 구분된다.

이러한 보조는 첫째로, 면세품목과 과세품목에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 매입세액의 결정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과세품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완전히 환급받을 수 있으며, 면세품목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세금공제가 되지 않는다. 잔여 소득세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과세대상 거래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거래액 × 100)의 계산에서 소숫점을 반올림하여 사용하는 백분율을 사용함으로써 과세대상 물품과 면제 물품 사이에서 분배된다.

다음 품목은 계산에서 제외된다.

- 어떠한 업무의 수행 없이 취득하거나 판매한 재화에 대한 세금
- 자급(self-supplies)과 관련한 세금. 자급은 사업자가 매매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하였을 때 발생한다.
- 상점 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자본재에 대한 세금

국세청은 과세품목과 면세품목간의 매입세액을 배분하기 위해 선택적 원리를 사용한다. 매입세액의 총액이 평균 600파운드 이하인 면세품목과 관련이 있다고 간주된다면, 한 달에 그 이상의 배분은 승인하지 않으며 모든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5) 자동차와 여행비용

새 자동차의 취득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환급되지 않지만, 부속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는 휘발유와 정비비용에 대한 부가가치

세에 대해 설명한다. 유지·보수에 드는 모든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그 자동차가 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더라도 환급이 가능하다. 사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마일당 운임 또는 연료비용의 상환에 의해 그 연료를 상환하는 피고용인이 구매하였을지라도 세금공제가 가능하다. 사적 목적으로 연료를 사용하는 종업원이 있고, 그 종업원이 그 연료비용을 완전히 부담하지 않으면, 그 기업은 생산된 과세품목을 신고한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휘발유에 대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또한 요금률을 사용하는 매출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이 연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매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자동차부가가치세 연료 요금률표는 관세·소비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사적 목적으로 이용된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종업원이 연료비용을 완전히 상환하지 않으면 또한 세금공제가 된다. 그러나 기업은 요금률(3개월 또는 1개월마다)에 따라 매출세액을 신고해야만 한다.

6) 자가공급

어떤 사람이 스스로 상품을 생산하였다면, 그 품목에 대한 매입세액은 그 상품에 부과되는 매출세액의 수준까지가 무방하다. 즉, 매입세액은 그 품목에 대한 매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만약 등록된 사업자가 자동차를 자급하였다면,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없다. 이 법률은 또한 사업자가 원래 택시, 임대자동차의 자가운전, 운전학원 자동차의 용도로 자동차를 취득하고 사용하였다면 매입세액은 환급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6. 영세율과 면세제도(과세품목과 면세품목)

가. 면세품목

면세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공급자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면세가 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을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되지만 매입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을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시켜서

그것을 공급받는 상대방에게 전가한다. 따라서 면세제도는 당해 단계에서 매출된 부가가치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으나, 그 전 단계에서 매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과세는 취소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부분면세라고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의 면세품은 부가가치세법(1994)의 부칙 9에 열거되어 있다. 부칙에는 다수의 그룹을 포함하고 있으며, 면세대상 재화와 용역의 중요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Group 1 : 토지

- 토지에 대한 권리의 양여
- 휴가 편의시설
- 정박을 포함하는 계선 설비 요금

Group 2 : 보험

Group 3 :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우편 서비스

Group 4 : 내기, 도박, 복권

Group 5 ; 금융서비스

- 예금 공제
- 유가증권(security) 또는 이차증권의 발행, 이전 또는 수취

Group 6 : 교육

- 교육 또는 연구소의 학술연구에 대한 공제, 적격의 학회 또는 대학, 독립적 사립교사
- 교육, 훈련, 재교육설비에 대한 재화 또는 서비스 공급의 잡비

Group 7 : 보건과 복지

- 등록된 개업의사(검안의, 내과의, 치과의)에 의한 서비스의 공급
- 교육 또는 목상회의 과정의 부분으로서 종교단체에 의한 종교적 복지설비

Group 8 : 장례

Group 9 : 노동조합과 직업단체의 경비

Group 10 ; 스포츠 경쟁을 위한 출장경비

Group 11 : 예술품의 공공단체에서의 처분

Group 12 : 자선사업이나 다른 적격단체에 의한 기금마련 행사(참가이벤트와 인터

넷을 통한 행사도 포함)

Group 13 : 문화서비스 설비(예를 들어, 박물관, 동물원, 미술관, 전람회의 입장 요금)

Group 14 : 매입세액을 되찾을 수 없는 재화의 공급

Group 15 : 투자 목적을 위해 구매한 금

만약 면세품목만을 생산한다면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자로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나. 영세율 품목

영세율이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영(0)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영세율을 적용하면 당해 거래에 대한 세액은 영이 되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은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하지 않게 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는 그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이미 부담한 세액을 환급받게 된다. 즉 영세율은 매출세액 면제 및 매입세액의 환급을 허용하는 것이며, 따라서 영세율제도는 당해 단계에서 매출된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전 단계에서 매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과세까지 취소하는 결과가 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완전면세라고 할 수 있다.

영세율의 재화와 용역은 부가가치세법(1983)의 부칙 8에 포함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다수의 그룹이 포함하며 몇 가지 중요한 예는 다음과 같다.

Group 1 : 식료품

- 사람들이 소비하는 음식
- 동물이 섭취하는 식물

식품군에서 다음을 제외하며, 대신에 표준세율에 따른다.

- 점포에서 소비하는 모든 식물과 모든 뜨거운 식물을 포함하며, 식물 조달

과정에 의한 공급

- 아이스크림, 과자류와 초콜릿 및 비스킷
- 알코올, 맥주와 포도주
- 애완동물 음식

Group 2 : 하수설비 서비스와 비상업 용수

Group 3 : 서적

- 서적, 작은 책자, 가제본한 책자, 팸플릿과 광고전단
- 신문, 정기간행물과 잡지

Group 4 : 맹인 및 장애자용 용품(말하는 책과 무선전화세트)

Group 5 : 거주와 자선 목적을 위한 건물의 건설과 개조

Group 6 : 거주나 자선사업의 목적으로 사용될 때 '방호빌딩(protected building)'
을 복구하는 건축업자에 의한 판매

Group 7 : 특정 국제서비스

Group 8 : 수송(10개 좌석 미만은 표준세율에 따른다. 12개 또는 그 이상부터 감
소하였다.)

Group 9 : 이동주택과 숙박시설이 있는 요트

Group 10 : 금

Group 11 : 지폐

Group 12 : 개업의에 의해 처방된 의약품과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구

Group 13 : 일정한 수출품

Group 14 : 면세점

Group 15 : 특정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

Group 16 : 아동 의류와 신발류, 그리고 몇 가지 보호의류(예: 안전헬멧)

부가가치세 체계는 복잡하고 예외도 많은데, 예를 들어 개인 메모 용지는 과세품목이지만, 하나의 패턴 이상을 포함하는 작은 책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인 품목은 0%로 계산하지만 면세품목과는 다른데, 즉 영세율 품목을 생산하

는 기업은 과세자로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 수출품

다음의 재화의 수출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 EU 회원국 외의 국가로의 수출
- 최종 목적지가 영국 외부인 재화가 선박 또는 항공기로 수송될 때 또는 선박이나 항공기로 운송되어 소매상에 의해 판매되는 상품일 때

현재 EU 회원국 내 수출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원산지국(Country of Origin) 부과 방식을 따르고 있다.

7. 거래시기(공급시기) 및 거래장소

기본적인 공급시기 인식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수행된 것으로 간주되는 공급 날짜이다. 거래의 소유물이 반품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각각의 거래 날짜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재화가 다음과 같이 수행될 때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 이전되었을 때
- 이전되지 않고, 공급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될 때
- 공급이 수행될 것인지 아닌지를 알기 전에 이전될 때: 공급이 수행될 것이 확실해졌을 때 또는 곧 그렇게 될 때

용역의 공급은 재화의 공급이 아닌 과세품목이다. 용역의 공급은 그 용역이 실행되었을 때 공급이 수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사업자는 기본 과세시점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는 공급이 수행된 것으로 간주되는 날짜로부터 14일 이내에 발송된다. 관세·소비세청장은 납세자의 요구가 있을 때 그 기간을 14일보다 더 오랜 기간으로 변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떠한 회사는 매달 말에 계산서를 발송한다. 이 경우 그 날짜가 공급날짜로 간주되며 공급으로 간주된 날짜를 과세시점으로 본다.

8. 부가가치세 행정

가. 부가가치세 신고

등록된 사업자는 과세기간의 마지막 한 달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포함하는 기간으로, 보통 3개월에 걸쳐 이루어진다. 관세·소비세청은 무역(trades)과 사업(businesses)으로 분류하고, 기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자로 등록되었을 때 수행되는 거래의 유형을 참조하여 과세기간을 배분한다. 관세·소비세청은 그들의 업무를 일년 내내 일정하게 전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변경할 수 있다. 즉 3개월의 과세기간을 1개월로 그 기간을 줄이는 것도 가능하다. 그것은 정기적으로 부가가치세의 환급(즉,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였을 때)을 받는 사업자에게는 매력적인 것이며, 또한 그들의 현금 유동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나, 일년 동안의 완결된 부가가치세 관련 회계보고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거래는 과세가 발생하는 시점인 과세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부가가치를 대상으로 계산되어야 하며, 과세시점일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의 비율에 따라야 한다. VAT 100이라 불리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각각의 과세기간 말에 신고가 이행되며, 관세·소비세청으로 보내진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다음 정보를 포함한다.

- 과세기간 동안에 징수된 매출세액
- 과세기간 동안에 지불된 매입세액
- 지불해야 하거나 상환해야 할 순총액
- 다른 EU 회원국에 있어서 상품의 가격
- 다른 EU 회원국으로부터의 취득물에 대해 당연히 지불되어야 할 부가가치세 관련 정보

매출세액이 매입세액을 초과한다면 그 차액을 관세·소비세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나. 세금계산서

영국의 부가가치세 기본골격은 전단계 매입세액 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대체적으로 같은 구조로 되어 있으나 과세베이스는 그다지 넓지 않은 편이다. 세율은 표준세율(17.5%) 외에 수출 등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4분기(3개월)마다 신고·납부한다. 영국은 일반소비세로서 부가가치세제도를 채택·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Tax invoice) 등 영수증이 기본적인 서류로서 부가가치세제 시행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다만, 세금계산서 등에 관하여 우리나라처럼 법정 서식이나 교부절차 등에 대한 복잡하고 세부적인 규제가 없으며 세금계산서 등의 제출제도도 없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과세거래를 할 때에는 그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의 서식은 법정하고 있지 않지만 다만 그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는 VAT규정(Regulation)에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공급일로부터 30일 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공급시기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통상적으로 기본적인 공급시기 이전에는 재화의 인도(용역의 완료)일과 대가의 수령일 또는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빠른 일자가 공급시기가 되며 공급시기 이후 14일 이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는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가 된다. 정규 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완비된 것이라야 한다.

- 공급자의 이름, 주소, 등록번호
- 공급일
- 계산서 번호
- 거래처의 이름과 주소
- 재화 또는 용역의 품목의 각각 유형을 포함하여 기재
 - 구매물품 수량
 - 세액
 - 세금을 제외한 총액
 - 공급의 유형, 예를 들어 판매 또는 임차

- 이용 가능한 현금할인율, 영세율품목과 면세품목에 적용되는 각각의 총현금할인율

여기에서 특기할 사항은 매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는 필요 기재사항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세금계산서의 정부 제출과 제출된 세금계산서의 상호대사를 예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거래와 영세율 거래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에 준하는 형태의 계산서를 발행하여 과세거래와의 구분을 명백히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납세의무자는 구입 재화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전단계까지의 매입세액을 판매 등에 의하여 계산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전단계 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 자동차
- 교제비(다만, 종업원에 대한 것 및 외국 고객에 대한 것을 제외)
- 거주용 건물의 건축업자에 의해 제공된 일부 재료
- 중고품시장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에 포함되어 있는 세액
- 세금계산서가 없는 경우

한편, 소매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개별 공급가액이 100파운드 이하인 경우에는 고객이 특별히 정규의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 한 기재사항이 간단한 간이 계산서(Less Detailed Tax Invoice)를 발행할 수 있는데, 이를 소매명세서(Retailers' Invoice)라고 한다.

- 공급자 이름, 주소와 등록번호
- 공급날짜
-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의 기재
- 적용세율
-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공급금액

주차장에서와 같이 현금을 기계로 관리하는 경우, 즉 총가격이 25파운드 미만으로 제공될 때는 세금계산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때때로 재화와 용역은 한 단위로 판매되기도 하지만, 사실상 표준세율과 영세율, 면세품목으로 혼합되어 구성된다. 예를 들어, 도서와 카세트 테이프가 동시에 판매된다면, 이 중 도서는 영세율로, 테이프는 표준세율에 따를 것이다. 이러한 사례에 있어서 공급자는 공정한 원리를 사용하여 각각의 구성요소간의 공급가격을 배분해야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적절한 비율로 각각의 상품에 대해 부과된다. 법률은 가격을 배분하는데 사용되는 표준 대안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무난한 방법으로 구성요소의 공급자에 있어서의 비용과 각 구성요소의 공개시장가격을 참조하여 배분한다. 때때로 이러한 방식으로 가격을 배분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도 있다. 즉, 복합적 상품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필수적일 때에는 단일한 비율이 전체 상품에 적용될 것이다. 새로운 계산서 발부 규칙에 따라, 소규모 거래에 대한 계산서 발부와, 낮은 가격으로 평가된 품목의 간소화를 허용하며,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부가가치세 계산서의 전자적 수수가 가능하다.

부가가치세에 관한 회계기록 및 세금계산서는 적어도 6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때 세금계산서는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를 모두 포함한다. 또한 부가가치세에 관한 회계기록은 정기적으로 관세·소비세청의 조사관에 의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영국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매 분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입·매출 총액과 납부세액, 환급세액만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간편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세무신고를 마친다.

따라서 과세당국은 납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제출받거나 상호대사하는 등의 별도의 절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부당환급, 탈세 등의 혐의가 있을 때 관련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그 진위 여부를 판단하며 이를 위해서 납세자에게 장부나 영수증 등 관련 기록을 6년간 보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영국에서는 영수증의 교부·수취가 부가가치세의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한 본인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의 발행 의무를 납세자에게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이에 대한 별도의 제재규정도 없다. 다만, 정당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나 장부의 보관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100%의 벌과금을 부과하며 심한 경우에는 형사범으로 다루어 300%의 벌과금이나 최고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한다. 한편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제외하고는 계산서가 늦지

않게 처리되기 위해 현금할인이 제공되며, 부가가치세는 순현금할인된 물품의 가격에 의거하여 부과된다.

다. 사업자등록과 미등록

1) 초기등록

다음 사업자는 과세품목을 만들지만 부가가치세 납부자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등록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연간 매출액이 55,000파운드를 초과하였을 때
- 개시 30일 동안에 매출액이 55,000파운드를 초과할 때

등록은 과세품목이 다음 30일 동안 연간 최대액을 초과할 것이라는 신뢰할 수 있는 적당한 근거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세청장이 등록하기 위해 요구되는 그 날로부터 1년 동안의 사업자의 매출액이 55,000파운드를 초과하지 않는 사업자는 등록 의무가 없다. 국세청장은 이와 관련한 지침을 제정하고 있다.

- 사업자는 생산하거나, 과세품목을 만들었으며,
- 총활동 중 일부분으로서 그러한 과세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자의 활동은 영업으로 간주될 수 있다.
- 그 기업의 모든 과세품목이 거래된다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등록 의무가 있다.
- 활동의 수행과 관계되는 지정인을 두는 주요한 이유는 등록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등록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등록 사업자는 그들이 등록된 날짜로부터 과세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거래처로부터 부가가치세금의 징수가 불가능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영세율 품목만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등록으로부터 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면제대상 사업자는 그 품목에 변화가 생길 시에는 관세·소비세청에 신고해야 할 책임이 있다.

2) 자발적 등록

자발적 등록은 여러 가지 혜택과 단점이 있다. 먼저 자발적 등록에 대한 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 목적으로 등록된 거래처는 그들에게 부과된 매출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 사업자는 그들의 실제 사업보다 성장하게 될 것이며, 거래처와 함께 그들의 지위도 확장될 것이다.

자발적 등록에 대한 단점은 다음과 같다.

- 부가가치세를 등록하지 않는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지만 사업자는 비등록 거래처로서 경쟁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
- 등록에 대한 행정적 책임에 대해서 감독되지 않는다.

사업자에 있어 거래처의 과세 상태(tax status)가 자발적 등록이 유리한지 아닌지에 대한 의사결정시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3) 미등록

미등록은 자발적 또는 강제적 미등록으로 구분된다. 부가가치세의 취지에 따라 등록 의무가 있는 사람에 대해, 등록사업자들이 과세품목을 만들지 않고 또한 지침(VAT Act 1994 Sch 1 s3)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감독관이 납득하게 된다면 등록 책임이 끝나게 될 것이고 따라서 미등록자가 된다. 또한 사업자의 다음연도 과세품목과 순부가가치세가 5만 3,000파운드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관세·소비세청장이 인정한다면 사업자는 자발적으로 미등록되기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이 판매를 중지할 의향이 있거나 또는 다음 연도에 30일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과세품목의 생산을 중단할 경우에 사업자는 자발적으로 미등록을 요구할 수 있다.

자발적 등록사업자가 과세품목의 생산의지 또는 생산을 중단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등록사업자가 비영업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취득할 때에, 예를 들어 소매상인이 자급(self-consumption)하기 위해 재화를 취득하였을 때, 부가가치세는 판매가격이 아니라 비용에 대해 부과된다.

9. 기타

□ 개인 에너지 사용에 대한 VAT

2002년 4월 30일 이후 회계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사적 사용 연료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용의 높은 감면을 (business mileage discount)이 적용되지 않는다. 2005년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기간의 세율은 다음과 같이 인상되었다.

2005년 4월 30일 이후 회계 기간에 대한 규정

(단위: 파운드)

엔진 크기(cc)	12 개월				3 개월				1 개월			
	세율 디젤	대당	세율 기타	대당	세율 디젤	대당	세율 기타	대당	세율 디젤	대당	세율 기타	대당
1400 이하	945	140.74	985	146.70	236	35.15	246	36.64	78	11.62	82	12.21
1401~2000	945	140.74	1245	185.43	236	35.15	311	46.32	78	11.62	103	15.34
2001 이상	1200	178.72	1830	272.55	300	44.68	457	68.06	100	14.89	152	22.64

2004년 4월 30일 이후 회계 기간에 대한 규정

(단위: 파운드)

엔진크기(cc)	12 개월				3 개월				1 개월			
	세율 디젤	대당	세율 기타	대당	세율 디젤	대당	세율 기타	대당	세율 디젤	대당	세율 기타	대당
1400 이하	865	128.82	930	138.51	216	32.17	232	34.55	72	10.72	77	11.46
1401~2000	865	128.82	1175	175.00	216	32.17	293	43.65	72	10.72	97	14.44
2001 이상	1095	163.08	1730	257.65	273	40.65	432	64.34	91	13.55	144	21.44

2003년 4월 30일 이후 회계 기간에 대한 규정

(단위: 파운드)

	12개월 규모	VAT 대당	3개월 규모	VAT 대당	1개월 규모	VAT 대당
경유						
2,000cc 이하	900	134.04	225	33.51	75	11.17
2,000cc 이상	1,135	169.04	283	42.14	94	14.00
휘발유						
1,400cc 이하	950	141.48	237	35.29	79	11.76
1,400~2,000cc	1,200	178.72	300	44.68	100	14.89
2,000cc 이상	1,770	263.61	442	65.82	147	21.89

2002년 4월 30일 이후 회계 기간에 대한 규정

(단위: 파운드)

	12개월 규모	VAT 대당	3개월 규모	VAT 대당	1개월 규모	VAT 대당
경유						
2,000cc 이하	850	126.59	212	31.57	70	10.42
2,000cc 이상	1,075	160.10	268	39.91	89	13.25
휘발유						
1,400cc 이하	905	134.78	226	33.65	75	11.17
1,400~2,000cc	1,145	170.53	286	42.59	95	14.14
2,000cc 이상	1,690	251.70	422	62.85	140	20.85

2001년 4월 5일 이후 2002년 5월 1일 이전 회계 기간에 대한 규정

(단위: 파운드)

	12개월 규모	VAT 대당	3개월 규모	VAT 대당	1개월 규모	VAT 대당
경유						
2,000cc 이하	900	134.04	225	33.51	75	11.17
2,000cc 이상	1,145	170.53	286	42.59	95	14.14
휘발유						
1,400cc 이하	970	144.46	242	36.04	80	11.91
1,400~2,000cc	1,230	183.19	307	45.72	102	15.19
2,000cc 이상	1,815	270.31	453	67.46	151	22.48

II. 개별소비세

1. 주세

□ 맥주는 영국에서 가장 널리 소비되는 주류 중의 하나로 영국 내 주류 소비의 47%를 차지하며, 2002~2003년의 맥주세는 약 29억파운드 이상이었고 총주세 세입액의 40%에 달한다.

□ 맥주와 스피릿(spirits)은 알코올 도수에 따라 과세된다.

- 포도주, 과일주 등은 한 병과 같이 특정한 방식에 따라 과세되며 2003년 4월 13일 이후 새로운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표 II-1〉 주세율

(단위: %)

	순알코올 1리터당 세율
Spirits	19.56
Spirits-based RTDs	19.56
Wine and made-wine: Exceeding 22 abv	19.56
	100리터 %당 세율
Beer	12.22
Cider and Perry: 1,2~7,5	25.61
Cider and Perry: 7,5~8,5	38.43
Sparkling Cider and Perry: 1,2~5,5	25.61
Sparkling Cider and Perry: 5,5~8,5	166.70
Wine and made-wine: 1,2~4	48.91
Wine and made-wine: 4~5,5	67.25
Wine and made-wine: 5,5~15	158.69
Wine and made-wine: 15~22	211.58
Sparkling wine and made-wine: 5,5~8,5	166.70
Sparkling wine and made-wine: 8,5~15	220.54

□ 소규모 양조장 공제 규정에 따라

- 1993년 이전까지 맥주는 모두 같은 세율로 적용되었으나, 1993년부터는 최종 생
산품의 알코올 함유량에 따라 계산된다.
- 대규모 양조장에 비해 소규모 양조장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수익성이 저조함에 따
라 도입된 규정으로
 - 연간 생산량이 5,000헥토리터 미만일 경우 주 맥주세율의 절반의 할인세율을
적용한다.
 - 연간 생산량이 5,000~30,000헥토리터일 경우 생산 수준에 따라 할인세율을
적용한다.

2. 담배세

□ 시가, 말아피우는 담배, 씹는 담배 등에 담배세가 종량세로 부과된다.

- 켈런의 경우 여기에 종가세 세금이 추가된다.

□ 2003년 4월 9일 저녁 6시 이후 세율은 다음과 같다.

- 켈런(Cigarettes) : 권장소비자가격에 22%에 더해 96.88파운드/천개비당
- 시가(Cigars) : 141.10파운드/kg당
- 엽켈런(Hand-rolling tobacco) : 101.42파운드/kg당
- 기타 피우는 담배와 씹는 담배(Other smoking tobacco and chewing tobacco)
: 62.03파운드/kg당

3. 유류세

□ 액화연료(Biodiesel)와 혼합가스(Bioblend)에 과세된다.

- 요리용 기름 폐기물 또는 바이오 mass로부터 생산되는 액화연료(Biodiesel)
 - 에스테르 중량이 적어도 96.5% 함유
 - 유황 함유량이 0.005% 초과하지 않는 연료

- 리터당 20펜스 세율
 - 난방연료 및 수출용으로 보급할 경우 소비세 대상 제외
 - 믹싱으로 생산된 혼합가스(Bioblend)
 - 탄화수소 오일에 대한 소비세를 납부하지 않는 중유
- 자동차연료를 포함한 석유류에 소비세가 부과되며 세율은 매년 경제·사회·환경 변수를 감안하여 재무성장관이 예산편성시 결정한다.
- 환경오염 저감에 대해 인센티브 시스템이 도입(2003년)되었다.
- 경유(Sulphur-free petrol)의 경우
 - ultra-low sulphur petrol의 비율(rate)보다 낮을 경우 리터당 0.5페니
 - 중유(Sulphur-free diesel)의 경우
 - ultra-low sulphur diesel의 비율보다 낮을 경우 리터당 0.5페니
 - 연료대체재(Bioethanol for road fuel use)의 경우
 - sulphur free petrol의 비율보다 낮을 경우 리터당 20펜스

4. 기타 소비세

가. 쓰레기 매립세

쓰레기 매립세는 1996년 10월 1일부터 쓰레기 매립장을 운영하는 업자로부터 징수된다(FA 1996, Pt. III). 다만 광산과 채석 쓰레기, 준설 쓰레기, 애완용 동물 묘지와 오염된 매립지를 복원하기 위한 공사로부터의 쓰레기는 면세된다. 1999년 10월 1일부터 면허 매립장 복원과 광물 공사를 포함한 비활성 쓰레기에 감면이 주어진다.

〈표 II-2〉 쓰레기 매립세 세율

(단위: 파운드)

쓰레기 종류	세율(톤당)
비활성 쓰레기	2
활성 쓰레기:	
2005. 4. 1~	18
2004. 4. 1~2005. 3. 31	15
2003. 4. 1~2004. 3. 31	14
2002. 4. 1~2003. 3. 31	13
2001. 4. 1~2002. 3. 31	12
2000. 4. 1~2001. 3. 31	11
1999. 4. 1~2000. 3. 31	10
1996. 10. 1~1999. 3. 31	7

톤당 2파운드의 저세율은 쓰레기 매립세(Qualifying Material) Order 1996(SI 1996/1528)에 올라 있는 비활성 매립지의 경우에 적용된다.

1997년 4월 1일 이후, 쓰레기 매립세(FA 1996, Sch. 5, para. 26)는 VATA 1994, s. 74와 같은 세율로 바뀌었다.

나. 콘크리트 제조용 골재채취세

〈표 II-3〉 콘크리트 제조용 골재채취세 세율

(단위: 파운드)

적용기간	톤당 세율
2002. 4. 1~	1.60

골재채취세는 등록의 하한 규정이 없다. 2002년 3월 31일 후로 어떤 사람이든 영국에서 상업적으로 골재를 채취하는 자는 국세청(관세·소비세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FA 2001, Sch. 4 and the Aggregates Levy (Registration and Miscellaneous Provisions) Regulations 2001 (SI 2001/4027), reg.2). 일반적으로 골재는 돌, 자갈 또는 모래 등을 의미하며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일찍이 사업적으로 조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FA 2001, s. 16).

제4편 재산세제

I. 상속세 및 증여세

1. 서론

상속세(inheritance tax: IHT)는 한 개인의 생애 동안의 증여와 그가 사망한 시점에서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1986년에 이름이 상속세로 개칭되었으며 이전에는 ‘자산이전세(capital transfer tax)’라고 불렸다. 상속세는 1975년에 유산세(estate duty)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 법은 1984년의 상속세법과 부차적인 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 제도와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우리의 경우 증여세가 상속세와 함께 보완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는 데 반해 영국의 경우 상속세만이 존재할 뿐 증여는 자본이득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에서도 높은 면세점 수준으로 96% 이상의 유산이 전혀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우리와 비슷한 점이라 하겠다. 현재(2009년 4월 6일에 또는 이후 사망시) 시점의 면세점은 32만 5천파운드이며 유산 규모(사망시점 이전 7년간 증여 자산 포함)가 이보다 적은 경우 면세된다. 상속세율은 40%이다. 상속세 행정은 국세청 자본세(capital taxes)를 담당하는 노팅검, 에딘버러, 벨파스트 오피스에서 담당한다.

부분적으로는 단순하고 광범하게 활용되는 탈세 수단에 기인해 상속세수는 2006년 기준 정부세입의 0.8% 수준인 36억파운드에 불과하다. 2009/2010년 회계연도의 상속세 영세율 적용구간은 32만 5천파운드까지이며 그 이상은 40% 세율이 적용된다. 매년 영세율 적용 한도가 인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살펴보자. 2007년 런던 주택가격의 평균인 35만 4천파운드의 유산을 남긴 경우 상속세는 32만 5천파운드까지는 영세율, 그 이상인 2만 9천파운드의 40%인 1만 1,600파운드를 내야 하므로 결국 전체 유산가

치의 3.2%만이 납부된다.

2007년 재무성장관이 예산보고에 따르면 2010년에는 영세율 적용구간 한도가 35만 파운드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는 최근 영국 주택가격의 급격한 인상을 반영한 것으로 집값 상승률을 전적으로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다.

2. 상속에 대한 정의 및 과세대상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정의는 고인의 자산이 대상으로서 동산과 부동산을 모두 포함한다. 주택의 부속물,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모든 증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모든 권리(예를 들어 신탁의 생애 이자)도 포함된다. 참고로 증여부분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가 부과된다. 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이 되는 취득과세 형태를 취하고 있다.

영국에 주소가 있는 개인들은 세계 모든 곳에서의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영국에 주소가 없는 자들은 영국 내의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남편과 아내는 개별적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그래서 모든 유용한 공제들은 그들 각각에 적용된다. 그리고 그들 각각은 ‘nil-rate’⁹⁾ 경계까지는 상속세 납부의무 없이 재산의 이전을 할 수 있다.

‘주소’는 법적 용어로 정의하기가 쉽지는 않으나, 본질적으로 본인이 ‘본국(고국)’으로 간주하는 나라를 의미한다. ‘주소’라는 단어는 상속세와 관련하여 2차적인 뜻을 가지는데, 만약 다음의 경우라면 영국에 주소가 있는 자로 간주된다.

- 1974년 12월 10일 이후부터 영국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고, 이주를 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1974년 12월 10일 이후부터 영국의 거주민이었고 이주한 해를 포함해서 적어도 20년 중 17년은 영국 거주민이었던 경우

9) 과세대상인 재산이전의 총액의 최초의 20만파운드에 대해서는 0%의 과세율이 부과되는데, 이것을 ‘nil-rate’이라 한다. Inheritance tax threshold 2001~2002년(24만 2,000파운드), 2002~2003년(25만파운드).

이중과세 공제는 자산의 이전이 영국에서 만큼의 외국 조세부담을 유발시킬 때 적용된다.

가. 면세되는 이전

1) 생애증여에 대한 면제

많은 증여들이 세금에서 완전히 면제된다. 다른 증여들은 그것이 피상속인이 살아 있는 동안에 이루어질 때만 면제된다. '생애증여'¹⁰⁾의 면세는 다음과 같다.

□ 동일인에 대한 작은 규모의 증여

- 어떤 사람에게 한 해 동안 주어지는 명백한 증여의 총액이 250파운드를 초과하지 않는 생애증여는 면세된다.

□ 결혼과 연관된 증여

- 5,000파운드 이하의 아버지로부터의 증여, 2,500파운드 이하의 할아버지로부터의 증여, 2,500파운드 이하의 결혼 당사자의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의 증여, 또는 1,000파운드 이하의 그 밖의 사람들에 의한 증여는 면세된다.

□ 수입 외의 일반 지출

- 면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증여가 일반 지출의 일부분이어야만 하고, 평범한 삶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 이하로 이용 가능한 순소득을 줄여서는 안 된다.

□ 급료와 배당에 대한 포기

- 급료에 대한 포기나 상황은 상속세를 유발시키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배당에

10) 증여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 증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대한 어떤 권리가 발생하기 이전의 12개월 안에 이루어진 배당의 포기 또한 그러하다.

□ 가족 부양에 대한 자본 이전

- 가족의 부양을 위해 또는 독립적인 친인척에 대한 적당한 공급을 위해 자본을 이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이혼을 함에 따라 남편과 아내 사이의 자본 이전에 대한 보통의 면세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경우 자본 이전에 대해 면세된다.

□ 3,000파운드를 초과하지 않는 한 해의 자본 이전

- 어떤 과세연도 내에서 생애 이전의 최초의 3,000파운드는 면세된다. 면세되지 않은 부분은 면세된 후 다음 해에 사용하기 위해 1년 뒤로 이월될 수 있다.

2) 그 외의 면세

다른 면세는 피상속인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이전이나 사망했을 때의 이전에 적용될 수 있다.

□ 남편과 아내 사이의 이전

-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루어지는 자본 이전은 영국 내에 거주하는 남편 또는 아내가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전액이 5만 5천 파운드 이하일 때에 면세된다.

□ 자선단체에 대한 증여

- 자선을 목적으로 공식적으로 이루어졌거나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진 자선단체에 대한 증여는 면세된다.

□ 정당에 대한 증여

- 의회에 적어도 두 명 이상의 의원을 가지거나, 한 명의 의원을 보유하되 가장 최

근의 보통선거에서 적어도 15만표를 획득한 정당에 대한 증여는 면세된다.

□ 공인된 단체에 대한 땅의 증여

□ 국가적 목적을 위한 증여

□ 유산(전통재산)에 대한 조건부 면세

- 대중에게 공개(public access)와 같은 다양한 사업들이 주어진다면, 조건부의 면세가 우수한 국가적, 과학적, 역사적, 예술적, 건축적 또는 유산 재산으로서 재무성에 의해 선정된 재산의 이전에 적용된다. 그러한 선정에 대한 요구는 이전(transfer) 날짜, 또는 잠재적 면세대상인 이전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상속인(transferor)이 사망한 날짜 이후 2년 안에 이루어져야만 한다. 사업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기부를 받는 자는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유산(전통재산) 유지 기금

- 재무성의 선정이 상속일 이후 2년 이내에 이루어진 선정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유산의 유지, 보수 또는 보호를 위해 설립된 기구에 이전(transfer)을 하는 것은 면세된다.

□ 상호 이전

- 잠재적 면세대상인 이전 또는 과세대상인 이전이 이루어지고, 기부를 받은 자가 기부자에게 증여로 보답하는 경우에 만약 기부자가 7년 안에 사망한다면, 이중 과세를 피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다.

나. 잠재적 면세 이전

생애 동안에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이전(transfer)은 세금이 완전히 면제되거나, 또는 잠재적으로 면제된다. 그리고는 이전이 이루어진 지 7년 안에 사망하게 되는 경우

에만 세금이 부과된다. 심지어는, 그와 같은 잠재적 면세 이전의 총액이 영(0)세율(nil-rate)경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잠재적 면세 이전액은 사망시의 자산의 가치에서 얼마나 많은 영(0) 대역(nil band)을 공제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

이전을 한 지 7년 이내에 사망으로 인하여 과세대상의 이전(transfer)이 된 잠재적 면세 이전은 이전을 했을 때의 증여의 가치로 계산되고, 세금은 그러한 이전이 있기 전 7년 이내의 어떠한 과세대상인 이전을 고려하여 계산된다. 그러나 적용되는 nil-rate 경계와 세율은 사망시점의 nil-rate 경계와 세율이다. 그러므로 생애 증여에 의해 이전(transfer)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가능하고, 자산의 평가 가치가 증대된 경우 이것은 특별히 유용하다. 왜냐하면 이후의 자산의 가치의 증가는 피증여자의 지배하에 놓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이득세 효과는 고려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과세대상인 자산의 생애 증여는 증여공제 조항들을 사용하면서 이득이 연기될 수 없다면, 자본이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이다. 반면에 자산의 사망시기까지의 가치의 증가는 자본이득세로부터 벗어날 것이다. 잠재적 면세 이전(transfer)인 증여에 부과되는 모든 자본이득세는 그러한 증여가 상속세를 내야 할 의무가 생기면 차감 계산될 수 없다. 만약 자본이득세 증여 공제를 이용할 수 있고 잠재적 면세 이전(transfer)이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할 대상이 된다면, 모든 상속세 의무는 증여를 받는 자가 실질적으로 자산을 처분할 때 그의 이득의 계산에서 공제될 것이다.

다. 생애 이전에 대한 과세

즉각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생애 이전의 주된 영역은 임의의 위탁에 대한 이전이다 (즉 위탁수입에 대한 권리를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고, 만약 그러한 권리를 가진 자가 있다면 그들이 배분하는 수입의 양은 수탁자에게 달려 있다). 24만 2천파운드의 nil-rate 경계는 그것이 이전(earlier)의 과세대상인 이전(transfer)에 이미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이용 가능하다. 그리고 해마다의 면세도 또한 그러하다. 잠재적 면세 이전으로서, 만약 기부자가 기부를 한 지 7년 이내에 사망한다면 그리고 세금이 그것에 기초하여 정상세율(full rate)로 다시 계산된다면, 과세대상인 이전(transfer)은

이전이 있기 전 7년 이내의 어떤 과세대상인 이전(과세대상인 이전이 된 잠재적 면세 이전을 포함한다)을 고려하면서, 사망시점까지 계속해서 증가된 총액에서 고려된다.

만약 증여된 자산이 자본이득세에 대해 과세대상인 자산이었다면, 그리고 그 이득이 증여공제 조항하에서 연기되었다면, 즉각적으로 또는 증여자의 7년 이내의 사망에 근거해서 지불된 모든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자산을 실질적으로 처분할 때 그의 이득을 계산하는 데서 공제된다. 과세대상인 생애증여에 대한 세금은 대개 수령자에 의해 납부된다. 그러나 기부자에 의해 납부될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증여자가 증여한 재산 중 일부를 역산(grossing up)해서 추정한다. 만약 기부자가 증여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자본이득세는 수령자에 의해 납부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상속세를 계산하는 데 있어 증여의 가치로부터 공제된다.

라. 재산의 평가

상속세 계산을 위한 재산의 가치는 그것이 만약 경쟁적인 시장에서 팔릴 경우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가격이다. 만약 이전된 자산이 자본이득세 납부의무를 발생시킨다면, 그리고 기부를 받은 자가 그 세금을 납부하는 데 동의한다면, 이전된 가치는 이미 지불된 자본이득세에 의해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자본이득세는 유물 공제 때문에 때때로 증여에 대해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

1) 사망시 재산의 평가

사망시의 재산이 평가되는 방법은, 그리고 이용 가능한 공제는 아래와 같이 다루어진다¹¹⁾. 배제된 재산의 이전은 사망시의 재산을 평가하는 데에서 제외된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배제된 재산은 다음의 두 가지 경우이다.

- 외국에 있는 재산의 소유주가 영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
- 위탁기금에 있는 복귀재산(수입에 대한 현재의 수익자의 권리가 만기되었을 때,

11) 면세의 이용 가능성은 '3. 면세되는 이전' 부분을 참조

그 자본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

생명보험정책과 관계없이 사망시의 재산에 포함되는 재산의 가치는 사망보다 앞서고, 사망의 결과에 따른 재산의 가치의 변화들을 감안해 계산된다. 예를 들면 증가된 생명보험정책의 가치와 사망한 이의 개인적인 특성에 따른 신용의 가치의 하락과 같은 것이 그것이다. 합리적인 미래 비용에 대한 공제가 이루어진다. 해외재산의 경우, 재산가치의 5%로 해외재산의 상황 때문에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에 대한 공제가 이루어진다.

2) 사망시에 이전된 시세 평가된 유가증권과 토지

사망시의 재산이 시세 평가된 유가증권을 포함할 경우, 그리고 그것들이 사망 이후 12개월 이내에 대리인에 의해 팔릴 경우, 지출 이전의 총판매수익은 사망시의 가치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수정된 가치는 사망후 12개월 이내에 거래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위탁증권(quoted securities)이 포함된다. 만약 재산이 사망 이후 4년 내에 대리인에 의해 팔린 토지를 포함한다면, 지출이 있기 전 총판매수익에 비교된 가치의 하락에 대해 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3) 관련 재산

만약 자산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고, 그 부분이 남편 또는 아내가 소유했다면, 또는 자선단체, 정당 또는 국가기관에 자산의 일부를 면세 이전했다면, 그리고 그것이 여전히 그 기관들에 의해 소유되거나 앞선 5년 동안 소유되어 왔다면, 관련 재산 조항이 적용된다. 관련 재산 조항들은 주로 시세가 평가되지 않은 지분과 연합적으로 소유된 재산 또는 토지임차권 재산의 이전 가치와 관련된다.

만약 관련 재산이 그것이 관련되지 않았을 때의 재산의 가치보다 높은 가치를 생산한다면 관련 재산 부분의 가치는 모든 재산의 총가치에 적절한 부분으로서 취해질 것이다. 만약 관련 재산이 사망 이후 3년 내에 연고가 없는 이에게 팔린다면 사망시의

세금이 관련 재산과 관련되지 않았을 때의 가치를 사용하여 다시 계산된다.

4) 생명보험정책

생명보험계약의 가치는 이전이 생애 동안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기부자의 사망시에 이루어졌는지에 달려 있다. 생애 동안 이전된 생명보험계약은 지불된 양도 가치와 보험료 이상으로 가치 평가된다. 때때로 그것은 계약이라기보다는 가치의 이전인 계약 보험료이다. 그러한 경우 각각의 보험료 지불은 그것이 이미 수입 외의 증여 또는 작은 증여로서 면세되지 않았다면 또는 매년의 면세 때문이 아니라면, 잠재적 면세 이전 대상이 된다.

사망시에 한 개인의 삶을 대가로 취득되는 생명보험계약 만기 가치는 그것이 생애 동안 다른 이에게 할당되지 않는다면, 또는 그것이 누군가의 이익으로 위해 기금으로 쓰이지 않는다면, 그의 재산에 포함될 것이다.

마. 변화하는 재산의 분배

사망시에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분배는 그것에 대한 권한에 따라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유산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포기될 수 있다. 사망 이후 2년 내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혹은 변화 또는 포기 이후 6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통지되면, 변화 또는 포기는 효력을 지닌다. 다만 그것이 그들에 의해 지불될 추가적인 세금으로 인한 것이라면 개인적인 대리인에 의해서도 승인되어야 한다. 상속세는 마치 사망시에 수정된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부과될 것이다. 변화가 상속세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자본이득세에도 적용되거나, 변화가 상속세가 아니라 오직 자본이득세에만 적용되는 어떤 요구가 있을 수도 있다.

바. 무이자 대출

대출이 무이자로 되는 경우, 어떠한 자본의 이전도 없고, 이자를 수입 외의 지출로

간주하는 것이 가능해서 면세된다. 그러나 만약 정해진 기간 동안 대출이 이루어지거나 요구에 대응해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대출은 대출액과 상환이 이루어지는 미래의 현 가치 사이의 차액과 같은 가치의 이전으로서 다루어진다.

3. 과세표준, 공제 및 감면

〈표 1-1〉 공제(Reliefs)

(단위: %)

공제의 종류	공제율			
	1992. 10. 3 이전	1992. 10. 3 ~1995. 8. 31	1995. 9. 1~ 1996. 4. 5	1996. 4. 6 이후
농업용 재산 (IHTA 1984, s. 115ff.) ¹⁾				
12개월 내 획득한 소유권이나 부재점유권	50	100	100	100
부재점유 임대지	50	100	100	100
1981년 3월 9일에 부여된 50% 공제 그리고 그 후에는 부재점유 얻기 불가능	50	100	100	100
1995년 9월 1일 이후의 농업용 임대토지	N/A	N/A	100	100
다른 상황들	30	50	50	50
사업용재산 (IHTA 1984, s. 103ff.)				
자산의 특성				
사업에 있어서 사업이나 이자	50	100	100	100
상장회사의 주식조정	50	50	50	50
비상장회사의 주식조정 ²⁾	50	100	100	100
생활거주자의 사업에 사용된 고정 자산	50/30 ³⁾	100/50 ³⁾	100/50 ³⁾	100/50 ³⁾
비상장회사 ²⁾ 의 주식: 25% 이상	50 ⁴⁾	100	100	100
비상장회사 ²⁾ 의 비주류주식 조정 : 25% 혹은 그 이하	30 ⁵⁾	50	50	100
양도자의 회사나 파트너십에 의해 사용된 토지, 건물, 기계, 공장	30	50	50	50

주: 1) 1995년 4월 6일부터 관목류도 농업자산으로 간주됨.

2) 1992년 3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 '비상장'의 의미는株式이株式거래소나 AIM, USM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것임.

3) 만약 고정자산의 이전이 사업양도와 함께라면 높은 비율이 사용됨(Fetherstonhaugh & Ors v IR Commrs [1984] BTC 8,046).

4) 1987년 3월 17일 전에 비주류 이윤을 30% 이전한다면, 또는 만약 적어도 25% 이윤을 과거 2년 동안 양도자가 거두지 못하는 경우

5) 1977년 10월 26일 후에 또는 1983년 3월 15일 전에 이전하면 20% 공제

〈표 1-2〉 체감 공제(Taper relief)

(단위: %)

증여와 사망 사이의 기간		사망시 부과되는 총세금 부과의 백분율 - 실제 부과 세율
More than 이상	Not more than 이하	
3	4	80
4	5	60
5	6	40
6	7	20

〈표 1-3〉 빠른 상속 공제(Quick succession relief)

(단위: %)

양도이전 기간		공식적용 이전
More than 이상	Not more than 이하	
0	1	100
1	2	80
2	3	60
3	4	40
4	5	20

○ 공제 (Exemptions)

〈표 1-4〉 연간/작은 증여 공제(Annual and small gift exemption)

(단위: 파운드)

	1981. 4. 6 이후	1980. 4. 6~ 1981. 4. 5	1976. 4. 6~ 1980. 4. 5
연간	3,000	2,000	2,000
작은 증여	250	250	100

결혼에 의한 증여(IHTA 1984, s. 22)

증여자	공제한도(파운드)
결혼으로 부모가 된 관계	5,000
먼 친척 결혼 증여	2,500
결혼	2,500
다른 사람	1,000

영국내 거주자인 배우자에게 이전되는 증여와 영국외 거주자인 배우자에게 이전되는 증여

이후 양도	공제한도(파운드)
1982. 4. 9	55,000

□ 사업재산공제와 농업재산 공제

사업재산 공제는 기업의 종류와 소유의 기간에 따라 어떠한 조건이 만족된다면, 기업재산의 이전을 가치평가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1992년 3월 10일 이후의 이전과, 사망한 날짜 이후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앞선 이전에 대한 세금의 재계산에 대한 공제는 다음 비율로 이루어진다.

- 기업 또는 기업의 주식(파트너십의 지분을 포함) 100%
- 시세 평가되지 않은 주식 이외의 이전 100%
- 시세 평가된 회사의 지배 주식 이외의 이전 50%
(관련 재산 주식을 통한 통제를 포함)
- 기업에서 사용된 토지, 건물, 기계, 또는 공장 50%

AIM의 지분은 시세가 평가되지 않은 지분으로 다루어진다. 시세가 평가된 지분이건 시세가 평가되지 않은 지분이건, 만약 회사의 사업이 다음 사항들을 충족시키지 못한 다면 공제는 불가능하다.

이전된 재산은 보통 이전이 있기 전 2년 동안 기부자에 의해 소유되었어야 한다. 1996년 4월 6일 이전의 시세가 평가되지 않은 주식 이외의 이전에 대해서 기부자는 지분권의 25% 이상을 100% 비율의 공제를 얻기 위한 이전이 있기 전 2년 동안 소유할 필요가 있다. 사업이 주식과 지분을 다루거나, 토지와 건물을 또는 채권 투자를 다루는 것으로 구성된 경우 기업재산 공제는 이용할 수 없다. 공제는 요구 없이 자동적으로 적용되고 농업재산 공제 이후에 주어진다.

농업재산 공제는 농업재산의 이전이 다양한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이용할 수 있다. 농업재산은 농업용 토지 또는 목장, 가축이나 물고기를 기르기 위해 사용되는 산림지와 건물(산림지와 건물의 점유가 농업용 토지의 부수적인 것인 경우), 그리고 집, 농업용 토지에 종속된 농장건물과 농장집이다. 사업재산 공제와 같이, 공제율은 1992년 3월 10일 이후에 이전(transfer)과 사망 날짜 이후에 사망에 따른 사전의 이전(transfer)에 대한 세금의 모든 재계산에 대해서 100% 또는 50% 증가되었다. 그러한 공제는 유일하게 농업재산의 가치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농업재산에 대해 담보된 부채의 가치는 공제되어야 한다.

농업재산은 이전의 시점에서 반드시 이전이 있기 전 2년 동안 농업을 위해 기부자에 의해 소유되었어야 하거나, 앞선 7년 동안 기부자에 의해 소유되거나, 또는 그 밖의 사람들에 의해 그러한 기간 동안 농업을 위해 점유되었어야 한다. 이것은 농업투자재산에 공제를 가능하게 한다.

공제는 농업재산 그 자체의 이전에 대해서도, 그리고 농업회사의 지배주식 이외의 이전에 대해서도 이용될 수 있다. 공제는 기증자가 양도 이전에 바로 점유자가 없는 재산에 대한 인수, 또는 다음 24개월 이내에 점유자가 없는 소유권을 획득한 재산에 대해 100%의 비율을 적용한다. 또한 재산이 점유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점유자가 없는 소유물의 가격으로 평가받을 경우 100%의 비율로 공제된다. 다른 임차된 농업재산에 있어 공제는 임대료가 1995년 9월 1일 이후에 착수된 경우 이전(transfer) 재산의 100%이다. 그리고 그 날짜 이전에 임대된 재산 이전의 50%이다.

농업재산이 사업재산 공제에 대한 조건들을 만족시킬 경우, 농업재산 공제가 우선 주어지고 사업재산 공제는 비농업적 가치에 근거해서 주어진다.

1) 판매에 대한 구속력 있는 계약

만약 재산이 구속력 있는 판매 계약에 얽혀 있는 경우 그 재산은 사업 또는 농업 공제의 대상이 아니다. 상속재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동업자나 회사의 이사진들에 의한 구매 및 판매는 국제청에 의해 그러한 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망한 자의 개인적인 대리인이 판매할 선택권을 가지고, 생존해 있는 동업자나 이사진들이 구매할 선택권을 가지는 이중 선택의 동의는 그렇지 아니다.

2) 7년 이내의 사망에 따르는 생애이전에 대한 세금의 계산

농업과 사업재산의 많은 생애증여는 그것이 이루어질 때 잠재적으로 면세된다. 그러한 증여는 후에 기부자가 7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된다. 자유재량 위탁으로의 이전과 같은 특정한 시기에 과세되는 이전의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기부자가 7년 이내에 사망했기 때문에 세금은 원래 세율(full scale rates)로 다시 계산되어야 한다. 사망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과세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 사업재산과 농업재산 공제는 다음에 한해서 적용될 수 있다.

□ 최초의 재산이 이전(transfer)일을 시작으로 기부자의 사망일을 끝으로 하는 기간 동안 기부를 받은 사람에 의해 소유되었다. 만약 한정된 재산의 판매와 다른 재산의 획득 사이에 3년의 기간이 있다면 이러한 조건은 만족된 것으로 간주된다.

기부자의 사망 이전에 기부를 받은 자가 사망하는 경우, 위의 두 조건에서의 기간은 증여일에서 기부를 받은 자의 사망일까지이다. 재산의 일부가 매각되는 것처럼, 재산의 일부만이 계속해서 제한되는 경우 적절한 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사망일까지의 자산의 가치의 모든 증가가 또한 자본이득세로부터 면제되므로, 사업재산 또는 농업재산 공제의 100%의 유용성은 재산 계획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다.

4. 세율

가. 과세의 원칙

과세대상인 생애 이전의 계속해서 증가된 총합이 한도(threshold)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생애증여나 사망시점에서의 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어떠한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이전(transfer)에 대한 한도(threshold)는 1998년 4월 6일 이후에 21만 5천파운드에서 22만 3천파운드로 증가했고 2008년 4월 6일 이후에는 31만 2천파운드로 증가했다. 경계를 넘는 이전에 대한 과세율(full rate)은 40%이지만, 생애증여를 조장하기 위해서 nil-rate 경계를 넘는 과세대상인 생애 이전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전이 이루어진 지 7년이 경과하면 이전은 총합에서 제외된다. 의회가 다른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한도는 매년 증가된다. 어떠한 해마다의 한도의 증가도 지난해의 이전에 대해 과세된 세금을 환급청구할 수는 없다.

상속세는 일반적으로 1986년 3월 18일 이후 또는 사망하기 전 3~7년 사이에 증여하는 경우 세금 부담은 단계적으로 감소한다. 다음의 표들은 역산(grossing up) 계산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하한과 상한 세율구간을 표시하고 있고 세율이 명기되어 있다.

〈생애 증여: 2000년 이후〉

2005년 4월 6일 이후

(단위: 파운드, %)

가치비중		세율
하한	상한	
0	275,000	Nil
275,000	-	20

역산표

(단위: 파운드, %)

누적총계	세율	구간별 상속세	누적상속세 부담	순누적총계	역산목적 파운드당 세부담
275,000	Nil	Nil	Nil	275,000	1/4
275,000 이상	20	-	-	-	-

2004년 4월 6일 이후

(단위: 파운드, %)

가치비중		세율
하한	상한	
0	263,000	Nil
263,000	-	20

역산표

(단위: 파운드, %)

누적총계	세율	구간별 상속세	누적상속세 부담	순누적총계	역산목적 파운드당 세부담
263,000	Nil	Nil	Nil	263,000	1/4
263,000 이상	20	-	-	-	-

2003년 4월 6일 이후

(단위: 파운드, %)

가치비중		세율
하한	상한	
0	255,000	Nil
255,000	-	20

역산표

(단위: 파운드, %)

누적총계	세율	구간별 상속세	누적상속세 부담	순누적총계	역산목적 파운드당 세부담
255,000	Nil	Nil	Nil	255,000	1/4
255,000 이상	20	-	-	-	-

2002년 4월 6일 이후

(단위: 파운드, %)

가치비중		세율
하한	상한	
0	250,000	Nil
250,000	-	20

역산표

(단위: 파운드, %)

누적총계	세율	구간별 상속세	누적상속세 부담	순누적총계	역산목적 파운드당 세부담
250,000	Nil	Nil	Nil	250,000	1/4
250,000 이상	20	-	-	-	-

2001년 4월 6일부터 2002년 4월 5일까지

(단위: 파운드, %)

가치비중		세율
하한	상한	
0	242,000	Nil
242,000	-	20

역산표

(단위: 파운드, %)

누적총계	세율	구간별 상속세	누적상속세 부담	순누적총계	역산목적 파운드당 세부담
242,000	Nil	Nil	Nil	242,000	1/4
242,000 이상	20	-	-	-	-

2000년 4월 6일부터 2001년 4월 5일까지

(단위: 파운드, %)

가치비중		세율
하한	상한	
0	234,000	Nil
234,000	-	20

역산표

(단위: 파운드, %)

누적총계	세율	구간별 상속세	누적상속세 부담	순누적총계	역산목적 파운드당 세부담
234,000	Nil	Nil	Nil	234,000	1/4
234,000 이상	20	-	-	-	-

1999년 4월 6일부터 2000년 4월 5일까지

(단위: 파운드, %)

가치비중		세율
하한	상한	
0	231,000	Nil
231,000	-	20

역산표

(단위: 파운드, %)

누적총계	세율	구간별 상속세	누적상속세 부담	순누적총계	역산목적 파운드당 세부담
231,000	Nil	Nil	Nil	231,000	1/4
231,000 이상	20	-	-	-	-

<생애증여: 1990년부터 1999년까지>

1998년 4월 6일부터 1999년 4월 5일까지

(단위: 파운드, %)

가치비중		세율
하한	상한	
0	223,000	Nil
223,000	-	20

역산표

(단위: 파운드, %)

누적총계	세율	구간별 상속세	누적상속세 부담	순누적총계	역산목적 파운드당 세부담
223,000	Nil	Nil	Nil	223,000	1/4
223,000 이상	20	-	-	-	-

1997년 4월 6일 부터 1998년 4월 5일까지

(단위: 파운드, %)

가치비중		세율
하한	상한	
0	215,000	Nil
215,000	-	20

역산표

(단위: 파운드, %)

누적총계	세율	구간별 상속세	누적상속세 부담	순누적총계	역산목적 파운드당 세부담
215,000	Nil	Nil	Nil	215,000	1/4
215,000 이상	20	-	-	-	-

1996년 4월 6일부터 1997년 4월 5일까지

(단위: 파운드, %)

가치비중		세율
하한	상한	
0	200,000	Nil
200,000	-	20

역산표

(단위: 파운드, %)

누적총계	세율	구간별 상속세	누적상속세 부담	순누적총계	역산목적 파운드당 세부담
200,000	Nil	Nil	Nil	200,000	1/4
200,000 이상	20	-	-	-	-

1995년 4월 6일부터 1996년 4월 5일까지

(단위:파운드, %)

가치비중		세율
하한	상한	
0	154,000	Nil
154,000	-	20

역산표

(단위: 파운드, %)

누적총계	세율	구간별 상속세	누적상속세 부담	순누적총계	역산목적 파운드당 세부담
154,000	Nil	Nil	Nil	154,000	1/4
154,000 이상	20	-	-	-	-

1992년 3월 10일부터 1995년 4월 5일까지

(단위: 파운드, %)

가치비중		세율
하한	상한	
0	150,000	Nil
150,000	-	20

역산표

(단위: 파운드, %)

누적총계	세율	구간별 상속세	누적상속세 부담	순누적총계	역산목적 파운드당 세부담
150,000	Nil	Nil	Nil	150,000	1/4
150,000 이상	20	-	-	-	-

1991년 4월 6일부터 1992년 4월 5일까지

(단위: 파운드, %)

가치비중		세율
하한	상한	
0	140,000	Nil
140,000	-	20

역산표

(단위: 파운드, %)

누적총계	세율	구간별 상속세	누적상속세 부담	순누적총계	역산목적 파운드당 세부담
140,000	Nil	Nil	Nil	140,000	1/4
140,000 이상	20	-	-	-	-

1990년 4월 6일부터 1991년 4월 5일까지

(단위: 파운드, %)

가치비중		세율
하한	상한	
0	128,000	Nil
128,000	-	20

역산표

(단위: 파운드, %)

누적총계	세율	구간별 상속세	누적상속세 부담	순누적총계	역산목적 파운드당 세부담
128,000	Nil	Nil	Nil	128,000	1/4
128,000 이상	20	-	-	-	-

1989년 4월 6일부터 1990년 4월 5일까지

(단위: 파운드, %)

가치비중		세율
하한	상한	
0	118,000	Nil
118,000	-	20

역산표

(단위: 파운드, %)

누적총계	세율	구간별 상속세	누적상속세 부담	순누적총계	역산목적 파운드당 세부담
118,000	Nil	Nil	Nil	118,000	1/4
118,000 이상	20	-	-	-	-

<생애증여: 1981년~1989년>

1988년 3월 15일부터 1989년 4월 5일까지

(단위: 파운드, %)

가치비중		세율
하한	상한	
0	110,000	Nil
110,000	-	20

역산표

(단위: 파운드, %)

누적총계	세율	구간별 상속세	누적상속세 부담	순누적총계	역산목적 파운드당 세부담
110,000	Nil	Nil	Nil	110,000	1/4
110,000 이상	20	-	-	-	-

1987년 3월 17일부터 1988년 4월 14일까지

(단위: 파운드, %)

가치비중		세율
하한	상한	
0	90,000	Nil
90,001	140,000	15
140,001	220,000	20
220,001	330,000	25
330,001	upwards	30

역산표

(단위: 파운드, %)

누적총계	세율	구간별 상속세	누적상속세 부담	순누적총계	역산목적 파운드당 세부담
90,000	Nil	Nil	Nil	90,000	3/7
140,000	15	7,500	7,500	132,500	1/4
220,000	20	16,000	23,500	196,500	1/3
330,000	25	27,500	51,000	279,000	3/7
330,000 이상	30	-	-	-	-

1986년 3월 18일부터 1987년 3월 16일까지

(단위: 파운드, %)

가치비중		세율
하한	상한	
0	71,000	Nil
71,000	95,000	15
95,000	129,000	17 $\frac{1}{2}$
129,000	164,000	20
164,000	206,000	22 $\frac{1}{2}$
206,000	257,000	25
257,000	317,000	27 $\frac{1}{2}$
317,000	upwards	30

역산표

(단위: 파운드, %)

누적총계	세율	구간별 상속세	누적상속세 부담	순누적총계	역산목적 파운드당 세부담
71,000	Nil	Nil	Nil	71,000	$\frac{3}{17}$
95,000	15	3,600	3,600	91,400	$\frac{7}{33}$
129,000	17	5,950	9,550	119,450	$\frac{1}{4}$
164,000	20	7,000	16,550	147,450	$\frac{9}{31}$
206,000	22	9,450	26,000	180,000	$\frac{1}{3}$
257,000	25	12,750	38,750	218,250	$\frac{11}{29}$
317,000	27	16,500	55,250	261,750	$\frac{3}{7}$
317,000 이상	30	-	-	-	-

1985년 4월 6일부터 1986년 3월 17일까지

(단위: 파운드, %)

가치비중		세율
하한	상한	
0	67,000	Nil
67,000	89,000	15
89,000	122,000	17 $\frac{1}{2}$
122,000	155,000	20
155,000	194,000	22 $\frac{1}{2}$
194,000	243,000	25
243,000	199,000	27 $\frac{1}{2}$
299,000	-	30

역산표

(단위: 파운드, %)

누적총계	세율	구간별 상속세	누적상속세 부담	순누적총계	역산목적 파운드당 세부담
67,000	Nil	Nil	Nil	67,000	$\frac{3}{17}$
89,000	15	3,300	3,300	85,700	$\frac{7}{33}$
122,000	17 $\frac{1}{2}$	5,775	9,075	112,925	$\frac{1}{4}$
155,000	20	6,600	15,675	139,325	$\frac{9}{31}$
194,000	22 $\frac{1}{2}$	8,775	24,450	169,550	$\frac{1}{3}$
243,000	25	12,250	36,700	206,300	$\frac{11}{29}$
299,000	27 $\frac{1}{2}$	15,400	52,100	246,900	$\frac{3}{7}$
299,000 이상	30	-	-	-	-

1984년 3월 13일부터 1985년 4월 5일까지

(단위: 파운드, %)

가치비중		세율
하한	상한	
0	64,000	Nil
64,000	85,000	15
85,000	116,000	17 $\frac{1}{2}$
116,000	148,000	20
148,000	185,000	22 $\frac{1}{2}$
185,000	232,000	25
232,000	285,000	27 $\frac{1}{2}$
285,000	-	30

역산표

(단위: 파운드, %)

누적총계	세율	구간별 상속세	누적상속세 부담	순누적총계	역산목적 파운드당 세부담
64,000	Nil	Nil	Nil	64,000	$\frac{3}{17}$
85,000	15	3,150	3,150	81,850	$\frac{7}{33}$
116,000	17 $\frac{1}{2}$	5,425	8,575	107,425	$\frac{1}{4}$
148,000	20	6,400	14,975	133,025	$\frac{9}{31}$
185,000	22 $\frac{1}{2}$	8,325	23,300	161,700	$\frac{1}{3}$
232,000	25	11,750	35,050	196,950	$\frac{11}{29}$
285,000	27 $\frac{1}{2}$	14,575	49,625	235,375	$\frac{3}{7}$
285,000 이상	30	-	-	-	-

1983년 3월 15일부터 1984년 3월 12일까지

(단위: 파운드, %)

가치비중		세율
하한	상한	
0	60,000	Nil
60,000	80,000	15
80,000	110,000	17 $\frac{1}{2}$
110,000	140,000	20
140,000	175,000	22 $\frac{1}{2}$
175,000	220,000	25
220,000	270,000	30
270,000	700,000	35
700,000	1,325,000	40
1,325,000	2,650,000	45
2,650,000	-	50

역산표

(단위: 파운드, %)

누적총계	세율	구간별 상속세	누적상속세 부담	순누적총계	역산목적 파운드당 세부담
60,000	Nil	Nil	Nil	60,000	$\frac{3}{17}$
80,000	15	3,000	3,000	77,000	$\frac{7}{33}$
110,000	17 $\frac{1}{2}$	5,250	8,250	101,750	$\frac{1}{4}$
140,000	20	6,000	14,250	125,750	$\frac{9}{31}$
175,000	22 $\frac{1}{2}$	7,875	22,125	152,875	$\frac{1}{3}$
220,000	25	11,250	33,375	186,625	$\frac{3}{7}$
270,000	30	15,000	48,375	221,625	$\frac{7}{13}$
700,000	35	150,000	198,875	501,125	$\frac{2}{3}$
1,325,000	40	250,000	448,875	876,125	$\frac{9}{11}$
2,650,000	45	596,250	1,045,125	1,604,875	1
2,650,000 이상	50	-	-	-	-

1982년 3월 9일부터 1983년 3월 14일까지

(단위: 파운드, %)

가치비중		세율
하한	상한	
0	55,000	Nil
55,000	75,000	15
75,000	100,000	17 $\frac{1}{2}$
100,000	130,000	20
130,000	165,000	22 $\frac{1}{2}$
165,000	200,000	25
200,000	250,000	30
250,000	650,000	35
650,000	1,250,000	40
1,250,000	2,500,000	45
2,500,000	-	50

역산표

(단위: 파운드, %)

누적총계	세율	구간별 상속세	누적상속세 부담	순누적총계	역산목적 파운드당 세부담
55,000	Nil	Nil	Nil	55,000	$\frac{3}{17}$
75,000	15	3,000	3,000	72,000	$\frac{7}{33}$
100,000	17 $\frac{1}{2}$	4,375	7,375	92,625	$\frac{1}{4}$
130,000	20	6,000	13,375	116,625	$\frac{9}{31}$
165,000	22 $\frac{1}{2}$	7,875	21,250	143,750	$\frac{1}{3}$
200,000	25	8,750	30,000	170,000	$\frac{3}{7}$
250,000	30	15,000	45,000	205,000	$\frac{7}{13}$
650,000	35	140,000	185,000	465,000	$\frac{2}{3}$
1,250,000	40	240,000	425,000	825,000	$\frac{9}{11}$
2,500,000	45	562,500	987,500	1,512,500	1
2,500,000 이상	50	-	-	-	-

1981년 3월 10일부터 1982년 3월 8일까지

(단위: 파운드, %)

가치비중		세율
하한	상한	
0	50,000	Nil
50,000	60,000	15
60,000	70,000	17 $\frac{1}{2}$
70,000	90,000	20
90,000	110,000	22 $\frac{1}{2}$
110,000	130,000	25
130,000	160,000	30
160,000	510,000	35
510,000	1,100,000	40
1,100,000	2,010,000	45
2,010,000	-	50

역산표

(단위: 파운드, %)

누적총계	세율	구간별 상속세	누적상속세 부담	순누적총계	역산목적 파운드당 세부담
50,000	Nil	Nil	Nil	50,000	$\frac{3}{17}$
60,000	15	1,500	1,500	58,500	$\frac{7}{33}$
70,000	17 $\frac{1}{2}$	1,750	3,250	66,750	$\frac{1}{4}$
90,000	20	4,000	7,250	82,750	$\frac{9}{31}$
110,000	22 $\frac{1}{2}$	4,500	11,750	98,250	$\frac{1}{3}$
130,000	25	5,000	16,750	113,250	$\frac{3}{7}$
160,000	30	9,000	25,750	134,250	$\frac{7}{13}$
510,000	35	122,500	148,250	361,750	$\frac{2}{3}$
1,010,000	40	200,000	348,250	661,750	$\frac{9}{11}$
2,010,000	45	450,000	798,250	1,211,750	1
2,020,000 이상	50	-	-	-	-

나. 빠른 상속공제(세대생략상속)

기부를 받은 자가 과세 이전을 받은 후 얼마 되지 않아 사망한 경우, 그 이전은 사망 시의 그의 자산을 증가시키고, 결국 그의 자산에 이전의 시기에 부과된 것만큼의 세금이 추가된다. 공제는 세대생략 상속이 있는 후 5년 이내에 사망할 경우에 이루어진다.

과세재산에 대한 총과세액은 보통의 방법으로 계산되고 빠른 상속 공제에 의해 줄어든다. 그 공제는 다음의 계산에 의해 도출된다.

$$\frac{\text{앞선 이전의 순수이익}}{\text{앞선 이전의 총액}} \times \text{앞선 이전에 과세된 세금} \times \text{공제 백분율}$$

공제 백분율은 <표 1-5>와 같다.

빠른 상속공제는 소유에서 발생하는 이익인 위탁재산에 대해 5년 이내에 상속의 변화가 있는 경우 또한 이용 가능하다. 공제율은 빠른 상속공제율과 같다. 기부를 받은 자가 사망시 그에게 주어진 이전이 기부자가 여전히 살아 있다는 이유로 잠재적 면세 이전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기부자가 기부를 받은 지 7년 이내에 사망할 수 있다. 그래서 잠재적 면세 이전은 기부를 받은 자의 개인적 대리인이 과세자가 되면서 기부자의 재산이 과세대상이 된다. 빠른 상속공제는 그러한 세금을 참고하여 기부를 받은 자의 자산에서 이용될 수 있다.

<표 1-5> 빠른 상속에 대한 공제 백분율

(단위: %)

증여와 사망 사이의 기간	공제 백분율
1년 이하	100
1년 이상 2년 이하	80
2년 이상 3년 이하	60
3년 이상 4년 이하	40
4년 이상 5년 이하	20

다. 생존자권 조항

비록 상속의 이전에 대한 세금이 처음의 이전 이후 기부를 받은 자가 5년 내에 사망할 경우 빠른 상속공제에 의해 줄어들지라도, 세금이 전혀 없는 것만큼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기부를 받은 자가 죽은 후 6개월 이상 기부자가 살아 있을 경우 기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하는 계약을 맺는다면 생존자권 조항이 가능해질 것이다. 생존자권 조항은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5. 상속·증여세 행정

가. 신고납부절차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의 경우 절차가 다소 차이가 나지만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경우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먼저 재산가치를 평가하고 피상속인의 유언검인(probate)이 필요한 경우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에 통지한다. 유언검인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신청절차와 상속세 신고서를 작성한다. 작성한 신고서를 관계기관(in England and Wales, that's the Controlling Probate Registry and HM Revenue & Customs (HMRC))에 송부한다. 납부할 금액을 납부한다. 유언검인기관과 인터뷰에 참여하고 선서를 한다. 우편을 통해 유언검인 허가를 기다린다. 상속재산의 부채를 청산하고 자산을 처분한다.

□ 1단계 : 자산평가

상속인 명의의 자산가치가 5,000파운드 이하인 경우 유언검인이 일반적으로 필요 없다.

□ 2단계 : 유언검인 신청

유언검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상속세 납무의무가 없는 경우라도 PA1 검인신청서와 함께 상속세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2009~2010년의 경우 면세한도는 32만 5천 파운드이며 상속인의 주거지가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또는 해외 인가와 재산규모 그리고 면세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상속세 신청양식이 달라진다. 상속인의 자산이 면세대상인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자산정보신고서(form IHT205 in England and Wales)를 작성해야 한다. 신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IHT400(a full Inheritance Tax account) 서식으로 전환 여부가 분명해진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Directgov 웹사이트를 참조하면 된다.

□ 3단계 : 신고서 송부

IHT205를 작성하는 경우 PA1서식을 가까운 검인등기소에 유언장 원본, 사망증명서와 수수료를 제출·납부한다. IHT400의 경우 작성지침 55쪽을 따라 작성한다. 작성지침을 다운로드하여(HM Court Service) PDF 909K 서식에 나와 있는 해당기관 주소로 우편송부한다.

□ 4단계 : 상속세 납부

상속세 납부가 이루어진 이후에 검인허가를 득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사망일 이후 6개월이다.

나. 사망시점

사망시 총재산의 최후 이전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앞선 7년 이내의 잠재적 면세 이전과 과세대상인 생애 이전의 총액에 근거해서 자산에 세금이 부과된다. 재산은 모든 자산의 총액으로서 재산은 다음 것들을 포함한다.

□ 연합 소유로서의 재산

- 연합소유 재산은 자동적으로 사망과 동시에 다른 연합 소유자에게 이전된다. 그러나 그 재산은 여전히 세금 계산을 위한 피상속인 재산의 일부를 형성한다(이것은 그가 원하면 처분을 할 수 있고, 각각의 개인이 개별적으로 소유하는 지분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소유로서의 지분과는 다르다).

□ 위탁수입(소유에서 발생하는 이자라 불린다)의 권리를 부여받은 경우 위탁기금의 자본가치

위탁기금에 있는 자본을 피상속인의 자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함께, 비록 그 자본에 대한 세금은 수탁자에 의해 지불되지만 피상속인은 기금에 있는 자본을 과세이전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위탁기금이 후원 자본의 일부로 배분되는 것에서 수입의 권리를 부여받았을 때에는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본은 이미 그의 재산의 일부로서 처리되었기 때문이다. 사망시 자산이 영국내 거주자인 배우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어떠한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다(면세액이 5만 5천파운드의 한계를 넘지 않는 경우).

1) 사망 전 7년 이내에 이루어진 이전

과세 생애증여를 한 경우, 그것의 일부 또는 전부는 20%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증여를 한 지 7년 이내에 사망시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된다. 왜냐하면 세금이 이전이 있기 전 7년 이내의 다른 과세 이전(과세대상인 이전이 된 잠재적 면세 이전을 포함한다)을 고려하면서, 사망시점에서 적용 가능한 정상세율(full scale rate)로 다시 계산되기 때문이다(그리고 사망시점에서 적용 가능한 nil-rate 경계를 적용한 후).

만약 사망 이전 7년 동안 잠재적 면세 이전을 했다면, 어떤 과세 생애 이전과 함께 세금이 부과될 것이고, 증가하는 총액에 따라 계산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세금의 부과는 각각의 이전이 발생한 날짜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추가납부의무를 유

발시키면서, 더 이상 영세율 한도가 부과된 과세 생애 이전에 대한 범위를 넘어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증여된 자산의 평가가치가 증여와 사망시점 사이에 하락한다면, 그리고 그 자산이 유형의 동산이 아니라면, 하락된 낮은 가치가 세금을 계산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예를 들면 자동차). 판매 수익이 증여가 이루어졌을 때보다 낮다면, 기부자의 사망 이전에 기부를 받은 자가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에 제3자에 의해 자유롭게 협상된 가격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된다.

2) 체감 공제(tapering relief)

사망 이전 7년 동안 이루어진 증여에 대한 세금을 계산할 때, 또는 추가적인 세금을 계산할 때, 만약 피상속인이 증여를 한 지 3년 이상 생존하는 경우 세금은 점진적으로 감소한다. 점진적으로 체감되는 과세 정상세율액에 대한 백분율은 다음과 같다.

〈표 1-6〉 정상세율액에 대한 백분율

(단위: %)

과세 증여와 사망시점 사이의 기간	과세 full scale rate액에 대한 백분율
3년 이하	100
3년 이상 4년 이하	80
4년 이상 5년 이하	60
5년 이상 6년 이하	40
6년 이상 7년 이하	20

기부를 받은 자는 생애 증여에 대해 지불한 과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적정 세액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설사 생애 증여의 과세액이 사망 과세액을 초과한다 할지라도, 환급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 납부기한, 초과지급되었거나 납부기한이 넘은 세금에 대한 이자·벌금

일반적인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다.

〈표 1-7〉 상속세 납부기한

4월 6일에서 9월 30일 사이의 생애 이전 과세	다음 해 4월 30일까지
10월 1일에서 4월 5일 사이의 생애 이전 과세	이전이 이루어진 달의 말일 이후 6개월까지
사망 - 생애 이전 과세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과 과세대상이 된 잠재적 면세 이전에 대한 세금	사망한 달의 말일 이후 6개월까지

그러나 개인적인 대리인은 그들이 유언을 적용하는 시기에 발생하는 과세의무에 대해 모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심지어 그 시기가 위의 납부일 전이라 할지라도 그러하다.

이전이 조건부로 면세되어 세금이 지불되지 않은 경우, 납부일은 과세원인이 발생한 달의 말일 이후 6개월 이내가 된다.

1) 분할 납부

세금은 한정된 자산에 대해 10년에 걸쳐 매년 같은 금액으로 분할 납부될 수 있다. 이것은 사망시 자산이 이전되었을 경우에 적용할 수 있고, 또한 기부를 받은 자가 세금을 납부한다면 과세 생애 이전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분할납부에 의한 납부의 선택은 또한 기부를 받은 자가 기부된 재산을 기부자의 사망일까지 소유하고 있는 한에서, 기부자가 증여 이후 7년 이내에 사망하여 과세대상이 된 한정된 재산의 잠재적 과세 이전에도 적용할 수 있다. 최초의 분할 납부는 일반적인 납부일에 과세 생애 이전에 대해 이루어지고, 사망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세금의 경우에는 사망이 발생한 달의 말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다.

분할 납부 선택은 그것이 어디에 위치하든 토지에도 적용되고, 사업이나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 앞선 사망에 대한 계산에서 제외되어 남겨진 이후 과세대상이 된 목재 (timber), 그리고 어떠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시세가 평가되지 않은 지분에도 적용된다. 분할 납부는 투자회사의 토지 및 지분의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 두 경우의 이자는 일반적인 납부일 이후에 지불되지 않고 남아 있는 총액에 대해 과세된다. 그 이자는 각각의 분할 납부에 추가될 것이다. 재산이 매각되면, 미결제 세금은 즉각적으로 납부되어야 한다.

2) 벌금

납부기한이 넘은 세금에 대해서는 연체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은 태만으로 인한 세금 손실에 50파운드를 더한 액수까지 또는 사기로 인한 세금 손실의 2배에 50파운드를 더한 액수까지 부과될 수 있다. 제3자에 의해 제공된 정보가 태만에 대한 것일 경우 최고 벌금은 250파운드이고, 사기에 대한 것일 경우 최고 벌금은 500파운드이다. 잘못된 것으로 나타난 정보를 정정하는 데 비합리적인 지연이 있는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된다.

라. 세금납부

위탁기금에 있는 자산의 이전과 기부자에게 남아 있는 납부의 우선적인 의무를 제외한 생애 이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기부자와 기부를 받는 자는 그들 중 누가 납부할 것인지에 동의해야하고, 만약 기부자가 납부한다면, 과세 이전액은 과세액을 포함해서 계산된다. 자유 재량의 위탁인 재산의 생애 이전의 경우, 우선적인 납부 의무는 위탁을 받는 자에게 생긴다. 사망시 개인적인 대리인은 상속자산에 대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반면에, 사망시에 부과되는 위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는 위탁을 받는 자에게 주어진다.

7년 이내의 기부자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애 이전에 추가적으로 붙는 세금이나, 과세대상이 된 잠재적 면세 이전의 경우, 세금을 납부할 우선적인 책임은 기부를

받은 자에게 있다. 개인적인 대리인에게는 기부자가 사망한 달의 말일 이후 12개월 동안 세금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 또는 과세액이 기부를 받은 자에 의해 소유되는 증여된 자산의 가치를 초과할 경우에 한해서만 납부의무가 생긴다.

위에서 언급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들도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대개가 세금이 납부일 이후에도 지불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이다. 세금이 국세청에 납부되지 않는 경우 대개 관련된 재산을 차압할 수 있다.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할 사람은 궁극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일 필요는 없다. 증여재산의 위탁을 받은 자는 위탁기금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모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수입을 얻는 다음 사람 또는 위탁기금으로 인해 세금의 의무가 있는 자분을 받는 사람은 관련성이 낮다. 개인적인 대리인은 사망시에 고인의 자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마. 보험의 활용

상속세 조항에는 잠재적 납세의무가, 기부자가 7년 이내에 사망하면 추가적인 납세의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 세금이 부과될 때가 아니라 명백하게 잠재적 면세 이전이 이루어진 시기인 이전의 시기로 알려지지 않은 많은 예들이 있다. 기부자가 기부를 하고 3년 이상 살 경우의 잠재적 납세의무의 감소를 고려하기 위해 일시적인 보험을 기부자의 생애 동안 들 수 있다. 이 경우 기부자의 죽음으로 인해 잠재적 면세 이전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그 세금은 보험으로 처리된다.

II. 인지세

1. 서론

인지세는 별도의 인지세사무소(Inland Revenue Stamp Taxes Office)가 관장하는 가장 오래된 세금으로서 1994년에 300주년을 맞이할 만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세목이다. 현재는 2003년 12월 1일 이후 일반적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납세의무를 지는 Stamp Duty Land Tax(SDLT), 증권거래시장에서 주식이나 증권을 취득할 때 부과하는 Stamp Duty Reserve Tax(SDRT), 그리고 2003년 12월 1일 이전 주식 양여 형식을 통해 주식을 매입하거나, 파트너십의 지분 양여, 토지나 재산의 취득에 적용되던 Stamp Duty(STD)로 구분할 수 있다. SDT와 SDRT의 합계 세수는 매년 80억파운드 정도에 이른다. CREST로 알려진 전자금융거래시스템을 통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인지세도 함께 징수하고 있다.

1999년 10월 인지세사무소는 IR(Stamp Taxes)로 알려진 Business Stream of Capital & Savings Division으로 전환되었으며 Capital & Savings국의 감독을 받는다.

2. 납세의무자

인지세 납세의무자는 특정 종류의 재산거래를 증명하는 법적 문서가 필요한 사람이다. 이때 재산이라 함은 취득 가능한 모든 종류를 포함하므로 단지 토지나 주택뿐만 아니라 양도 가능한 모든 금융자산을 포괄한다. 법적 문서가 필요 없는 자동차, 가구 등의 거래에는 인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3. 과세대상

1981년 인지법(Stamp Act)에 따르면 법적 문서에는 반드시 인지세가 수반되어야 하며 법원에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문서를 통해 입증해야 했다. 따라서 법적 문서를 통해 거래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재산거래는 모두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4. 세율

세율은 정액세와 정률세의 두 종류가 있다. 정액세는 과세대상이 되는 문서의 내용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이 부과되는 반면 정률세는 과세대상의 거래금액에 따라 일정률의 세금이 부과된다. 1999년 재정법의 조정으로 인지세 부과는 매매, 리스, 매매가 수반되지 않는 그 이외의 경우는 5파운드의 정액세율이 부과된다.

○ 세율

〈표 II-1〉 유가증권과 주식의 판매에 대한 양도나 이전

(단위: %)

종류	1986년 10월 26일 이후 세율
주식거래	$\frac{1}{2}$ ¹⁾²⁾
주식의 예탁증권으로의 전환	$1\frac{1}{2}$ ³⁾
인수나 합병	$\frac{1}{2}$ ¹⁾²⁾
자사주식의 매입	1)2)
배당	$\frac{1}{2}$

주: 1) 세금(duty) $\frac{1}{2}$ %는 1,000파운드 거래금액당 5파운드 부과를 의미하며 반올림을 통해 5파운드의 배수로 징수한다(FA 1999, s. 112).

2) 부채는 양도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제외된다(FA 1986, s. 79).

3) FA 1986, s. 67(3)

○ 재산의 이전

2005년 3월 17일부터의 세율

〈표 II-2〉 재산의 이전(2005년 3월 17일부터의 세율)

(단위: 파운드, %)

세율	영국의 모든 토지	
	주거용	비주거용
0	120,000	150,000
1	120,000~250,000	150,000~250,000
3	250,000~500,000	250,000~500,000
4	500,000 이상	500,000 이상

세율	불리한 조건에 위치한 토지	
	주거용	비주거용
0	150,000	모든 토지
1	150,000~250,000	
3	250,000~500,000	
4	500,000 이상	

주: 불리한 조건에 위치한 토지공제(Disadvantaged area relief)는 2005년 3월 17일 이후 유효하지 않다.

다만, 공제는 다음의 경우에 유지된다.

- 2005. 3. 16 이전에 건축계약이 이루어지고 상당부분이 완공된 경우
- 2005. 3. 16 이후 주요한 계약이나 자산의 매매각 등 변화가 없는 경우
- 거래가 2005. 3. 16 이후 옵션이나 우선매수권의 행사 결과가 아닌 경우

○ 새로운 리스

월세에 대한 세금 (Duty on rent)

〈표 II-3〉 새로운 리스-월세에 대한 세금

(단위: 파운드, %)

세율	월세의 순현재가치	
	주거용 1	비주거용
0	0~120,000	0~150,000
1	120,000 이상	150,000 이상

주: 리스의 순현재가치에 대한 인지세 계산시 1%를 적용하는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데 다음을 빼고 계산한다.

○ 주거용 : 120만파운드, 비주거용 : 150만파운드.

프리미엄에 대한 인지세는 토지의 양도 경우와 동일하다. 다만 월세에 대한 프리미엄이 연 600파운드를 초과하는 경우는 특정한 규칙이 적용된다. 주식양도에 대한 인지세와 인지유보세는 변함없이 2005~2006년 기간 동안 0.5%가 적용된다.

2003년 12월 1일부터의 인지세율

재산의 거래

〈표 II-4〉 재산의 거래(2003년 12월 1일부터의 세율)

(단위: 파운드, %)

세율	영국내 모든 토지	
	주거용	비주거용
0	60,000	150,000
1	60,000~250,000	150,000~250,000
3	250,000~500,000	250,000~500,000
4	500,000 이상	500,000 이상

세율	불리한 조건에 위치한 토지	
	주거용	비주거용
0	150,000	모든 토지
1	150,000~250,000	
3	250,000~500,000	
4	500,000 이상	

주: FA 2003, s. 125에 따르면 2003년 12월 1일부터 토지거래가 아닌 주식이나 파트너십에 의한 이익은 인지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 자유보유 부동산(freehold property)과 같은 여타 재산 거래세

2003년 4월 9일에서 2003년 11월 30일까지의 세율

〈표 II-5〉 다른 재산 거래세

(단위: 파운드, %)

		불리한 조건하의 토지	
세율	모든 토지	주거용	비주거용
0	0~60,000	0~150,000	모든 토지
1	60,000~250,000	150,000~250,000	
3	250,000~500,000	250,000~500,000	
4	500,000 이상	500,000 이상	

2003년 4월 9일 이전 세율 (FA 1999, Sch.13, para. 4)

(단위: 파운드, %)

기간 적용	구간			
	60,000까지	60,000~ 250,000	250,000~ 500,000	500,000 이상
2000. 3. 28 ¹⁾ ~	Nil	1	3	4
1999. 3. 16 ²⁾ ~	Nil	1	2.5	3.5

주: 1) 양도가 2000년 3월 28일 이후 이루어진 경우

2) 양도가 1999년 3월 16일 이후 이루어진 경우

1. 인지세는 구간 초과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총거래 인증금액에 대해서 세율이 적용된다.

○ 정액 세율(FA 1999, s. 112(2))

1999년 10월 1일 이후부터 정액 세율은 5파운드

인지세(1999. 10. 1 이전)	금액
양도 - 기타	50p
신탁고지	50p
사본	50p
분할	50p
리스 - 소규모 임대	1파운드
기타	2파운드
포기	50p
해약	50p

주: FA 2003, s. 125에 따르면 2003년 12월 1일부터 토지거래가 아닌 주식이나 파트너십에 의한 이익은 인지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 임대차 계약(FA 1999, Sch. 13, para. 11~13)

2000년 3월 27일 이후

(단위: 파운드, %)

조건(FA 1999, Sch. 13, para. 12 ^{1), 2), 3)}	세율
7년 이하이거나 기간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경우	
○ 월세 5,000 이하	Nil
○ 5,000 이상	1
7~35년	2
35~100년	12
100년 이상	24

주: 1) 1년 이하의 기간확정 리스 : 5파운드(FA 1999, Sch. 13, para. 11, 1999년 10월 1일부터 적용)

2) 가구가 포함된 리스의 경우 1년 월세가 600파운드를 넘지 않는 경우 프리미엄 영세율 과세

3) 리스에 대한 인지세는 실제 리스계약 금액이 기준이지만 리스 계약이 여러 해 연장되는 경우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2003년 12월 1일부터 새로운 리스 인지세

월세에 대한 세금¹⁾

(단위: 파운드, %)

세율	월세의 현재 가치	
	주거용	비주거용
0	0~60,000	0~150,000
1	60,000 이상	150,000 이상

주: 1) FA 2003, s. 56 and Sch 5,에 이 세율에 대한 규정이 있음.

2) 프리미엄에 대한 세금은 토지거래와 동일하다. 다만 연 600파운드가 넘는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특정 규정이 적용된다.

○ 지연 제출에 따른 가산세

1999년 9월 30일 이후 (SA 1891, s. 15B)

문서의 종류	지연 제출 가산세
영국 국내 문서	30일 경과
영국 토지와 건물에 관련된 해외 문서	30일 경과 (Royal assent to FA 2002)
기타 해외 문서	영국 접수 후 30일 경과 ¹⁾

주: 1) 영국 수취일이 불분명한 경우 가산세 면제 (다음 표 참조).

가산세 최고 금액

- 문서가 1년 이내 지연 제출된 경우 300파운드 또는 인지세액 중 적은 금액
- 문서가 1년 이상 지연 제출된 경우 300파운드 또는 인지세액 중 많은 금액

가산세의 경감

인지세 사무국은 가산세 경감표(booklet SO10)를 활용하고 있다.

증가세가 적용되는 경우

(단위: 파운드, %)

지연 개월수	300까지	300~ 700	705~ 1,350	1,355~ 2,500	2,505~ 5,000	5,000 이상
3월 이하	Nil	20	40	60	80	100
6월 이하	20 ¹⁾	40	60	80	100	150
9월 이하	40 ¹⁾	60	80	100	150	200
12월 이하	60 ¹⁾	80	100	150	200	300
15월 이하	인지세액의 15% 또는 100 중 많은 금액					
18월 이하	인지세액의 25% 또는 150 중 많은 금액					
21월 이하	인지세액의 35% 또는 200 중 많은 금액					
24월 이하	인지세액의 45% 또는 250 중 많은 금액					

아래 표 참조

주: 1) 인지세 금액이 이보다 작은 경우 인지세액

5,000파운드 이상이 관련된 1년 이상 지연이나 2년 이상 지연 사례는 개별적으로 다뤄진다.

정액가산세가 적용되는 사례

(단위: 파운드, %)

	문서당 최대 정액가산세	경감 후 가산세
12월까지	5	Nil (100% 경감)
12월 이상 지연	300	상황에 따라 다름

납세자가 지연사유에 대해 정당하게 소명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

별도 조항 가산세 (최대 금액)

- 인지세 관련 사기 : 3,000파운드
- 고의적 누락 : 3,000파운드
- 판결에 따른 통지 후 30일 이내 인지문서 미제출 : 300파운드
- 문서에 대한 조사 방해 : 300파운드
- 인지되지 아니한 문서의 등록 : 300파운드
- 인지되지 아니한 문서의 유통 : 300파운드
- 인지되지 아니한 외국사채의 발행 : 300파운드

1985년 3월부터 폐지된 인지세

인지세	유효 폐지일
증가세	
○ 자본인지세	1988년 3월 15일 이후에 매매되고 1999년 3월 21일 이후에 처리된 문서들
○ 증여신탁	1985년 3월 18일 이후에 실행되고, 1985년 3월 25일 이후에 처리된 문서들
○ 생명보험 인지세	1989년 12월 31일 이후에 실행된 문서들
○ 이혼 등에 따른 양도	1985년 3월 25일 이후에 실행된 문서들
○ 단위 신탁 인지세	1988년 3월 15일 이후 실행되고 1988년 3월 21일 이후 처리된 문서들
○ 상속에 따른 배분	1985년 3월 25일 이후 실행된 문서들
○ 자본대부에 의한 양도(특별 배제 조항)	1986년 7월 31일 이후 실행된 문서들
○ 북아일랜드 은행채	1992년 1월 1일
○ 지적재산권의 양도	2000년 5월 27일 이후에 실행된 문서들
○ 등록된 사회임대업자에게 양도	2000년 7월 28일 이후에 실행된 문서들
○ 개인연금 계좌(IPAs)에 축적된 투자분의 단위신탁이나 주식의 양도에 부과되는 인지세	2001년 4월 1일부터 거래
○ 불리한 조건의 지역내 토지와 리스의 양도 (15만파운드까지)	2001년 11월 29일 이후에 실행된 문서들
○ 영업권 양도	2002년 4월 22일 이후에 실행된 문서들
○ 부채 양도	

인지세	유효 폐지일
<p>정액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법에 의거한 계약이나 동의 새 수탁자의 임명과 재산권 실행 계약 법적 권한이 있는 증서·위임장. 문서화되어 있 는 신탁이나 재산의 취소 변호사의 보증. 배분이나 재배분의 증서, 간단 한 증명서 ○ 인지세 카테고리(면제조항) (SI 1987/516): A. 연금수령권 신탁 B. 유산의 수령인에게 이전 C. 유언에 따라 처분되지 않은 재산의 적정 상속 자에게로의 이전 D. 죽음으로 인한 할당 E. 유산 잔여 부분의 이전 F. 조정하에 정해진 수혜자로의 이전 G. 결혼으로 이루어진 특정 이전 H. 이혼 관련 이전 I. 청산인에서 주주로의 이전 J. 대가없는 지역권의 부여 K. 대가없는 용역권의 부여 L. 대가나 조정없는 자발적인 양도 M. 사망에 의한 변동 N. 생명보험증서의 신탁의 신고 	<p>1985년 3월 25일 이후 실행된 문서들</p> <p>1987년 4월 30일 이후 실행된 문서들</p> <p>1999년 7월 30일 이후에 실행된 문서들</p>

주: FA 2003, s. 125에 따르면 2003년 12월 1일부터 토지거래가 아닌 주식이나 파트너십에 의한 이익은 인지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 인지유보세(Stamp duty reserve tax)

주요 부과내용(FA 1986, s. 87)

(단위: %)

부과의 주요 사안	세율
증권의 매각 ¹⁾	0.5
배당포기서	0.5
주식을 수탁인 영수증으로 변경할 때	1.5
다만, 인지세 부과대상 주식이나 증권이 이전	1
청산에 공여된 주식	1.5
다만, 인지세 부과대상 주식이나 증권 이전	1

주: 1) 인지세 부과대상 증권은 주식, 지분, 자본대부, 단위신탁체제하의 단위를 말한다(FA 1986, s. 99(3)).

○ 인지세에 대한 가산금과 인지유보세(SDRT)

1999년 10월 1일 이후 실행된 문서와 관련이 있으며, 30일 이내 인지세가 지불되지 아니한 경우 가산금(interest)이 부과된다(Stamp Act 1891, s. 15A). 30일이 지난 과오납된 인지세에 대한 이자 역시 환급되어야 한다(FA 1999, s. 110). 가산금과 이자 5파운드의 배수로 반올림된다. 25파운드 이하에 대해서는 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적용 이자는 FA 1989, s. 178에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인지유보세는 다음과 같은 가산금을 규정하고 있다.

- 지연납부에 대한 가산금(TMA 1970, s. 86 via SI 1986/1711, reg.13)
- 인지유보세(SDRT)의 이자지급은 납부기일로부터 환산한다(FA 1989, s. 178 via SI 1986/1711, reg. 11).
- 마찬가지로, 6년 이내 정상적으로 인지유보세가 납부된 경우 인지유보세는 이자와 같이 환급된다(FA 1986, s. 92).

1999년 10월 1일부터 이자지급은 미지급분 또는 지연지급분이 환급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이루어진다.

(단위: %)

적용기간	이자율	
	불충분지급 (Underpayments)	환급
2001. 11. 6 ~	6.50	2.50
2001. 3. 6~2001. 11. 5	7.50	3.50
2000. 12. 5~2001. 3. 5	8.50	4.00
1999. 10. 1~2000. 2. 5	7.50	3.00

Ⅲ. 기타(지방세 등)

1. 카운슬세(Council tax)¹²⁾

가. 서론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주거레이트제도가 폐지되고 주민부담금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1990년 3월 31일 런던에서는 최악의 폭동 사태가 발생했다. 400명 이상의 데모 군중과 경찰관들이 부상을 입고, 341명이 습격·방화·약탈죄로 체포되었다. 그 사건의 도화선이 된 것은 그 뒷날인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부담금제도였다. 주민부담금제도는 인두세(poll tax)로서 종전의 재산세인 레이트(rates)가 부동산 소유자와 임차자에게 가구당 기준으로 과세되어 지방행정 수요와 세부담의 연계성이 없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18세 이상의 성인들에 대해 빈부를 불문하고 단일세율(flat rate)로 과세되었다. 국민들은 이를 재산보유 정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불공평한 세금으로 생각하였다. 이 사건의 파장으로 납세 거부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마침내 대처 정권이 붕괴되고 메이저 정권이 탄생하게 되었다.

대처 수상의 사임 후 1990년 11월에 새롭게 취임한 보수당의 존 메이저(John Major) 수상은 즉시 사회적 불만의 대상이 된 주민부담금제도를 다른 형태의 주민세로 개편할 것을 약속하였다. 당시 환경성 장관(지방자치 관련 문제를 관장하는 부서)은 주민부담금제도의 불합리성을 인식하고 곧이어 지방재정 전반에 대하여 재검토하는 정책자문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새로운 지방세(A New Tax for Local Government)』라는 제목의 이 정책보고서에서는 지방세제도 개편을 포함하여 지방재정 전반에 걸치는 검토와 계획안이 담겨 있었다.

12) 이 부분은 임성일·최영출(2001), http://en.wikipedia.org/wiki/Council_tax를 주로 참고하였음.

그 후 1991년 4월 영국 정부는 1993년부터 주민부담금제도가 폐지되고 그 대신 새로운 카운슬세(카운슬 Tax)가 도입될 것이라고 발표하였고, 이러한 정부의 발표는 그대로 실시되었다. 1993년부터 영국의 유일한 지방세로 자리잡은 카운슬세는 노동당 정부의 출범 이후에도 계속해서 확고한 지방세의 위치를 굳히고 있다.

메이저 정부에 의해 1993년부터 시행된 카운슬세는 종래의 주거레이트와 주민부담금제도를 절충한 것으로 가구별 주택의 자산 가치와 18세 이상의 성인 수를 기초로 부과되는 영국의 유일한 지방세로서 지방세입 예산의 약 13%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카운슬세 과세에 한도(rate-capping)를 설정하여 표준지출평가(Standard Spending Assessment)의 1.12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카운슬세가 지방세로 처음 도입된 1993~1994회계연도 중 잉글랜드의 총카운슬세 수입은 89.11억파운드이며, 이 중에서 각종 조세감면 등을 제외하면 실제 카운슬세 수입은 70.47억파운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카운슬세가 도입된 이후 총징수액은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왔으며, 주민부담금과 비교해서 가구별 지방세 부담은 카운슬세의 경우 더 많아졌다.

요컨대, 카운슬세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각 지방에서 지방세를 부과하는 시스템이다. 부과와 과세표준은 주거용 재산이며 독신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2008년 현재 잉글랜드의 재산당 평균 연 부과액은 1,146파운드 수준이다.

카운슬세는 종래의 주거레이트와 주민부담금을 절충시킨 것으로 각 가구별로 주택의 자산가치와 주택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성인 수를 기초로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카운슬세의 징수액은 주택의 평가액이 속하는 등급(valuation band)과 주택에 거주하는 성인의 수, 그리고 조세감면 내지 할인의 대상 여부 등 세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조세 성격면에서 카운슬세는 재산과세적 특성을 기본으로 하면서 부분적으로 인두세와 소득과세적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그러나 세금 정산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자산가치이므로 어떤 면에서 카운슬세의 도입은 종전 레이트제도로의 복귀를 뜻하기도 한다.

나. 과세대상

카운슬세의 과세대상은 주택의 자산가치와 해당주택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성인 수이다. 주택의 자산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점에서는 레이트와 비슷하고 성인 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점에서는 주민부담금과 비슷하다. 여기서 주택이라 함은 단독주택, 아파트, 방갈로, 2층 아파트(maisonette) 등 최소한 부분적이거나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부속건물이라도 완전히 분리되어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것은 별개의 주택으로 본다. 이동식 주택(mobile home)과 선박주택(houseboat)도 특정한 주된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본다. 2가구 이상이 취사 및 세탁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거시설은 1가구의 주택으로 본다.

다. 납세의무자

카운슬세의 과표 산정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성인 수가 아니라 자산가치이다. 다시 말해서, 카운슬세의 인두세적 성격은 기본적으로 자산가치에 의존하고 있다. 카운슬세는 각 주거단위(dwelling), 즉 가구별로 부과되며 납세의무자는 통상 주택의 거주자가 된다. 이때 거주자는 보통 집주인이거나 주택을 임대하는 임차인이 된다. 여러 사람이 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관계면 보통 가장이 부담하지만, 가족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거주하는 성인들이 공동으로 카운슬세를 분담한다. 카운슬세는 주택 1가구당 기준으로 부과한다. 주택이라 함은 일반주택, 방갈로, 아파트, 연립아파트(maisonette), 이동주택(mobile home), 선상주택(houseboat) 등으로서 소유 또는 임차 여부를 불문한다.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 ① 주택의 소유자로서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resident freeholder)
- ② 주택의 임차자로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resident leaseholder)
- ③ 소유자가 다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의 임차인(tenant)
- ④ 허가를 받아 거주하는 자(resident licensee)
- ⑤ 거주자(resident)
- ⑥ 거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유자

여기서 거주자(resident)라 함은 18세 이상으로서 유일한 주택 또는 주된 주택에서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주로 납세의무자가 되는 사람들은 소유자인 거주자와 임차자인 거주자이다. 주택이 빈집이거나 어느 누구의 주된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카운슬세가 도입되면서 종전 주민부담금제도하에서 약 4,100만 명의 성인에게 부과되던 것이 약 2,200만가구로 그 과세대상이 변화하였다.

가) 거주자가 납세의무자가 아닌 경우

아래와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거주자가 아닌 소유자(owner)가 카운슬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 ① 2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가구별로 임대료를 각각 따로 내는 주택과 취사 및 세탁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합숙소(hostel), 단칸 아파트.bed-sit) 등의 주택
- ② 각종 요양소
- ③ 수도원·수녀원 등 각종 종교시설
- ④ 소유자의 주된 주택(main home)은 아니지만, 소유자가 고용하고 있는 자의 주된 주택
- ⑤ 목사의 사택, 성공회(Church of England)의 성직자가 소유·사용하고 있는 사택은 교회가 납세의무자임.
- ⑥ 이민 및 망명법(Immigration and Asylum Act 1999)에 의한 망명자 수용시설

위와 같은 주택에 대해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는 납세의무가 없다.

나) 하나의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특정한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에 대해 2인 이상이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공동소유자나 공동임차자는 공동으로 납세의무를 진다. 부부가 같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동 납세의무자 중 1인이 정신질환이 심하여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다) 공동 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

지방자치단체(카운슬)는 공동 납세의무자 중 1인 또는 일부, 각자에 대해 고지를 한다.

라) 납세의무자의 파악

지방의회는 누가 납세의무를 지게 될 것인지를 묻는 신고서식을 발송한다. 이를 받은 사람들은 그 서식을 작성하여 반드시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50파운드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마) 납세의무자의 결정에 대한 불복

지방의회에서 결정한 납세의무자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의회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회신이 없으면 청구인은 평가법원(Valuation Tribunal)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재판 계류중인 경우에도 납세의무는 중지되지 않는다.

라. 비과세 · 감면

카운슬세에도 종전 레이트나 주민부담금과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재분배의 목적을 갖는 조세감면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카운슬세는 주민부담금제도가 학생이나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인색한 조세혜택을 부여한 데 대한 불만을 고려하여 100% 전액을 되돌려 주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와 동시에 생활보호대상보다는 조금 더 나은 저소득층들에 대해서도 카운슬세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 주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 이때 환급에 필요한 재원은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이나 보조금 형식을 통해서 조달된다.

카운슬세에는 개인의 지위나 상태를 고려하는 할인제도(status discount)가 있다. 대표적으로 전업학생이 이러한 할인대상(25% 할인)이 되며 이들은 과세목적상 성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 주택에 어른과 대학생이 같이 생활하는 경우 이 가구

에 대해서는 정상 카운슬세액의 75%가 부과된다. 또 빈집이나 제2의 주택(second home)인 경우에도 50% 경감대상이 된다. 1가구의 주택에 3인 이상이 거주하는 경우에도 세액은 더 늘어나지 않는다. 2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두 번째 주택에 대하여 50%를 감면해준다. 그밖에도 약 70만호 정도가 공가, 학생용 주거시설, 군용 주거시설 등의 이유로 면세 내지 50%의 감면혜택을 보고 있다.

영국 정부는 주민부담금제도를 도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카운슬세의 도입에 따르는 주민의 세부담, 지역간 상대격차 문제 등을 완화할 목적으로 카운슬세 잠정조치(카운슬 tax transitional scheme)를 마련하고 약 3.4억파운드를 지원하였다. 이 제도의 핵심은 8등급으로 구분된 카운슬세의 각 등급별로 차등적으로 일정액수를 감면해 주는 데 있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카운슬세제의 도입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평가자산(H등급)을 보유하면서 가구 내 성인 수가 적은 세대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경감혜택을 부여하였다. 대체로 보아 카운슬세가 도입되면서 저소득층과 가구 내 성인 수가 적은 그룹이 상대적으로 조세혜택을 보게 되었다.

가) 거주자수의 계산시 제외되는 자

① 견습생(apprentices)

국립직업자격위원회(National 카운슬 for Vocational Qualifications)가 인정하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견습중인 자는 거주자의 수를 계산하는 데에서 제외된다. 견습생으로서의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급이 160파운드 이내이어야 한다.

② 청년 피훈련자(youth training trainees)

청년훈련계획(Youth Training Scheme)에 따라 훈련을 받고 있는 25세 이하의 청년도 거주자의 수에서 제외된다.

③ 학생(students)

정규 학생(외국인 학생 포함)과 공인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자가 이에 해당된다. 구체적인 학생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년 이상 또는 연간 24주 이상의 대학 과정에 출석하는 자와 학기중 주 21시간 이상의 수업을 받는 자
- 자격 취득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주당 12시간 이상 수업을 받는 20세 이하인 자

④ 학생 간호원(student nurses)

대학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 간호원도 거주자의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입원 환자(resident hospital patients)

병원이 입원한 환자의 유일한 또는 주된 주거지인 경우에는 거주자의 수를 계산하는데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단기간 입원하고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소재지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⑥ 각종 요양기관에 입원중인 자

각종 요양기관에 입원중인 자의 유일한 주거지가 그 요양기관인 경우에는 거주자의 수에서 제외된다.

⑦ 정신질환자

중증 정신질환자는 거주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치매나 이와 유사한 정신질환 등이 이에 해당된다. 중증 정신질환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한다.

⑧ 숙박업소 등의 체류자

숙박업소(hostel) 또는 구세군이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수용시설이 유일한 또는 주된 주거지인 자

⑨ 성직자 또는 수녀

종교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별도의 소득(종전의 직업으로부터 받는 연금 포함)이 없이 종교단체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성직자 또는 수녀

⑩ 18세 또는 19세인 자

18세 또는 19세인 자로서 정규 학생인 자(고등교육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18세 또는 19세인 자로서 4월 30일 이후에 졸업을 한 경우에는 그 해의 11월 1일까지는 제외된다.

⑪ 장애인 보호자(carers)

장애인과 거주하며 장애인 수당 또는 연금을 받는 장애인을 평균 주 35시간 이상 보살피 주는 사람은 거주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배우자를 보살피 주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수에 포함된다. 사실상 부부관계에 있는 동거 부부의 경우도 같다. 또한 주급 36파운드 이하를 받는 자로서 노인 또는 장애인을 돌보는 자도 거주자 수에 포함

되지 않는다.

⑫ 수감자(people in prison)

구금 또는 수감되어 있는 자는 거주자 수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카운슬세를 체납하여 구속된 자는 제외되지 않는다.

⑬ 외교관(diplomats)

외교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와 부양가족도 거주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비과세

카운슬세의 비과세대상 주택은 다음과 같다.

- ① 학생들이 거주하는 주택 또는 학기 동안의 학생 수용시설
- ② 18세 이하인 자들이 거주하는 주택
- ③ 군인 수용시설 또는 외교관용 주택
- ④ 중증 정신질환자가 점유하는 주택. 다만, 소유자 또는 보호자가 납세자인 경우는 제외
- ⑤ 1가구의 주택을 구성하고 있는 별도로 구분된 주택으로 소유자의 친족이 거주하는 주택

다음의 주택은 제한된 기간 내에 한하여 비과세이다.

- ① 빈집으로 남아 있는 주택은 6개월을 한도로 비과세
- ② 수리를 요하거나 수리중인 주택은 1년을 한도로 비과세
- ③ 사망자의 주택으로서 거주자가 없는 주택은 6개월을 한도로 비과세

다음 주택은 거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이다.

- ① 학생인 소유자가 주된 주택으로 사용했던 주택
- ② 수감자가 수감 이전에 주된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수감이 되어 거주자가 없는 경우
- ③ 거주자가 치료 또는 요양을 받기 위해 떠나 거주자가 없는 주택
- ④ 거주자가 타인을 돌보기(personal care) 위해 떠나 거주자가 없는 주택

- ⑤ 주된 건물로 분리할 수 없는 종된 건물(annex)
- ⑥ 파산 신청에 있어 수탁인(trustee)이 납세자인 경우
- ⑦ 법령에 의하여 거주가 금지된 주택 또는 강제처분이 임박하여 거주자가 없는 주택
- ⑧ 성직자가 직무 수행을 위해 거주하게 될 주택
- ⑨ 저당권자에 의해 압류된 주택

위와 같은 비과세대상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카운슬세의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주택의 평가 가액이 어느 정도인지와 비과세대상이 아니었다면 납부해야 할 세액을 통보한다. 지방의회가 비과세대상이라고 통보한 주택일지라도 납세자가 비과세대상이 아님을 알았다면 납세자는 그 사실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벌금을 물게 된다.

카운슬 정부가 비과세대상 주택이 아니라고 한 결정에 대해 납세자가 불복하는 경우 그 납세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카운슬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카운슬 정부는 2개월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납세자가 이 결정에 대해 불복하거나, 2개월 이내에 회신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납세의무는 중지되지 않는다.

다) 장애자에 대한 감면

아래와 같은 장애자용 시설을 갖춘 주택에 대해서는 카운슬세가 경감된다.

- ① 화장실, 부엌을 제외한 장애자가 주로 사용하는 방. 예를 들면, 장애자용 휠체어 등을 보관하는 방 등이 이에 해당된다.
- ② 장애자를 위한 욕실 또는 부엌
- ③ 휠체어 사용을 위한 주택 내의 추가 공간

감면대상이 되는 방은 장애자를 위해 특별히 건축된 것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장애자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면 족하다. 카운슬세는 평가 가액이 가장 낮은 A부터 가장 높은 H까지 8등급으로 나누어진다. 장애자 경감대상 주택은 실제보다 1등급이 낮은 등급을

적용하여 세부담이 낮아지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D등급(band D)에 속하면 실제 과세시에는 C등급을 적용하게 된다. 장애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지방의회에 서식에 의하여 장애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 입증서류는 예를 들면, 의사, 직업 치료사 등이 그 장애인이 주택 내에서 별도의 공간이 필요한 자임을 입증하는 것 이어야 한다.

장애자가 있는 가구에 대해 지방의회가 일단 과세를 하게 되면 납세자는 감면대상자에 해당되는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지방의회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지방의회는 2개월 이내에 이를 결정하고 회신해야 한다. 이 결정에 불복하거나, 2개월 이내에 회신을 받지 못하면 평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에도 납세의무는 이행해야 한다.

마. 과세표준 및 세율

가) 평가의 전제 및 평가

평가가 동일한 기준에서 공정하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법령에 정해진 평가 전제는 다음과 같다.

- ① 주택은 빈집인 상태로 매매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 ② 주택의 매매는 보유기간의 제한이 없는 자유매매를 전제로 한다.
- ③ 주택은 거주에 불편이 없도록 수리되어 있는 상태이다.
- ④ 아파트는 99년간 임대한다는 조건으로 매매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 ⑤ 주택의 규모, 건축양식 및 특성과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1993년 4월 1일 기준으로 한다. 만약 그 이후 변경이 있었다면 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주택의 평가는 국가기관인 평가청(Valuation Office Agency)에 의해 이루어진다. 평가 결과는 가격대에 따라 A~H까지 8개의 평가등급(valuation band)으로 나누어진다. 이 평가등급은 개별 주택의 가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어느 가격대의 범위에 속하는가를 나타낸다.

〈표 III-1〉 주택의 평가등급 (잉글랜드)

(단위: 파운드)

등급(band)	가격범위(range of values)	평균
A	40,000 이하	845
B	40,000 초과 52,000 이하	986
C	52,000 초과 68,000 이하	1,127
D	68,000 초과 88,000 이하	1,268
E	88,000 초과 120,000 이하	1,550
F	120,000 초과 160,000 이하	1,832
G	160,000 초과 320,000 이하	2,113
H	320,000 초과	2,536

카운슬세는 자산의 평가가치와 가구의 성인 수를 기초로 그 최종세액이 결정되므로 카운슬세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단계를 거쳐야 한다. 첫 번째 단계는 해당 주택의 자산가치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잠정세액을 산출하는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는 산출된 세액을 해당주택에 거주하는 성인 수와 연계시켜 최종적으로 세액을 산정하는 단계이다.

① 제1단계

영국 정부는 카운슬세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과표산정에 있어서 가격대 방식(banded system)을 채택하였다. 가격대 방식은 자산의 평가가치가 낮은 A 등급으로부터 가장 높은 H 등급의 8등급으로 구분하고 그 속에 영국 내의 모든 주거용 자산이 포함되도록 만들어졌다.

〈표 III-2〉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지역의 각 가격대별 가격과 상대세율을 보여준다. 상대세율은 D등급을 일종의 기준으로 삼고 H등급의 주택은 D등급의 2배, A등급의 3배를 부담하도록 만들어졌다. 그리고 A와 H등급 사이에 속하는 B, C, E, F, G 등급은 각각 기준등급 D 세율의 7/9, 8/9, 11/9, 13/9, 15/9 수준이 되도록 만들어졌다. 그 결과 각 등급간에는 1/9~3/9의 세율 차이가 나며, 동일 지방정부 내에서

최고·최저세율간의 차이는 3배가 된다. 이와 같이 지역 내 자산 간의 최고·최저세율을 3배 차로 한 것은 조세원리 중 능력원리보다 혜택원리를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표 Ⅲ-2〉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에 대한 카운슬세 가격대

(단위: 천파운드, %)

가격대	가격대 D에 대한 비율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A	6/9(67)	40 이하	30 이하	27 이하
B	7/9(78)	40 초과 52	30 초과 39	27 초과 35
C	8/9(89)	52 초과 68	39 초과 51	35 초과 45
D	1(100)	68 초과 88	51 초과 66	45 초과 58
E	11/9(122)	88 초과 120	66 초과 90	58 초과 80
F	13/9(144)	120 초과 160	90 초과 120	80 초과 106
G	15/9(167)	160 초과 320	120 초과 240	106 초과 212
H	2(200)	320 초과	240 초과	212 초과

자료: Christopher Giles and M. Ridge, "The Impact on Households of the 1993 Budget and the Council Tax," *The Guardian*, Vol. 14, No. 3, 1993, p. 13.

이러한 가격대 방식이 지니는 장점은 각 가격대의 구간 폭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자산가격을 빈번하게 재평가할 필요성이 없어 행정상 편리하다는 것이다. 영국 정부는 가격대 방식을 채택하면서 자산의 평가 가격면에서 각 구간별로 상당한 가격차가 있도록 만들었다. 예를 들어, 잉글랜드의 경우 A~D등급까지는 등급간에 1만 2,000~2만 파운드 차이가 나고, 상대적으로 비싼 주택이 속하는 E~H등급에서는 등급간에 3만 2,000~16만파운드의 차이가 난다. 그리고 일단 자산가치가 최저등급인 A등급이나 최고등급인 H등급에 속하게 되면 해당자산에 적용되는 세율이 더 이상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산가치는 세액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내에서도 지방정부 단위로 과세대상의 가격대 분포가 다르게 나타난다. 주택의 평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런던 등 대도시의 경우 과세

대상이 C, D가격대에 밀집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B, C가격대에 밀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카운슬세의 세액은 과세대상의 자산가치평가액(과표)을 가격대 기준표에 적용시켜 해당자산의 등급을 확정짓고, 각 등급별 기준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산출된다. 이때 기준가격대 D의 평균과세액이 먼저 산출되어야 하고, 이것이 되면 나머지 구간의 과세액은 D가격대의 과세액을 기준으로 정해진 세율을 곱함으로써 산출된다.

즉, 특정 지방정부의 카운슬세 수입은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만일 Ni가 8등급 중 어떤 i가격대에 포함되는 해당 지방정부 내의 가구 수이고, X가 기준 가격대 D에 해당하는 자산의 과세액이라면 특정지역의 조세수입 T는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T = Na \cdot 0.67X + Nb \cdot 0.78X + Nc \cdot 0.89X + Nd \cdot 1.0X + Ne \cdot 1.22X + Nf \cdot 1.44X + Ng \cdot 1.67X + Nh \cdot 2.0X \text{ (여기에서 } a \sim h \text{는 8등급의 조세가격대임)}$$

잉글랜드의 경우 평균 자산평가액은 약 80,000파운드이고 이것은 D가격대에 해당한다. 카운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평가가치는 1991년 4월 1일 현재의 공개시장가치(open market value of a property)를 기준으로 정의되었다. 여기에서 공개시장가치란, 특정자산이 1991년 4월 1일 현재 공개시장을 통하여 거래된다고 가정할 때 주택의 판매자가 합리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적정가격을 뜻한다. 당시 자산의 과표산정 방법으로서 레이트 과표를 산정할 때 사용하던 임대가격을 비롯하여 주택의 자본가격, 재건축가격 등의 접근방법이 고려되었다. 1991년에 있었던 자산평가는 실제 시장가격을 엄격히 적용하기보다는 과세기초에 필요한 상대평가를 하는 데 중점이 주어졌다.

〈표 III-3〉에서 현재의 잉글랜드 구역별 D구간 레이트 금액을 나타냈다.

〈표 III-3〉 D구간의 레이트(잉글랜드)

(단위: 파운드, %)

카운슬 지역	D구간 레이트	2006년 평균	현재 시점
Wandsworth	676.16	53	2008
Westminster	681.68	54	2008
Kensington & Chelsea	1,031.15	81	2008
Southwark	1,180.94	93	2008
Lambeth	1,187.23	94	2008
Hammersmith & Fulham	1,193.33	94	2008
Islington	1,249.40	96	2008
Average	1,268	100	2006
Camden	1,300.52	103	2008
Ealing	1,344.10	106	2008
Croydon	1,357.64	107	2008
Houslow	1,394.53	110	2008
Richmond	1,490.60	118	2008

② 제2단계

자산가치를 토대로 잠정세액이 산정되면 제2단계로 거주 성인 수를 기준으로 최종 세액을 산정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성인 수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세액의 100%가 과세되고, 1인인 경우에는 기본세액의 75%가 과세된다. 그러므로 한 가구에 두 사람 이상의 과세대상자가 거주하면 그 가구는 정상납부, 즉 전액을 부담한다. 이러한 경우 카운슬세는 자산가치를 토대로 세액이 결정된다. 그리고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경우 소유자가 카운슬세의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만, 웨일즈의 경우에는 지방정부의 결정에 따라 25%까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영국 정부가 거주 성인 수를 2인 기준으로 100% 과세하기로 결정한 근거는 각 세대별로 18세 이상의 성인이 2인 거주하는 경우가 영국 전체가구의 약 54%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나) 평가등급의 조정

개별 주택의 평가 가액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다.

- ① 주택의 일부가 파손되어 재산가치가 감소하거나, 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의 변경 또는 주택을 장애자가 사용하는 데 편리하도록 개조한 경우
- ② 주택의 일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하거나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 또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 ③ 주택의 개량 또는 확장으로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매매가 이루어지기 이전까지는 등급의 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재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평가등급의 재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1991년 4월 1일에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평가한다. 납세자는 평가등급의 재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 이의신청 및 근거

평가청의 지역사무소(과세권을 행사하는 카운슬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아님)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제안(proposal)의 형태를 띠게 되며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청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 ① 카운슬세의 납세의무자
- ② 주택의 소유자
- ③ 과세권을 행사하는 지방의회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평가청 지역사무소의 등록공무원과 접촉해야 한다. 지역사무소의 소재지는 카운슬세의 고지서에 명기되어 있다. 등록공무원은 이의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제공해준다. 이의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①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 ② 과세대상 주택에 대한 지위(소유자 또는 임차인)
- ③ 평가등급에 대한 이의 내용과 수정되어야 할 사항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등록공무원이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보다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다시 접촉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청문(hearing)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납세자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등록공무원은 평가등급을 수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카운슬세를 과세한 지방의회에서는 세액을 수정하게 된다. 등록공무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신청 내용의 일부 인용에 불복하는 경우와 이의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법원(Valuation Tribunal)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구제 절차는 단순하고 간단하기 때문에 납세자가 어떠한 종류의 전문가 도움 없이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납세자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전문가를 선임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등록공무원이 이의신청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납세자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평가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라) 가산세

지방의회는 납세자가 법령에 규정한 과세정보 제공을 하지 않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납세자가 가산세 부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우선 카운슬 정부와 이를 상의하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부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평가법원에 바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가산세는 카운슬세와는 달리 평가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판결이 있을 때까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바. 세무행정

가) 카운슬세의 고지

카운슬세는 통상 3월 또는 4월에 고지된다. 고지서에는 납부세액과 산출 근거를 담고 있다. 또 고지서에는 분할 납부 세액과 매회 분할 납부할 세액 및 납부 일자도 기재되어 있다. 보통 분할 납부횟수는 10회이다. 그러나 4월말 이후에 고지되는 경우에는 그보다 줄어든다.

나) 고지 오류의 정정

고지된 세액이 오류가 있다고 생각되면 납세자는 즉시 카운슬 정부에 이를 알려야 한다. 정정된 고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납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 세액 변경

경감 대상이 되거나 다른 세제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면 카운슬 정부는 새로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한다. 이 고지서에는 연중 납부해야 할 세액과 분할 납부해야 할 세액이 기재된다.

라) 납세가 곤란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납세가 곤란한 사정이 발생하면 납세자는 즉시 카운슬 정부에 이를 신고하고 세금 경감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마)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세자가 분할 납부세액을 체납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납부를 최고하는 독촉장을 받게 된다. 납세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납세를 하지 않거나, 두 번째의 독촉을 받고도 납세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혜택을 박탈당하고 연간세액 중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납세 징수 절차를 개시하게 된다.

바) 체납세의 징수

카운슬 정부는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 지방법원(magistrates' court)에 납부명령(liability order)을 신청한다. 지방법원은 납세자에게 체납세와 납부명령 신청에 따른 비용의 납부명령을 검토하고 있음을 납세자에게 통보한다. 지방법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납세자는 법원에 출석하여 납부명령이 집행되지 않아야 한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만약 납세자가 법원에 출석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카운슬 정부 또는 시민 조언국(Citizens Advice Bureau)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사) 납부명령의 효력

법원의 납부명령이 승인되면 카운슬 정부는 체납세 징수 방법의 결정과 관련하여 납세자의 직업, 소득 등의 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카운슬 정부의 이러한 정보 요구권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그것은 납세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주요 체납징수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소득 원천징수 명령(attachment of earnings orders)

카운슬 정부는 체납자의 고용주에 대해 체납자의 급여로부터 소득세, 국민보험료, 체납세 징수비용 1파운드를 공제한 금액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② 소득보조금 공제(deductions from income support)

체납자가 소득보조를 받는 경우 카운슬 정부는 소득보조금의 5%의 비율로 공제할 수 있다.

③ 체납처분(distress)

카운슬 정부는 체납세징수 절차(the levy of distress)를 진행시키기 위해 집행관(bailiff)을 고용할 수 있다. 카운슬 정부는 먼저 체납자에게 서면으로 체납처분 절차를 개시하게 됨을 통보한다. 체납자가 체납처분에 따른 추가 비용을 내지 않고 이 단계에서 체납세를 완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다. 체납자가 체납세를 완납하지 않으면 집행관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 소유권 유지 조건부 약정(walking possession agreement)

- 집행관과 체납자가 체납세 납부 이행에 관한 약정을 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재산을 압류하지 않는다.

□ 소유권 행사 잠정 중지(close possession)

- 체납세가 완납될 때까지 소유권 행사를 잠정 중지시키고 납부 불이행시는 재산을 처분하여 체납세를 징수한다.

□ 재산압류(remove the goods)

-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처분한다.

그 외에도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파산절차(bankruptcy proceedings)에 의하는 방법이 있다.

아) 체납자의 구속

카운슬 정부는 체납자에 대해 위와 같은 수단을 사용하여도 체납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에 체납자의 구속을 청구할 수 있다.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앞서 법원은 체납자의 자산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구속영장은 법원이 체납자가 고의적으로 체납을 했거나 책임을 물을 만한 태만으로 납세의무를 불이행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발부된다. 구속기간은 최장 3개월이다.

자) 가산세의 부과

지방의회는 납세자가 법령에 규정한 과세정보 제공을 하지 않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납세자가 가산세 부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우선 카운슬 정부와 이를 상의하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부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평가법원에 바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가산세는 카운슬세와는 달리 평가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판결이 있을 때까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사. 카운슬세의 성격 및 문제점

카운슬세는 대체로 공평성, 단순용이성, 비용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비교적 양호한 새로운 지방세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동시에 크고 작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 성격

카운슬세는 몇 가지 조세 특성이 복합적으로 가미된 지방세이다. 기본적으로 카운슬세는 재산과세의 성격을 지니면서 소득세적 특성과 인두세적 특성이 복합적으로 가미되어 있다.

첫째, 카운슬세는 종전의 레이트와 마찬가지로 주택의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재산세적인 성격을 지닌다. 그뿐 아니라 카운슬세는 가구세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둘째, 카운슬세는 레이트나 주민부담금제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에 대한 환급제도 등 각종 조세감면장치를 통하여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므로 소득과세적 특성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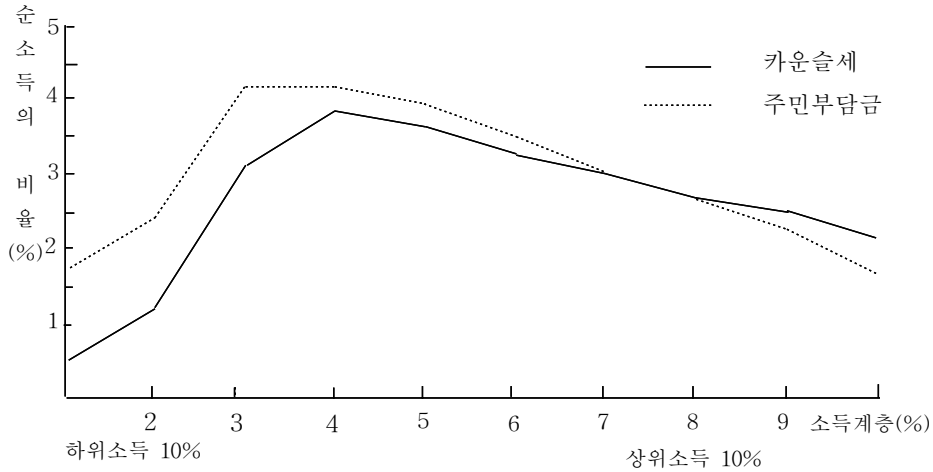
셋째, 카운슬세는 대물과세와 대인과세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대물과세적인 성격은 카운슬세가 주택의 자산가치를 기초로 산출된다는 데서 발견되며, 대인과세적인 성격은 카운슬세가 주택에 거주하는 성인 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데 있다.

넷째, 조세원리면에서 카운슬세는 능력과세원리(ability principle)와 편익과세원리(benefit principle)가 동시에 적용되고 있다.

2) 문제점

카운슬세가 지니는 문제점은 조세의 역진성이다. 카운슬세의 역진도는 주민부담금보다는 낮지만, 특히 상대적으로 고가의 자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구간대가 형성되어서 레이트보다는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림 Ⅲ-1] 카운슬세와 주민부담금의 구조비교(조세감면·혜택포함)



[그림 Ⅲ-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소득 상위 두 계층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순소득에 대한 주민부담이 카운슬세가 주민부담금보다 적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가장 소득이 낮은 30% 계층이 카운슬세가 도입됨으로 인하여 조세부담이 상당히 경감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 이유는 카운슬세를 도입하면서 정책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조세혜택을 종전보다 많이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레이트제도와 마찬가지로 지역간의 조세부담 격차를 크게 줄이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역진성 문제 외에도 카운슬세는 복합과세 특성으로 인한 조세행정상의 문제, 가격대의 구성, 지역별 부담액 격차, 기어효과, 가격대 제도로 인한 중앙정부의 지방세제에 대한 간접적 개입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가격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실상 영국의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해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상·하한을 규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3) 기어효과

주민부담금과 마찬가지로 지방정부의 지출수준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카운슬세에 상당히 큰 부담을 주어야 한다. 그것은 카운슬세가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밑도는 상황에서 지방재정의 지출규모를 약간만 인상시키고자 하더라도 지방세인 카운슬세 부담액을 몇 퍼센트씩 증가시켜야 하는 소위 ‘기어효과(gearing effect)’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어효과는 다양한 행정수요가 존재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자산가치가 낮은 지역에서 주로 크게 나타나 지방재정의 새로운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4) 카운슬세와 지방세 상한제

카운슬세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실시되어온 재정지출 상한제(capping)는 카운슬세 제도의 도입 이후, 종전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군소 자치단체에까지 확대 적용되었다. 지출상한제는 지방재정의 지출을 약 2% 가량 감축시켰고 아울러 지방세 수입을 약 10% 내외 감소시킨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노동당은 지방정부법에서 모든 지방정부에서 적용되는 캡핑(capping)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통제권(New Reserve Power)’ 개념을 도입하였다. 두 제도 모두 지방재정의 남용과 비효율성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책 목적을 지니지만 후자가 통제권한, 통제방식 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지방의 자율성을 다소 인정하는 접근을 취한다.

아. 정책 시사점

카운슬세는 주민부담금제가 지니는 문제점들— 주민에 대한 세금인상, 조세의 역진성, 전통과 국민정서의 무시 등—을 보완하면서 종전의 레이트와 주민부담금제도를 절충시킨 지방세이다. 카운슬세는 기본적으로 재산과세적인 성격을 지니면서도 가구세·인두세·소득세의 성격이 복합적으로 가미되어 여전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영국사회에서 비교적 무난한 지방세로 수용되고 있다. 카운슬세는 도입된 지가 10여년 밖에 되지 않아 아직은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이 많지 않지만 대체로 보아 조세의 공평성, 징세 편의성, 비용 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양호한 지방세로 정착하고 있다.

지금까지 영국의 지방세 제도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영국의 지방세는 전통적으로 레이트 제도를 활용하다가 1990년대에 들면서 잠시 주민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였고 현재는 카운슬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세가 단일세목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지방재정에서 지방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은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재정의 독립성을 잃게 하는 동시에 나아가 영국의 지방자치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재산과세 중심의 지방세제라든가 편익과세 원리와 능력과세 원리의 조화, 그리고 지방세제의 운영·관리면에서 합리성과 효율성은 배울 점이 많이 있지만, 단일세목의 지방세 구조는 자체재원을 확보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영국식의 극단적인 체계를 선택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영국의 지방정부가 지녀온 과세자 주권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다만, 초기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단체에게 과세자 주권을 허용하게 되면 국가적으로나 자치단체들간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둘러싼 환경변화를 고려하면서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시 말해, 단기적으로는 현재 일부 시행되는 탄력세율 제도를 보다 적절히 활용하면서 장기적으로 과세자 주권을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국의 지방세제도의 운영이 보조금제도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점도 우리로서는 배울 바가 많다. 지방재정의 양대 축은 지방세와 보조금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들 두 제도간에 연계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효율적인 지방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진다. 그리고 지방세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평 문제에 대해 보조금제도를 통하여 교정해 나가는 접근도 보다 깊이 연구해 볼 부문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조세제도를 변화시키는 과정에서는 정책 우선순위와 이론적 논리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정서와 배치되거나 사회 다수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경우 그것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2. 사업 레이트(Non-domestic Rate)¹³⁾

가. 서론

영국은 소득과세의 비중이 54.1%, 소비과세 비중이 35.0%인 소비과세를 가미한 소득과세형 국가에 속한다. 그러나 행정계층별 과세구조를 살펴보면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 중앙정부의 경우는 소득과세 : 소비과세 : 재산과세가 48.08 : 42.85 : 9.07로 소비과세와 소득과세가 유사한 비중을 가진 세수구조이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소득과세와 소비과세가 없는 재산과세 중심의 세수구조이다. 영국의 재산과세는 카운슬세(Council Tax Rates)와 사업 레이트(Non-domestic Rates)가 중심이다. 사업 레이트(business rate)로 불리는 사업 레이트는 국가기관인 평가청(VOA: Valuation Office Agency)에서 평가하지만 이에 따라 지방에서 부과·징수한다. 과거에는 국세 형식으로 징수되어 지방에 배분되는 조정재원의 성격이었으나 지방정부 개혁의 일환으로 지방세화되었다. 사업 레이트는 지방정부가 기업으로부터 조달하는 조세이지만 과거에는 지방정부가 직접 지방기업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은 아니었다. 대신 중앙정부가 효율적으로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사업 레이트를 징수했다. 그리고 징수한 세수를 인구수를 기준으로 지방정부별로 배분한다. 두 계층의 지역에서는 각각 그 지역에 배정된 세수를 나눈다. 사실상 사업 레이트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일반보조금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영국의 재산과세의 중심세목은 카운슬세와 사업 레이트이다. 카운슬세의 과세대상은 주택과 해당주택 거주자이며, 사업 레이트의 과세대상은 기업용 자산이다. 세율구조를 살펴보면, 카운슬세는 구간별 차등세율로 되어 있으며, 사업 레이트는 단일세율로 되어 있다.

사업 레이트에 관한 주요 법규정은 지방재정법(1988)에 포함된다. 사업 레이트는 1601년부터 시행해 온 역사가 긴 조세로서, 그에 따라 변호사들의 법률 해석을 원조하는 법적 전례의 논거의 실체를 가지고 수세기에 걸쳐 발달하여 왔다. 사업 레이트는

13) 이 부분은 P. K. Brown and M. A. Hepworth(2002)와 www.businesslink.gov.uk를 주로 참고하였음.

‘부동산’에 대해 지불하는 과세 목적을 가지는 재산점유에 대한 조세이다. 확실한 평가는 어떠한 재산이 부동산으로 선정되는지를 규정하며, 시세를 부담해야 할 점유자가 되는 납세자는 전례에 의해 규정된 확실한 평가에 응해야만 한다.

각 소유지는 보험가격과 완전한 보상의 연간차용을 위해 세를 놓는 재산의 지대라는 ‘시장임대가격(rateable value)’ 조건에 근거한 과세를 위해 평가된다. 과세일은 2010년 과세대상(Rating List)을 위한 2008년 4월 1일의 규칙에 의해 규정된 것에 근거하며, ‘시장임대가격’에 대한 해석은 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생산설비와 기계류의 일정한 항목 또한 평가가 가능하며 그 가격은 또한 세액평가에 반영될 것이다. 과세대상의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Billing Authority의 지역 내의 모든 재산과 관련된 지방평가액 목록이며, 두 번째는 가스·물과 같은 네트워크 유형의 재산의 평가를 포함하는 중앙평가액 목록이다.

재산에 관하여 지불해야 할 지방세 납부자(지방세를 부담해야 할 점유자)의 사실상 총계는 그의 세액 평가에 의해 결정되며 단순비례세율(Uniform Business Rate: UBR)에 의해 증가된다. 단순비례세율은 각 연도마다 의회에서 결정되는 잉글랜드에 적용되는 단일 형태이며, 웨일즈와 스코틀랜드는 분리된다. 공제제도는 한 가지 평가 목록에서의 납세자들의 책임의 변경을 위해 1990년에 단계적으로 도입된 시스템으로, 이러한 변화는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단계적으로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켰다.

현대적인 평가가격이라는 과세근거를 가지기 위해 5년마다 재평가하며, 재평가라는 것은 모든 재산이 ‘선행 평가일(antecedent valuations date)’ 기간의 새로운 과세근거에 따라 재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재평가는 2005년 4월 1일에 이루어 졌으며, 2003년 4월 1일의 가격에 근거한다. 다음 재평가는 2010년 4월 1일부터 유효하다. 과세평가목록의 5년 주기 동안의 실제적인 재산의 변화로 인해 평가가 상향 또는 하향으로 재평가될 수 있다. 변화한 재산의 공정한 과세근거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시장임대가격에 의해 평가되며, 납세의무자는 평가에 대해 이의신청할 권리를 가진다.

나. 납세의무자

사업 레이트는 모든 비주거용 부동산의 ‘세를 부담해야 할 점유자’에 대해 과세하

며, 세를 부담해야 할 점유자는 보통 임대하거나 소유자인 재산의 보유자이다. 즉, 납세의무자는 비주거용 재산의 점유자(occupier)이다. 점유자는 소유자가 사용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자, 임대용 재산인 경우에는 임차인을 말한다. 플랜트, 기계장치, 네트워크 형식으로 된 재산인 가스, 급수, 텔레커뮤니케이션 시설 등도 과세대상이다. 과세근거법은 지방정부재정법(the Local Government Finance Act 1998)이다.

납세고지서는 과세연도의 직전연도 3월에 납세의무자에게 송부되며, 여기에는 납세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수록되어 있다. 대부분의 납세의무자들은 과세연도의 4월부터 10개월간 분할납부를 하고 있다. 그렇지 못한 납세의무자들은 4월과 9월에 세액을 이등분하여 납세하고 있다.

다. 세율 및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토지와 건물의 (순)임대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한 점유가치이다. 사업 레이트의 세율은 단순비례세율(uniform business rate)로서 세율 인상은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비자물가지수를 감안하여 중앙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잉글랜드의 경우 2009~2010년 표준세율은 48.5로, 예를 들어 상업용 자산의 평가된 과세표준 가치(rateable value)가 1만파운드일 경우 감면분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4,850파운드가 부과된다.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감면혜택이 부여된다.

사업 레이트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에서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세액은 5년에 한 번씩 평가하는 시장임대가치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다. 평가청은 사업 레이트의 목적을 위해 모든 재산의 평가가격을 결정할 권한과 책임을 진다.

평가청은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들이 점유하는 재산의 임대 조건을 보고하는 형식을 갖추기 위해 재산의 점유자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형식은 각 장소 내에서 임대가격의 지출수준을 결정하는 평가청 내의 평가자에 의해 분석된다. 소유자가 점유자 또는 임대자인지에 따라 법적 근거에 있어 각 재산평가가 가능하다. 이러한 평가와 분석에 있어서 최종 조정은 컴퓨터에 의해, 개선은 평가자에 의해 수행된다. 평가목록의 초안은 효력이 발생하기 직전연도 12월에 발표되며, 실제 평가목록은 재평가가 이루어진 해의 4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평가청의 평가목록은 다른 요소뿐

만 아니라 재산 점유의 확장, 소멸, 새로운 재산의 생성 등과 같은 변화에 대한 고려도 포함한다. 또한 재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모든 의문이나 항소에 대해 취급할 책임이 있다.

라. 과세평가

1) 평가 원칙

비주거용 레이트는 오직 비주거용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과세에는 두 가지 필수 조건이 적용된다. 첫 번째로, '세를 부담해야 할 점유자'가 있어야만 하며, 두 번째로 '세를 부담해야 할 부동산'이 있어야만 한다. 평가의 원칙은 지방정부재정법(1988)의 부칙 6에 잘 나타나 있다.

주거용 재산 그리고 재산이 없는 경우로 이루어진 즉, 비주거용 부동산이 없는 경우의 평가는 지방의 사업 레이트로부터 면제된다. 해마다 임대료가 기대되는 부동산의 평가는 다음 세 가지의 가정에 따른다.

- ① 임차는 이미 결정된 것을 참고로 하여 착수된다.
- ② 부동산의 정식적인 적당한 수리가 임차 이전에 직접 착수되며, 정당한 주인이 비경제적이라고 여기는 수리에 대해서는 이러한 가정으로부터 제외된다.
- ③ 보유자는 보통의 보유자 레이트, 수리와 보험 비용을 지불할 의무를 지닌다.

주거용, 비주거용 설비를 포함하는 재산(예를 들어 주상복합건물)은 '복합적인 부동산'의 용어로 표현한다. 이 법률이 평가체제의 해석 또는 이행에 있어 지침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평가자에게 안내를 제공하는 중요한 전례를 제공한다. 평가는 다음 가정에 따른다.

- 세입자와 주인은 실제 재산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가정에서 부담가격의 법률적 정의를 파악한다.
- 한편 부담가격의 법률적 정의는, 재산의 임대기간의 변화와 관련한 보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임대를 지속할 가망성이 있다는 가정하에 재산을 일년동안

임대한다는 것을 규정한다.

- 소유지가 비어있고 세를 놓았거나, 즉시 점유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가정을 한다.
- 소유지는 그것이 현존하는 대로 평가되어야만 하며, 구조상의 교체 또는 상이한 형태 그리고 용도의 범주를 파악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2) 평가 주기

지방정부재정법(1988)의 41항은 평가목록이 1990년 4월 1일부터 매 5년마다 개정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재산의 공정하고 정당한 평가를 위해서 '선행평가일(antecedent valuation date)'의 조건하에 각각의 재평가를 위해 조정된 평가일을 규정한다. 따라서 모든 재산은 선행된 평가일에 재평가된다. 평가를 위해 평가청(Valuation Office)은 점유자에게 임대기간 등을 신고토록 하고 있다.

마. 비과세 · 감면대상

잉글랜드의 경우 소규모 기업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소규모 기업감면(small business rate relief)은 과세표준이 1만 5,000파운드(런던의 경우는 2만 1,500파운드) 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부속자산의 과표가 2,200파운드 이하인 경우 비과세대상이 된다. 감면율은 5,000파운드 이하인 경우 50%, 5,000~9,999파운드 구간의 경우는 100파운드당 1%씩으로 과표가 7,500파운드인 경우 감면율은 25%가 된다. 과표가 10,000~14,999파운드 구간에 속하는 경우 소규모기업 경감 레이트 48.1(표준은 48.5)%가 적용된다.

2008년 4월 1일부터 공한지에 대해서는 사업 레이트가 초기 3개월간 면제된다. 공업용지와 창고용지는 추가적인 3개월간 면제혜택이 주어진다. 과표가 15,000파운드 이하인 공한지의 경우 감면혜택은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연장되었다.

지방정부재정법(1988)의 부칙 5에서 사업 레이트로부터의 면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용 토지 : 지방정부재정법(1988) 부칙 5의 1항

면제는 농업용 토지와 건물에 대해 적용되며, 농업용 토지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① 경지, 목초지로 이용되거나 방목장으로 이용되는 토지
- ② 농원 또는 숲, 수요가 있는 덩불의 재배로 이용되는 토지
- ③ 0.1헥타르를 초과하는 토지, 닭·거위·오리 등의 가금농장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토지
- ④ 시장을 상대로 하는 채소밭, 보육장소, 과수원으로 이용되는 토지

농업용 토지에서 다음은 제외된다.

- ① 주차장과 같이 한 주택이 함께 점유하는 토지
- ② 정원(채소밭과는 다름)
- ③ 오락용 장소
- ④ 독점적으로 또는 주로 스포츠 또는 휴양장소로 이용되는 토지
- ⑤ 경주장으로 이용되는 토지

2) 종교적인 예배장소 : 지방정부재정법(1988)의 부칙 5의 11항

일반적으로 교회와 교회의 강당은 사업 레이트에서 면제된다. 그 재산이 잉글랜드, 웨일즈의 교회와는 다른 조직에 의해 점유된다면 종교적인 예배장소로 등록되어야 한다.

3) 장애인을 위해 사용되는 소유지 : 지방정부재정법(1988) 부칙 5의 16항

장애인은 눈, 귀가 멀거나 말을 못하는 사람 또는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 그리고 National Assistance Act(1948)의 29항에서 기술된 병, 상해, 선천적 기형 또는 다른 장애로 영구적으로 곤란을 겪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오로지 다음의 목적에 따라 사용되는 재산에 대해서 면제된다.

- ① 훈련을 위한 설비 또는 장애인이나 병으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이 점유하는 설비
- ②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제공하는 설비
- ③ 장애인(고용)법(1944)의 15항에서 규정하는 설비
- ④ 장애인 (고용)법(1958)의 3항에서 규정하는 작업장 또는 다른 설비

그 외에도 어장, 하수처리장 시설건물, 도선사 협회, 공원, 공습보호장소, 활발한 정박장소, 산업진흥 면세지역, 운하가 통과하는 길, 군대에 의해 점유된 재산, 외교공관(소유권 귀속이 아닌 이용용도에 따른 비과세 제도)에 대해 면제한다.

4) 자선단체

자선단체에 의해 점유된 재산은 부담세액의 최소 80%가 경감되며, 재무성은 자선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과세의 재평가업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자선단체의 과세에 대한 재평가는 1999년 3월에 제정되었다.

5) 농촌지역 상점 및 우체국

지방정부지방세법(1997)의 부칙 1에 규정된 시골상점과 우체국은 세액의 50%가 경감된다.

6) 소유자가 없는 재산

소유자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점유가격의 50%로 제한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창고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 ①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점유자가 없는 상태
- ② 산업용 부동산으로 규정된 상태
- ③ 부담해야 할 가격이 1,900파운드 이하 일 때

그 외에도 공장용지(북아일랜드 15%, 스코틀랜드 50%), 정부청사 등이 감면된다.

바. 이의신청

납세의무자 또는 그들의 대표자들은 부담해야 할 가격에 반하여 항소할 수 있으며, 목록을 변경하기 위한 건의는 다음의 조건에 따른다.

- ① 부동산 목록에서 제시하는 부담세액이 부정확할 때
- ② 목록에 나타나야 할 부동산이 목록에 나타나지 않을 때
- ③ 주거용 재산으로 산정되거나, 사업 레이트로 면제되어야 하나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 ④ 부동산 주소가 틀렸을 때
- ⑤ 부동산에 대한 설명이 틀렸을 때
- ⑥ 부동산에 대한 진술에 있어서 목록으로부터 생략되었을 때

사. 최근 동향 및 정책시사점

사업 레이트에 있어서 개정될 것으로 제안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 영업용 레이트의 도입이다. 지방정부의 외부 통제가 가능하고, 국가적으로 조정되는 단순비례세율(uniform business rate)이 강조된다. 그리하여 정부는 지방정부가 단순비례세율에 추가적으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최대 세액은 단순비례세율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며, 연간 단순비례세율의 1%보다 많이 증가시킬 수 없다.

둘째, 소규모 기업을 위한 추가적 경감이다. 정부는 50%로 강제된 경감이 3,000파운드 미만의 세액을 부담하는 소규모 기업에도 주어질 것을 제안하고 있다. 셋째, 빈번한 재평가에 대한 조정으로 영국 정부는 빈번한 재평가에 대해, 5년마다의 재평가가 여전히 적당한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넷째, 영국 정부는 비거주 레이트의 개편을 준비하면서 또한 자립도 향상(self-financing)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제5편 조세절차법

1. 서론

영국의 조세행정은 전통적으로 내국세입청(Inland Revenue)과 간접세청(Customs and Excise)으로 나뉘어 수행되어 왔으나 2005년 4월 18일부로 통합되어 국세청(HM Revenue and Customs)이 담당하게 되었다. 국민연금과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각종 소비세, 관세를 담당해온 간접세청과 직접세 징수를 담당하는 내국세입청이 통합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세정개혁이 가능하게 되었다. 2004~2005년 기준으로 국세수입 규모는 3,790억파운드에 달한다. 세무조사를 주로 담당하는 기관(Serious Organised Crime Agency)은 집권화되어 있지만 6개 지역청과 각 지역 내에 세 가지 유형의 세무서가 운영되는데 납세지원세무서(TSOs: Taxpayer Service Office), 일반세무서(TDOs: Taxpayer District Office), 그리고 세무조사센터(Tax Enquiry Centres)가 협력하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대기업을 위한 대기업세무서(LBOs: Large Business Offices)가 특화되어 운영되는 것도 특징이다.

본청은 통합되었지만 VAT 세무서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만제도(Isle of Man)에는 별도의 세무서가 설치되어 있다. 2002년 이전까지 긴밀한 세무사전조정이 이루어져 왔으나 이에 대한 최근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1999년 4월 1일부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직원 8천명이 국세청 직원 5만명에 통합되어 정보공동활용 등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세조정관은 신청 건수의 3분의 1을 구제하는 등 활발한 활동성과를 보이고 있다. 2006~2007년의 경우 374건의 민원이 직접세 관련, 13건의 민원이 평가 관련, 89건의 민원이 간접세와 관련하여 제기되었으며 35%의 구제율을 보이고 있다.

2. 조세의 부과

영국의 조세부과와 징수업무는 2005년 4월 18일자로 내국세입청과 간접세청이 통합됨에 따라 국세청(HMRC: HM Revenue & Customs)에서 담당한다. 직접세로 자본이득세,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국민연금기여금을 징수하며 간접세로 소비세, 보험프리미엄세, 석유세, 인지세,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있다.

가. 소득세와 법인세

영국의 소득세는 부과세방식을 채용하고 있지만 과세소득이 있는 개인은 신고서를 제출하여 소득, 공제 및 자본이득의 내역을 세무당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신고는 부과에 있어서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공인회계사는 납세자를 대신하여 신고할 수 있는바 납세자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소득세, 법인세 등의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에 대한 부과와 조사에 있어서도 납세자를 대리할 수 있다.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결산일을 포함한 사업연도 종료후의 1월 1일과 7월 1일 두 번에 나누어 납부하게 된다. 소득세 신고서가 제출되면 담당 세무공무원(Inspector)은 소득에 대한 결정서를 일반적으로 납부일 30일 전에 발급한다. 부과결정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결정서의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0일이 경과하여도 이의신청이 없으면, 징수관(Collector)에게 결정서에 기재된 세액을 징수하도록 결정서를 보내고 징수관은 납부통지서를 발행하게 되면 14일 이내에 납부를 이행하여야 한다.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 세무상의 공정이자율에 의한 이자가 부과된다. 소득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담당 세무공무원은 추계결정서를 발행하며 조사관이 최상이라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세액을 추정하고 이자와 행정벌금을 포함하여 부과한다.

법인세의 경우 조사관은 법인이 과세소득, 공제와 법인세신고 기한이 기재된 신고서(CT200서식)와 관련기간 중 작성한 재무제표의 사본 그리고 세액이 계산된 법인세 신고서(CT203서식)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신고서의 제출일은 일반적으로 회계기간 말일부터 12개월 후와 신고요청서 접수 후 3개월 중 늦은 날로 한다. 수정신고는 이미

신고된 법인세의 수정, 감가상각비나 그룹경감(group relief)에 대한 적용, 그룹경감으로 관리비나 벌금, 감가상각, 무역손실로 처리한 것을 철회 또는 수정 그리고 추가하거나 새로운 처리, 또는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법인세의 환급 또는 세액공제에 대하여 할 수 있다. 수정신고는 수정신고서(서식 CT201)나 다른 형식의 문서(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의 서명이 기재되고 세금이 명백하게 표시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 하여야 한다. 법인세는 회계연도 말부터 9개월 이내(납부일)에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등록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신고서(VAT100서식)를 통상 매분기마다 부가가치세신고센터(VAT Central Unit)에 제출하여야 한다.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매분기말 1개월 이내 신고서와 같이 납부한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신고센터에서 사업자에게 가산금부과통지서(Surcharge Liability Notice) 또는 증가산금부과통지서(Surcharge Liability Notice Extension)를 보낸다. 이는 통지서에 지정한 기한 내에 다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부과하겠다는 경고가 된다. 사업자가 VAT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세무공무원이 최상이라고 판단되는 방법으로 세액을 추정하고 이에 벌과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부과한다.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세무서의 징수부서에 의하여 채무액을 강제징수한다. 과소납부와 과다환급으로 판명된 경우 등에 있어 과소납부액과 과다환급액에 일정한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VAT와 함께 부과한다. 사업자가 VAT환급신고를 한 때에는 일반적으로 VAT신고센터에서 10일 이내 환급을 처리하게 된다. 부정환급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매입세금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조세의 징수

징수세무서는 부과된 세금의 징수(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세금)와 부과행위 없는 세금(원천징수)을 징수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급여소득의 납세방법에는 PAYE와 직접징

수의 두 가지가 있는바 통상적으로 고용주가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PAYE(Pay As You Earn)에 의한다. 조사관의 추계에 의한 부과결정에 따라서 4회로 나누어 예정납부하고, 연도종료 후 신고에 의거한 최종 부과결정액과의 차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방법이 직접징수방법이다. 이 방법의 적용 대상은 통상 고용주가 영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갖지 않는 경우이며 조사관이 허가한 경우에 한하여 채택할 수 있다.

일반적인 체납정리업무는 징수세무서, 회계사업소 그리고 체납처분사업소에서 담당한다. 상속세사무소, 인지세사무소 등에서 부과한 세금은 당해 사무소에서 징수업무를 담당한다. 일반적인 체납은 세무서 징수부문에서 정리하나 세무서에서 정리하기 어려운 파산, 회사정리 등으로 인한 결손처분 등은 채무관리사무소(Debt Management Division)에서 정리한다.

4. 세무조사

공평한 과세와 성실한 납세협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모든 부문에 걸쳐서 조사활동을 하고 있다. 조사활동은 국세청의 책임과 시민의 권리 사이에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조사의 종류에는 기술적 검토(Technical Review), 사찰(Investigation), 그리고 감사(Audit)로 구분된다.

가. 기술적 검토(Technical Review)

기술적 검토는 조사관이 회계장부상의 오류나 세액계산의 오류 등을 서류에 의하여 검토하는 것이다. 회계항목상의 오류 등을 검토하는 기술적인 작업으로 세무서(Tax Office), 유류세사업소(Oil Taxation Office), 국제조세국(International Division), 그리고 대규모 기업군사업소(Large Groups Office)에서 수행한다. 기술적인 검토로 발견된 오류의 정정으로 이익 또는 손실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처리한다.

나. 사찰(Investigation)

이는 탈세나 조세회피의 혐의가 있는 것을 조사하는 것이다. 소득세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의무자(ghost)를 찾아내는 일과 부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자(moonlighters)를 찾아내는 일이다. 한편 특별조사반(Special Investigation Section)의 업무는 주요기업의 세무조사와 기업의 조세회피에 관하여 세무서나 관련 부서에 지도를 담당한다. 아울러 특별조사사업소(Special Compliance Office)는 납세자의 불법행위, 탈세 그리고 조세회피행위를 조사하고 개업 회계사들의 표준적 회계처리를 감시하는 업무도 담당한다. 납세자의 불법행위가 심한 경우에는 본보기를 보이기 위하여 형사처벌을 소추하지만 소수의 큰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조사한 사건의 형사소송 건수는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찰의 성실신고담보 효과는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세수효과를 통해 계량적으로 검증된다.

다. 조사(Audit)

이는 특히 원천징수와 관련된 조사로 PAYE 감사반은 고용주가 계약자의 원천징수 이행의무와 건설업의 특별공제체계를 검토한다. 감사목표의 재설정(New targets for Local and National Audit Groups)을 통해 보다 향상된 PAYE의 감사를 시행하고 있다.

라. 부가가치세 조사

일반적인 VAT 방문조사는 세무서에서 수행하고, 대기업그룹의 통제를 위한 방문조사의 일부는 본청 운영국의 지휘·감독을 받는 24개의 지역사무소(Outfield Division)에서 수행한다. 고의적인 탈세나 심각하고 연속적인 오류 등에 대한 조사는 조사사업소에서 담당한다.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다 자세히 조사하기 위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바 신규등록사업자의 경우에는 3년 이내 방문조사를 실

시하여야 하며, 이 조사를 통해 그 사업자에 대한 앞으로의 조사 방향을 결정한다. 대기업의 조사를 위하여 특별 세무조사요원을 양성하고 있으며 대기업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전문가 수를 증가시키고 대기업그룹들의 통제를 위한 전문가팀을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추가세수를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납세순응의 정도를 높여 조사를 통한 추가세수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5. 가산세

영국은 직접세의 조세절차와 조세쟁송에 대한 법률인 조세관리법(Tax Management Act of 1970)에 관련 규정이 정해져 있다.

가. 개인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금신고에 있어서 소득을 누락시키거나 적게 신고하는지, 혹은 납세해야 할 부분에 대한 신고를 불이행하는지를 직·간접적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대응한다. 세무당국은 대부분의 금전거래의 종류와 그 영향을 철저히 조사한다. 국세청은 또한 사기(fraud)가 의심되는 대규모의 보다 중대한 사안을 다루기 위해 다수의 전문가로 구성된 특수부서가 설치되어 있다. 국세청은 형사절차에 대한 소 제기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가장 중대한 사안들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많은 경우에는 금전거래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금전거래는 보통 지연 납세에 대한 가산세나 이자로 연결된다. 최고의 제재는 미신고 세액의 비율만큼까지도 부과된다. 그러나 국세청은 특별한 사안에 대해 부과된 실질적인 제재에 대해 경감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다. 그 한도에 대해서는 법 위반자의 제안과 이에 대한 국세청의 수용 내지는 불수용에 의해 결정된다. 법 위반자의 임의적인 진술 여부, 그리고 임의적 진술의 성실성 여부, 그리고 국세청의 조사에 대한 협력 여부가 감안된다.

이자의 경우 지연납세에 대한 유효한 이자율을 반영하여 수시로 변경되는 비율에 따라 부과된다. 반대로 이자는 과오납된 세금의 환급에도 적용되지만, 이는 낮은 비율이 적용되고 소득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1996~2007년부터는 이자에 더해, 납세가 기한

보다 28일 이상 지연될 경우 최종세액에 대해 5%의 추징금이 부과되고, 납부가 6개월 이상 지연되면 이는 10%까지 오른다. 국세청과 법 위반자 사이에 금전의 양도가 있거나, 국세청에 의한 제재의 부과가 있는 경우에는 이 추징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세무공무원은 소득에 대해 과세하기 위해서 납세의무자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 지정기간 내에 소득세 또는 자본이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파운드 이하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자동 가산세는 자진 신고납부제도하에서 납세신고의 지연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고, 1월 31일 이후에 제출되면 100파운드, 7월 31일까지 제출되지 않으면 여기에 다시 100파운드가 추가로 부과되며, 이러한 제재는 미지급 세액을 초과할 수 없고,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제출되지 않으면 미납세액에 더해 추가액이 더해진다. 또한 국세청은 납세자가 그의 납세신고 불이행이 지속되면 매일 60파운드의 제재가 부과되도록 소추할 수 있다.

나. 법인

납세자의 사기나 부주의로 납세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혹은 신고의무를 국세청에 고지하지 않은 경우, 벌금이 미납된 세액만큼 의무불이행자에게 부과된다. 국세청은 심판관에게 이 문제가 넘어가지 전에 납세자와 벌금의 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실제 국세청은 법에 규정된 액수보다 적은 제재를 받아들이는 데 다음의 요소를 참고한다. 조사관에게 임의로 불법을 시인하는 경우, 조사시 법 위반에 대해 진술한 경우, 조사에 협력한 경우, 이외에 과실이나 경중 등이 감안된다. 이상의 제재에 더해, 국고수입에 대한 사기나 공모에 대해서는 형사소추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벌금이나 금고형이 선고될 수 있다. 자진신고납부제도하에서 불확실하거나 이론이 있는 관점에 대해서는 충분하고 자세한 설명에 기초한 신고가 필수적이다.

6. 환급가산금

영국의 환급가산금은 직접세의 조세절차와 조세쟁송에 대한 법률인 조세관리법(TMA of 1970)에 규정하고 있다. 세금이 과다납부된 경우에는 환급가산금이 지급되

지만, 과소납부된 경우에 부과되는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이자가 지급된다. 영국에서는 환급가산금에 대한 이자율을 각 세목별로 달리 정하고 있다.

가. 소득세와 자본이득세, 국민연금 기여금

이자율은 세금에 대한 지급기한부터 실제 지급일에 대해 부과된다. 세금의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율은 행정명령에 의해 결정된다. 이자는 기본이자율에 2.5%를 더해 매월 계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금에 대한 초과지급에 대한 이자인 환급가산금도 행정명령에 의해 열거된 이자율로 영국 국세청이 지급하게 되고 세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계산된다. 이 때의 이자율은 $[(\text{은행기본이자율} - 1) \times \text{낮은 세율}/100]$ 로 결정된다. 환급가산금은 분할지급액이 초과되었거나 대차 지불계정이 초과된 경우, 개인을 위하여 부가되어 납부한 세액에 대해 환급하는 경우, 부담금 및 벌금이 이후에 경감된 경우에 가산된다.

나. 법인세

미납부나 초과납부한 법인세에 대한 이자율은 회사가 분기지급체계하에서 법인세를 납부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대기업들은 이러한 체계하에 있기 때문에 이자율은 첫 번째 분할납입금과 법인세가 전형적으로 납입되는 기간 즉, 회계기간 후 9개월 사이의 기간에 대한 시장이자율과 일치하도록 적용해왔다.

이자는 매 분할납입일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계정에서 발생하며 미지급인 경우에는 기준금리 + 1%로, 초과지급인 경우에는 기준금리 - 0.25%로 운영된다. 9개월 이후에는 이자율은 더욱 가산세의 형태가 되어서 미지급에 대해서는 기준금리 + 10.5%로 초과지급의 경우에는 기준금리 - 1%가 된다.

다. 상속세

미지급된 상속세는 양도자에게 이자를 부과한다. 이자는 세금납부 기한일로부터 적

용되고 세율의 변화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초과납부된 경우에도 환급금에 이자가 지급되며 이자는 납부일부터 환급일까지 계산된다. 환급금은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며 과소지급의 경우도 동일하다.

7. 조세범처벌

영국의 조세범처벌에 적용되는 법률은 역시 조세관리법(TMA of 1970)이다. 영국에서의 탈세는 부당한 감면 청구, 은행이자 등 투자소득의 신고누락, 사업자의 부실장부 제출 등이 주요 위반행위로 나타나고 있다. 조세포탈행위는 형법, 보통법(Common Law),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관세법 등에 의해 형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각종 벌과금이 부과된 경우에도 형사상 조세범에 대한 처벌이 병행하여 처벌될 수 있으며 심각한 조세법 위반의 경우 형사소추가 행해지며 이에 따라 구금이나 벌금이 부과된다. 국세청은 형사상 조세범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벌과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대처한다. 국세청이 형사상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증거 채증 등 소송준비에 많은 부담을 가져야 하므로 형사소송은 중대한 조세범에 대한 마지막 단계로 간주하고 있다.

조세범에 대해 형법상 범죄는 허위신고, 절도, 분식회계, 위조, 위의 범죄에 대한 방조·교사·조력한 자들도 본 범과 같이 처벌된다.

가. 소득세

2000년 재정법 제144조에 따라 소득세법상 소득세 포탈죄가 새롭게 조세범으로 신설되었다. 이 규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후부터는 직접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소득세를 허위로 회피하게 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조세범을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규정에 따라 2004년 처음으로 소득세에 대한 조세포탈죄에 대한 기소가 제기되었다. 약식기소의 경우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천파운드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정식기소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이 부과된다.

세액공제법(Tax Credit Act)에 따라 세액공제를 통한 조세포탈죄가 신설되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세액공제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허위행위를 한 경우 범죄로 처벌된다. 정식기소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이 부과되거나 병과된다. 약식기소의 경우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이 부과된다. 그 밖에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허위 제시하거나 파괴하는 경우 조세범으로 형벌을 부과할 수 있으며, 국세청의 수색에 대해 직접 혹은 그 고용자로 하여금 방해하는 경우에도 조세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위반행위의 대부분은 민사상 벌과금에 처해지며, 중대한 허위행위에 의해 조세를 회피하는 경우에만 형사상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 당사자가 직접 혹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회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포탈죄로 보고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조세법에 대한 책임은 세무계산에 대한 책임은닉뿐만 아니라 반환받는 금액에 대한 허위 과잉기재도 포함된다. 이에 대한 형벌은 약식기소와 정식기소에 따라 다른 바 약식기소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위반한 벌금의 3배와 최고 벌금액 중 높은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되며 정식기소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며 병과가 가능하다.

부가가치세 회피 목적을 위해 허위로 문서를 작성, 제공, 송부 또는 그 밖의 행위를 통한 허위행위를 한 경우, 혹은 간접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또는 허위인 사실을 알고도 거짓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본 형사상 조세법에 해당된다. 약식기소의 경우 성문규정상의 최고 금액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미만의 징역에 처하고 정식기소의 경우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지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회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던 경우, 형사상 조세범으로 처벌한다. 약식기소를 통해 제5단계의 벌금(현재 5천파운드)과 회피된 부가가치세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벌금을 부과한다.

국세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거나 제안하거나 그러한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은 약식기소에 의해 5천파운드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체포될 수 있다. 공무원을 방해하거나, 협박 등의 행위를 하거나, 증거수집이나 수색 등의 행위를 방해한 자는 약식기소

의 경우 성문규정상의 벌금이나 3개월 이하의 징역, 정식기소의 경우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다. 요약

영국의 조세법의 유형과 제재를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표 1-1〉 조세법의 유형과 제재

위반행위	제재
허위신고	2년 이하 징역
절도	7년 이하 징역
위조	약식기소: 6개월 이하 징역이나 벌금 정식기소: 10년 이하 징역
소득세 포탈	약식기소: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천파운드 미만 벌금 정식기소: 7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세액공제를 통한 조세포탈	약식기소: 6개월 이하 징역이나 벌금 정식기소: 7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부가가치세 포탈	약식기소: 6개월 이하 징역이나 벌금의 3배와 최고 벌 금액 중 높은 금액 벌금 정식기소: 7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허위문서 제출 또는 허위진술	약식기소: 6개월 이하 징역이나 성문의 최고금액 이하의 벌금 정식기소: 7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조세회피행위의 인지	제5단계의 벌금과 회피된 부가가치세액 중 많은 금 액 벌금
뇌물공여나 수뢰	5천파운드 벌금
공무원의 업무방해	약식기소: 3개월 이하 징역이나 성문규정상의 벌금 (현재 2,500파운드) 정식기소: 2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자료: 김진수 외(2007) 재인용

8. 조세불복

영국의 조세불복제도는 2009년 4월 1일부터 기존의 행정불복 전치주의에 따른 준사법적 기능을 지닌 복수의 심판원(일반, 특별, 간접세, 706조)의 재결과정과 일반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단일심판제도로 변경되었다. 모든 조세사건은 통일적으로 한 곳에서 관장하며, 국세청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심판기관이 담당한다. 행정정의심판원(Administrative Justice and Tribunals Council)에 의해 제1심 조세심판원, 제2심 조세심판원의 재결이 이루어진다.

납세자는 국세청의 과세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제1심 조세심판원에 해당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런던에 설치된 제2심 조세심판원은 영국 전역의 사법권에 영향을 미치는 기록법원(Court of Record)의 성격을 지닌다. 특히 제2심 조세심판원에는 고등법원의 고유권한이던 법리 검토(judiciary review)에 대한 권한이 동일하게 인정되었는바 의무명령, 금지명령, 취소명령, 선언판결, 강제명령 등에 대한 사항을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분야별로 흩어져 있던 여러 심판원들을 하나의 제도로 통합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도모하고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개편되었다. 또한 2009년 4월 심판원의 권한 강화로 심판원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항소법원에 상소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조세법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 김진수 외, 『주요국의 세법령 개정절차』, 한국조세연구원, 2008
_____, 『영국의 조세불복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9
_____, 『주요국의 조세법 처벌제도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7
박정수 외, 『주요국의 국세행정 개혁방안』, 한국조세연구원, 1995
전병목 외, 『외국법인의 자회사와 국내사업장 간의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세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8
한상국 외, 『주요국의 가산세제도 -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한국조세연구
원, 2006

Andy Lymer and Dora Hancock, *Taxation Policy and Practice 2002~2003*, 9th ed., Thomson, 2003

British Tax Review 2005, Sweet and Maxwell Limited, 2005

David Collison and John Tiley, Tiley and Collison, *UK Tax Guide 2006~2007* 24th ed., Tolley, 2006

David Heaton, *British Tax Guide: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2007~2008*, CCH, 2007

Kevin Walton and Andrew Flint, *Tolley's Capital Gains Tax 2007~2008*, Tolley, 2007

Sarah Laing, *Tax Handbook 2005~2006*, CCH, 2005

Stamp Duty & Stamp Duty Reserve Tax Manual, 2008

[http://en.wikipedia.org/wiki/UK tax system](http://en.wikipedia.org/wiki/UK_tax_system)

<http://www.hmrc.gov.uk>

<http://www.businesslink.gov.uk>

〈부록〉 조세관리법(Tax Management Act)¹⁾

Section 17 납세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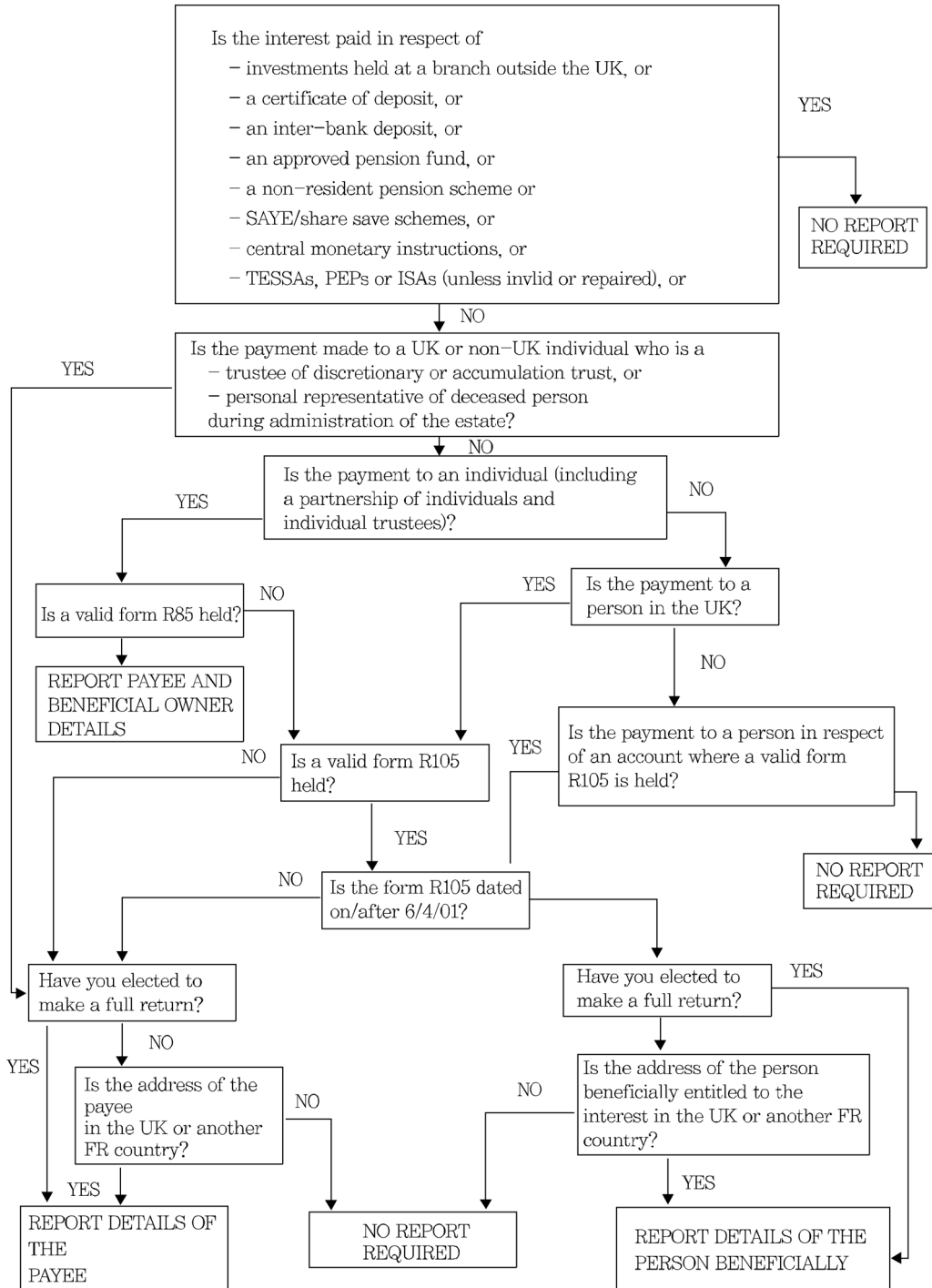
배경(Background)

1. 1970년 조세관리법의 Section 17에서 우리는 지불되거나 대출된 이자의 납세신고를 요구하고 있다. Section 17 규정은 이자가 지불될 수 있는 돈을 받거나 보유할 수 있는 사업의 일반적인 과정에서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다. Section 17은 지불된 이자와 대출된 이자정보와 특정 조세연도에 이자가 지불되거나 대출된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한 정보를 요구한다. 정보는 규정에 명시된 형식 중의 하나로 신고해야 한다(paragraph 11과 paragraph 12 참고).
2. 법 해석과 관련된 지침서는 Section 17 규정에 어떻게 적용될지를 결정한다. Section 17 규정은 이 규정에 해당되는 수취인이 그들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규정을 통하여 ‘이자(interest)’는 건설공제조합에 의해 지불된 배당금도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흐름도(Flowchart)

흐름도는 납세신고가 요구될 때와 어떠한 정보가 신고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1) 정보기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의 발전과 금융상품의 발달 등으로 신고 서식 및 절차 등 조세행정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이를 감안해 2006년 11월 워크숍을 통해 새로운 조세관리법(New Management Act) 개정 초안을 마련하였으나 2007년 3월 21일 정부는 당분간 개정을 유보하기로 결정해 기본적인 행정 원칙은 여전히 TMA1970이 유효하다.



납세신고>Returns

- 누가 납세신고를 해야 하는가?(Who needs to make a return?)

5. Section 17 통지를 받은 모든 사람은 납세신고를 해야만 한다. Section 17 보고는 기탁수취인(deposit-takers)과 건설공제조합(building society)에 한정된다. 또한 때때로 기탁수취인과 건설공제조합은 Section 18 TMA하에 통지를 받을 수도 있다. Section 17하에 신고된 정보가 있으면 Section 18하에서 이자를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6. Section 18 TMA하에서 보고될 수 있는 일정 이자는 Section 17하에 신고되는 것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 영구적인 이자를 담고 있는 몫(PIBS; Permanent Interest Bearing Shares)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는 건설공제조합은 Section 18 TMA하에 이러한 이자를 엄격하게 보고를 해야만 한다. 그러나 Section 17 납세신고와 관련하여 개인들에게 PIBS에 대해 지불된 이자를 포함하고자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
- 지방정부는 엄격하게 Section 18하에 개인들에게 지불되거나 대출된 이자를 보고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들이 Section 17 양식과 지침서를 사용하는 Section 17하에서 신고를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
- 국가저축&투자는 Section 18하에 그들의 생산품이 일부에 지불된 이자를 엄격하게 보고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들이 Section 17 양식과 지침서를 사용하는 Section 17하에서 신고를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

- 납세신고책임의 이양(Deligation of the responsibility to make a return)

7. 당신이 신고를 요구하는 통지서를 받는다면 당신은 제3자가 당신 대신에 기입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은 통지서를 준수할 책임이 여전히 있다.

- 언제 통지서가 발행되는가?(When are notices issue?)

8. 우리는 정기적으로 보고연도 말 이전 2월에 이자로부터 공제된 세금과 투자자들에게 지불된 이자납세신고서를 요구하는 통지서를 발행한다. 그러나 우리는 과세연도 말 이후 3년까지 언제든지 통지서를 발행할 수 있다. 통지서는 구비된 납세신고서를 보낼 장소에 대한 지침서를 포함한다.

- 납세신고를 하는 데에 시간 제약은 없는가?(What is the time limit for making returns?)

9.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탁수취인과 건설공제조합에 의해 제출되는 연차납세신고를 요구한다. 납세신고에 대한 시간제약은 통지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과세연도 통지 말 이후와 관련하여 6월 30일까지 혹은 통지서 발행일 이후 4개월이며, 이 중 어느 것이든지 간에 늦은 일자가 기준이 된다.

10. 예를 들면 2008~2009년도 과세연도라면 우리는 2008년 2월에 통지서를 발행했다면 당신은 우리에게 2008년도 6월 30일까지 납세신고서를 보내야만 한다. 통지서가 만약 2008년도 3월 31일에 발행되었다면 당신은 2008년 7월 31일까지 납세신고서를 보내야만 한다.

납세신고양식(Form of the return)

11. 당신은 온라인을 통해 납세신고를 할 수 있다. 당신은 www.hmrc.gov.uk에서 온라인 납세지침과 서식을 발견할 수 있다.

12. 당신이 서류로써 납세신고를 하고자 한다면 paragraph 11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준수해야만 한다. 우리는 사진 사본은 접수하지 않는다. 우리는 양식에 기입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서를 보낼 것이다.

- 어떤 이자가 납세신고서에 포함되지 말아야 하는가?(What interest should not be included on the return)

13. 다음과 같은 사항에 지불하는 이자는 신고하지 않는다.

- 국외에 있는 영국 사람으로서 계좌(account)가 영국 외부의 주소를 가지고 있고 계좌 보유자가 개인이라기보다는 집단(entity)으로서 기탁수취인과 건설공제회의 장부와 기록부에 적혀 있을 경우 보고할 필요는 없다. 집단은 개인 참여를 포함하지 않는다(배제의 효과는 비거주 기업들이며 다른 비개인들은 보고하지 않아야 한다). 몇몇 경우에 수취인 대신에 수혜자의 내역서가 요구된다. R105 양식으로 2001년 4월 6일이나 그 이후에 납세신고서가 접수된다면 paragraph 40과 paragraph 41을 참조하라.
- 중앙금융기관과 국제조직(Section 324 지침에 규정됨)
- 적립증명서(양도증서를 포함하여)
- ISAs(paragraph 14 참조)
- PEPs(paragraph 14 참조)
- TESSAs(paragraph 14 참조)
- 은행간(building Society를 포함하여) 적립금(중개업자를 통한 적립을 포함하여)(이러한 배제에는 기탁수취인이거나 building Society가 적립금을 소유함으로써 중개업자에게 이자를 지불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중개업자를 통해 예치되는 모든 적립금을 배제할 수 없다.
- 영국 외부에 위치한 지소(branch)에서 이루어지는 투자
- 소득공제 기법(SAYE/Share Save Schemes)
- 승인된 연금 기법(paragraph 60 참조)
- 비거주자 연금 기법
- syndicate 대부 이자(loan interest)

BISAs, PEPs and TESSAs

당신은 지불되거나 대출된 이자를 법적 효력이 없는 ISA 혹은 PEP 혹은 TESSA에 보고하거나 최근에 수정된 ISA에게 보고해야만 한다. ISA가 수정되거나 당신이 우리에게 납세신고서를 보내기 이전에는 ISA/PEP/TESSA가 무효인 것으로 밝혀진다면 당신은 납세보고서에 대한 정확한 상태(position)를 보여야만 한다. 그러나 당신이 이미 우리에게 납세보고서를 보냈다면 당신은 우리에게 더 이상 납세보고서를 보낼 필요가 없으나 당신은 청구시 우리에게 생산에 대한 조정(adjustment)의 세부사항을 기록해야만 한다.

- 어떠한 정보가 신고되어야 하는가?(What Information must be return?)

15. 납세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지불되거나 대출된 이자를 소유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 혜택을 받는 소유자의 세부사항은 수취인 대신에 혹은 이외에 요구된다.
- 세금공제 이전에 지불된 이자의 금액. 해외원천과세가 공제된다면 당신은 해외 원천과세의 공제 이후의 금액을 보고하거나 당신이 지속적으로 보고한다는 조건하에 공제되기 이전의 총금액을 보고할 수 있다.
- 공제된 영국조세
- 공동예금계좌(joint account)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와 관련 당사자 수
- 출생일과 계좌에 관련하여 제공되는 수취인의 국가보험번호(R85 양식이 있는 paragraph 37 참조)
- 분류코드나 지점을 포함한 계좌번호
- 최초로 지불되어 오고 있는 이자에 관한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 외화를 나타내는 SWIFT 표준코드를 지닌 영국 화폐 이상으로 현금으로 지불되거나 신고됨을 보여주는 지표

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6. 법에 근거하여 당신은 Section 17에 명시된 정보를 제공해야만 한다. 정보는 정보보호법 Section 35(1)에 의거하여 1998년 정보공개법의 비공개규정으로부터 면제된다. 그러나 이러한 면제는 공지(notice)에 구체화된 정보와 정보보호법의 책임성을 이행할 경우에 국한된다. 공지에 구체화되지 않은 어떠한 정보도 요구할 수 없다.

완전히 신고의무가 있는 국가(Fully Reportable countries)

- 영국에 있는 투자자와 FR국가에서의 투자자의 납세신고의 제한(Restricting returns to investors in the UK and FR Country)

17. 우리가 발표한 표준 공지는 당신이 영국 주소를 지닌 모든 투자자와 FR(fully Reportable) 국가에 보고할 수 있는 주소를 지닌 개인적 투자자에게 보고해야만 하는 거래를 제한한다. 그러나 주소와 관련 없이 모든 개인에 대한 관련 거래를 보고할 때는 paragraph 19에서 21까지를 또한 참조하라.

18. FR국가의 리스트는 <부록>에 있다. 우리는 FR국가의 리스트에 대한 변화에 대해 6개월 통지를 부여할 것이다.

- 주소와 관련 없이 모든 개인들에게 보고하는 것(Reporting for all individuals, regardless of address)

19. 영국과 다른 'fully reportable' 국가 어떤 경우에 있어(특히 컴퓨터에 의해 발생하는 보고서가 있는 곳) 개인의 보고를 제한하는 것은 불균형적으로 많은 비용이 드는 작업일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의무의 보고를 제한하는 비용에 대해 균형을 맞춘 이후에 당신은 표준 공지에 의해 요구되는 보고서를 제한하는 것이

불균형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게 될 것이며, 당신은 영국과 다른 'Fully Reportable' 국가에서의 개인들에 대한 관련거래를 보고하도록 하는 표준통지서가 발행된 이후 3개월 이내에 회계기관에 paragraph 11에 있는 주소를 알려야만 한다.

그런 이후에 우리는 주소와 관련 없이 모든 개인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보고할 수 있는 통지서를 발행할 수 있다. 그러한 통지서는 보고연도 동안 발행된 이전 통지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여전히 우리에게 초기 통지서에 명시된 일자까지 납세신고서를 보내야 한다(paragraph 9 and 10).

20. 'Full' 보고는 그 해와 다음 해에 적용될 것이다. 우리는 당신에게 주소와 관련 없이 모든 개인에게 관련된 거래를 보고하는 데 요구되는 통지서를 보낼 것이다. 예를 들면 2009년 2월에 당신이 영국에서 개인들과 2008~2009년 'fully reportable' 국가와 관련된 거래를 보고하는 통지서를 받는다면 당신은 우리 회계기관에 당신이 그 해 의문시되는 보고가 2008년~2009년과 모든 차기 연도에도 완벽히 납세신고를 할 의도가 있음을 말해야만 할 것이다.

21. 이러한 협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당신은 정확한 통지를 수령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야만 한다. 당신이 표준화된 통지를 수령했다는 완벽한 보고를 했다면, 당신은 1998년 정보보호법을 근거로 당신의 책임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paragraph 16).

22. (해당되는 내용 없음)

- 개인이 아닌 사단법인이나 자연인에게 신고하는 것(Reporting on persons and bodies of persons other than individually)

23. 당신이 표준통지서나(paragraph 17) 혹은 주소와 관련없이(paragraphs 19~21) 모든 개인에게 신고할 필수요건을 포함한 통지서를 수령하든지 여부에 상관

없이 당신은 영국 외부에 신고할 만한 주소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개인의 파트너십 이외에 사단법인이나 자연인에게 신고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당신이 비거주자 회사에게 신고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

마그네틱 매체를 통한 신고(Report on magnetic media)

24. 당신은 단지 테이프나 온라인으로도 보고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 분리된 테이프나 디스크는 각각 신고의무가 있는 국가로 전송될 수 있다.

주소(Address)

25. 당신이 신고하는 주소는 정상적으로 기탁수취인(deposit-takers)과 building society에 의해 사용되는 수취인의 통신주소일 것이다. 혹은 당신은 이자가 지불되는 사람의 주소를 가지고 있다면 그 주소로 신고할 수 있다.

26. 이것은 이자가 신고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당신이 러시아 투자자인 경우에 프랑스(완전히 납세신고국가)에서의 통신주소를 보유하고 있다면, 당신이 완전한 납세 신고국이 아닌 러시아에서 투자자의 주소를 보유하고 있다면 당신은 투자자 계좌의 세부사항을 신고할 필요가 없다.

유사하게 당신은 프랑스 회사에 정상적으로 이자를 신고할 수 없으나 당신이 그 회사의 영국 통신주소만을 소유하고 있다면 보고해야만 한다.

그러나 감사시 당신이 납세신고될 수 있는 주소가 지불되었거나 대출되었던 사람의 주소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만 한다.

주소변경(Changes of address)

27. 일반적으로, 납세보고서에 포함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에 관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것은 과세연도 4월 5일의 개인의 주소이다(paragraph 29 참조). 투자자가 그날에 보고할 수 있는 주소를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납세보고서에 포함되어야만 한다.

28. 당신의 시스템이 우리가 수용할 대출이거나 이자 지불일에 이용 가능한 정보에 근거한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구축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불의 포함이거나 배제가 감사시 질문된다면 당신은 왜 그러한 지불이 납세보고서에 포함되었는지 혹은 포함되지 않았는지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한다.

계좌의 폐쇄(Closure of accounts)

29. 몇 년 동안 계좌가 폐쇄되었고 폐쇄된 날짜로 신고할 수 있는 주소가 있다면 당신은 지불된 이자를 신고해야만 한다. 혹은 당신이 당신의 시스템에 최근의 주소를 보유하고 있다면 신고의 기초(basis)로서 사용될 수 있다(혹은 최근의 주소가 NFR국가에 해당된다면 신고대상이 아님).

우편함 주소(P.O. Box address)

30. 우편함 주소는 통신주소이거나 수취인 주소로서 신고될 수 있다. 그러나 우편함 주소는 국가에 대한 거주자 주소가 불명확한 경우 주요한 거주자 주소로서 신고될 수 있다. 기탁수취인(deposit-takers)과 building society는 우편함 주소가 국가 기준인지를 점검해야 한다. 점검기록은 감사 목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31. 당신은 투자자로부터 우편함 주소가 그들의 거주 주소이고 국가 전반 혹은 국가의 부분적 기준이라는, 예를 들어 그러한 국가의 다른 투자자와의 거래로부터 당신이 정반대되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확신을 받을 수 있다. 당신은 우편함 주소가 주요한 거주 주소로 신고될 수 있고 감사 목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사례에서 확신을 구해야만 한다.

32. 2006년 4월 6일 혹은 이후에 만들어진 R105 신고서에는 투자자의 주요 거주 주소를 포함해야만 한다. BFPO 혹은 C/o 주소는 투자자의 주요한 거주자 주소로서 서식 R105에서 나타난 모든 경우에 의문시 되어야만 한다. 기탁수취인(deposit-takers)과 building society가 거주자의 주된 주소라는 것을 투자자로부터 확신을 추구해야만 하고 그러한 확신은 감사 목적으로 유지되어야만 한다.

‘Hold Mail’ address

33. 2006년 4월 5일 이전에 개설된 계좌에 있어 ‘Hold Mail’ 은 그것이 기탁수취인(deposit-takers)과 building society에 의한 시스템에서 의해 보유된 주소라면 납세신고될 수 있다. 그러나 2006년 4월 6일 이후에 개설된 계좌의 경우, 우리는 ‘Hold Mail’ 을 받아들일 수 없고 당신은 완벽한 주소(full address)로 신고해야만 한다. ‘Hold Mail’ 지침이 없다면 주소 통신지로 보내질 것이다. 유일한 예외는 2006년 4월 6일 이전 R105 유효한 서식이 주어지고(paragraph 39 참조) 환경이 변화지 않은 기존의 NOR 투자자에 의해 개설된 추가 계정이다. 그러한 경우에 있어 우리는 ‘Hold Mail’ 주소를 받아들일 것이다.

예를 들어 주소가 ‘Hold Mail c/o XYZ Bank Sheffield branch’ 라면 이것은 납세신고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주소가 예를 들어 ‘Hold mail c/o XYZ Bank Dubai branch’ 로서 NFR국가 내에 있는 것이라면 이러한 것은 공지서가 paragraph 19하에 주어진 곳을 제외하고 납세신고할 필요가 없다.

미상의 소재(Whereabouts unknown)

34. 당신이 이전에 발생한 이지지불을 보고한다면 수취인은 과거에 알려진 주소에 근거해서 미상의 소재지로 신고하라. 당신이 투자자가 소재지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지를 지불할 수 없다면 신고대상이 아니다. 당신이 순차적으로 투자자의 새로운 주소를 발견하여 주요한 이지를 지불한다면 당신은 지불이 이루어

어진 연도와 새로운 주소지에 대한 지불을 신고해야만 한다.

35. 당신의 시스템이 이자가 지불된 날에 의해 신고한다면 당신이 지불한 이자를 신고할 수 있을 것이다(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 사용). 그리고 이러한 사례가 극소수이며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어울리지 않게 값비싸게 될 경우 발생된다.
36. 당신이 소재 미상인 누군가를 대신해서 받은 이자를 신고한다면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지에 근거해서 신고해야만 한다.

R85 사례(R85 cases)

37. 계좌가 R85에 의해서 조치된 과세 없는 이자를 받기 위해 등록될 경우, 혜택을 받는 소유자의 세부사항이 다르다면 당신은 수취인의 세부사항(paragraph 15 참조) 이외에 혜택을 받는 소유자의 세부사항을 신고해야만 한다.

당신은 혜택을 받는 소유자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사항을 신고해야만 한다.

- 성명과 우편번호를 포함한 영구 거주 주소
- 출생일
- 제공된 NINO

당신은 또한 지표(indicators)를 신고해야만 한다.

- 수혜자는 R85의 양식을 사용하는 낮은 세율(LRT)의 공제 없는 이자의 지불을 위해 등록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표는 다른 이유로서 LPT의 공제 없이 지불된 이자가 있는 곳에서는 사용되지 말아야 한다.
- 공동예금계좌(joint account)와 계좌와 관련된 당사자 수를 확인해야 한다.
- 이자는 예를 들어 부분적 등록이 있는 곳에서 LRT 공제 이후에 부분적으로 지불

되고 LRT 공제 없이 부분적으로 지불된다.

- 처음으로 지불된 이자와 관련된 계좌를 확인하는 것
- 외화를 의미하는 SWIFT 표준코드를 지닌 영국화폐가 아닌 다른 현금으로 지불되거나 신고된 이자를 확인하는 것

R105 사례(R105 cases)

38. R105 양식에 근거한 신고는 투자자가 영국에서 주로 거주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 NOR(Not Ordinarily Resident)는 기탁수취인(deposit-takers)과 building society에게 조세공제 없이 이자를 지불하는 권한을 부여한다(그것은 투자자가 NOR이 되는 것을 중지되도록 은행이나 building society에게 공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1년 4월 6일부터 양식(form)에는 이자와 관련하여 수혜를 받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포함해야만 한다.

Declaration on form R105 received on or before 5 April 2001(2001년 4월 5일이거나 이전에 접수된 R105 양식서의 신고)

39. R105 양식에 근거한 신고가 2001년 4월 5일 혹은 이전에 접수된다면, 당신은 paragraph 15에서 기술된 정보를 신고해야만 한다. 그러나 R105 양식에 근거한 신고가 이자를 부여받은 수혜자들의 주요 거주 주소를 포함한다면 당신은 수취인의 세부사항 대신에 주소의 세부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Declaration on form R105 received on or after 6 April 2006(2006년 4월 6일이거나 이후에 접수된 R105 양식서의 신고)

40. R105 양식에 근거한 2006년 4월 6일 혹은 이후에 접수된다면 신고서는,

- 수취인 대신에 이자를 수혜를 부여받은 사람의 성명과 주요 거주 주소(paragraph

41)가 명시되어야 한다.

- 2006년 4월 6일 혹은 이후에 접수된 R105 양식에 의해서 전체 이자가 지불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를 포함해야 한다.

41. 당신이 납세신고를 해야만 하는 주요 거주 주소는 다음 중의 하나이다.

- R105 양식에 나타난 주소 (당신은 R105가 유효하게 남아 있는 한 이 주소로 신고할 수 있다-당신은 아래의 대안 중의 하나를 보고할 필요가 없다) 혹은
- 총지불이 R105 양식에 의해 이루어지는 2차연도 혹은 다음 연도에 있어 최근에 주요 거주자 주소로 알려진 주소
- 총지불이 R105 양식에 의해 이루어지는 4차연도 혹은 다음 연도에 있어 통신주소가 당신의 시스템상에서 보유된다. 당신이 하나 이상의 통신주소를 가진다면 정상적인 주소로 사용하는 주소로 신고하라.

당신에게 있어서 의무는 납세 신고한 주소가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중 하나라는 것을 점검하는 것으로 국한된다.

추가 계정(Additional account)

42. 2006년 4월 5일 혹은 이전에 행해진 신고는 일반적으로 2006년 4월 6일 혹은 이후에 개설된 계좌를 포함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자문할 때까지 추가 계정이 당신과 함께 이미 하나 이상의 계좌를 가진 NOR 투자자에 의해 개설된다. 그리고 당신은 R105 유효한 양식의 권한에 공제된 과세 없는 계좌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는 것이다. R105 새로운 양식은 다음 사항을 만족한다면 요구되지 않는다.

(i) 당신이 다음과 같은 사실에 충족된다면

- 새로운 계좌가 기존의 소유자와 수혜를 받는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 기존의 NOR 신고가 유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투자자의 환경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
 - (ii) 새로운 계좌에 R105 양식으로 초창기 NOR 선서로부터 감사 흔적이 남도록 NOR 감독관과 교차평가(cross-reference)에 의한 결정이 기록된다. NOR 감독관이 신고한 것을 알 수 없다면 기존의 신고가 기록된 것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43. 2006년 4월 6일 혹은 이후의 계좌가 R105 양식에 의해 총지불이 기록된다면 동일한 투자자가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고 새로운 신고를 해야만 한다. 그러나 paragraph 42(i) & (ii)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당신은 새로운 계좌를 기존의 신고를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다룰 수 있다.

파트너십(Partnerships)

파트너십과 공동 계좌(Partnerships and joint accounts)

44. 파트너 중의 하나 또는 그 이상 혹은 공동 소유자가 즉 영국에서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또 다른 완전히 보고할 수 있는 국가에서 주소를 가진 개인이 신고할 수 있으면 파트너십으로 신고될 수 있다(paragraphs 17 and 18).
45. 파트너나 공동소유자가 단 한 사람이거나 두 사람이라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 계좌의 이름과 보유 직책의 이름으로서의 '고객 이름'
 - '참여자'로서 신고할 수 있는 파트너의 이름
 - 알려진 참여자의 총수로서 신고할 수 없는 사람을 포함한 파트너나 공동 소유자의 총수

46. 둘 이상의 파트너나 공동소유자가 보고된다면, 그 신고는 아래와 같이 제한된다.

- 계좌 이름이나 소유 타이틀을 가진 ‘고객 성명’
- 처음의 두 파트너나 공동소유자를 ‘협력자(participants)’ 로 보고하라.
- 신고되지 않은 모든 사람을 포함하여 ‘협력자의 수(Number of participants)’ 로 신고하라.

47. 파트너나 공동소유자가 같은 주소로 등록되어 있으면 한 번 신고하지만, 다른 주소이면 두 개의 다른 신고서를 만들어야 한다.

48. 영국 주소를 가진 투자회사나 다른 FR국가의 개인 투자자(Paragraph 17, 18 참조)로 Section 17에서는 이자(return 분배)에 개의치 않고 제한된다. 여기서 총지급된(paid)/수급해야 할(received) 이자율을 계산하라.

전문가적 파트너십(Professional partnerships)

49. 법률회계회사와 같은 ‘전문가 파트너십’ 을 위해서는 단순이득(a single return) 반환은 파트너십 이름으로 만들 수 있다.

50. 이러한 목적에서 독립체(independent body)가 ‘전문가 파트너십’ 을 제한한다 (혹은 영국에 설립된 회사도 제약을 받을 것이다).

외환 계좌(Foreign Currency Accounts)

51.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Foreign Currency Account에 지급된 이자를 신고할 수 있다.

- The currency the account(외환 통화계좌)를 제한하라. 즉, 수익(the return)은

그것이 foreign currency account와 현금거래를 위한 SWIFT 코드를 보여주는 지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SWIFT 코드는 Appendix 4 참조).

- 파운드화로 보고하라. 외환은 우리에게 지급을 위해 파운드화로 전환된 세율(Tax rate)을 반영하는 파운드화로 전환되어야 한다. 혹은 매일의 이자율(the rate in force at the date)로 지급하거나 일정기간율(a period end rate)로 하든 반드시 다른 방법이 지속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예치금의 시간 제한(Qualifying Time Deposits; QTDs)

52. QTDs의 이자는 세금감면 없이 지불된다. 투자자가 합법적 R105 양식을 제출하고, 이자율(the interest)을 배당금(the return)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한다면, 2006~2007년을 포함한 최근까지 QTDs 이자율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2006~2007년 이후에는 모든 영국 주소를 가진 투자회사에 지급될 이자율은 Section 17 returns를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FR국가에 주소를 가진 개인 투자자(만약 모든 non-UK 개인투자자들이 신고되지 않았다면, 19~20 Paragraph를 참고)도 반드시 Section 17 returns에 포함해야 한다.

지정된 고객 계좌(Designated client accounts)

53. Paragraph 15에 따라서 일반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LRT의 세금감면 없는 이자의 보상을 위해 등록된 수익권 소유자에 대해서는 Paragraphs 37, 40 그리고 41에 따라 추가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만약 계좌(the account)가 고객의 반 이상이 전문투자회사로 이루어졌다면, 상세한 사항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

신탁자에 대한 보고(Reporting on Trusts)

54. 수익이 수탁자(Trustee)에게 지불된다면, 수탁자(Trustee)는 수취인(payee)의

배당 상세사항을 보고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 만약 그 계좌가 총이윤의 지불을 위한 것이라면 위의 paragraph 37의 R85 양식을 사용하여 등록하라.
- 만약 이익에 대해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개인투자자들이 없다면, UK나 FR 국가들의 이익관계자는 2001년 4월 6일 이후에는 R105나 R105DAT 양식을 사용한 이익 배당 상세사항 정보를 받을 것이다.

55. 때때로 행렬 수탁자(possession Trust)의 이익이나 Life Interest Trust(생명보험)에서의 수익과 수탁자(Bare Trust)의 이익은 그 이자가 직접적으로 배당되는데, 그러한 이익을 보고해야 하고 수취인은 보고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56. 자유재량 신탁과 저축성 신탁에 의해 만들어진 분배는 '이자'가 없고, 보고할 필요도 없다.

사망한 투자자(Deceased Investors)

57. 사망한 사람이 신고자였다면 과세연도의 시작과 사망의 기간 사이에 사망한 사람에게 지불된 이자는 성명과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신고되어야 한다.

58. 유언집행인에게 지불된 이자는 신고해야 하는 유언집행인이 한 두 사람이라면 지불자(수혜자)에 의해 신고된다. 이것은 기탁수취인(deposit-taker)으로서 은행은 집행가로서 은행에 의해 보유된 계좌의 이자를 지불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한 사람 이상의 집행인이 있다면 공동소유자와 전문가 파트너십을 신고하는 규정이 적용된다(paragraph 44~50). 집행인의 전 기간 동안 지불된(혹은 받은) 이자는 신고될 수 있다.

59. 유언집행인은 그렇게 행하도록 통지서를 받는다면 Section 17로 신고할 필요가 있다. Section 17 통지가 단지 기탁수취인(deposit-taker)과 building society에게 발행되기 때문에 Section 17의 납세신고는 은행이 유언집행인으로서 활동하도록 요구된다.

유언집행인은 자신이 영국에서 주소를 지닌 수혜자 혹은 또다른 FR국가에서 주소를 가진 개인 수혜자들에게 배당된 자산이 있다면 지불되거나 받은 이자를 신고할 필요가 있다(paragraphs 17과 18). 자산이 배분된 날로부터 지불된 이자만 신고된다.

자산이 배분된 날로부터 지불되거나 받은 이자만이 유언집행인에 의해 신고된다.

연금계획(Pension Schemes)

60. 당신은 우리가 승인한 SIPP 혹은 SSAS를 포함한 연금계획의 수탁자를 대신해서 지불되거나 받은 이자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
61. 당신은 비거주자 연금계획의 수탁자를 대신해서 지불되거나 받은 이자를 보고할 필요가 없다.

감사(Audit)

배경(Background)

62. 2006년 4월 6일 혹은 이후에 지불된 이자의 경우 더 이상 기탁수취인과 building society가 외부감사자에 의해 수행된 NOR 계정에 '이자에 관한 조세공제계획'(TDSI)을 가지도록 선택할 법적인 권한이 없다.

새로운 협약(New arrangement)

63. 당신의 신고가 영국에 주소를 둔 투자자들이거나 FR국가(paragraph 17과 18 참조)로 제한한다면 우리는 당신이 6개월 통지를 조건으로 완전한 정보 보고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만족시켜야만 한다.
64. 따라서 협약에 의해 우리는 당신 자신의 비용으로 TDSI와 Section 17의 NFR 회계 감사를 수행한다면 당신에게 독립적 감사인을 임명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은 당신이 모든 사례의 납세신고를 하지 않으려고 선택하는 곳에서 단지 존재한다. 모든 개인이 완전한 신고를 한다면 국세청은 모든 측면에서 감사를 할 것이다.
65. 독립감사인은
- NFR 계정이 올바르게 분류되었는지를 입증해야만 한다.
 - 6개월 통지를 조건으로 미래연도에 모든 계정에 대해 보고하는 것을 준수하는 데 있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신을 제공해야만 한다.
 - NFR 계정과 관련해 TDSI의 운영을 감사해야 한다.
66. 독립적인 감사 보고서는 TDSI와 Section 17 감사의 통합적인 부분으로 될 것이다. 이 보고서는 기탁수취인(deposit-taker)과 building society의 감사를 수행했던 경험이 있는 1989년 회사법에 등록된 감사인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67. 당신이 이러한 협약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당신은 문서로 알려야만 한다 (paragraph 11에 있는 주소 참조). 그러한 문서는 검토를 수행하기 위한 감사인의 세부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당신은 언제든지 적용할 수 있다. 우리는 영수(receipt)의 30일 이내의 요청

을 인정할 수 있다.

68. 첫 번째 회계기간은 2006년 4월 6일부터 시작된다. 독립적인 감사인의 관점의 결과물은 우리의 감사보고서의 일부를 형성할 것이기 때문에 업무 마감의 21일 이내에 감사기관에 보내져야만 한다. 이 보고서는 정상적으로 감사 마감일 28일 이내에 기관(institution)에 발행되어야 한다.
69. NFR계정과 관련하여 TDSI를 운영하는 독립적인 감사인의 관점의 결과는 감사 완료 후 90내에 감사기관에 보내야 한다. 그런 이후에 FR NOR의 감사인의 관점이 기관(institution)에 보내질 것이다.

표본추출(Sampling)

70. 독립 감사관은 NFR NOR 보고서의 근거가 확실한 NOR 신고서에 의한 표본추출 방법으로 조사할 것이다. 표본추출방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95%의 신뢰 수준을 사용한다. 각각의 사례로 활동하는 국세청과 독립감사관을 지닌 전체 NOR 모집단에서 표본이 추출되거나 보고할 수 있고 보고할 수 없는 사례로부터 통계적으로 유의한 독립적인 두 가지 샘플로부터 추출된다.
71. 독립 감사관은 기탁수취인(deposit-taker)에게 있어 어떤 기탁(deposit)이 적절한 기탁이 되거나 building society에 있어 투자는 총지불로 적당하지 않다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알 수 있다면 기탁수취인(deposit-taker) 혹은 building society는 기탁이 적절한 기탁이 아니거나 투자가 총지불에 적합한 것이라는 것을 점검할 수 있다.
72. 독립 감사관은 또한 작은 표본을 사용하여 기탁수취인(deposit-taker)과 building society가 정확하게 모든 다른 NFR 계좌의 측면에서 TDSI를 정확하게 운영하는지를 조사할 것이다.

결과(Results)

73. NFR과 FR 검토 결과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독립적 감사관이 더 검토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거나 우리 자신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74. 감사관이 통계적으로 유효한 샘플을 사용하는 곳에서 오차의 수가 통계적으로 많이 존재할 경우, 표본의 결과는 외삽법으로 추정될 것이고 우리는 기탁수취인(deposit-taker)과 building society로부터 보완점을 찾을 것이다.

절차의 검토(Review of procedures)

75. 기탁수취인(deposit-taker)과 building society가 FR과 NFR 계좌인 양자를 소유하고 있다면 국세청은 정상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의 계좌의 제도상의 운영과 관련한 절차를 검토할 것이다. 이것은 높은 수준의 검토일 것이고 개인적 사례로 보는 것으로 관련되지 않을 것이다. 국세청 감사관은 절차에 대한 유보권과 절차가 적용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 그는 독립 감사관에게 절차가 어떻게 NFR 계좌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NFR 계좌가 없다면 이러한 검토는 독립 감사관에 의해 수행될 것이다.
76. NFR 계좌가 있고 독립 감사관이 임명될 경우 그들은 당신이 미래연도(6개월 공지를 조건으로)에 대한 완전한 정보 보고를 충족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국 국세청은 미래연도에 기탁수취인(deposit-taker)과 building society에 의한 완전한 보고를 요구하는 우리의 의도를 통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77. FR 계좌에 있어 우리는 Section 17 신고로부터 68% 신뢰 수준을 사용할 것이고 장부의 정보와 신고된 정보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신의 장부를 점검할 것이다. 우리는 납세신고할 만한 모집단으로부터 68%의 신뢰 수준을 사용한

통계 샘플을 가질 것이며 Section 17 신고에 나타난 정보를 보장하기 위해 점검할 것이다.

벌금(Penalties)

78. 신고를 하도록 통지를 받은 기탁수취인(deposit-taker)과 building society는 최대한 300파운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신고의무가 남아 있는 경우 초창기 벌금부과 이후에 매일 최대한 60파운드 이상의 추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79. 기탁수취인(deposit-taker)과 building society가 부정하거나 태만하게 Section 17하에 부정확한 납세신고를 한다면 그들은 3,000파운드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것이다.

안내방문(Help visit)

80. 기탁수취인(deposit-taker)과 building society는 특히 이전의 납세신고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paragraph 11에 있는 주소로 우리에게 연락함으로써 안내방문을 요구할 수 있다.

Section 18 신고지침규정(Report Guiding Notes)

배경(background)

1. 국세청은 특정 과세연도 동안 이자를 지불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이자를 받는 누구에게나 1970년 조세관리법(Taxes Management Act)의 Section 18하에서 통지를 발행할 수 있다. Section 18의 통지는 이자를 지불하거나 지불받는 것의 상세한 설명과, 감면된 세금과 지불되는 이자 또는 이자를 대신에 지불받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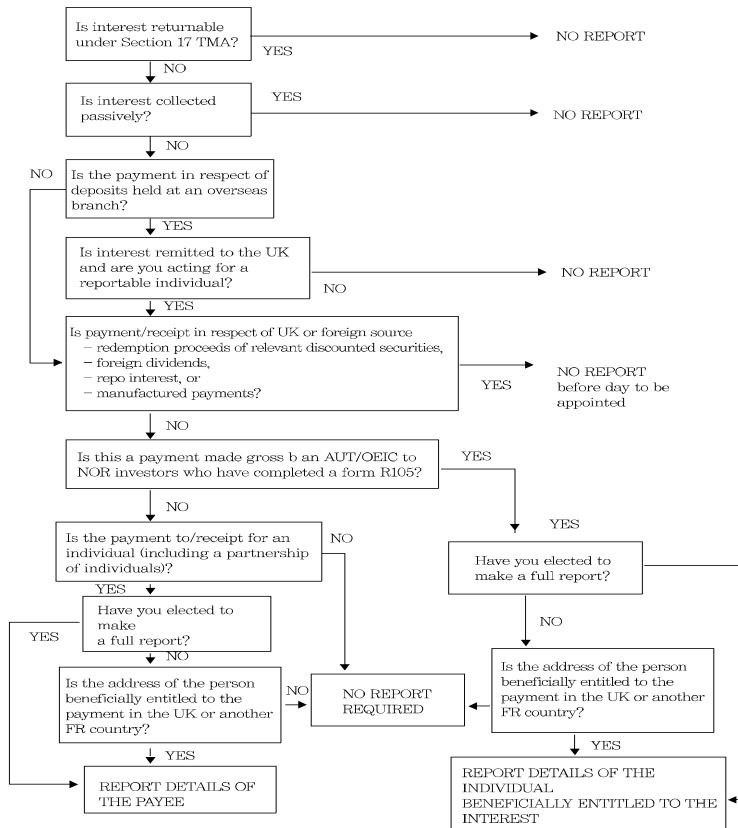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를 요구한다. 정보는 통지에 나와 있는 특정 형식 중 하나로 신고되어야 한다.

2. 국세청의 법 해석에 기초한 안내서는 국세청이 Section 18규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부터 시작된다. Section 18 통지는 수혜자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원한다.

순서도(Flowchart)

5. 다음의 순서도는 언제 보고가 요구되는지, 그리고 어떤 정보가 보고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해 보여준다.

Section 18(interest other than bank and building society interest)



보고(Report)

- 누가 보고해야 하는가?(Who need to make a report?)

6. Section 18의 통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사업의 성격과 상관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것은 비거주자의 영국의 지사를 포함한다(은행의 비거주자 부분에 의해 지불되거나 받은 이자뿐만 아니라 영국의 지사에 의해 지불되거나 받아진 이자까지도 보고된다).
7. 몇몇의 경우 예를 들면, 중개업자와 그들의 청산자가 모두 Section 18의 통지를 받는다면 이것은 이자 지불이 한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 의해 보고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당신이 Section 18의 통지를 받고 누군가가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당신들 중 두 명이 같은 정보를 전적으로 보고할 것이라면, 당신은 paragraph 14에 나타난 주소로 Chris Sexton과 접촉해야 할 것이다.
8. Section 17의 TMA하에서 납세신고를 하기 위한 통지는 기탁수취인(deposit-taker)과 building society에게 발행된다. 기탁수취인과 building society는 Section 18의 TMA하에서 또한 통지를 받을 수 있다. Section 17하에서 이자가 기록되는 곳은 Section 18하에서도 보고되어야 한다.
 - PIBS에 이자를 지불하는 building society는 Section 18의 TMA하에서 이 이자를 직접적으로 보고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들이 원한다면, 개인을 위한 PIBS와 그들의 Section 17의 납세에 지불되는 이자를 포함할 수 있다.
 - 지역적 권한은 Section 18하에서 개인들에게 지불되거나 대출된 이자를 엄격하게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만약 그들이 원한다면, 그들은 Section 17하에서 Section 17의 형식과 안내를 사용해서 납세신고를 할 수 있다.
 - 국내 저축과 투자는 Section 18하에서 몇몇의 그들의 생산품에 지불되는 이자를

엄격하게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만약 그들이 원한다면, 그들은 Section 17하에서 Section 17의 형식과 안내를 통해 납세신고를 할 수 있다. Section 17에 대한 안내서는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다.

– 보고할 책임의 이양(Delegation of responsibility to make a report)

9. 보고를 위한 통지서를 받는 모든 이는 그들을 대신해서 일을 수행하기 위해 제3자가 그들을 대신해서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통지를 받는 사람은 통지를 준수할 책임이 있다.

10. 엄격하게 통지서는 각각의 AUT(Authorised Unit Trust)나 OEIC(Open Ended Investment Company)의 수탁인에게 부합되어야 한다. 그러나 약정을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 통지는 AUTs/OEIC로부터 정보를 요구하는 관리자들에 의해 발행되어야만 한다. 통지를 받는 관리자들은 법적으로 요구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책임을 가지게 된다.

– 언제 통지서가 발행되는가?

11. 지불되는 이자와 그 이자로부터 감면되는 세금의 보고를 요구하는 통지서는 일반적으로 보고가 끝나기 전인 2월 말에 국세청에 의해 발행된다. 그러나 보고통지서는 보고연도의 말 이후 3년까지 발행될 수 있다. 통지서는 완성된 납세신고를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에 관한 훈령을 포함한다.

– 보고하기 위한 시간적 제한은 어떠한가?(What is the time for making reports?)

12. 국세청은 일반적으로 제출된 매년의 보고를 요구한다. 보고의 제출시한은 통지서에 서술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통지서가 관련된 세금연도의 말일 이후 6월

30일이 되거나, 통지서의 발행일 이후 4개월이 된다.

13. 예를 들면, 2002년에서 2003년의 과세연도 동안 통지서는 2003년 2월에 발행된다. 그리고 보고는 2003년 6월 30일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만약 통지서가 2003년 3월 31에 발행된다면, 보고는 2003년 7월 31일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14. 보고는 전자매체나 종이로 이루어진다. 전자매체 기록은 국세청에 의해 특정형식으로 제출되어야만 한다. 자료는 1/2인치 자력 테이프와 3.5인치 플로피 디스크 또는 소형 디스크에 받아들여질 것이다. 보고에 대한 안내 양식을 설명하는 내용은 국세청의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하다.
15. 서류 보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양식은 이전 paragraph 14의 주소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이용 가능하다. 만기에 대한 설명은 양식과 함께 보내질 것이다. 서류 기록은 국세청에 의해 제공된 형식으로 만들어져야만 한다. 사진 복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무엇이 보고되는가?(What is reportable?)

- 보고서에는 어떠한 이자가 포함되어야만 하는가?(What interest should be included in the report?)

16. 개인을 대신해 지불되거나 받은 이자가 보고되어야 한다.

그래서 만약 수령자가 개인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 만약 이자가 개인을 위해 행동하는 수령자 회사에게 지불된다면, 보고는 요구되지 않는다. 이것은 AUT 또는 OEIC가 평판이 좋은 중개자에게 지불하는 것에 의한 지불을 포함한다.

그러나

- 비거주자 신고가 있는 AUTs와 OEIS에 의해 지불된 이자는 paragraph 45~49 참조
- 개인이 제3자에게 지불된 이자를 다룬다면 paragraph 50 참조
- R85 양식은 관해서 paragraph 44 참조

17. 간단히 말해 이자의 계좌 보유자/수혜자가 개인보다 오히려 '실체(entity)'로서 기관의 회계장부에 나타난다면 보고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장부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여준다면

- G&G 투자클럽 : 이것은 개인으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보고할 필요가 없다. 기관이 한 개인이나 여러 개인인지를 기록을 통해 보고하지 않는다.
- Green과 Griffin : 이것은 2명의 개인처럼 보인다. 그래서 보고가 요구된다. - paragraph 54에서 57까지 참조
- Green(treasurer) : 다시 이것은 개인을 나타내므로 보고할 필요가 있다.

18. paragraph 19와 21을 제외한 모든 이자는 보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것은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모든 투자자가 영국에서 지불했거나 받은(수동적인 것 제외) 이자는 개인에게 또는 개인을 위해 보고할 수 있다.
- 외환 이자, 다시 말해 비영국 자원에서 온 이자
- 유로채를 인용하면 유로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그것은 기업에 의해 발행된다.
 - 그것은 이자에 대한 권리를 수반한다.
 - 그것은 공인된 영국증권거래소에 등재되어 있다.
- Building Society PIBS
- 영국 Gilt 이자(그러나 판매/구매 가격에 반영된 이자는 붙지 않는다)

- 이자분배가 지급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단위를 얻기 위해 또는 현재 단위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영국 Unit Trusts와 Open Ended 투자회사에 의한 이자분배
 - 수표·어음의 지참인 투자에 의한 이자(만일 그 이자가 개인에게 지급된 것이라면)
- 어떠한 이자가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는가?(What interest should not be included in the report?)

19. 어떤 이자는 보고할 필요가 없다. 다음과 같은 사항은 보고 대상이 아니다.

- 소극적으로 징수된 이자
- 이자로 쉽게 구별될 수 없는 이자. 예를 들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보고가 요구되지 않을 것이다.

은행이

- 적극적으로 이자일 수도 아닐 수도 있는 지분을 징수할 경우
- 어떤 것이 이자이거나 이자가 될 수 있는 credit의 혼합물을 접수하되 어떠한 이자의 금액인지를 추가 조사 없이는 확신할 수 없을 경우
- ISAs에 대한 이자(paragraph 20 참조)
- PEPs에 대한 이자(paragraph 20 참조)
-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 영국 외부 지점에서 당신이 현금 예치금으로 지불한 이자
 - 영국에 송금된 이자가 아니라면
 - 당신이 수동적인 것 이상을 받지 않는다면
 - 당신이 보고할 수 있는 개인을 위해 행동하지 않는다면(paragraph 50 참조)
- 보고해야 할 개인을 위해 당신이 이자를 지불받거나 수령하지 않는다면 영국 외부에 있는 지점에 보유된 현금 예치금이 아닌 투자에 지불된 이자
- 이자가 발생했으나 아직 지불되지 않은 경우
- SAYE/Share Save 계획에 관한 이자

- 개인연금계좌를 포함하여 승인된 연금계획에 지불된 이자(paragraph 70 참조)
- 국가저축 & 투자 증명서와 어린이 채권에 관한 이자. 그러나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이자를 받거나 이자의 유형을 구별할 수 없을 경우 보고될 수 있어야 한다.

ISAs, PEPs and TESSAs

20. 실효성이 없는 ISA, PEP, TESSA 혹은 수선된 ISA에게 지불되거나 대출된 이자는 보고되어야 한다. 납세신고가 제출되기 이전에 ISA가 수선되거나 ISA/PEP/TESSA가 실효성 없이 발견된다면 정확한 상황이 납세신고서에 나타나야 한다. 납세신고가 이미 제출된 경우 또 다른 것이 요구되지 않지만 국세청 요구 시 산출물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시해야 한다.

2008~2009년 과세연도 보고 제외(Exclusion from reporting for 2008, 2009)

21. 지불/영수는 다음과 같은 경우 2008~2009년 과세연도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

- 관련된 할인 유가증권의 수익금 환수
- 외환배당금
- 환매이자(repay interest)
- 제조금액(manufactured payments)

- 어떠한 정보가 보고되어야 하는가(What information must be reported)

22. 일반적으로 보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paragraph 23에 제시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개별 거래
- 관련된 과세연도에 특정 개인에 대한 보증 혹은 특정 계정거래의 집합

23. 보고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이자가 지불되거나 대신해서 받은 사람의 성명과 주소
- 과세의 공제 이전에 지불되거나 받은 이자의 금액
- 공제된 영국 과세
- 공동계좌/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와 관련된 당사자 수
- 계좌 혹은 담보와 관련된 수 확인
- 외환을 나타내는 SWIFT 표준코드를 가지고 파운드가 아닌 다른 현금으로 보고되거나 지불되는 이자를 보여주는 지표

계좌와 관련하여 Section 17 양식(paragraph 44참조)에 의거해 자치단체가 보고하는 곳에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 계좌와 관련하여 제공된 개설일과 국가보험 수
- 계좌와 관련하여 최초로 지불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

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

24. 법 Section 18 notice에 명시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보는 notice에 명시된 정보에만 적용되며 Data Protection Act하에 책임을 이행할 때 notice에 명시되지 않은 정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완전히 신고의무가 있는 국가 (‘Fully Reportable’ countries)

– 영국과 FR국가에서의 개인들의 보고 제한(Restricting reports to individuals in the UK and other ‘Fully Reportable’ countries)

25. 거래를 제한하도록 국세청이 발행한 표준통지(standard notice)는 영국 또는 다른 ‘Fully Reportable’ (FR)국가에서 보고의무가 있는 주소(address)를 가지

는 개인들에게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 주소에 상관없이 모든 개인들을 위한 거래관련 보고서 작성은 27~29항을 참고.

26. FR 국가 항목은 Appendix에 있다. FR 국가들 항목상의 변화가 있을 시에는 6개월 고시

- 주소와 불문하고 모든 개인들이 보고하는 것(Reporting on all individuals regardless of address)

27. 영국과 다른 FR국가들 내의 거주자들의 보고 제한은 불균형적으로 많은 비용이 드는 작업이 될 수 있다. 다른 책무와 함께 제한하고 있는 보고서 작성의 비용상의 균형을 맞춘 후에 수행해야 하며, standard notice에서 요구하는 것과 같이 제한하고 있는 보고서 작성이 많은 비용이 수반됨을 고려해야 한다. 영국과 FR 국가들의 구성원들은 standard notice에서 요구하는 거래 관련보고의 제출기한인 3개월 이내에 11항에 있는 주소록의 감사기관으로 전화해야 한다. 우리는 주소와 상관없이 각 구성원들은 관련거래의 보고를 요구하는 통지서를 제출할 것이다. 통지서는 보고연도에 발송된 이전의 통지서를 대체할 것이지만, 원본 통지서상에서 보여진 자료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8. 완전한 보고서는 당해연도와 다음 연도까지 적용된다. 우리는 매년마다 주소와 상관없이 각 개인에게 거래관련 보고서를 요구하는 통지서를 발송할 것이다.

29. 이 제도의 이점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보고하고 정확한 통지서를 받았음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standard notice를 받고 full 보고서를 작성하면, Data Protection Act(1988)하의 의무불이행이 된다.

30. 해당내용 없음.

- 전자매체를 통한 보고(Report on magnetic media)

31. 단일 테이프 또는 온라인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대안적으로, 분리된 테이프와 디스크는 각 보고서 작성의 의무가 있는 국가로 보내질 수 있다.

주소(Addresss)

- 여러 주소를 가진 고객(Customers with more than address)

32. 보고된 주소는 보통 재정기관에서 사용된 주소와 일치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주소를 가지고 있고, 이자가 지급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주소로 알려져 있으면, 그 주소가 대신에 보고될 수 있다.
33. 이것은 이자는 보고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러시아 투자자로서 프랑스에서의 주소와 일치하면, 당신이 FR국가에 속하지 않는 러시아에서의 투자자의 주소를 가지고 있다면 투자자의 회계를 자세히 보고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보고된 주소가 이자를 받거나 대부된 사람의 주소임을 감사기관에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주소변경(Changes of address)

34. 일반적으로 과세연도 4월 5일의 개인의 주소가 결정되든 아니든지 보고서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개인이 기한 내에 보고해야만 하는 주소를 가진다면, 그들은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35. 시스템이 제공되어 있다면, 보고되어야 할 결정인지는 이자의 지불/수령의 기한내에 가능한 정보에 근거하여 받아들여질 것이다. 지불의 포함/제외가 감사기관에서 의심된다면, 당신은 왜 이자가 보고서에 포함되었는지 또는 포함되지

않았는지를 보여야만 한다.

계좌폐쇄(Closure of accounts)

36. 당해연도에 회계가 마감되면, 당해연도 동안에 지불/수령된 이자는 회계가 마감되는 기한 내에 보고서 작성의 의무가 있는 주소가 있다면 보고하여야 한다.

우편함 주소(P.O. Box addresses)

37. P.O. Box 주소는 해당자나 수취인 주소로 보고될 수 있다. 그러나 R105(AUT) 또는 R105(OEIC)의 경우, 수익을 얻는 개인의 주요한 거주 주소는 보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R105(AUT) 또는 R105(OEIC)는 보관하고 있으며, P.O. Box 주소는 조건에 맞는 거주 주소이고 조사될 수 있는 투자자의 조건에서만 주요 거주 주소로서 보고될 수 있다. 조사의 기록은 감사 목적을 위해 보관된다.
38. 투자자로부터 확인된 P.O. Box 주소는 그들의 거주 주소이며, P.O. Box 주소가 주요 거주 주소로 보고되었는지 모든 경우에 있어서 확인을 해야 하며, 그러한 정보는 감사 목적으로 보관된다.

BFPO and C/o addresses

39. R105(AUT) 또는 R105(OEIC)의 서식은 수익을 얻는 사람의 주요 거주 주소를 포함해야 한다. BFPO 또는 C/o 주소는 그 주소가 주요 거주 주소인지 모든 경우에 조회되어야 한다. BFPO 또는 C/o 주소가 주요 거주 주소인지 투자자로부터 확인을 해야 하며, 그 확인은 감사 목적으로 보관되어야 한다.

‘Hold Mail’ addresses

40. 2006년 4월 5일 이전에 성립된 수취인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한 ‘Hold Mail’ 이 주소가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을 경우에 보고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관된 주소가 ‘Hold Mail c/o XYZ Bank Sheffield branch’ 이면, 이것은 보고되어야 한다. 그러나 예를 들어, NFR국가일 경우에는 보고할 필요가 없다.

2006년 4월 6일 이후 또는 관계의 개시를 위해, ‘Hold Mail’ 은 수락할 수 없으며, 완전한 주소가 보고되어야 한다.

미상의 소재(Whereabouts unknown)

41. 당신이 수취인이 ‘Whereabouts unknown’ 상태가 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이자의 지불을 보고한다면 그들의 최근 주소에 근거하여 보고한다. 투자자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아서 당신이 이자를 지불할 수 없을 경우 보고하지 않는다. 그 후에 투자자의 새 주소를 발견하고 미해결의 이자를 지불했을 경우 새 주소에서 이루어진 당해연도의 지불을 보고한다.
42. 당신의 시스템이 이자지불 만기일까지 보고할 경우, 최근의 주소를 사용하여 지불된 것처럼 이자를 보고할 수 있다.
43. ‘Whereabouts unknown’ 인 사람을 대신하여 당신이 수령한 이자를 보고할 경우 최근 주소에 근거하여 보고한다.

R85 cases

44. 몇몇 지방기관은 회계와 관련하여 세금의 경감 없이 이자를 수령하도록 등록된 R85s를 유지하고 있다. Section 18의 보고 시스템은 부가적 정보에 대처할 수

없으며, 그러한 경우 지방기관은 Section 18 대신에 Section 17 서식을 사용하여 보고하는 R85를 유지한다.

R105(AUT) and R105(OEIC) cases

R105(AUT) and R105(OEIC) 서식은 영국에 대개 거주하지 않는(Not Ordinarily Resident; ‘NOR’) 개인단위(또는 공동) 소유자가 신고한다. 수익을 얻는 개인의 이름과 주요 거주지의 주소는 형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해외 투자자에게 이 지배분 지급장치 사항에 있어 2008년의 재정법의 변화로, NOR 신고서는 개인 단위(또는 공동) 소유자에게 직접 지불하는 제한된 상황에서만 요구된다. 이익분의 배분은 해외 투자자에게 전체적으로 지불될 수 있으며, 소유자가 회사이거나 신탁기구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중개인’ 일 경우 만족된다.

46. R105(AUT) 또는 R105(OEIC) 서식을 받았을 경우 보고서는

- 수탁자 대신에 이자를 받는 개인의 이름과 주 거주지를 기입해야 하며,
- 이자가 R105(AUT) 또는 R105(OEIC)의 서식에 의해 전체 지불되었음을 보여주는 척도를 포함해야 한다.

47. 보고서에 기입된 주 거주지는 다음 중 하나이다.

- R105(AUT) 또는 R105(OEIC)의 서식에서 보여지는 주소는 R105(AUT) 또는 R105(OEIC)가 유효한 경우 보고될 수 있다.
- 두 번째 또는 다음 연도의 총지불액이 새로운 주 거주지가 되는 알려진 주소를 업데이트한 R105(AUT) 또는 R105(OEIC)의 형식으로 확인되며,
- 네 번째 또는 다음연도의 총지불액은 해당 주소가 AUT/OEIC의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R105(AUT) 또는 R105(OEIC)의 형식으로 확인된다. 하나 이상의 해당 주소를 보유할 경우, 보고된 주소는 표준 투자자와 일치하는 AUT/OEIC로 사용

된다.

48. AUT 또는 OEIC의 수탁자에 있어 채무관계는 보고된 주소가 세 가지 개요 중 하나인지에 대한 감독이 제한된다.
49. 투자자가 당해연도까지 R105(AUT) 또는 R105(OEIC) 신고를 완료하고 세금경감하에 이자를 수령하였을 경우, 두 가지 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하는데, 세금경감하에 지급된 이자는 수취인의 세부사항을 작성하고, 세금경감 없이 지급된 이자는 이자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익권자의 세부사항을 작성해야 한다. 당해연도에 단일 보고서를 작성하였을 경우 수익권자의 세부사항을 작성하고, 전체연도 동안 지급된 수익액과 그러한 수익으로부터 경감된 세금을 함께 작성하면 허용된다.

특별한 경우(Particular cases)

- 다른 경우에서도 통제를 받는 이자(Interest directed elsewhere)
50. 이자는 그 사람의 지시나 동의에 따라 다른 사람에 의해 수령한 경우에 그 사람에게 의해 수령한 것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투자에 대한 이자가 개인투자자의 은행계좌에 직접 위임된 수령명의자에 의해 보유되는 경우, 그 수익은 수령명의자에 의해 보고되어야 한다.
- 투자를 기다리는 현금에 지불되거나 받은 이자(Interest paid/received on cash awaiting investment)
51. Section 18 보고서는 ‘Security Details’의 기장을 요구한다. 이자가 현금으로 수령/지불되었을 경우, Security Details box에 ‘현금’으로 기장한다.

공동출자된 자산(Pooled assets)

52. 이자가 대신하여 수령되거나 확인가능한 신고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공동출자계정의 방식으로 지급된다면, 그 이자는 Section 18하에 보고의 의무가 있다. 이자가 공동출자계정으로 수령하는 특정개인으로 귀착될 수 없는 경우, 수령에 대해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그 후에 신고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지급될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외환계좌(Foreign currency accounts)

53. 이자가 외국화폐로 지급되었을 경우 신고서는,

- 외국화폐 : 신고서는 외국통화라는 것을 보여주는 척도와 SWIFT code(appendix 5참고)를 포함해야 한다.
- 영국화폐 : 외국화폐는 세율에 따라, 국세청에 납부하기 위해 영국화폐로 태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한에 유효한 세율에 따라 이자가 지급/수령되었거나 다른 수단으로 시종일관 적용되어야 한다.

파트너십(Partnerships)

파트너십과 기타 공동보유(Partnerships and other joint holdings)

54. 영국 또는 FR국가에 주소가 있는 하나 이상의 상사/공동소유자들이 보고의 의무가 있을 경우 상사 또는 공동소유는 신고의 의무가 있다(paragraph 25~26 참고).

55. 단일 또는 둘 이상의 파트너 또는 공동소유자들이 보고의 의무가 있을 경우 각 개인은 보고해야 한다.

- 계정/소유 자격자의 이름이 되는 ‘고객명’
- ‘참여자’로서 보고의무가 있는 파트너의 이름
- ‘참여인원’으로서 보고의 의무가 없는 개인을 포함하는 파트너 또는 공동소유자의 총인원

두 명의 파트너 또는 공동소유자들이 보고의 의무가 있을 경우, 같은 주소를 가지는 경우에는 한 개의 보고서만 제출한다. 그러나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두 가지 분리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56. 상사 또는 공동소유에 있어 신고의무가 있는 개인이 둘 이상일 경우,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제한된다.

- 계정/소유 권리명으로서 ‘고객명’ 기록
- ‘참여자’로서 계정/보유에 있어 신고의 의무가 있는 자로 지명된 최초의 두 명을 기록
- ‘참여인원’으로서 보고의 의무가 없는 개인을 포함하는 파트너 또는 공동소유자의 총인원을 기록

57. Section 18하의 당신의 신고서가 FR국가들 또는 영국에 신고의무가 있는 주소를 가지는 개인에게 한정되는 경우, 공동계정의 당사자이고 그 주소가 영국 또는 다른 FR국가들이 아닌 어떤 개인에게의 지불은 포함되지 않는다.

전문가 파트너십(Professional partnerships)

58. 전문적 합자회사인 경우, 예를 들어 법률과 회계사무회사인 경우 보고서 작성은 합자회사명과 주소로 제한될 수 있다.

59. 전문적 합자회사는 독립기구에 의해 규제되는 합자회사이다.

신탁자에 의한 보고(Reporting by Trusts)

재량 또는 축척 & 관리신탁의 수탁자에게 보내진 통지(Notice sent to Trustee(s) of a Discretionary or Accumulation & Maintenance Trust)

60. 그들은 신탁회사를 대신하여 수령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신탁수익자가 그것에 대한 자동적인 권리가 있지 않기 때문에 Section 18에 따라 수령된 이자를 보고하는 자유재량의 수탁자 또는 축척 및 관리 신탁회사를 위한 필요조건은 없다.

61. 분배는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수익자들이 신탁수입의 공동소유로 등록되어 있을 지라도, 신탁수익자들은 관여하지 않으며 신고의 의무가 없는 자유재량의 수탁자 또는 축척 및 관리 신탁회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62. Bare Trust는 수익자가 신탁회사의 투자에 대해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며, 그들로부터 수입을 증가시키는 신탁회사이다. Life Interest Trust의 경우에 수익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보통 사망하기까지의 신탁수입에 대한 이자를 취한다.

Section 18 notice가 Trustees of a Bare Trust, Interest in Possession Trust or Life Interest Trust에 의해 수령된다면, 그들은 수익자가 신탁수입에 대한 권리를 가진 이후에 그들이 수령한 이득을 신고해야 한다.

기간 동안에 수익자에 변화가 있을 경우,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사망하고, 새로운 피보험자에게 이익이 양도되어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 신고서는 이자가 지급된 시기의 수익자에 근거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그것은 즉 각각의 수익자에 대한 두 개의 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신탁자를 대신해 이자를 받는 사람에 대한 통지(Notice sent to persons who pay Interest to or receive interest on behalf of trusts)

63. Trustee of a Discretionary or Accumulation & Maintenance Trust 대신에 이자를 지불하거나 수령한다면 수탁자가 개인인 경우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하나 이상의 수탁자가 있다면 공동 소유자와 전문적 합자회사의 보고서 작성 규정을 적용한다. 수탁자가 company 또는 다른 실체일 경우 보고서는 필요 없다.
64. Trustee of a Bare Trust, Interest in Possession Trust or Life Interest Trust 대신에 이자를 지불하거나 수령하는 경우 수익자의 이름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수익자의 성명을 모르는 경우 수탁자가 보고서 작성의 의무가 있는 개인인 경우 수탁자의 성명으로 보고서를 작성한다.
65. 수탁자가 R105(AUT) 또는 R105(OEIC) 형식을 갖추었다면 이자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NOR 개인의 세부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66. 수탁자의 대행자에게 지급된 이자는 대행자가 개인 또는 개인들의 합자회사이지만 company 또는 다른 실체가 아닌 경우 보고의 의무가 있다.

사망한 투자자(Deceased Investors)

67. 사망일과 세금연도의 개시일 간에 사망자를 대신해 수령하거나 지급된 이자는 사망자가 보고서 작성의 의무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성명과 최근의 주소 보고의 의무가 있다.
68. 집행자 대신에 수령하거나 지급된 이자는 집행자가 하나 이상의 개인인 경우 보고의 의무가 있다. 미확정기간에 적용된다. 하나 이상의 집행자가 있다면 공동 소유자와 전문적 합자회사의 보고서 작성 규정을 적용한다.
69. 집행자는 Section 18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 그들이 통지서를 수령하였을 경우
- 지급 또는 수령을 발생시키는 자산이 영국 또는 다른 FR국가들에 주소가 있는 개인수익자에게 양도되었을 경우

자산이 양도된 날로부터 수령되거나 지급된 이자만이 보고의 의무가 있다.

연금계획(Pension Schemes)

70. 국세청에 의해 승인된 SIPP 또는 SSAS를 포함하여, Pension Schemes의 수탁자 대신에 수령하거나 지급된 이자에 대한 보고는 필요하지 않다.

감사(Audit)

71. 당신의 신고서가 FR국가 또는 영국에 주소를 둔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제한되는 경우, 우리는 당신이 6개월의 통보를 필요로 하는 완전한 정보 보고서 작성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에 확신한다.

72. 따라서, 약정에 의해서 국세청은 독립 회계감사원에 지명된 보고서 작성의 책무를 가진 사람을 인정하고, 자비로 그들의 NFR 회계의 감사를 수행한다. 그러나 이 옵션은 그 사람이 모든 개인들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만 해당한다. 모든 개인들의 완전한 보고서가 작성된다면, 국세청은 모든 관점의 감사를 수행할 것이다.

73. 독립적 회계감사인은 다음 조건이 요구된다.

- NFR 회계가 정확하게 분류되었는지 입증
- 그 사람이 다음연도에 6개월의 통보를 조건으로 모든 계정에 대한 완전한 보고서 작성에 응할 준비가 되었는지에 대한 확신을 제공

- AUT 또는 OEIC가 영국조세의 감면이 없는 NFR 국가에서 NOR 개인들에게 지급한 이자를 구성하는 경우 적소에 R105(AUT) 또는 R105(OEIC)의 타당한 형식 인지 조사

독립 회계감사인의 보고서가 국세청 감사의 필수 부분이 된다. 그 보고서는 Companies Act(1989)하에 등록된 감사기관에 의해 준비되어야 한다.

74. 이 약정의 이점을 얻으려면, 감사를 수행할 회계 감사인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작성해서 국세청에 전달해야 한다. 언제든 적용되며, 국세청은 수령 30일 이내에 신청서를 승인한다.
75. 첫 번째 감사기간은 2006년 4월 6일부터 수행한다. 독립 회계감사기관의 감사 결과는 업무의 달성일로부터 21일 이내에 감사기관에 보내야 한다. 보고서는 보통 감사 완료일로부터 28일 이내에 제출된다.

표본추출(Sampling)

76. 국세청과 독립 회계기관의 업무로 샘플이 그들 각국의 경우, 또는 두 가지로 분리된 통계학적으로 유효한 샘플, FR의 경우에서 뽑힌 경우와 NFR의 경우에서 뽑힌 한 가지의 경우에 따라 총 비영국인 모집단으로부터 선택된다. 샘플은 통계학적으로 유효할 것이며, 신뢰수준은 95%이다.

결과(Results)

77. NFR과 FR 감사결과 간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면, 우리의 의무 이행사항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우리는 독립 회계감사기관이 더욱 심층 감사하도록 하거나 우리 스스로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78. 회계감사기관이 통계학적으로 유효한 샘플을 사용하고, 그리고 오차범위가 통계학적으로 실행 가능할 경우, 샘플의 결과는 외삽될 것이며 국세청은 제도로부터 복원을 추구할 것이다.

절차의 검토(Review of procedures)

79. AUT 또는 OEIC가 FR과 NFR 회계인 경우 국세청은 NOR 회계의 운영에 관한 절차를 감사할 것이다. 이것은 높은 수준의 검사가 될 것이며, 어떠한 개인의 경우를 감사하는 것을 수반하지는 않을 것이다. 국세청 감사기관이 어떻게 그들이 적용되는지 절차에 대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절차가 어떻게 NFR 회계에 적용되는지를 확인하는 독립적 회계기관을 필요로 할 것이다. FR 회계가 없을 경우 이 감사는 독립 회계감사기관에 의해 수행될 것이다.
80. 독립적 회계기관으로 지정된 NFR 회계와 독립적 회계감사기관은 당신이 미래 연도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보고할 것에 대한 것을 충족시킬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납득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세청은 미래연도에 그 기관에 의해 통지서를 완전한 보고서 작성을 요구할 목적으로 제출할 권리를 유보한다.
81. 국세청 FR 회계를 위해 Section 18 보고서로부터 통계학적 샘플을 선택하며, 68% 신뢰 수준의 통계학적 샘플은 보고서 작성의 의무가 있는 모집단으로부터 선택될 것이다.

처벌(Penalties)

82. 통지서를 받을 사람이 보고서를 작성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300파운드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최초의 벌금이 부과된 후에 미해결된 보고서가 남아있는 각 날짜마다 60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된다.

83. 부정으로 또는 태만하게 부정확하게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은 3,000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다.

안내방문(Help Visits)

84. 재정기관, 특히 이전에 정보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람은 국세청에 접촉 방문하여 도움을 요구할 수 있다.

주요국의 조세제도

- 영국편 -

2009년 10월 20일 인쇄
2009년 10월 27일 발행

저 자 박정수
발행인 원윤희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8-7174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죽말길 28
전화 :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상 일 인 쇄
인 쇄

© 한국조세연구원 2009

ISBN 978-89-8191-438-7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값 10,000원

